

K o r e a D e v e l o p m e n t I n s t i t u t e

우리나라 사업체대상 통계조사의 개선방안

2003. 12

한국개발연구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제 출 문

통계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 통계청이 의뢰한 『도소매업 서비스업 총조사
관련 학술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3. 12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 중 수

< 연 구 진 >

연구책임자 : 이 재 형 KDI 전문연구원

조 장 을 KDI 연구원

연구자문 : 이 태 열 보험개발원 연구위원

이 진 면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4
제3절 연구개요	5
1. 전반적인 개선사항	5
2. 산업구조통계 개선을 위한 당면과제	7
제2장 국내 사업체 및 기업체 관련 통계조사	12
제1절 사업체 및 기업체관련 통계조사의 개괄	12
제2절 통계청의 사업체관련 통계조사 현황	18
1.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18
2. 광업 및 제조업 부문	22
3.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부문	46
4. 건설업통계조사	67
5. 운수업통계조사	77
6. 정보통신기술산업통계	82
7. 환경산업통계조사	87
제3절 개별 통계조사의 비교 및 문제점	88
제3장 미국의 경제센서스	95
제1절 미국 경제 센서스 개요	95
1. 일반사항	95
2. 주요 개념	102
제2절 표본 및 조사 방법	105
1. 조사 표본	105
2. 센서스 이외의 정보 활용	110
3. 자료 수집	113
4. 자료 공표	117

제3절 조사표의 구성	119
1. 개요	119
2. 약식 조사표 (Classification Form) - <부록 1>	119
3. 일반 조사표 - <부록 2>	120
4. 조직 관련 조사항목 - <부록 3>	126
제4절 보고서의 구성	128
1. 개요	128
2. 산업별 보고서 구성	130
3. 정규 센서스 이외의 보고서	166
제5절 특징 및 시사점	167
1. 요약	167
2. 미국 센서스의 특징	170
3. 시사점	171
 제4장 일본의 사업체·기업체 대상 통계	 174
제1절 산업구조 및 기업활동 통계조사의 개괄	174
제2절 사업체 및 기업 관련 통계현황	178
1. 사업소·기업통계조사	178
2. 서비스업기본조사	197
3. 공업통계조사	207
4. 상업통계조사	227
5. 특정서비스산업실태통계조사	243
6. 상공업실태기본조사	252
7. 기업활동기본조사	265
8. 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	286
9. 외자계기업 동향조사	296
제3절 사업체·기업체 대상통계의 특징과 시사점	304
1. 분산형 통계제도	304
2. 사회적 수요에 대응한 통계의 공급	305
3. 다양한 조사방식의 채택	306
4. 조사항목의 표준화에 관련 사항	310
5. 사업소 정의 및 관련 사항	312
6. 기업체 단위 통계 개발	313

제4절 사업체·기업체 통계조사의 개선 움직임	316
제5장 사업체대상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23
제1절 기본인식과 여건분석	323
1. 산업구조 통계의 개선 필요성과 방향	323
2. 여건분석과 통계청의 역할	326
3. 통계수요의 확대	331
4. 통계청의 역할	332
제2절 산업구조 통계 발전의 기본방향	333
1. 우리나라 산업구조통계에 대한 평가	333
2. 통계제도 및 조직 개선·강화	335
제3절 통계체계 및 조사의 개선	341
1. 통계체계의 개선	341
2. 조사대상·조사내용 및 조사항목의 개선	345
3. 통계작성 체계 및 절차의 개선	348
4. 모집단 자료의 충실화 : 사업체대상 통계의 기본 틀의 정비	354
5. 행정자료 활용도의 제고	355
6. 기업통계의 개선·개발	359
제4절 산업별 통계의 개선방안	366
1. 접근방법	366
2. 공통사항	367
2.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370
3.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	373
4.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및 연간조사	381
5. 건설업 통계조사	385
제5절 조사업무의 충실도 제고	386
1. 조사단계의 중요성	386
2. 사업체대상 통계 조사절차의 현황과 문제점	388
3. 개선방안	395
4. 통계조사와 관한 일본 사례의 벤치마킹	401

제6장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의 개선방안	407
제1절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에 대한 사회적 수요	407
1.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서비스업 비중 증대	407
2.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에 대한 사회적 수요	410
제2절 문제점과 개선방안	413
1. 새로운 통계수요에 대응한 통계의 공급	413
2. 조사시기의 조정	414
3. 조사항목	415
4. 조사대상	417
5. 기타 개선사항	420
제7장 요약 및 제언	422
제1절 요약	422
1. 사업체 대상 통계조사의 현황과 문제점	422
2. 미국 경제센서스의 특징과 시사점	425
3. 일본의 사업체·기업체 관련 통계조사 특징과 시사점	427
제2절 사업체대상 통계 개선을 위한 제언	431
1. 전반적 개선사항	431
2. 현안과제의 개선방안	437
 <부 록>	
<부록 I> 2002 ECONOMIC CENSUS 약식 조사표	445
<부록 II> 2002 ECONOMIC CENSUS 일반 조사표	453
<부록 III> 2002 ECONOMIC CENSUS 조직 관련 조사항목	474

< 표 목 차 >

<표 2-1> 국내 사업체 및 기업체 대상 통계조사 현황 종합	13
<표 2-2> 산업구조통계의 산업포괄 범위 (통계청 작성 통계)	17
<표 2-3> 전국사업체기초통계 15개 시도별 통계작성 승인	18
<표 2-4> 산업총조사와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조사개요 비교	44
<표 2-5> 산업총조사와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조사항목 비교	45
<표 2-6>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관련 조사의 개요	47
<표 2-7>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분야 통계의 조사대상 산업범위	47
<표 2-8>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의 연혁	49
<표 2-9>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관련 조사의 공통조사항목	64
<표 2-10> 도·소매업조사의 조사항목 비교	65
<표 2-11> 서비스업조사의 조사항목 비교	66
<표 2-12> 연도별 조사대상 업종 변천	79
<표 2-13> 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	84
<표 2-14> 국내 산업구조통계의 조사개요 비교	90
<표 2-15> 국내 산업구조통계별 종사자 분류	91
<표 2-16> 국내 산업구조통계별 부가가치산출 비교	93
<표 3-1> 미국의 산업 분류와 경제 센서스 대상	101
<표 3-2> 미국 제조업 조사 대상 분류	107
<표 3-3> 미국의 산업별 센서스 비교	110
<표 3-4> 소규모 사업체 후속 권고 (1997년 센서스의 경우)	116
<표 3-5> 대중규모 사업체 후속 권고 (1997년 센서스의 경우)	117
<표 3-6> 미국의 주요 센서스 보고서 발표 일정 (2002년 센서스)	118
<표 3-7> 미국의 경제 센서스 주요 설문 내용	122
<표 3-8> 미국 센서스의 조사항목 번호별 세부 내용	123
<표 3-9> 미국의 산업별 센서스 조사 항목 비교	125
<표 3-10> 미국 산업별 센서스 비교	129
<표 3-11> 센서스조사와 다른 주기의 보고서	167
<표 4-1> 일본의 산업구조 및 기업활동 관련 주요 통계조사 현황	176
<표 4-2> 통계조사별 산업포괄 범위	177
<표 4-3> 결과의 공표(1): 집계별 지역범위	187
<표 4-4> 결과의 공표(2): 집계별 공표시기, 방법 등	188
<표 4-5> 평성 11년(1999년) 서비스업기본조사의 조사대상 산업	198

<표 4-6> 평성 11년(1999년) 서비스업기본조사 결과일람	203
<표 4-7> 일본 상업통계의 조사기일	229
<표 4-8> 2002년 기준 상업통계조사의 집계결과 공표 형식	236
<표 4-9> 재화별 소분류 산업 분류	239
<표 4-10> 의·식·주별 중분류 산업 분류	240
<표 4-11> 조사연도별 조사업종의 변화	245
<표 4-12> 최근의 조사대상 산업	247
<표 4-13> 산업의 약칭과 표준명칭(제조업)	258
<표 4-14> 산업의 약칭과 표준명칭(도소매 및 음식점)	259
<표 4-15> 종업원기준에 의한 규모구분	260
<표 4-16> 제조기업의 규모 구분	260
<표 4-17> 확보 간행물의 종류와 발행시기: 평성10년(1998년)조사결과	264
<표 4-18> 최근의 조사대상기업과 응답상황	293
<표 4-19> 최근의 조사대상기업과 응답상황	302
<표 4-20> 일본 산업구조 및 기업관련 통계의 작성방법	308
<표 4-21> 일본 1995년 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한 특별조사 현황	309
<표 4-22> 일본의 사업체 통계조사별 조사항목 비교	311
<표 4-23> 「통계행정의 새로운 전개방향」과 「통계행정의 新증·장기구상」 비교	318
<표 5-1> 통계인력 기능별 현황	328
<표 5-2> 행정자료의 통계목적 활용을 위한 선진국의 제도	331
<표 5-3> 집중형과 분산형 통계제도의 비교	336
<표 5-4> CASI 조사 참여현황	351
<표 5-5> 산업분류번호 기입을 위한 자료	353
<표 5-6> 외국의 통계작성에 있어서 행정자료 활용사례	357
<표 5-7> 기업통계 작성현황	362
<표 5-8> 통계청 작성 기업통계 현황	363
<표 5-9>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 비중	375
<표 5-10> 조사내용상 특이 사업체	376
<표 5-11> 조사대상 사업체 규모를 상향조정할 경우: 대상 사업체수 및 산업수(2001)	377
<표 5-12> 조사대상 사업체 규모를 상향조정할 경우: 대상 사업체수 및 품목수(2001)	377
<표 5-13> 특화도의 분포(2001)	380
<표 5-14> 포괄도의 분포(2001년)	380

<표 5-15> 특화도 및 포괄도의 분포(2001년)	380
<표 5-16> 조사절차와 방법에 의한 통계 분류	388
<표 5-17> 조사대상자로부터의 예상 질문에 대한 한일비교	400
<표 5-18> 조사객체의 중복시정에 대한 상한치	403
<표 5-19> 산업분류번호 기입을 위한 자료	406
<표 6-1> 주요국가의 산업구조	408

<그림 목차>

[그림 2-1]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의 조사업무흐름도(2001년 기준)	54
[그림 2-2] 도·소매업통계조사의 조사업무흐름도	58
[그림 2-3] 서비스업통계조사의 조사업무흐름도	62
[그림 2-4] 운수업통계조사의 조사업무흐름도	81
[그림 3-1] 미국의 센서스 진행 개념도	113
[그림 4-1] 분위점에 의한 특이치의 검출	254
[그림 4-2] 향후 조사방법의 개요도	268
[그림 5-1] 산업구조통계 개선 기본방향	343
[그림 5-2] 기업의 구조	359

우리나라 사업체대상 통계조사의 개선방안

제 1 장 서 론

제 2 장 국내 사업체 및 기업체 관련 통계조사

제 3 장 미국의 경제센서스

제 4 장 일본의 사업체·기업체 대상 통계

제 5 장 사업체대상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6 장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의 개선방안

제 7 장 요약 및 제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통계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산업구조에 관한 통계는 많은 국가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생산하고 있음. 그렇지만 포괄범위가 광범위하고, 사업체 수준에서 종합적인 실적을 조사하는 기초통계는 대부분 통계청에서 수행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 가운데 산업구조통계 부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산업구조통계 가운데 특히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통계청의 산업구조통계는 우리나라 경제통계 부문의 기초부분을 형성하고 있으며, 각각의 통계 그 자체로서 그 활용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국민계정 등 여타 국가통계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또한 다른 기관에서 특수목적을 위해 작성되는 개별통계의 모집단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통계청의 산업구조통계는 우리나라 경제통계의 토대가 되고 있으므로, 통계청의 산업구조통계의 개선은 국가 경제통계의 질적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됨.

-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산업구조통계가 갖는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산업구조통계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크게 통계기관(통계청을 포함한) 외부적 문제와 내부적 문제가 복합된 것임.

○ 외부적 어려움

-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계수요가 복잡화·다양화되고 있음. 이러한 급변하는 통계수요를 통계작성 기관이 제대로 포착하기 어려움.
- 기업활동의 다양화·복합화: 기업이 과거의 단순한 생산조직으로부터 기술혁신, 생산, 마케팅의 종합적·복합적 경영조직으로 변모하고 또 세계화로 기업의 활동무대가 다국적화되면서 기업활동을 체계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통계작성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 조사환경의 악화: 민주화에 따른 정부권위의 약화, 기업의 정보관리 강화 등에 의해 통계조사에 대한 협조가 낮아지고 있고, 응답거부 사업체도 증가하는 것은 실정임.

○ 내부적 어려움

- 산업구조통계의 중요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뜰이나 부족한 통계작성 인력은 오히려 축소되는 추세에 있음.
- 통계청 산업구조통계의 대부분은 대규모 통계조사를 필요로 하는데, 그동안 이들 통계업무를 지원하였던 지자체의 통계담당기구가 크게 축소되어, 최일선 통계행정조직이 매우 취약해진 상태임.
- 현장조사를 위한 조사원들의 확보가 어려움.

- 산업구조통계 작성에 있어서 이상과 같은 어려움과 동시에 통계작성 여건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음.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통계생산 여건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음. 조사계획의 수립, 내검, 조사결과의 집계 등에 있어서 효율 향상이 기대되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산업구조통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업체대상 통계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선진

국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보완·개선하고자 함.

- 통계조사 내용, 항목의 개선: 조사대상 사업체, 조사항목,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함.
- 통계조직·조사체계·절차의 개선: 통계의 질적 향상의 관건은 이를 수행하는 조직의 충실성 및 그 체계·절차에 크게 의존하므로, 통계개선을 위한 조직·체계·절차의 개선방안을 모색함.

□ 이와 아울러 산업구조통계 개선을 위해 통계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당면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산업구조통계의 종합 발전방안
 - 경제센서스 실시 필요성 및 실시시기 검토
 - 조사항목의 표준화 필요성 및 표준(안) 검토
 - 조사방법 검토
 - 조사체계 검토
 - 사업체 개념 검토 및 정립
 - 경영실적 관련 자료 파악방법 검토
 - 다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조사방법 검토
 - 기업체단위 통계개발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개선방안
 - 도매업에 대한 조사 필요성 등 검토
 - 조사대상 산업에 대한 검토
 -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검토
 - 조사실시 시기에 대한 검토
 - 무응답(또는 일부항목 누락) 처리 방법
 - 지사가 있는 사업체에 대한 조사방법 검토

제2절 연구방법

□ 국내외 사업체대상 통계 현황 파악 및 특징 도출

- 국내 사업체 대상통계의 전반적 현황파악
-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사업체·기업 대상 통계에 대한 벤치마킹
- 통계조사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통계행정체계 벤치마킹

□ 우리나라 사업체대상 통계에 대한 잠정적 평가

- 우리나라의 사업체 대상 통계는 선진국에 비해 기업통계부분이 조금 취약하나, 통계의 종류, 포괄대상 산업, 조사대상, 조사항목 등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손색이 없음.
- 이는 그동안 통계청에서 꾸준히 개선작업을 추진해온 결과임.
- 그러나 통계의 정밀도·충실도, 조사체계, 통계결과물의 다양성, 검사·개선 시스템 등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음.
- 즉, 국가통계 작성의 큰 틀은 상당한 정도로 정비되어 있으나,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 많다는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 통계행정 여건의 특징과 선진국 통계를 벤치마킹하여 최선의 개선안을 찾을 것임.

- 통계체계는 미국형을 참고하여 경제센서스를 중심으로 부문별 기초통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일본의 경우는 관할관청의 영역다툼으로 전체적인 체계성이 다소 부족함. 따라서 미국 모델을 바탕으로 일본형의 장점을 추가한 후 우리나라 여건을 감안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통계행정체계는 일본형을 참고함.
 - 지자체의 기능이 중요한 일본형과 통계청이 중심이 되는 한국형에는 큰

차이가 있으나, 정부조직의 운용방식, 정부-민간 관계 등 많은 면에서 유사점이 존재함.

- 사업체대상 통계가 전체적으로 일관성·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통계체계 개선안을 제시할 것임.
- 현행 통계는 각 산업별로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전체적인 연계성 및 체계성이 다소 부족함.

제3절 연구개요

1. 전반적인 개선사항

- 국내 산업구조통계의 현황과 특징: 현재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산업구조통계의 종류와 이들 통계의 특징을 분석·평가
 -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 산업센서스,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
 - 건설업 통계조사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도소매업 통계조사, 서비스업 통계조사
 - 운수업 통계조사
- 미국 산업구조통계의 현황과 특징: 경제센서스를 중심으로 미국의 산업구조통계의 작성현황, 방법 및 특징을 검토
 - 경제센서스의 포괄범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항목 정의, 공표내용
 - 경제센서스와 연도별 통계조사의 관계
 - 미국 통계제도의 특징

□ 일본의 산업구조통계의 현황과 특징

- 일본의 산업구조통계 현황: 사업소·기업통계조사, 공업통계조사, 상업통계조사, 서비스업 통계조사
- 주요 조사항목의 정의
- 기업통계 현황
- 일본통계제도의 특징: 통계조사체계와 절차

□ 우리나라 산업구조통계의 평가와 문제점

- 산업구조통계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대응
- 통계 기술적 측면
- 통계 제도적·조직적 측면

□ 통계조직의 확충 필요성: 사업체대상 통계의 개선에 있어서는 통계조직(특히 통계청 본청)의 확충이 전제되어야 함.

- 우리나라 사업체 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안 모색에 있어서 문제의 본질은 통계행정조직의 미비에 있음.
- 이것만 해결된다면 여타 문제(통계의 질 향상, 새로운 통계의 개발 등)의 상당부분은 사실상 자동적으로 해결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행정조직의 정비·강화, 통계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현재의 통계생산 자원여건(인력, 예산)으로서는 현행 업무도 과도한 상태라고 평가됨.
- 통계조직의 확충이 없는 상태에서 이 연구에서 개선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부실통계를 요구하는 것임. 따라서 개선안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통계의 개선과 아울러 통계조직, 체계의 개선안을 동시에 제시할 것임.

2. 산업구조통계 개선을 위한 당면과제

가. 산업구조통계의 종합적 발전방안 제시

□ 경제센서스 실시 검토, 조사시기의 검토, 조사항목의 표준화, 조사방법의 개선, 조사체계의 개선, 주요 조사항목 및 조사대상의 명확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개선방안 등

□ 경제센서스의 실시 필요성 검토

○ 현재 통계청에서는 5년 주기로 산업총조사(3, 8차 년도를 기준으로 4, 9차 년도에 실시)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1, 6차 년도를 기준으로 2, 7차 년도에 실시)를 전수조사로, 광업·제조업통계조사, 도소매업 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등을 매년 표본조사로 실시하고 있음.

○ 지금의 형태와 같이 조사를 실시하는데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 별도의 경제센서스 실시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함.

□ 경제센서스를 실시하는 경우 및 실시하지 않는 경우의 최적 조사 실시 시기에 대한 검토

○ 일반적으로 총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년도의 경우, 사업체 모집단 파악을 위한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통계조사는 시·도를 통해 각각 2월과 4월경에,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건설업통계조사와, 운수업통계조사는 통계청 지방사무소를 통해 각각 4월과 5월경에 실시하고 있음.

○ 이들 조사에 대한 최적 조사 실시 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조사항목의 표준화 필요성 및 표준(안) 검토

○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업체 대상 통계조사는 각 통계조사마다 나름대로의 항목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일한 항목(종사자수 등)에 대해서도 분류가 서로 다르며, 부가가치 파악방법도 서로 상이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조사 항목과 업종별 특성항목을 개발(또는 특화)할 필요가 있음.

□ 조사방법의 검토

- 지금까지의 총조사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복잡하고 세분된 사항을 조사하였음.
- 또한 모든 업체에 대해 동일한 조사항목으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영업실적과 관련한 세부항목의 경우 자료수집 자체가 곤란한 문제점이 발생함.
- 따라서 지금과 같이 모든 사업체에 대해 동일한 항목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인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체는 세부항목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영세사업체는 간단한 항목으로 표본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또는 총조사는 기본적인 항목과 최소한의 항목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특화된 연간조사 등에서 세부항목을 조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조사체계 검토

-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통계조사(총조사 포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업무가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이관되고 담당인력 또한 축소되어 조사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
-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통계조사를 어떤 체계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사업체 개념 검토 및 정립

- 사업체는 공장, 영업소, 지역본부, 본사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음.
- 최근 들어 물류센터 등의 도입으로 유통단계가 축소됨에 따라 지역에서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으므로 사업체의 개념과 조사대상에 포함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조사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경영실적 관련 자료 파악 방법 검토

- 연구개발비, 유·무형자산 등과 같은 항목은 본사에서만 파악이 가능하나, 사업체 단위 조사에 동 항목을 포함시킴에 따라 세부내용 파악이 곤란함.
- 사업체 단위 조사에서 어떻게 조사하는 것이 좋은지, 만일 본사에서 전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체별로 배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최적의 배분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다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조사방법 검토

- 지금까지 통계청에서는 주산업에 의한 산업분류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다만 건설업통계조사와 운수업통계조사는 주산업에 관계없이 활동분류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등도 일부 활동분류 채택)
- 따라서 하나의 업체에서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조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기업체 단위 통계개발

- 최근 들어 기업체 단위 통계의 수요가 점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업체 단위 통계의 개발과 관련한 제반 사항(예 : 필요성, 개발 방법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방안을 제시함.

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개선방안

□ 도매업에 대한 조사 필요성 등 검토

- 최근 들어 전자상거래의 확산, 대형할인매장과의 직거래 등으로 도매업의 개념이 많이 약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도매업과 소매업의 구분이 애매해지고 있으므로 도매업에 대한 통계조사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조사대상 산업에 대한 검토

- 2001년 기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과 교육서비스업까지 조사대상 산업을 확대하였음.
- 그러나 이들 산업의 경우 현장조사를 아무리 철저하게 하더라도 행정자료에 의해 작성되는 통계 정도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함.
- 따라서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의 조사대상 산업에 계속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검토

- 지금까지의 총조사에서는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연구개발비, 유·무형 자산 등과 같은 경영실적 관련 항목을 조사하였음.
- 이에 따라 영세 사업체나 미기장 사업체의 경우 응답자의 기억에 의한 조사가 불가피하여 응답내용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음.
- 총조사의 기본목적은 달성하면서도 자료의 정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조사실시 시기에 대한 검토

- 현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는 1차, 6차 년도를 기준으로 2차, 7차 년도에 실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총조사 결과 자료가 도소매업 판매액지수와 서비스업활동지수 개편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총조사 실시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무응답(또는 일부항목 누락) 처리 방법

- 현장 조사시 실사지도 등을 통해 무응답 또는 항목 누락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많은 인력이 동시에 투입되는 관계로 무응답이나 항목누락 사업체가 발생함.
- 무응답 사업체나 항목 누락 사업체의 경우 실적관련 사항들의 처리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사가 있는 사업체에 대한 조사방법 검토

- 체인점, 주유소 등과 같이 하나의 업체에 많은 지사(점)가 있을 경우 경영 실적을 어떻게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제2장

국내 사업체 및 기업체 관련 통계조사

제1절 사업체 및 기업체관련 통계조사의 개괄

- 2003년 현재 국내에서 통계법에 의거하여 승인된 사업체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되는 통계는 78종으로 양적으로 승인된 총 통계 455종의 약17%를 차지하고 있음.
 - 이중 기업체단위 통계는 40종인 반면, 38종이 사업체 단위 통계임.
 - 중앙부처에서 생산하는 사업체 및 기업체 대상 통계는 34종이며, 18종을 통계청이, 나머지 44종은 관련 산업이나 업종의 협회 및 은행에서 조사함.
 - 통계청 조사 중 건설업 관련 3종(건설업통계조사, 건설기성통계조사, 건설수주통계조사)이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되는 통계임.
- 통계종류별로는 지정통계가 25종, 일반통계가 53종으로 일반통계가 약 68%를 차지하며, 일반통계 가운데 4종이 보고통계임.
 - 지정통계 25종 중 15종을 통계청이 조사함.
 - 보고통계 4종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고용보험통계, 대한방직협회의 면방직통계, 보험개발원의 보험통계(월간), 보험통계(연간) 등임.
- 조사주기별로는 연간주기가 40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및 5년 주기가 각각 2종, 3년 주기가 1종, 1년 미만 주기가 31종(반기 4종, 분기 10종, 월 17종), 부정기 1종 등임.

- 10년 주기 통계는 농업총조사, 임업총조사이며, 5년 주기 통계는 통계청에서 조사되고 있는 산업총조사와 도소매 및 서비스업총조사임.

□ 조사방법별로는 전수조사가 28종, 표본조사가 49종, 전수 및 표본 병행조사가 1종임.

〈표 2-1〉 국내 사업체 및 기업체 대상 통계조사 현황 종합(1)

번호	통계조사명	단위	종류	주기	방법	개시	통계작성기관명
1	200대주요기업설비투자계획조사	기업체	일반	반기	표본	1998	산업자원부
2	건설기성통계조사	기업체	지정	월	표본	1998	통계청
3	건설수주통계조사	기업체	지정	월	표본	1976	통계청
4	건설업경영분석	기업체	일반	년	전수	1989	대한건설협회
5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기업체	지정	반기	표본	1991	대한건설협회
6	건설업통계	기업체	일반	년	전수	1976	대한건설협회
7	건설업통계조사	기업체	지정	년	전수	1974	통계청
8	고용동향전망조사	사업체	일반	분기	표본	1995	노동부
9	고용보험통계	사업체	일반 (보고)	월	전수	1997	한국산업인력공단
10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기업체	지정	년	전수	1963	과학기술부
11	광공업동태조사	사업체	지정	월	표본	1967	통계청
12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사업체	지정	년	전수	1967	통계청
13	기업경기동향조사	기업체	일반	월	표본	1967	전국경제인연합회
14	기업경기전망조사	기업체	일반	분기	표본	1972	대한상공회의소
15	기업경기조사	기업체	일반	월	표본	1991	한국은행
16	기업경영분석	기업체	일반	분기	표본	1961	한국은행
17	기업물류비실태조사	기업체	일반	2년	표본	2002	대한상공회의소
18	기업시설투자동향조사	기업체	일반	년	표본	1975	전국경제인연합회
19	기업의자금사정실태조사	기업체	일반	분기	표본	1998	전국경제인연합회
20	기업재무분석	기업체	일반	년	표본	1958	한국산업은행
21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기업체	일반	년	표본	1980	노동부
22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사업체	지정	년	전수	2000	통계청

〈표 2-1〉 국내 사업체 및 기업체 대상 통계조사 현황 종합(2)

번호	통계조사명	단위	종류	주기	방법	개시	통계작성기관명
23	농업총조사	사업체	지정	10년	전수	1930	통계청
24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	사업체	지정	5년	전수	1968	통계청
25	도소매업동태조사	사업체	지정	월	표본	1965	통계청
26	도소매업통계조사	사업체	지정	년	전수 표본	1988	통계청
27	매월노동통계조사	사업체	지정	월	표본	1968	노동부
28	면방직통계	사업체	일반 (보고)	월	전수	1963	대한방직협회
29	미시산업통계	기업체	일반	분기	표본	2000	산업자원부
30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사업체	일반	년	전수	1999	중소기업청
31	보험통계(연간)	기업체	일반 (보고)	년	전수	1963	보험개발원
32	보험통계(월)	기업체	일반 (보고)	월	전수	2000	보험개발원
33	산업총조사	사업체	지정	5년	전수	1955	통계청
34	상장기업부가가치분석	기업체	일반	년	전수	1978	한국생산성본부
35	서비스업동태조사	사업체	지정	월	표본	1999	통계청
36	서비스업통계조사	사업체	지정	년	표본	1988	통계청
37	소매업경영동태조사	기업체	일반	년	전수	1981	대한상공회의소
38	수출산업 경기전망조사	기업체	일반	분기	표본	2002	한국무역협회
39	수출산업실태조사	기업체	일반	년	표본	2003	한국무역협회
40	어업경영조사	사업체	일반	년	표본	196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1	어업총조사	사업체	일반	년	표본	1930	통계청
42	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조사	사업체	일반	년	전수	1994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43	여성기업실태조사	기업체	일반	2년	표본	2003	한국여성경제인협회
44	운수업통계조사	기업체	지정	년	표본	1964	통계청
45	월간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기업체	지정	월	표본	200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46	임금교섭타결현황조사	사업체	일반	부정기	전수	1998	노동부
47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사업체	지정	년	표본	1968	노동부

〈표 2-1〉 국내 사업체 및 기업체 대상 통계조사 현황 종합(3)

번호	통계조사명	단위	종류	주기	방법	개시	통계작성기관명
48	임금조정실태조사	사업체	일반	년	표본	1976	한국경영자총협회
49	임업경영실태조사	사업체	일반	년	표본	2000	산림청
50	임업총조사	사업체	지정	10년	전수	1999	산림청
51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사업체	지정	년	전수	1994	통계청
52	전기공사업경영분석	기업체	일반	년	표본	1999	한국전기공사협회
53	전기공사업통계조사	기업체	일반	년	전수	1994	한국전기공사협회
54	전문건설업통계조사	기업체	일반	년	전수	1988	대한전문건설협회
55	전자·전기제조업실태조사	기업체	일반	월	표본	1969	한국전자산업진흥회
56	전자산업 경기전망조사	기업체	일반	월	표본	2003	한국전자산업진흥회
57	전자상거래 기업체통계조사	사업체	일반	분기	전수	2001	통계청
58	정보통신공사업 경영분석	기업체	일반	년	전수	2001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59	정보통신공사업통계조사	기업체	일반	년	전수	1994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60	정보통신기술산업(ICT)통계	기업체	일반	년	표본	1999	정보통신부
61	정보통신부문 인력동향실태조사	기업체	일반	년	표본	2002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62	정보통신산업기업경기실사지수	기업체	일반	년	표본	2003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63	정보통신산업실태조사	사업체	일반	년	표본	1996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64	주요기업의설비투자계획조사	기업체	지정	반기	표본	1965	한국산업은행
65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조사	사업체	일반	년	표본	200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66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사업체	일반	년	표본	1995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67	중소기업실태조사	사업체	지정	년	표본	1967	중소기업청
68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사업체	일반	년	표본	1999	중소기업청

〈표 2-1〉 국내 사업체 및 기업체 대상 통계조사 현황 종합(4)

번호	통계조사명	단위	종류	주기	방법	개시	통계작성기관명
69	중소유통업실태조사	사업체	지정	3년	표본	2003	산업자원부
70	중소제조업 경기국면지수 및 경영환경지수	사업체	일반	월	표본	2001	중소기업청
71	중소제조업경기전망조사	사업체	일반	분기	표본	1973	중소기업은행
72	중소제조업동향조사	사업체	일반	월	표본	1963	중소기업은행
73	중소제조업설비투자전망조사	사업체	일반	반기	표본	1983	중소기업은행
74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	사업체	일반	년	표본	1990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75	철강 경기실사지수 조사	사업체	일반	분기	전수	2002	한국철강협회
76	철강통계조사	사업체	지정	월	전수	1976	한국철강협회
77	환경산업통계조사	사업체	일반	년	전수	2001	통계청 환경부
78	KDB산업경기전망조사	기업체	일반	분기	표본	1965	한국산업은행

□ 여러 산업을 포괄하는 기초통계적 성격의 산업구조통계는 주로 통계청에서 작성되고 있는데, 산업포괄범위는 산업적 분석이 필요한 부분은 모두 포괄함.

- 조사항목이 다양해야하는 1차 산업의 경우에는 센서스 성격의 총조사를 실시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 산업의 구조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2차와 3차 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총조사와 연간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함으로써 구조변화에 대한 파악을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조사함.
- 통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와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등에 대한 분야로 통계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는 분야임.

〈표 2-2〉 산업구조통계의 산업포괄 범위 (통계청 작성 통계)

표준산업대분류	통계조사		
A 농업 및 임업	전 국 사 업 체 기 조 통 계 조 사	농업총조사 임업총조사	
B 어업		어업총조사	
C 광업		산업 총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D 제조업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F 건설업			건설업 통계조사
G 도매 및 소매업		도소매	도·소매업 통계조사
H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 총조사	
I 운수업			운수업 통계조사
J 통신업		도소매 서비스업 총조사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 및 임대업			서비스업 통계조사
M 사업 서비스업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도소매 서비스업 총조사	
O 교육 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서비스업 통계조사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R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S 가사 서비스업			
T 국제 및 외국기관			

제2절 통계청의 사업체관련 통계조사 현황

1.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 조사목적

- 정부 정책수립, 민간기업체의 기업경영 계획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을 파악하고 표본 틀을 제공

□ 조사연혁

- 1994년 통계법 제8조에 의해 지정통계로 15개 시도별 통계작성을 승인

〈표 2-3〉 전국사업체기초통계 15개 시도별 통계작성 승인

지 역	승인번호	승인일자	지 역	승인번호	승인일자
전 국	10137호	1995. 12. 22.	강 원	21103호	1994. 4. 2.
서 울	20105호	1994. 4. 2.	충 북	21203호	1994. 4. 12.
부 산	20204호	1994. 4. 12.	충 남	21304호	1994. 3. 21.
대 구	20303호	1994. 3. 21.	전 북	21403호	1994. 4. 12.
인 천	20403호	1994. 4. 12.	전 남	21503호	1994. 3. 26.
대 전	20504호	1994. 3. 21.	경 북	21604호	1994. 3. 26.
광 주	20604호	1994. 3. 10.	경 남	21704호	1994. 3. 21.
울 산	20702호	1997. 11. 5.	제 주	21803호	1994. 4. 12.
경 기	21003호	1994. 4. 2.			

- 1995년 : 전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통계작성 승인(승인번호: 제 10137호)
- 1996년 : 사업체구분 가운데 「본사+공장」을 삭제하고 공무원근무기관을 파악

- 1997년 : 조사항목 중 종사자수를 남녀로 구분하고, 도소매·서비스업 총조사와 통합 실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통계작성을 승인 (승인번호: 제 20702호)
- 1998년 : 조사항목 중 대표자를 남녀로 구분하고, 무급가족종사자를 독립)
- 1999년 : 공장·지사인 경우 본사현황 파악
- 2000년 : 조사항목으로 사업체변동을 추가
- 2002년 : 도소매·서비스업 총조사와 통합 조사를 실시
- 2003년 : 조사항목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

□ 조사주기 및 시기

- 조사주기 : 1년
- 조사기준 : 매년 12. 31. 현재
- 실시기간 : 매년 2~4월 중 1개월간

□ 조사대상 및 단위

- 조사대상 : 조사기준일(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전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체
- 조사대상 제외업체
 -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사업체(법인 및 비법인 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
 -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 판매상
- 조사단위 : 일정한 장소에서 재화의 생산, 판매, 서비스제공 등 유·무형의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사업체)
 - 예 : 공장, 상점, 작업장, 광업소, 농장, 출장소, 영업소, 본사·본점, 연락사

업소도 별개의 조사단위

□ 조사방법, 항목 및 집계단위

- 조사방법 : 응답자 기입방식 전수조사(읍·면·동직원 및 임시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면접조사)
- 조사체계
 - 실시기관: 사업체 → 조사원 → (읍면동) → 구·시·군 → 시·도
 - 지원기관: 행정자치부, 통계청
- 조사항목 :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조직형태, 사업체 구분(법인회사의 경우), 창설년월(사업체변동사항), 사업내용, 종사자수, 연간총매출액 등
- 집계단위 : 전국 및 시·도별

□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

- 조사표의 기입방식
 - 조사원 기입방식 :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 작성방법을 설명하고 사업체 응답자가 직접 작성
 - 응답자 기입방식 : 조사원이 항목별로 질문하여 기입하는 방식
- 사업체의 정의
 -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개개의 상점, 사무소, 영업소 은행, 학교, 병원, 여관, 식당, 각종 교습소, 교회, 사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재화의 판매, 서비스 제공 등의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단위
 - 사업체와 유사한 개념으로 기업체가 있는데, 기업체란 동일자금에 의하여 소유되고 통제되는 제도적 단위 또는 법적 단위로서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체와 구분
 -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사업체를 조사단위로 하고 있어 1개의 기업체가 여러 개의 장소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각 장소별로 별개의 사업체

로 파악

○ 조직형태

- 개인사업체 : 순수하게 개인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동업(공동경영)의 경우도 포함
- 회사법인 :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로 구분
- 회사이외 법인 :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외의 법인을 말하며 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
- 비법인단체 :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동창회, 후원회, 문화단체, 노동단체, 종친회 등이 포함

○ 사업체구분(회사법인 경우만 조사)

- 단독사업체 : 동일 경영(동일소유권 또는 동일 통제 하에 있는)의 본사(본점), 공장,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분점(회) 등이 별도로 없는 1기업 1사업체
- 공장, 지사(점), 영업소 : 동일경영의 본사, 본점, 본부, 중앙회 등이 별도로 있으면서 그 산하에 있는 사업체
- 본사, 본점, 본부 : 다른 장소에 동일경영의 공장,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지부(회), 분점(회) 등을 1개 이상 거느리고 운영하는 사업체로서 순수한 관리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업체

○ 사업장변동

- 사업장존속 : 사업체명, 대표자명, 업종 등이 변경되었더라도 전년 조사 시와 같은 장소에 사업체가 있는 경우
- 사업장 신설 및 누락 : 전년 조사 시 사업체가 없었던 장소에 금년 조사 시 새로운 사업체가 생긴 경우
- 대상외 : 전년에 조사된 사업체중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체 또는 중복, 가공사업체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전년도 조사 시 누락된 사업체도 포

함

- 사업장 철거 및 폐쇄 : 전년에 조사된 사업체중 금년 조사 시 사업체가 없어진 경우

○ 사업의 종류

- 각 사업체가 주로 생산 또는 제공하는 상품명 또는 서비스명으로 2개 이상의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겸업사업체의 경우에는 주산업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조사

○ 종사자수

- 자영업주 : 동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체의 소유주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주의 가족으로서 정상 작업(영업)시간의 1/3이상 종사하나,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 상용종사자 : 1년 이상 고용되어 일정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하며, 자영업주를 제외한 모든 유급임원도 여기에 포함
- 임시 및 일일종사자 : 1년 미만 고용되었거나 일일수당제로 고용된 자를 말하며, 연인원으로 조사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
- 무급종사자 :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을 받는 자(예 : 접대부, 외판원, 배달원, 무보수 근무자 등)

2. 광업 및 제조업 부문

가. 산업총조사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부문의 구조와 분포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경제정책 수립, 기업의 경영계획수립, 대학과 연구소 등의 연구활동 및 국제비교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 산업생산지수 개편, GDP 디플레이터 비중 산출, 광공업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 자료를 제공

□ 조사연혁

- 1956년에 1955년 기준의 광공업센서스를 한국은행이 최초로 실시한 이후 1959년 작성기관을 한국산업은행으로 이관하여 2~3년 주기로 실시
 - 1961년 : 한국산업은행과 상공부 공동조사
 - 1962년 : 통계작성 승인
 - 1963년 : 한국산업은행과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공동조사
 - 1964년 : 조사대상에 전기업 추가
 - 1967년 : 작성주기 변경(5년→3년)
 - 1969년 : 작성주기 변경(3년→2년)
- 1970년 작성기관을 경제기획 경제통계국으로 이관하여 현재 통계청이 실시
 - 1974년에 1973년 기준일부터 작성주기를 5년(끝자리가 3자, 8자 년도)으로 변경하였으며, 가스업 및 수도사업을 추가
- 1984년 통계명칭을 산업센서스로 변경하였고, 1990년에 다시 통계명칭을 산업총조사로 변경하여 현재 『1998년 산업총조사』까지 12회 실시
 - 1993년 :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
 - 1994년 : 조사방법을 전수조사로 변경
 - 1999년 : 조사대상에 증기 및 온수공급업을 추가

□ 조사주기 및 시기

- 조사주기 : 5년(끝자리 3자, 8자 년도)
- 실시기간 : 익년 5월15일 ~ 6월15일 1개월간

□ 조사대상 및 단위

○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대분류 『C. 광업』, 『D. 제조업』, 『E.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 조사대상년도 12월 31일 현재 종사자수가 1인이상인 사업체
- 계절적인 사유 등으로 휴업중인 사업체라도 조사대상년도 중 최소한 월 1주일이상 조업한 달이 1개월 이상인 사업체

○ 조사제외 대상

- 조사대상년도 12월 31일 현재 설립 중에 있거나 또는 신설공사중인 사업체
- 국군, UN군이 직영하는 사업체
- 공공 직업보도소 및 교도소의 작업장
- 공공단체 및 학교에 속해 있는 실습장, 시험소, 연구소 등

○ 조사단위 : 사업체(개개의 공장, 작업장, 사업소, 광산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소유권 또는 단일 통제 하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제단위)

- 광업·제조업 :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소유권 또는 단일 통제 하에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제단위(공장, 작업장, 사업소, 광산 등)
- 전기업 : 한국전력공사 산하의 1차 사업체(본사, 본부, 지사, 지점, 발전소 등),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소양, 대청, 충주, 안동댐 등), 발전시설 보유업에서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업체(포항제철 등), 소수력 발전소
- 가스업 :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도시가스협회 산하 회원업체
- 증기 및 온수공급업 :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 수도사업 : 수도사업을 영위하는 지방행정기관(시·읍·면 급수지역) 및 수자원공사 산하 사무소

□ 조사방법, 항목 및 집계단위

○ 조사방법 : 전수조사(조사원 기입방식과 응답자 기입방식을 병행)

- 광업·제조업 : 임시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조

사하며, 대규모 사업체는 응답자가 직접 작성함

- 전기업·가스업·수도사업 : 우편조사

○ 조사체계

- 통계청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사원 ↔ 사업체

○ 조사항목

- 광업 및 제조업(5인이상) : 사업체명 및 소재지, 본사소속 타공장 유무, 경영조직, 자본금 또는 출자금, 부지 및 건물 연면적과 임차료, 종사자수, 급여액, 출하액 및 수입액,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제품출하액(매출액) 및 재고액,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의 품목, 유형고정자산,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주요 원재료명, 주요 생산공정, 1인당 수원별 용수량,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연간운용비용, 공작기계보유현황
- 광업 및 제조업(4인이하) : 사업체명 및 소재지, 주요 원재료명 및 생산공정, 종사자수, 급여액, 생산비, 제품 출하액(매출액), 임가공(가공수수료)수입액, 부지 및 건물 연면적과 임차료, 유형고정자산
- 광공업 본사 및 본점용 : 본사(본점)명 및 소재지, 경영조직, 자본금 또는 출자금, 종사자수, 급여액,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광공업이외의 매출액 및 수입액,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재고액, 유형고정자산, 본사 및 관할사업체내역 및 소재지
- 정보통신관련 제조업부문 : 사업체명 및 소재지, 증권거래소 상장유무, 외국인투자비율, 주전산기보유현황, 기술제휴, 종사자수 및 급여액, 상시종사자현황, 총수입(총매출액), 통신비, 경상이익, 순금융비용
- 전기업 : 사업체명 및 소재지, 사업체구분, 자본금 또는 출자금, 종사자수, 급여액, 전기판매수입액(량), 주요전력량,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증기생산 및 판매(량), 연료사용액(량), 연료재고액(량), 유형고정자산
- 가스업 : 사업체명 및 소재지, 창설(가동)년월, 자본금 및 출자금, 종사자수, 급여액, 배관시설, 연초·연말재고량 및 재고액, 생산량 및 판매량, 판매수입액,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유형고정자산
- 수도업 : 기관명, 창설(가동)년월, 회계기준, 종사자수, 급여액 및 기여금

등 정부부담금, 공급량 및 공급액, 수입액,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원재료별 사용량(액), 유형고정자산, 관할사업소 내역

- 증기 및 온수공급업 : 사업체명 및 소재지, 창설(가동)년월, 자본금 또는 출자금, 종사자수, 급여액, 배관시설, 연료사용액(량), 연료재고액(량), 생산량 및 판매량, 판매수입액,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유형고정자산
- 집계단위 : 산업분류(대·중·소·세·세세분류) 및 지역(시·도, 시·군·구)별
- 결과공표
 - 공표방법 : 잠정결과의 보도자료·인터넷 게재, 최종결과는 「산업총조사보고서」발간
 - 공표범위 : 지역은 시·군·구로 구분, 내용은 산업세세분류별, 종사자규모별, 경영조직별 등으로 공표하며, 간행물은 전국편, 지역편, 기타편, 기업체편으로 구분하여 발간

(2) 조사항목

□ 종사자 5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

- 경영조직 : 사업체 경영주체(기업체)의 법적 조직형태로서 회사법인, 기타법인 및 개인의 세 가지로 구분
 - 회사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를 말함.
 - 기타법인은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함.
 - 개인사업체라 함은 법인이 아닌 개인소유의 사업체를 말하며 법인격이 없는 조합과 같은 임의 단체도 포함조사
- 자본금 또는 출자금 : 회사법인인 사업체(본사)가 조사기준년도 12월 31일 현재 납입을 완료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을 말함
- 부지 및 건물연면적 : 제조업체에 한하여 제품생산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와 건물의 연면적을 말하며(사택 및 기숙사와 그 대지, 운동장 등이 생산공장과 같은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포함) 임차 사용 중인 것은 포함하

며, 임대해준 토지와 건물은 제외

- 종사자수 :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및 피고용자수를 종사상의 직종별로 연말과 조업기간 중 월평균 기준으로 각각 해당 사업체의 종사자수를 조사
 -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 사업체의 소유주(출자자 포함)와 그의 가족(동업 종사자 포함)이 사업체의 운영을 위하여 정규 작업(경영)시간의 1/3 이상을 사무 및 생산업무 등에 종사하되 일정한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함
 - 피고용자수 : 상용, 임시 및 일용종사자까지도 포함하며, 사고로 인한 단기 휴가자 및 파업중인 자를 포함함. 위탁 재조를 시킨 경우에 있어서는 수탁사업체의 종사자와 사업체에서 비록 급여를 지급하기는 하나 장기결근자(3개월 이상), 군복무자 등은 제외함. 연말피고용자수는 조사대상연도 12월 31일 현재 그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남녀종사자를 말하며, 조업기간 중 월평균 피고용자수는 조사대상기간 중 조업한 각월의 종사자수 합계를 조업월수로 나눈 종사자수를 말함
 - ① 생산직 종사자 : 생산에 직결되는 현장 작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와 같은 생산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자로 구체적으로는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 가공, 검사, 조작, 포장, 입고, 출하, 보수, 생산공정의 기록사무, 기타 상기 업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종사자이며 광업에 있어서는 채광, 굴진, 권양, 천공, 발파, 분쇄, 선광, 검사, 출하, 보전, 수리, 생산과정의 기록 사무, 기타 상기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 ② 사무직 및 기타 종사자 : 생산종사자 이외의 모든 피고용자를 말하며 생산 작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후선에서 기술적, 전문적, 서기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의 보조원 즉 사환, 수위, 승용차의 운전사 등을 말하며, 법인체에 있어서 보수를 받는 임원도 여기에 포함
- 급여액 : 조사기준년도 1년간 피고용자에게 노무의 대가로서 지급된 모든 현금과 현물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말하며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며, 퇴직금과 장기결근자 및 군복무자에 대한 제 급여액
 - 조사기준년도 이전의 급여로서 체불되었던 것을 조사기준년도 중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였으나, 조사대상년도 중에 지급하여야 할 급여로서 미지급된

것은 포함

- 급여액은 세금, 기여금, 저금, 노동조합비 등 피고용자 부담금을 사업자가 공제하기 이전의 총액으로서, 현물로 지급한 것은 지급한 현물이 자가 생산품인 경우에는 지급한 일자 현재의 공장인도 판매가격으로 평가하고 구입품인 경우에는 실제 구입가격으로 환산 평가
- 생산액 : 제품출하액, 부산물·폐품판매액, 임가공수입액(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의 합계에서 재고액의 완제품과 반제품 및 재공품의 연초, 연말재고액의 증감액을 가감한 것을 말함
- 출하액 : 조사기준년도 1년간의 제품출하액, 부산물·폐품판매액,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및 수리수입액의 합계를 말하며 이 기간에 발생한 출하,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에 대한 미수금을 포함
 - 제품출하액 :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완제품과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타 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제조한 완제품의 조사기준년도 1년간 판매액을 말하며, 동일기업내의 타사업체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 견본 또는 선물용으로 증정한 것, 그리고 사무용이나 종사자에 대한 급여용으로 그 사업체내에서 직접 소비한 것도 환산평가하여 여기에 포함. 그러나 완제품의 판매를 본사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에는 본사에 반출된 것을 출하로 보지 않고 본사에서 출하된 것만 포함. 구입된 상품에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전매한 것과 타사업체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탁 생산한 제품의 출하는 여기에서 제외
 - 출하제품의 평가는 공장인도 판매가격에 의하고 내국간접세 즉, 주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납부세액)가 부과된 것에 대하여는 이들을 제외한 가격을 조사
 - 부산물·폐품 판매액 :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나온 폐품, 불합격품(불량품)의 판매에 의한 수입금액을 말하며 생산과정 이외에서 나오는 것은 제외
 -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 원재료 또는 중간 제품을 타제조업 사업체로부터 지급받아 제조 또는 가공 처리하여 준 대가로 받은 임가공수입액을 말하며 비제조업체(도·소매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타산업체)로부터의 수탁은 자가생산 출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품출하액에 포함
 - 수리수입액 :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품을 수리하여 준 대가로서 받았거

나 받아야 할 수입액을 말함

- 구입상품매출액 : 당해 사업체가 직접 제조·가공하지 않고 외국 또는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그대로 또는 포장만 변경하여 판매한 상품의 총매출액을 말함
- 구입상품매출원가 : 연간 구입한 총상품중에서 판매한 상품에 대한 구입 원가를 말함
- 재고액 : 연초재고액은 조사기준년도 1월 1일 현재로, 그리고 연말재고액은 12월 31일 현재로 재고대상물의 사업장내 실재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업체의 소유에 속하는 제품(완제품과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및 연료의 재고액을 말함
 - 완제품의 판매를 본사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에 본사로 반출된 제품으로서 판매되지 않고 재고로 남은 것은 그 사업체의 재고로 간주하였음. 수탁가공을 위하여 타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원재료 및 중간제품의 재고와 이미 판매대금까지 받았으나 미출고분은 제외시킴. 재공품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장부가격으로 하였으며, 이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각각 연초, 연말 시가에 의한 추정액을 조사
- 주요생산비 : 조사기준년도 1년 동안에 생산을 위하여 사용(소비)된 제비용인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수선비, 급여총액, 퇴직금, 복리후생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세금과 공과, 대손상각비, 기타(광고선전비, 운반비 등)비용을 조사
 - 원재료비 : 제품의 생산 또는 수리가공을 위하여 조사대상년도 1년간에 실제로 사용한 원재료, 부분품, 부속품, 용기 등과 화학약품, 포장재료와 같은 보조재료의 사용금액을 말하며 자기 원재료를 공급하고 위탁제조를 시킨 경우의 원재료비를 포함
 - 그러나 타 광공업 사업체로부터 수탁생산을 맡은 경우에 타 사업체로부터 지급된 원재료와 자가 생산한 중간제품을 다시 사용하여 최종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의 중간제품의 비용은 제외 그리고 농업, 임업, 수산업 또는 광업 등 1차 산업활동을 겸하여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자가 취득한 원재료는 사용 당시의 시가를 조사
 - 연료비 : 조사기준년도 1년간에 가열료(난방 포함), 동력 및 자가발전용으

로 사용한 모든 연료의 구입가격을 말함

- 전력비 : 조사기준년도 1년간에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구입전력의 요금 및 사무실용 전등요금과 조사기준년도에 지출한 요금으로서 미지급된 것도 여기에 포함
- 용수비 : 조사기준년도 1년간에 생산을 위하여 사용된 구입용수의 요금을 말함(사무실용과 종사자의 음료용수를 포함)
- 외주가공비(위탁생산비) :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타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 생산을 시킨 경우에 수탁사업체의 조사기준도의 기성고분에 대하여 지출하여야 할 가공임을 말하며 임금을 포함하나 공급한 원재료의 가액은 여기서 제외하고 원재료비에 포함
- 수선비(수리유지비) : 생산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하며, 이에 수리 및 유지를 위하여 사용한 재료, 기계의 윤활유, 소모품, 부속품의 구입액은 여기에 포함하였으나 공장의 증축이나 기계 등의 개조로 그 자산의 성능이 높아지고 가치가 증감됨으로써 회계상 유형고정자산 계정에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제외
- 부가가치 : 생산액에서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및 수선비 등 주요생산비를 공제한 것을 말함. 따라서 이 부가가치(센서스 부가가치)는 국민계정상의 부가가치와는 산출방법의 차이로 인해 일치하지 않음
- 유형고정자산 : 토지와 1년 이상의 내구성 있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구·비품, 차량운반구, 선박 등을 말함
- 연간 증가액이란 조사기준년도 1년간에 유형고정자산을 실질적으로 취득, 설치 및 증개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함. 취득액의 평가는 타 사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에 대하여는 설치비를 포함한 평가액으로, 그리고 자가건설 또는 생산의 경우에는 고정자산으로 대체된 장부상의 가액 평가액으로 함
- 연간 감소액이란 조사기준년도 1년간에 매각, 양도, 재해, 도난 등으로 인한 유형고정자산의 실질적인 가치감소액을 말하나 감가상각에 의한 장부가액의 감소는 별도 항목으로 조사하였고 처분액의 평가는 그 자산의 매각액으로 하고 실제 매매가 없을 때에는 가치감소원인의 발생 당시에 매

각할 수 있었던 시가에 의함

- 토지 : 공장 및 사무소의 부지, 사택부지, 건물예정지, 운동장을 말하며 이들을 위한 토지개발비도 포함하나 비업무용 토지는 여기에서 제외
- 건물 및 구축물 : 건물은 공장, 사무소, 사택,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과 승강기, 냉방장치, 조명, 통풍장치 등 이들의 부속시설을 말하며 구축물에는 도로, 철도, 교량, 담장, 연돌, 수조(탱크), 조선대, 송유관, 우물, 정원 등을 포함
- 기계장치·용광로·요 : 발전기, 전동기, 공작기계 등의 각종 기계류 및 기계장치 부설 설치물과 용광로·요 등을 포함
- 차량운반구 및 선박 : 자동차, 철도차량 등의 육상운반구와 전마선, 화물선, 유조선 등의 해상운반구를 말함
- 기타(공구·기구·비품 등) : 1년 이상 내구성이 있는 각종 기구, 공구, 비품 등을 말함
- 건설 중인 자산 : 유형고정자산(건물신축, 기계설비 등)의 건설 또는 매입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서 완성 또는 도착에 이르기까지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함

□ 영세광공업 종사자 4인이하 광업 및 제조업

- 종사자수 : 조업기간중 월평균 종사자수를 사업체의 종사자수로 하였으며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와 유급종사자로 구분하여 조사
 - 유급 종사자는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상시 및 임시종사자를 말하고, 무급가족종사자는 자영업주와 가족관계에 있으면서 정규 작업시간 1/3이상 종사하나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함. 월평균종사자수는 각 월말 종사자수 누계를 조업월수로 나누어 구한 수를 말함
- 급여액 : 유급종사자에게 조업기간중 지급한 월평균 급여액에 연간 조업월수를 곱하여 연간급여액을 산출. 현금 이외에 자체 생산된 제품 또는 기타 현물로 지급된 것도 시가로 평가하여 포함하였으며 조사기준년도 이전의 급여로서 체불된 것을 조사기준년도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였으나 조사기준년도 중에 지급하여야 할 급여를 지불하지 못했을 경우의 미지급액은 포함

- 제품출하액(매출액) : 조사기준년도 1년간의 완제품 판매액, 임가공(수탁제조)수입액의 합계로서 월평균 완제품 판매액, 월평균 수탁제조 수입액을 조사하고 여기에 연간 조업일수를 곱하여 연간 출하액을 산출함. 완제품 판매액은 그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완제품과 원재료를 타 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제조한 제품중에서 조사기준년도 1년간 판매한 것으로 직접판매, 현금판매, 외상판매를 불문하고 전부 포함. 또 수탁제조 수입액은 원재료 또는 중간제품을 타 광공업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제조 또는 가공, 처리하여 준 대가로 받은 금액을 말함
- 주요생산비 : 조사기준년도 1년간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여러 가지 비용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주요 경비로서 영세사업체의 특성에 따라 이 조사에서는 원재료비, 연료·전력·용수비, 수선비·위탁생산비로 구분
 - 원재료비 : 제품의 생산 또는 수리가공을 위하여 조사기준년도 1년간 실제로 사용한 원재료, 부분품, 용기 등과 화학약품, 포장재료비와 같은 보조재료의 사용금액을 말하며 자기원재료를 공급하여 위탁제조를 시킨 경우의 원재료비도 포함하나 타 광공업 사업체로부터의 수탁 생산인 경우에 제공받은 원재료비는 제외 그리고 농업, 임업, 수산업 또는 광업 등을 겸하고 있는 사업체가 자기취득한 원재료는 사용당시의 시가에 의함
 - 연료·전력·용수비 : 가열(난방포함) 및 동력으로 사용한 모든 연료의 구입가격,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말함
- 부가가치 : 출하액에서 주요생산비(원재료비, 연료·전력·용수비, 수선비·위탁생산비)를 공제한 것을 말함
- 유형고정자산 : 토지와 1년 이상의 내구성 있는 건물 및 구축물, 기계, 기구 및 장치, 차량 및 운반구 등을 말하며 영업권, 특허권, 지상권 등의 무형고정자산은 제외
- 연간 조업월수 : 월간 1주 이상 조업한 달을 말함

□ 광공업 본사 및 본점

- 기업체 : 생산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동일한 소유주들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통제되는 제도적 생산단위 또는 법적 생산단위로서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

- 본사 : 동일경영의 생산단위인 사업체(공장, 작업장, 광산 등)를 1개 이상 거느리고 산하사업체(공장, 작업장, 광산 등)를 총괄하는 기업체단위의 관리·운영업무가 전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함
- 관할사업체 : 본사의 관리·운영활동에 의한 지원을 받으며 기업체내의 생산단위로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관할사업체라 함. 관할사업체는 경영조직 및 자본금 등이 동일한 특성을 가지며, 결산기에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포함한 모든 경영활동의 성과가 본사에 의해 법적 혹은 회계적으로 통합됨

□ 전기업

- 영업수입액 : 판매액 및 기타 수입액으로 구분하였으며, 판매액은 한전 자체가 사용한 전력도 판매가격으로 평가하여 포함
- 생산비
 - 원재료비 : 발전을 위하여 사용한 원재료비를 말하며, 난방용으로 사용한 연료비는 조사상의 편의를 위하여 연료 및 유지비로 별도 표시
 - 구입전력비 : 한화에너지,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구입한 전력에 대하여 한전에서 지급한 비용을 말함
 - 전력비 : 한전 산하사업체의 경우 소내소비전력료를 말하고, 한전 이외의 특정사업체의 경우 구입전력비를 말함
 - 연료 및 유지비 : 연료유지를 위하여 지출된 제 비용으로 난방비를 포함
 - 수선비 : 전기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제비용을 말함
- 부가가치 : 영업수입액에서 주요생산비를 공제하여 산출(전력판매는 배전사업부문(한전의 지사·지점)에서 담당하므로 발전사업·송변전 사업부문 및 일부지역(배전사업소가 광역시에 포함된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의 부가가치는 (-)가 나타남)
- 연간 주요전력량 : 조사기준년도 1년간 한국전력공사가 생산하고 타사(한국수자원공사, 한화에너지, 포항제철 등)가 생산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수전한 주요전력량은 아래와 같이 산출

$$\text{총발전량} = \text{소내소비전력량} + \text{양수전력량} + \text{순발전량}$$

□ 가스업

- 영업수입액 : 가스판매액(도시가스 수입액)과 기타수입액으로 구분하였으며, 가스판매액은 사업체가 사용한 가스도 판매가격으로 평가하여 포함함. 기타 수입액은 수탁공사 부담금, 시설 부담금 및 가스수입중 용구손료가 포함
- 생산비
 - 원재료비 : 가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구입한 원재료비, 부재료비 및 보조재료비를 말함
 - 용수비 : 가스생산에 사용된 모든 용수비를 말함
 - 전력비 : 가스생산을 위하여 사용된 구입전력 요금을 말함
 - 연료비 : 가열료, 동력 및 자가발전용으로 사용한 모든 연료의 구입가격을 말함
 - 수선비 : 가스공급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을 말함
 - 외주공사비 :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여 준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함
- 부가가치 : 영업수입액에서 주요생산비를 공제하여 산출
- 가스량 : 조사기준년도 1년간 생산한 총가스량, 순가스량, 판매가스량을 각각 구분하여 조사
- 유형고정자산 : 가스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자산종류별로 연초잔액, 연간증가액, 연간감소액, 감가상각액, 연말잔액을 장부가격으로 평가

□ 증기 및 온수공급업

- 영업수입액 : 증기 및 온수 판매수입액과 기타수입액으로 구분하였으며, 기타수입액은 공사비 부담금, 기타 전기판매수입을 말함
- 생산비 : 조사기준년도 1년간 증기 및 온수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주요비용

을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공사비, 수선비로 나누어 조사

- 부가가치 : 영업수입액에서 주요생산비를 공제하여 산출
- 생산량 및 공급량 : 총생산량은 타사구입량, 사업소내소비량, 순생산량의 합계로 산출하였고, 타사구입량은 지역난방공사가 한전 또는 소각로 등에서의 구입량을 말함

□ 수도업

- 영업수입액 : 급수수입액, 수탁공사수입액과 기타수입액으로 구분하였으며 급수수입액은 조사대상년도 1년간 수도사용료로 부과한 금액을 말하며, 기타수입액은 급수용구손료수입, 수수료수입 및 잡수입을 말함
- 생산비 : 조사기준년도 1년간 정수, 배수 및 급수를 위하여 사용한 주요비용을 전기업, 가스업에서와 같이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수선비, 외주공사비, 기타로 나누어 조사
- 부가가치 : 영업수입액에서 주요생산비를 공제하여 산출
- 생산량 및 공급량 : 조사기준년도 1년간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량, 연간수로 부과량, 무수량(무효수량+유무효수량)을 각각 구분하여 조사

□ 이용시 유의점: 국민계정상의 생산인 부가가치는 광업·제조업통계의 센서스 부가가치와는 다른 방법으로 추계되고 있어 직접 비교는 어려움

- 부가가치 산출방법

국민계정 = 총산출액 - 중간투입액(생산국민소득) = 급여+이자+지대+이윤
(분배국민소득) = 소비+투자(지출국민소득)

산업총조사 = 생산액 - 주요생산비(원재료비+연료비+전력비+용수비+위탁생산비+수선비)

단, 영세 광공사업체 = 출하액 - 주요생산비

나. 광업·제조업통계조사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광업·제조업부문의 구조와 분포를 파악하여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 기업의 경영계획수립, 대학과 연구소 등의 연구활동 및 국제비교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 광업·제조업 대상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 자료를 제공

□ 조사연혁

- 광업·제조업통계조사는 1967년 기준조사를 한국산업은행이 실시
- 1969년 기준 조사부터 통계청(1990.12 이전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이 업무를 인수한 이래 2001년 기준 조사까지 28회를 실시
- 1967년부터 총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연도에 대하여는 종사자 5인이상 광공업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광업·제조업통계조사』를 실시

□ 조사주기 및 시기

- 조사주기 : 1년
- 조사기준 : 매년 12. 31 현재
- 조사대상기간 : 매년 1. 1~12. 31(1년간)
- 실시기간 : 2002. 6. 26~ 7. 20(25일간)

□ 조사대상 및 단위

-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C. 광업, D.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 조사대상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종사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체

- 조사대상년도의 조업기간 중 월평균종사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체
- 조사대상 제외업체
 - 조사대상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설립 중 또는 신설공사중인 사업체
 - 국군, UN군이 직영하는 사업체
 - 공공 직업보도소 및 교도소의 작업장
 - 공공단체 및 학교에 속해 있는 실습장, 시험소, 연구소 등
- 조사단위 : 사업체

□ 조사방법 및 항목

- 조사방법 : 전수조사(조사원 기입방식과 응답자 기입방식을 병행)
 - 임시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며, 대규모 사업체는 응답자가 직접 작성
- 조사항목 : 조사표 1, 조사표 2
 - 조사표 1 : 사업체명 및 소재지, 본사소속 타공장 유무, 본사명 및 소재지, 경영조직, 자본금 또는 출자금, 부지 및 건물 연면적과 임차료(제조업체만 조사), 종사자수, 급여액,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제품 출하액 및 재고액 내역, 재고액, 임가공(수탁제조)수입액의 품목별 내역, 유형고정자산,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 도입비, 주요 사용 원재료명, 주요 생산공정(주제품)
 - 조사표 2 : 본사(본점)명 및 소재지, 경영조직, 자본금 및 출자금, 종사자수, 급여액,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 집계단위 : 산업분류(대·중·소·세·세세분류) 및 지역(시·도, 시·군·구)별

(2) 조사항목 및 용어에 대한 설명

□ 경영조직 : 사업체 경영주체(기업체)의 법적 조직형태

- 회사법인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를 말함

- 회사이외의 법인 :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개인 : 법인이 아닌 개인소유의 사업체를 말하며 법인격이 없는 조합과 같은 임의 단체도 포함
- ☐ 자본금 또는 출자금 : 회사법인인 사업체(본사)가 해당연도 12월 31일 현재 납입을 완료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 ☐ 부지 및 건물연면적 : 제조업체에 한하여 제품생산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와 건물의 연면적을 말하며(사택 및 기숙사와 그 대지, 운동장 등이 생산공장과 같은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포함), 임차 사용중인 것은 포함하였으나 임대해준 토지와 건물은 제외
- ☐ 종사자수 :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및 피고용자수를 종사상의 직종별로 연말과 조업기간 중 월평균 기준으로 각각 해당 사업체의 종사자수를 조사
-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 사업체의 소유주(출자자 포함)와 그의 가족(동업 종사자 포함)이 사업체의 운영을 위하여 정규 작업(경영)시간의 1/3 이상을 사무 및 생산업무 등에 종사하되 일정한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 피고용자수 : 상용, 임시 및 일용종사자까지도 포함하며, 사고로 인한 단기 휴가자 및 파업중인 자를 포함
 - 단, 위탁제조를 시킨 경우에 있어서 수탁사업체의 종사자와 사업체에서 비록 급여를 지급하기는 하나 장기결근자(3개월 이상), 군복무자 등은 제외
 - 연말피고용자수는 당해연도 12월 31일 현재 그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남녀종사자를 말하며, 조업기간 중 월평균 피고용자수는 조사대상 기간중 조업한 각 월의 종사자수 합계를 조업월수로 나눈 종사자수를 말함
 - 생산직 종사자 : 생산에 직결되는 현장 작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와 같은 생산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 가공, 검사, 조작, 포장, 입고, 출하, 보수, 생산공정의 기록사무, 기타 상기 업무

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생산종사자이며 광업에 있어서는 채광, 굴진, 권양, 천공, 발파, 분쇄, 선광, 검사, 출하, 보전, 수리, 생산과정의 기록 사무, 기타 상기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사무직 및 기타 종사자 : 생산직종사자 이외의 모든 피고용자를 말하며 생산작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후선에서 기술적, 전문적, 서기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의 보조원 즉 사환, 수위, 승용차의 운전사 등을 말하며, 법인에 있어서 보수를 받는 임원도 포함

□ 급여액 : 1년간 피고용자에게 노무의 대가로서 지급된 모든 현금과 현물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으로, 세금, 기여금, 저금, 노동조합비 등 피고용자 부담금을 사업자가 공제하기 이전의 총액

- 현물로 지급한 것은 지급한 현물이 자가 생산품인 경우에는 지급한 일자 현재의 공장인도 판매가격으로 평가하고 구입품인 경우에는 실제 구입가격으로 환산평가
-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며, 퇴직금과 장기결근자 및 군복무자에 대한 제 급여액과 당해연도 이전의 급여로서 체불되었던 것을 당해연도 중 지급한 것은 제외하나, 당해연도 중에 지급하여야 할 급여로서 미지급된 것은 포함

□ 생산액 : 제품출하액, 부산물·폐품, 임가공(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의 합계에서 재고액의 완제품과 반제품 및 재공품의 연초, 연말재고액의 증감액을 가감한 것

□ 출하액 : 1년간의 제품출하액, 부산물·폐품판매액,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및 수리수입액의 합계를 말하며 이 기간에 발생한 출하,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에 대한 미수금을 포함

- 제품출하액 :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완제품과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타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제조한 완제품의 1년간 판매액
- 동일기업내의 타사업체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 견본 또는 선물용으로 증정한 것, 그리고 사무용이나 종사자에 대한 급여용으로 그 사업체내에서

직접 소비한 것도 환산평가하여 포함

- 그러나 완제품의 판매를 본사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에는 본사에 반출된 것은 출하로 보지 않고 본사에서 출하된 것만을 포함
 - 구입된 상품에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전매한 것과 타사업체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탁 생산한 제품의 출하는 제외
 - 출하제품의 평가는 공장인도 판매가격에 의하고 내국소비세 즉, 주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납부세액)가 부과된 것에 대하여는 이들을 제외한 가격에 의함
 - 부산물·폐품 판매액 :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나온 폐품, 불합격품(불량품)의 판매에 의한 수입금액을 말하며 생산과정 이외에서 나오는 것은 제외
 -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 원재료 또는 중간 제품을 타제조업 사업체로부터 지급받아 제조 또는 가공처리한 대가로 받은 임가공수입액을 말하며, 비제조업체(도·소매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타산업체)로부터의 수탁은 자가생산 출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품출하액에 포함
 - 수리수입액 :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품을 수리하여 준 대가로서 받았거나 받아야 할 수입액
 - 구입상품매출액 : 당해 사업체가 직접 제조·가공하지 않고 외국 또는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그대로 또는 포장만 변경하여 판매한 상품의 총매출액
 - 구입상품매출원가 : 연간 구입한 총 상품 중에서 판매한 상품에 대한 구입원가
- 재고액 : 재고대상물의 사업장내 실재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업체의 소유에 속하는 제품(완제품과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및 연료의 재고액으로, 완제품의 판매를 본사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에 본사로 반출된 제품으로서 판매되지 않고 재고로 남은 것은 그 사업체의 재고로 함
- 수탁가공을 위하여 타사업체로부터 지급 받은 원재료 및 중간제품의 재고와 이미 판매대금까지 받았으나 미출고분은 제외
 - 재고품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장부가격으로 하였으며, 이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각각 연초, 연말의 시가에 의한 추정액을 조사

□ 주요생산비 : 1년 동안에 생산을 위하여 사용(소비)된 제 비용인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수선비를 조사

- 원재료비 : 제품의 생산 또는 수리가공을 위하여 2001년 1년간에 실제로 사용한 원재료, 부분품, 부속품, 용기 등과 화학약품, 포장재료와 같은 보조재료의 사용금액을 말하며 자기 원재료를 공급하고 위탁제조를 시킨 경우의 원재료비를 포함
 - 타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로부터 수탁생산을 맡은 경우에 타 사업체로부터 지급된 원재료와, 자가 생산한 중간제품을 다시 사용하여 최종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의 중간제품의 비용은 제외
 - 농업, 임업, 수산업 또는 광업 등 1차 산업활동을 겸하여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자가 취득한 원재료는 사용 당시의 시가에 의함
- 연료비 : 1년간에 가열료(난방 포함), 동력 및 자가발전용으로 사용한 모든 연료의 구입가격
- 전력비 : 1년간에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구입전력의 요금 및 사무실용 전등요금과 해당연도에 지출한 요금으로서 미지급된 것도 포함
- 용수비 : 1년간에 생산을 위하여 사용된 구입용수의 요금(사무실용과 종사자의 음료용수를 포함)
- 외주가공비(위탁생산비) :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타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생산을 시킨 경우에 수탁사업체의 해당연도의 생산분에 대하여 지출하여야 할 가공임을 말하며 임금을 포함하나, 공급한 원재료의 가액은 여기서 제외하고 원재료비에 포함
- 수선비(수리유지비) : 생산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함
 - 수리 및 유지를 위하여 사용한 재료, 기계의 윤활유, 소모품, 부속품의 구입액은 여기에 포함하였으나 공장의 증축이나 기계 등의 개조로 그 자산의 성능이 높아지고 가치가 증가됨으로써 회계상 유형자산 계정에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제외

- 부가가치 : 생산액에서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및 수선비 등 주요 중간투입비를 공제한 것
 - 이 부가가치(센서스 부가가치)는 국민계정상의 부가가치와는 산출방법의 차이로 인해 일치하지 않음
- 유형자산 : 토지와 1년 이상의 내구성 있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구, 비품, 차량, 운반구 및 선박 등을 말함
 - 연간증가액 : 1년간에 유형자산을 실질적으로 취득, 설치 및 증개축 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함
 - 취득액의 평가는 타 사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에 대하여는 설치비를 포함한 평가액으로 그리고 자가건설 또는 생산의 경우에는 자산으로 대체된 장부상의 가액에 의거
 - 연간감소액 : 1년간에 매각, 양도, 재해, 도난 등으로 인한 유형자산의 실질적인 가치감소액
 - 감가상각에 의한 장부가액의 감소는 별도 항목으로 조사함. 처분액의 평가는 그 자산의 매각액으로 하고 실제 매매가 없을 때에는 가치감소 원인의 발생 당시에 매각할 수 있었던 시가에 의거
 - 토지 : 공장 및 사무소의 부지, 사택부지, 건물예정지, 운동장을 말하며 이들을 위한 토지개발비도 포함함. 그러나 비업무용 토지는 제외
 - 건물 및 구축물 : 건물은 공장, 사무소, 사택,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과 승강기, 냉방장치, 조명, 통풍장치 등의 부속시설을 말하며 구축물에는 도로, 철도, 교량, 담장, 연돌, 수조(탱크), 조선탄, 송유관, 우물, 정원 등을 포함
 - 기계장치·용광로·요 : 발전기, 전동기, 공작기계 등의 각종 기계류 및 기계장치 부설 설치물과 요, 로 등을 포함
 - 차량, 선박 및 운반구 : 자동차, 철도차량 등의 육상운반구와 전마선, 화물선, 유조선 등의 해상운반구를 말함
 - 기타 : 1년 이상 내구성이 있는 각종 기구, 공구, 비품 등을 말함
 - 건설 중인 자산 : 유형자산(건물신축, 기계설비 등)의 건설 또는 매입을 위

하여 지출된 경비로서 완성 또는 도착에 이르기까지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함

- 부가가치율 : 일정 기간 동안 사업체가 창출해 낸 부가가치액과 생산액과의 비율

$$\text{부가가치율} = \frac{\text{부가가치액}}{\text{생산액}} \times 100$$

- 노동장비율 : 생산과정에서 종업원 1인당 어느 정도의 노동설비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text{노동장비율} = \frac{\text{유형자산연말잔액(건설중인자산제외)}}{\text{월평균종사자수}}$$

- 기계장비율 : 설비자산중 기계장치의 종업원 1인당 보유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노동장비율의 보조지표로 이용

$$\text{기계장비율} = \frac{\text{기계장치유형자산연말잔액}}{\text{월평균종사자수}}$$

- 설비투자효율 :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설비자산(유형자산-건설중인자산)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text{설비투자효율} = \frac{\text{부가가치}}{\text{유형자산연말잔액(건설중인자산제외)}} \times 100$$

- 기계투자효율 : 설비투자효율의 보조지표로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가 부가가치의 생산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text{설비투자효율} = \frac{\text{부가가치}}{\text{기계장치유형자산연말잔액}} \times 100$$

다. 산업총조사와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비교

- 산업총조사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조사범위나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두 조사가 겹치는 해에는 산업총조사로 대체하고 있음
- 5년 주기의 산업총조사는 광업, 제조업 이외 전기업, 수도업, 가스업 및 증기온수공급업을 조사범위로 하고 있고, 조사대상도 종사자 1인이상 사업체로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조사대상을 포괄
 - 조사방법은 두 조사가 대부분 응답자 기입방식의 전수조사로 실시되고 있지만 산업총조사의 경우 전기업, 수도업, 가스업 및 증기온수공급업에 대해서는 우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표 2-4〉 산업총조사와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조사개요 비교

	산업총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조 사 주 기	5년	매년(총조사 실시년도 제외)
조 사 범 위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광업, 제조업
조 사 대 상	종사자 1인이상 사업체	종사자 5인이상 사업체
조 사 방 법	응답자 기입방식 전수조사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우편조사	응답자 기입방식 전수조사
조사표 종류	- 조사대상 산업별로 별도의 조사표 - 광업·제조업의 경우 5인이상, 4인이하 및 본사(본점)용을 구분	공장용과 본사(본점)용 및 정보통신 신용으로 구분

- 조사표도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경우는 공장용, 본사용 및 정보통신제조업용 등 3종류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반면, 산업총조사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산업별로 별도의 조사표를 구성하며, 광업·제조업에 대해서도 공장용을 5인이상과 4인이하로 구분하고, 본사(본점)용 및 정보통신제조업용을 구분
- 조사항목의 경우에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총조사와 별 차이가 없이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음

〈표 2-5〉 산업총조사와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조사항목 비교

	산업총조사의 광업·제조업				광업·제조업통계조사		
	5인이상	4인이하	본사용	정보통신	공장용	본사용	정보통신
사업체명 및 소재지	●	●	●	●	●	●	●
급여액	●	●	●		●		●
종사자수	●	●	●	●	●	●	●
유형고정자산	●	●			●	●	
재고액	●		●		●	●	
제품출하액(매출액)	●	●	●	●	●	●	
자본금 또는 출자금	●		●		●	●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		●		●	●	
부지 및 건물 연면적과 임차료	●	●			●		
창설(가동)년월	●				●	●	
경상이익				●	●	●	
경영조직			●		●	●	
공급량 및 공급액	●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		●		●	●	
기술제휴				●			
순금융비용				●			
외국인투자비용				●			
주요 생산공정	●	●			●		
주요 원재료명	●	●			●		
증권거래소 상장유무				●			

3.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부문

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조사의 개관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관련통계는 3차 산업 가운데 사회간접자본을 제외한 광의의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통계
 -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를 기준으로 할 때 G 도·소매업, H 숙박 및 음식점업, J 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 및 임대업, M 사업서비스업,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나 기업체를 조사단위로 하는 조사
-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관련통계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도·소매업동태조사, 서비스업동태조사 등 총 5종류임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는 5년 주기의 전수조사로서 상기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산업을 모든 포괄하는 조사이며, 표본조사로는 자료파악이 곤란한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시·군·구 단위까지의 세분된 지역통계를 작성하여 지역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자료로 활용
 -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는 매년 일정한 수의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서, 해당산업별 연간 경영실태 및 구조변화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과 연구·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 도·소매업동태조사, 서비스업동태조사는 월간주기로 작성되는 표본조사로서 해당사업체들의 판매현황을 파악하여 소비·경기동향 분석과 경제정책 및 기업경영을 위한 자료제공
 - 조사대상범위, 조사항목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용목적에 적합한 자료를 이용

〈표 2-6〉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관련 조사의 개요

통계조사명	조사주기	조사방법	개시연도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	5년	전수	1968
도·소매업통계조사	년	전수, 표본	1988
서비스업통계조사	년	표본	1988
도·소매업동태조사	월	표본	1965
서비스업동태조사	월	표본	1999

〈표 2-7〉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분야 통계의 조사대상 산업범위

G 도매 및 소매업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도·소매업 통계조사
H 숙박 및 음식점업		
I 운수업		운수업 통계조사
J 통신업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서비스업 통계조사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 및 임대업		
M 사업서비스업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서비스업 통계조사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S 가사서비스업		

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 조사목적

-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체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상품 유통 질서와 주요상품의 수급계획 및 고용정책 등 제 시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 서비스업에 대한 구조변화와 경영실태를 심층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및 통계모집단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병행 실시
- 지역소득추계의 기초자료, 사업체 단위 통계조사의 표본틀(Sample Frame) 및 수준점 자료(Bench Marking Data)를 제공하는 동시에 21C 디지털 경제 시대에 부응하는 새롭고 다양한 통계자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

□ 조사연혁

- 1968년에 「상업센서스」라는 명칭으로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 부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처음 실시한 후, 1982년 제5회 조사까지는 약 3년 주기로 실시
- 1986년부터 1991년까지는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 부문 외에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부문을 추가하여 「총사업체통계조사」와 병행하여 5년 주기로 실시
- 1997년에는 부동산 및 임대업을 추가하고, 조사기준 시점을 조사대상 연도 말로 변경하여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병행하여 실시
- 2002년에는 통신업과 금융 및 보험업을 조사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병행하여 제9회 총조사를 실시

〈표 2-8〉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의 연혁

실시년도	통계조사명	기준시점	조사체계	산업분류상 조사범위
1968	상업센서스	1968. 7. 1.	시·도	G, H
1971	도·소매업센서스	1971. 7. 1.	"	"
1976	"	1976. 7. 1.	"	"
1979	"	1979. 7. 1.	"	"
1982	"	1982. 7. 1.	"	"
1986	총사업체통계조사	1986. 7. 1.	"	G, H, M, O, P, Q, R
1991	"	1991. 7. 1.	"	"
1997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	1996.12.31.	"	G, H, L, M, O, P, Q, R
2002	"	2001.12.31.	"	G, H, J, K, L, M, O, P, Q, R

주: G 도매 및 소매업, H 숙박 및 음식점업, J 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 및 임대업, M 사업서비스업,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조사주기 및 시기

- 조사주기 : 5년(끝자리 2, 7년)
- 조사기준일 : 조사대상연도 12월 31일
- 실시기간 : 조사대상연도의 익년 4월

□ 조사대상 및 단위

-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G 도·소매업, H 숙박 및 음식점업, J 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 및 임대업, M 사업서비스업,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
- 조사대상 제외업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사업체
- 단, 국·공립학교, 국·공립병원(보건소제외), 국·공립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 (고아원, 양로원, 부녀복지원 등)은 포함
- 영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영업을 위한 고정적 설비가 없는 사업체
- 외국기관 또는 주둔 외국군이 경영하는 사업체
- 가사서비스업에 속하는 사업체
- 조사단위 : 사업체
 - 사업체란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 소유권 또는 단일통제 아래 상품을 매매하거나 숙박·음식시설,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활동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점포 또는 사업소
 - 동일 구역내에 경영주체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체가 있을 때는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취급함. 여기서 동일지역이라 함은 동일건물 또는 동일 점포내를 의미
- 2002년 총조사(2001년 기준)에서는 서비스업 전 부문을 포괄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업종을 대분류 J 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G 도매 및 소매업 중 소분류 511 상품중개업과 세분류 5191 상품종합도매업, 대분류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세분류 8513 공중보건의료업, 대분류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중 세분류 9191 종교단체 및 세분류 9192 정치단체를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
- 다만, G 도매 및 소매업 중 고정설비가 없는 행상, 이동차량 판매업자(한국 표준산업분류의 52820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52899 그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55223 이동음식점업), O 교육 서비스업 중 군사학교(사관학교, 3사관학교 등),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군병원(국군통합병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조사방법

- 응답자 기입방식에 의한 전수조사로 임시조사원을 채용하여 조사하며, 조사원이 조사구내 조사대상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응답자와의 면접조사를 통해 조사표를 작성

- 면접조사가 원칙이지만, 대규모 사업체는 조사원 기입방식 조사 병행
- 조사체계 : 통계청에서 주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사원)를 통해 실시

□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10개의 기본항목과 업종별로 5~7개의 특성항목으로 구성
- 기본항목(10개 항목): ① 사업체명 ② 대표자명 ③ 사업체 소재지 ④ 조직 형태 ⑤ 사업체구분 ⑥ 창설연월 ⑦ 사업의 종류(사업내용) ⑧ 종사자수 ⑨ 자본금 및 출자금 ⑩ 연간매출액
- 특성항목
 - 도·소매업 : ① 사업실적(매출액, 사업경비, 영업이익) ② 납부부가가치세 ③ 사업체 건물연면적 및 매장면적 ④ 정보기술기반 및 활용 ⑤ 유형자산
 - 숙박 및 음식점업 : ① 사업실적(매출액, 사업경비, 영업이익) ② 납부부가가치세 ③ 사업체 건물연면적 및 매장면적 ④ 정보기술기반 및 활용 ⑤ 유형자산 ⑥ 객실(석)수
 - L 부동산 및 임대업,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① 사업실적(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 ② 납부부가가치세 ③ 사업체 건물연면적 및 매장면적 ④ 정보기술기반 및 활용 ⑤ 유형자산
 - J 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M 사업서비스업,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 ① 사업실적(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 ② 납부부가가치세 ③ 사업체 건물연면적 및 매장면적 ④ 정보기술기반 및 활용 ⑤ 유형자산 ⑥ 무형자산 ⑦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 집계 및 공표

- 집계단위 : 조사된 자료는 전국에 대하여는 산업세세분류까지 집계하여 공표하며, 지역(특·광역시·도, 시·군·구)별로는 산업세분류까지 집계하여 공표
- 전국 : 산업세세분류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경비 등

- 시도별 : 산업세(세세)분류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경비 등
- 구시군별 산업소분류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경비 등
- 보고서는 산업을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과 서비스업으로 크게 나누어 각각 전국편 및 지역편으로 구분하여 발간하며, CD-ROM을 별도로 제작

□ 관련 용어설명

- 매출액 : 사업체에서 상품, 음식 등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벌어들인 금액
- 매출원가 : 매출액과 직접 대응되는 원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판매된 상품이나 제품에 대하여 배분된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 : 판매비와 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사업체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
 - 인건비 :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제수당 등),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모든 비용
 - 임차료 : 부동산이나 동산을 임차하고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감가상각비 : 유·무형자산의 사용에 의한 소모, 시간의 경과, 진부화 등의 원인에 의해 감모된 경제적 가치
 - 대손상각비 : 대금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해 설정하는 비용
 - 세금과 공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각종 세금(사업소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공과금(조합비, 협회비, 적십자비 등)
- 납부부가가치세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
- 유형자산 : 사업체가 영업활동에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의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 비품 등을 말함. 즉, 회사가 영업활동에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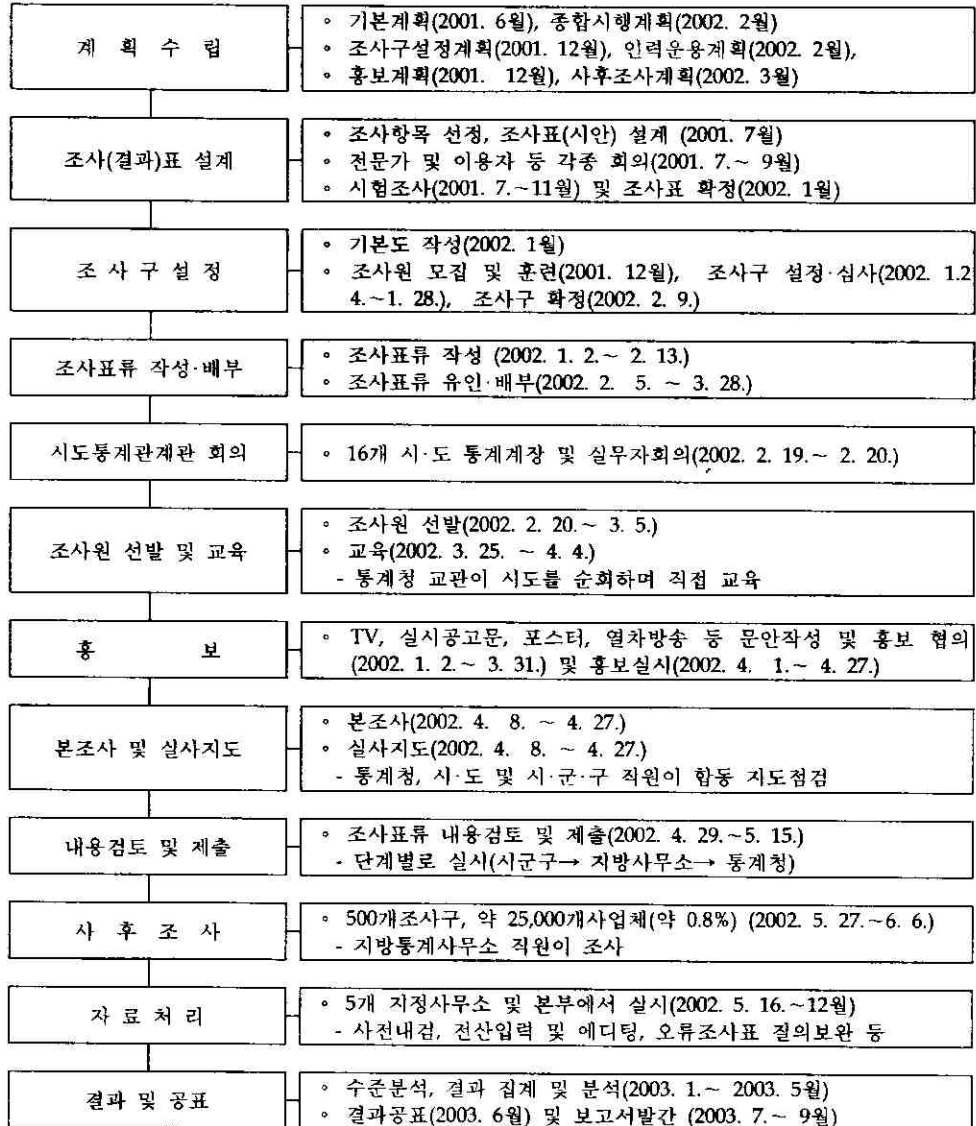
- 무형자산 : 사업체가 장기간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차지권, 창업비, 개발비 등을 무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무형자산은 독점적·배타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 권리나 효익을 향유할 수 있는 법률적·경제적 권리를 의미
 -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실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 등
 - 저작권 :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을 배타적·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개발비 : 특정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
- 기술연구개발비: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

□ 이용상의 유의점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는 매회 마다 조사대상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시계열 자료 이용시에 유의
- 여러 가지 산업활동을 겸업하는 사업체에서 회계결산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을 경우 연간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행정자료에서 파악된 사업체수 등과 같은 관련통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음
- 조사 대상기간 중에 사업실적이 있는 사업체만 집계되었으므로 사업체기초 통계조사에서 집계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
- 조사 단위가 본사(점), 지사(점), 영업소, 단독사업체 등과 같이 장소를 달리 하는 개개의 사업체 단위이므로 기업체 단위 통계와는 차이가 있음
- 회계자료가 지사(점) 단위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 또는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비례 배분하여 집계하였기 때문에 지역별 자료의 경우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관련통계는 총조사 외에도 연간조사인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와 월간조사인 도·소매업동태조사, 서비스업동태

조사 등이 있으며, 조사대상범위, 조사항목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용목적에 적합한 자료를 이용

[그림 2-1]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의 조사업무흐름도(2001년 기준)



다. 도·소매업통계조사

□ 조사목적

- 전국의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에 대한 연간 경영실태 및 구조변화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과 연구·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 조사연혁

- 1988년 1986년 총사업체통계조사 결과를 모집단으로 연간 표본조사로 개발하여 제1회 조사를 통계청 지방통계사무소를 통해 실시
- 1989년에는 조사체계를 통계청 지방사무소(서울만 조사)와 시·도로 이원화하여 G 도·소매업, H 숙박 및 음식점업 부문을 조사(제2회)하였으며, 1990년에는 조사체계를 시·도로 일원화
- 1994년부터는 조사체계를 시·도에서 통계청 지방통계사무소로 전환하고, 조사기준시점을 조사대상 연도말로 변경하였으며, 업종별 격년 주기조사로 변경하여 1994년에는 G 도·소매업부문을 조사
- 1995년에는 1993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자료를 모집단으로 H 숙박·음식점업부문을 조사하였으며, 1996년에는 다시 G부문을 조사
- 1997년에는 조사범위와 표본규모를 확대하여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 1998년에는 유사·중복통계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조사체계를 지방통계사무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병행하여 실시
- 1999년부터는 조사체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통계사무소로 환원하고, 16개 시·도별 지역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표본규모를 확대하였으며, 조사시기를 조정하여 조사 결과자료가 연내 공표될 수 있도록 함

□ 조사주기 및 시기

- 조사주기 : 1년

- 조사기준일 : 조사대상연도 12월 31일
- 실시기간 : 매년 5~6월경에 약 20~30일간 실시
- 2002년 기준 도·소매업통계조사는 200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03. 5. 19 ~ 6. 12(25일간) 기간 중에 실시

□ 조사대상

-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의 대분류 G 도·소매업과 H 숙박 및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대상

□ 조사방법

-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전수조사 업종: 백화점, 기타대형종합소매업(대형할인점 등), 호텔업(3개 업종)과 같이 판매액규모가 커 전체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나 사업체수가 적고 사업체 변동이 적은 업종과 산업소분류별 및 시도별로 모집단 수가 10개 이하인 사업체는 모두 조사
 - 표본조사 업종: 사업체수가 많은 다른 업종은 산업소분류 및 시·도 단위로 표본사업체를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
- 응답자 기입방식으로 조사담당자가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
 - 단, 대규모 결산사업체 등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는 사업체에서 조사표를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식 조사방법을 병행
 - 지방통계사무소 조사담당 직원에 의한 면접조사

□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9개의 공통항목과 5개의 업종별 특성항목으로 구성
- 공통항목 : ① 사업체명 및 소재지 ② 사업내용 ③ 조직형태 ④ 연간 영업 개월수 ⑤일일평균영업시간 ⑥정기휴무일수 ⑦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⑧ 건물연면적 ⑨사업실적
- 업종별 특성항목으로는 자동차판매·도매업·소매업(조사표 I)의 경우 ① 매

장면적 ② 판매관리기기보유대수, 숙박·음식점업(조사표Ⅱ)의 경우 ① 편의 시설 연면적 ② 객실(석)수 ③ 객실수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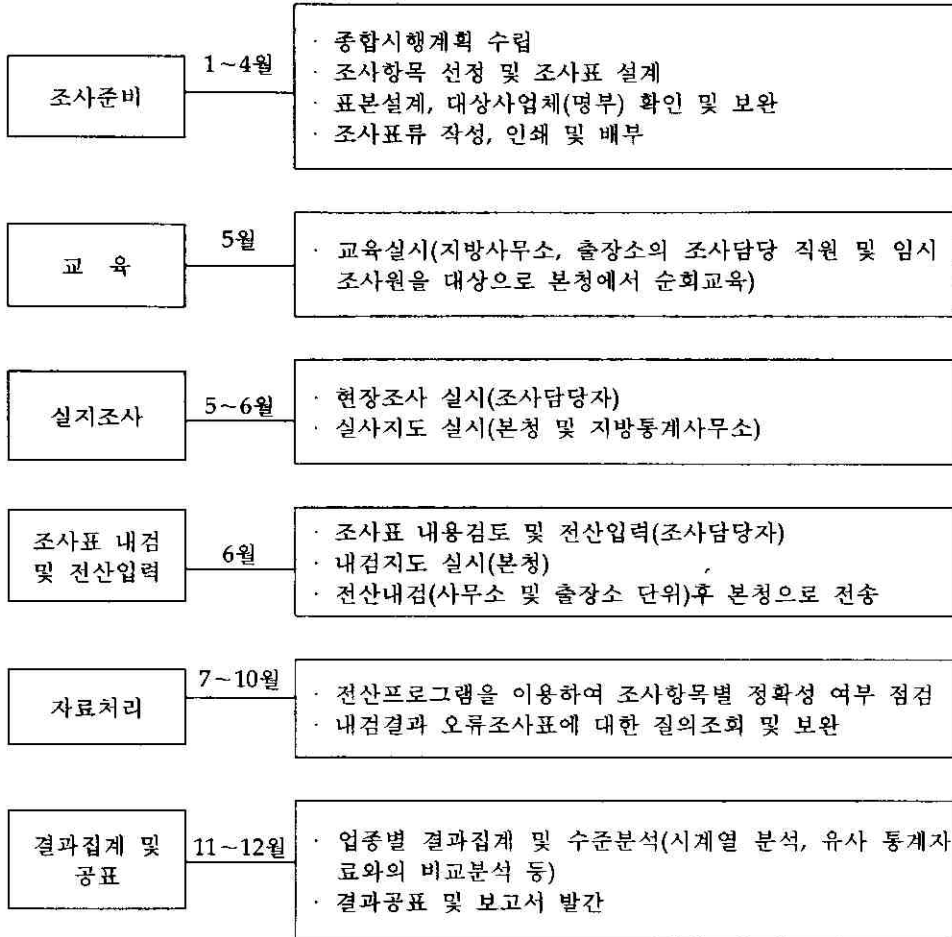
□ 집계 및 공표

- 조사된 자료는 16개 시·도별로 산업소분류까지 집계하여 매년 말 「도·소매업통계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여 공표

□ 표본설계에 관한 설명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있으며, 2002년 기준 도·소매업통계조사의 경우 산업대분류 G 도매 및 소매업과 H 숙박 및 음식점업에 속하는 약 1,497천개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약 26,600개의 표본을 추출
- 산업소분류별 및 16개 시·도별 통계자료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표본을 설계하고 있는데, 산업소분류별·시도별로 사업체를 종사자수 크기순으로 나열한 후 절사점을 기준으로 전수층과 표본층으로 층화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용절사법 표본설계방법을 적용
 - 즉, 종사자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체는 전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전수층), 종사자수가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체는 주어진 표본규모에 따라 계통추출방법을 활용하여 표본을 선정(표본층)
 - 단, 표본층에서도 매출액이 100억 이상이거나 업종별 평균매출액의 100배 이상인 사업체는 절사점과 관계없이 전수층에 포함
- 모수추정 : 표본조사 결과 전수층 이상 사업체는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고, 표본층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의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업종 및 지역별 승수를 주어 총량을 추정

[그림 2-2] 도·소매업통계조사의 조사업무흐름도



라. 서비스업통계조사

□ 조사목적

-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서비스부문의 경영실태 등을 매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부의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 조사연혁

- 1988년 : 1986년 총사업체통계조사 결과를 모집단으로 하는 「서비스업통계조사」를 연간 표본조사로 개발하여 통계청 지방통계사무소를 통해 제1회 조사를 실시
- 1989년 : 조사체계를 통계청 지방사무소(서울만 조사)와 시·도로 이원화하여 K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과 O 기타 사회·개인서비스업 부문을 조사
- 1990년 : 조사체계를 시·도로 일원화하여 K, O부문을, 1991년에는 K, M 교육서비스업,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O부문을 조사
- 1995년 : 조사체계를 시·도에서 통계청 지방통계사무소로 변경하고, 조사기준시점을 조사대상 연도말로 변경하였으며, 1993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자료를 모집단으로 K부문을 조사하였고, 1996년에는 O부문, 1997년에는 K, O부문을 조사
- 1998년 : 조사체계를 통계청 지방통계사무소에서 시·도로 전환하여 K, O부문을 조사하였으나, 1999년 이후 조사체계를 다시 시·도에서 통계청 지방사무소로 환원하여 조사를 실시
- 2000년 : 조사범위를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사업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오락, 문화, 운동서비스업, R 기타 사회, 개인서비스업 부문으로 확대하여 조사를 실시

□ 조사주기 및 시기

- 조사주기 : 1년
- 조사기준일 : 조사대상연도 12월 31일
- 실시기간 : 매년 5~6월경에 약 20~30일간 실시
- 2002년 기준 서비스업통계조사는 200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03. 5. 19 ~ 6. 12(25일간) 기간 중에 실시

□ 조사대상 및 단위

-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의 대분류 L 부동산 및 임대업, M 사업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
 - 단, 중분류 73(연구개발업)과 91(회원단체)은 조사대상 업종에서 제외
- 조사단위 : 사업체
 - 사업체란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소유권 또는 단일 경영체제하에 서비스의 제공 등과 같은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제단위

□ 조사방법

- 응답자 기입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로 조사담당자가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
 - 단, 대규모 결산사업체 등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는 사업체에서 조사표를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식 조사방법을 병행
 - 지방통계사무소 조사담당 직원에 의한 면접조사

□ 조사항목

- 9개의 공통항목과 2개의 특성항목으로 구성
- 공통항목 : ① 사업체명 및 소재지 ② 사업내용 ③ 조직형태 ④ 연간 영업 개월수 ⑤일일평균영업시간 ⑥정기휴무일수 ⑦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⑧ 건물연면적 ⑨사업실적
- 특성항목 : ① 직능별종사자수 ② 전산장비보유대수

□ 집계 및 공표

- 조사된 자료는 16개 시·도별로 산업소분류까지 집계하여 매년 말 「서비스업통계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여 공표

□ 조사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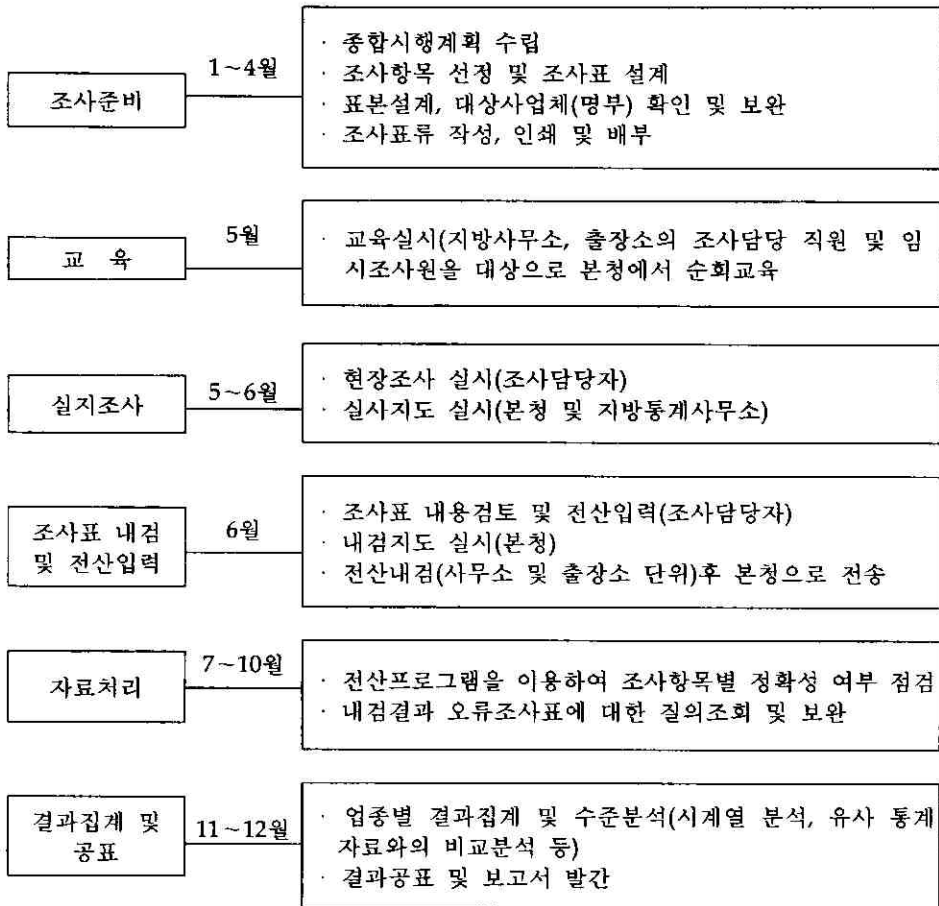
- 기본항목 : 사업체명, 소재지, 조직형태, 본·지사(점), 영업시간, 사업내용, 종사자수
- 특성항목 : 영업시간, 휴무일수, 연간급여액, 직능별 종사자수, 건물면적, 임대용장비 자산총액, 전산장비 보유대수, 연간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외수익, 영업외 비용, 임대물품별 수입액 구성비

□ 표본설계에 관한 사항

- 1993년 제6회 조사까지는 총사업체통계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 하였으나, 1995년도 조사(1994년 기준 서비스업통계조사)부터는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
- 2002년 기준 서비스업통계조사의 경우 「2001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 산업대분류 L 부동산 및 임대업, M 사업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약 597천개 사업체를 표본추출을 위한 모집단으로 하여 약 22,200개의 표본을 추출
- 표본의 구성은 전수조사 업종의 경우 산업소분류별 및 시도별로 모집단 수가 10개 이하인 사업체는 모두 조사토록 하였고, 표본조사 업종의 경우 사업체수가 많은 업종은 산업소분류 및 시·도 단위로 표본사업체를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
- 표본추출 방법 : 산업소분류별 및 16개 시·도별로 통계자료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표본을 설계하였는데, 산업소분류별·시도별로 사업체를 종사자수 크기순으로 나열한 후 절사점을 기준으로 전수층과 표본층으로 층화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응용절사법 표본설계방법을 적용
 - 종사자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체는 전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전수층),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체는 주어진 표본규모에 따라 계통추출방법을 활용하여 표본을 선정(표본층)
 - 단, 표본층에서도 매출액이 100억 이상이거나 업종별 평균매출액의 100배 이상인 사업체는 절사점과 관계없이 전수층에 포함

- 모수추정 : 표본조사 결과 전수층 이상 사업체는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고, 표본층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의 서비스업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업종 및 지역별 승수를 주어 총량을 추정

[그림 2-3] 서비스업통계조사의 조사업무흐름도



마. 도소매 및 서비스관련 조사의 조사항목 비교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와 연간조사는 조사항목이 대체로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음

- 총조사에서는 조사하지만 연간조사에서는 조사하지 않는 항목
 - 대표자명, 사업체구분, 사업체변동 및 창설 연월일, 자본금 또는 출자금
- 총조사에서는 조사하지 않지만 연간조사에서는 조사하는 항목
 - 종사자 유형별 연간급여액, 일일 평균 영업시간, 정기휴무일수
- 기타 차이
 - 조직형태 분류 차이 : 연간조사에서는 국가·지방단체 조사 않으며, 개인사업체에 대해 재무제표 작성 여부 조사
 - 종사자수 분류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
 - 사업실적 : 총조사에서는 모두 동일한 조사표 사용. 연간조사에서는 법인 기업 등에 대해서는 총조사와 동일한 수준의 조사를 하지만 개인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약식 조사. 총조사에서는 임대료 수입은 조사하지 않음
 - 납부부가가치세 : 총조사에서는 모두 조사하나, 연간조사에서는 법인기업 등에 대해서만 조사
 - 정보기술기반 활용: 총조사와 연간조사의 조사항목이 완전히 다름. 총조사에서는 컴퓨터, 인터넷 등의 활용에 초점을 맞춘 반면, 연간조사에서는 관리기기(POS, 판매관리기기 등)를 대상으로 함

〈표 2-9〉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관련 조사의 공통조사항목

조사항목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도·소매업 통계조사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고유번호 부분	행정구역번호, 조사구번호, 사업체 일련번호	산업분류번호, 표본번호(도·소매 서비스, 부가조사), 담당자 ID
1. 사업체명	- 사업체명, - 인터넷주소, - 응답자 성명(전화, 이메일)	좌동
2. 대표자명	대표자명, 성별	X
3. 소재지	주소	좌동
4. 조직형태	- 개인사업체 - 회사법인* - 회사이외법인 - 국가·지방단체, 비법인단체	국가·지방단체 조사없음. 개인사업체 재무제표 작성여부
5. 사업체구분	단독사업체	X
	공장·지사·영업소·출장소(본사등의 총괄을 받는 사업체), 본사명 및 소재지	
	본사	
6. 사업체변동 및 창설년월	창설년월	X
	존속, 순수신규 및 누락, 대상외, 순수폐업	
7. 사업의 종류	사업내용, 비중	좌동
	주요 취급품목 및 영업종목(표준사업분류번호)	표준산업분류번호 조사 없음
8. 종사자수	자영업주(이하 남·여별)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이하 남·여별)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좌동
	임시 및 일일종사자	임시종사자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좌동
연간급여액	X	종사자 유형별 급여액
9. 자본금 또는 출자금	회사법인으로서 단독 또는 본사인 사업체만 기입	X

〈표 2-10〉 도·소매업조사의 조사항목 비교

조사항목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도소매업 통계조사
10. 연간총매출액	연간총매출액	좌동
	조업개월수 및 월평균 매출액	좌동. (월평균 매출액은 계산을 통해 가능)
	X	일일평균 영업시간
	X	사업체 정기휴무일수
11. 사업실적	매출액	좌동
	[사업경비] - 매출원가: 기초상품재고액, 당기상품 매입액, 기말상품재고액 - 판매비와 관리비: 인건비, 임차료,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기타	법인기업 등은 좌동 개인사업체 등의 경우 [영업비용] - 상품매입액 - 인건비 - 임차료 - 기타
	X	임대료 수입
	영업이익	영업이익
12. 납부부가가치세	2001년 부가가치세총액	개인사업체가운데 재무제표 작성사업체와 법인기업에 국한
13. 사업체건물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소유, 임차, 무상, 합계)	좌동
14. 정보기술기반 및 활용	전산장비보유대수(서버, PC, 인터넷접속 PC)	X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여부	X
	전자상거래 활용여부	X
	X	판매관리기기 보유대수(금전등록기, 카드조회기, 컴퓨터, POS 터미널, 합계)
15. 유형자산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건설중인 자산, 기타	X

〈표 2-11〉 서비스업조사의 조사항목 비교

조사항목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도소매업 통계조사
10. 연간총매출액	연간총매출액	좌동
	조업개월수 및 월평균 매출액	좌동. (월평균 매출액은 계산을 통해 가능)
	X	일일평균 영업시간
	X	사업체 정기휴무일수
11. 사업실적	영업수익	좌동
	영업비용 - 재료매입비 - 판매비와 관리비 - 인건비 - 임차료 - 세금과 공과 - 감가상각비 - 대손상각비 - 기타	법인기업 등은 좌동 개인사업체 등] [영업비용] - 상품매입액 - 인건비 - 임차료 - 기타
	X	임대료 수입
	영업이익	영업이익
	2001년 부가가치세총액	개인사업체가운데 재무제표 작성사업체와 법인기업에 국한
12. 납부부가가치세	2001년 부가가치세총액	개인사업체가운데 재무제표 작성사업체와 법인기업에 국한
13. 사업체건물연면적	건물연면적(소유, 임차, 무상, 합계)	좌동
14. 정보기술기반 및 활용	전산장비보유대수 - 서버 - PC - 인터넷접속 PC)	전산장비보유대수(KSIC 72 및 표본번호 21,22, 23인 업체 대상) - 대형서버 - 중형서버 - 워크스테이션 - PC서버 - PC - 기타 - 합계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여부	X
	전자상거래 활용여부	X
	X	판매관리기기 보유대수(금전등록기, 카드조회기, 컴퓨터, POS 터미널, 합계)
	X	X
15. 유형자산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건설중인 자산, 기타	X
직능별 종사자수	X	KSIC 72 및 표본번호 21,22, 23인 업체 대상 연구원 시스템 엔지니어 컴퓨터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오퍼레이터 관리영업직 기타 계

4. 건설업통계조사

가. 조사개요

□ 조사목적

- 건설업부문의 종사자수·급여액·매출액·부가가치·유형고정자산·건설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건설업부문의 구조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수립과 이의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 조사연혁

- 1968~1970년 : 한국산업은행에서 조사를 실시
- 1972년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으로 이관되어 시험 조사
- 1974년 : 1973년을 대상으로 본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 이후 계속 통계청이 조사
- 2003년 : 2002년 기준을 조사하여 제30회 조사가 실시됨

□ 조사주기 및 시기

- 조사주기 : 1년
- 조사기준일 : 조사대상연도의 12월 31일
- 실시기간 : 매년 3월 16일~4월 15일(1개월)

□ 조사대상 및 단위

-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F. 건설업 관련업종을 등록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장 등록업체(종합, 전문, 설비, 전기공사업, 소방, 오수, 난방)
 - 정보통신부장관 등록업체(정보통신공사업)
 - 조사대상 제외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직영 공사 및 무면허공사사업자에 의한 공사(주로 주택 및 직영공사)

○ 조사단위 : 기업체

- 단, 한 기업체에서 건설업 이외의 타 산업 활동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타 산업 부문을 제외

□ 조사방법

○ 조사방법 :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

- 전수조사 : 건설관련협회를 통한 보고조사

- 종합건설업체 : 실적사항, 일반 및 결산사항
- 전문건설업체 : 일반 및 실적사항, 결산사항
- 설비건설업체 : 일반 및 실적사항, 결산사항
- 전기공사업체 : 일반 및 실적사항, 결산사항
- 정보통신공사업체 : 일반 및 실적사항, 결산사항

- 전수조사 : 지방통계사무소를 통한 방문조사

- 소방, 오수업체 : 일반, 결산, 실적사항

- 표본조사 : 지방통계사무소를 통한 방문조사

- 난방시공업체 : 일반, 결산, 실적사항

○ 조사체계

- 종합·전문·설비·전기·정보통신공사업체는 전수 및 배포조사(기업체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여 협회를 통하여 제출)
- 소방, 오수, 난방시공업체 : 표본 및 면접조사(통계청 조사요원이 기업체를 방문하여 면접조사)

□ 조사항목

- 기업체의 특성에 관한 사항과 고용, 급여에 관한 사항 및 매출액, 부가가치, 유형고정자산, 장비보유대수, 기성액, 수주액 등 27개 항목

- 일반사항 : 사업체명 및 소재지, 조직형태, 창설년월, 자본금, 겸업 타산업, 면허업종별 공사실적, 주요 건설장비 보유대수
- 결산사항 : 종사자수, 급여액, 유형고정자산, 총매출액, 기성액 및 공사비용, 재고자산, 임대수입
- 실적내역사항 : 공종별, 공사지역별, 발주자별 수주액과 기성액, 하도급준금액, 미기성액

□ 집계 및 공표

- 전국 및 시도별로 집계
-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로 발간

나. 용어 설명

- 조직형태 : 경영주체인 각 기업체의 법적 조직형태를 말하며 이 조사에서는 회사법인·회사이외의 법인 및 개인의 세가지 형태로 구분
 - 법인 : 상법·민법·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법인 등기를 완료하여 법인격을 취득하고 있는 기업체를 말함.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사단법인 그리고 특별법에 의한 특별법인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회사법인과 회사이외의 법인의 두 가지로만 구분하고 회사이외의 법인에는 회사법인 이외의 모든 법인기업체를 포함
 - 개인 : 법인이체가 아닌 개인소유의 기업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법인격이 없는 조합과 같은 임의단체도 포함
- 자본금 : 조사대상연도 12월 31일 현재로 납입이 완료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 종사자 : 그 기업체의 공사현장 혹은 사무실 등을 가리지 않고, 조사대상 기간 중 건설업을 위한 업무에 종사한 피고용자수와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수의 합계
 - 피고용자 : 일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임금, 봉급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급여를 받고 그 기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모든 남여 종업원을 말하는데, 이

에는 상용은 물론 임시 및 일용 종업원도 포함되나, 장기결근자(3개월 이상) 및 군복무자 등은 제외되고, 해외공사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피고용자만 조사대상이며, 외국에서 현지 고용한 외국인 피고용자는 제외

○ 상용종사자 : 1년 이상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실제의 취업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정액급여를 받는 종사자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 공사현장업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관리적, 전문적, 서기적인 사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의 보조원 즉 급사, 사환, 수위, 승용차의 운전사 등을 말하며, 단 생산종업원과 사무 및 기타 종업원의 업무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

- 기술자, 기술공 :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또는 전문직기술자가 지시한 작업내용을 원활하게 응용하여 기술공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자(예 : 건축·토목기술자, 토목기사 1, 2급, 건축구조·설비·시공기사 1, 2급) .

- 기능공 : 건설공사의 시공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① 고등학교 졸업자와 ② 6개월이상 조직적인 기술습득을 요하는 직종에서 1년 이상 경험을 가진 자, 또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통칭 숙련공을 말함. 여기에서는 숙련공의 과정을 밟고 있는 반숙련공 및 견습공도 포함(예 : 기능사 1, 2급, 기능사보 등)

○ 임시종사자 : 1년 미만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취업일수 및 취업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는 현장근로 종사자로서 단순노무자, 기능공, 조공, 보통인부 등 통칭 건설잡부를 말함

○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 사업주(출자자포함)와 그의 가족으로서 기업체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 또는 노무에 통상 작업시간의 1/3 이상을 종사하되 일정한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은 자를 말함. 명의상으로만 사업주이고 통상작업 시간의 1/3 이상을 취업하지 않는 자는 제외되며, 사업주의 가족이라도 상시 근무에 종사하고 이에 대한 임금 또는 봉급의 형식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피고용자에 포함

□ 연간 급여액 : 조사대상기간에 정기 또는 부정기를 가리지 않고 피고용자에게 노무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현금급여, 즉 봉급,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 생계

보조금 등과 그 이외에 현물로 지급된 급여도 포함되나, 장기결근자 및 군 복무자에 대한 제 급여액은 여기서 제외하고 복리후생비에 포함

- 조사대상년도 이전의 급여로서 체불되었던 것을 조사대상연도 중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고, 반면에 조사대상연도 중에 지급하여야 할 급여로서 미지급된 것은 포함
- 급여액은 세금, 적금, 노동조합비 등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 즉 업체에서 부담한 총액. 피고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소득세, 보험료, 적립금 등을 급여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업체에서 부담하였을 경우에는 이 부담액도 급여액에 가산
- 해외 건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피고용자에 대한 급여액만을 조사하였고, 외국에서 현지 고용한 외국인 피고용자에 대한 급여액은 제외

□ 매출액 : 건설업체에서 당년도에 시공한 공사수입금액과 분양금액 등을 포함하며, 미완성공사는 공사가 진행된 정도에 따라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봄

- 단, 공사수주 금액중 공사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외주를 준 경우에는 외주 공사비를 제외

□ 공사비용 : 조사대상연도 1년간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비용의 총계를 말함. 즉 원가명세서상의 경비와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말하는데 건설업 이외의 타산업을 겸하는 기업체는 겸업부문의 비용은 제외

- 원재료비 : 공사시공을 위하여 실제로 투입(사용)된 원재료의 구입 가격에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원도급업체가 다른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을 경우의 원재료비는 ① 원도급업체에서 원재료를 제공하는 조건이면 원도급업체에 계상하고, ② 하도급업체에서 일괄구입사용하는 조건이면 하도급업체에서 원재료비를 계상
- 보조재료비 : 현장소모품비 및 내용년수 1년 이하 혹은 1만원 상당액 이하의 공구, 기구, 비품 등과 소모품의 구입비용
- 인건비 : 건설공사에 종사한 기술자 및 기능공, 노무자, 사무직, 잡급직 등에 대하여 지급한 노무비, 노무관리비, 급료, 임금, 퇴직금, 당년도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제수당 및 상여금을 등을 말하며, 해외 건설공사의 경우 현

지 고용한 외국인 노무자에 대한 급여는 제외

- 복리후생비 : 종업원에 대한 급여 이외의 위생, 보건, 위안, 요양 등 종업원의 복지와 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제비용을 말하는데, 장기 결근자에 대한 급여, 양로연금, 종업원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운동시설, 영화, 여행, 운동회 개최 등을 위한 제비용을 포함
- 감가상각비 : 건물, 건설장비 등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합계를 말하며, 그 밖의 기술 혁신에 따른 시설의 진부화에 의한 기능적 감소 및 천재지변 등과 같은 돌발적인 감가도 포함
- 임차료 : 건설활동을 위하여 제 3자로부터 건물, 장비, 토지 등을 임차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임차료를 말한다.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임차한 대가로 지불한 임차료는 제외
- 조세공과 : 건설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세금 및 공과금으로 등록세, 재산세, 취득세, 사업소득세, 자동차세, 협회비 등 공사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부문에 포함되는 모든 세금과 공과금을 말하며, 해외공사의 경우 외국 정부 등에 납부한 조세공과는 제외
- 수선비 : 건설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그 수리를 외부에 의뢰하였을 경우에 지출된 제비용으로서 회계상 경비로 처리된 부분을 말함
- 전력비, 용수비, 연료비, 광열비 : 조사대상 기간 중 동력 및 자가 발전용으로 사용한 모든 연료의 사용금액과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등을 말함
- 잡비 : 건설 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여비, 교통비, 운반비, 통신비, 설계비, 접대비, 보험료 및 기타 잡비 등을 말하며, 해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외국인에게 지불한 급여 및 지급임차료, 외국정부에 지출한 조세공과 등을 잡비에 포함
- 외주 공사비 :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하도급 업체에서 시공한 기성 부분에 대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여야 할 외주공사비를 말하며 원도급업자의 외주공사비는 하도급업체의 하도급공사 기성액과 일치하는 개념으로, 연차 공사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기간에 지출한 금액 또는 지출하여야 할 금액을 말함

□ 부가가치 : 기업이 산업 활동을 한 결과 생산물의 가치 등에 새로 부가한 가치를 의미

$$\text{부가가치} = \text{인건비(임금 및 급료, 퇴직급여)} + \text{복리후생비} + \text{감가상각비} + \text{임차료} + \text{조세공과} + \text{납부부가가치세} + \text{영업이익}$$

□ 유형고정자산 : 토지와 1년 이상의 내구성이 있는 공구 및 기구,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 선박, 운반구와 건설 중인 자산 등을 말함.

- 연간 취득액 및 증·개축액 : 조사대상연도 1년간에 유형고정자산의 취득 및 증·개축을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하며, 기존의 유형고정자산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한 부분품의 대체 및 수리에 지출된 경상경비는 여기서 제외하고 공사비중 수선비에 포함
- 취득액의 평가는 구입한 것에 대하여는 운임 및 설치비를 포함한 구입가격으로 평가하고, 동일기업내의 다른 기업체로부터 양수받은 것은 당시의 시가로 환산평가함. 또한 자기건설의 경우에는 완성 여부에 관계없이 조사대상년도 중에 지출한 모든 금액을 말함
- 연말잔액 : 조사대상 연말 현재의 장부가격에 의하여 조사

$$\text{연말잔액} = \text{연초잔액} + \text{연간취득 및 증·개축액} - \text{연간처분 및 손해액} - \text{연간 감가상각액}$$

○ 유형고정자산의 종류

- 토지 : 사업소의 대지, 사택부지, 건축예정부지 및 운동장과 이들을 위한 토지 개량비도 이에 포함되나 부동산 투자를 위한 비업무용 토지는 여기에서 제외
- 건물 : 사업소, 사택,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과 승강기, 냉방장치, 조명장치, 통풍장치 등의 부속시설도 포함
- 구축물 : 토지에 정착된 모든 토목 설비 또는 공작물을 말하며 도로, 철도, 교량, 담장, 연돌, 수도, 송유관, 우물 등을 말함
- 건설장비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치를 말함
- 차량, 선박 및 운반구(건설중기 제외) : 자동차 등의 육상운반구, 화물선,

유조선 등의 해상운반구 및 항공기 등을 말함

- 공구, 기구 및 비품 : 내용년수가 1년 이상이고, 시가 1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만을 말함
- 건설 중인 자산 : 미완성된 유형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으로, 고정자산이 완성되면 해당 계정으로 대체하여 말소되는 계정을 말함

□ 재고액

- 연초재고액은 조사대상년도 1월1일 현재로, 연말재고액은 조사대상년도 12월 31일 현재로 재고자산(원재료, 연료, 저장품)이 실제 있는 장소에 관계없이 장부상 그 기업체에 속하는 재고자산의 평가액을 말함
- 재고자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장부 가격에 의하되 이것이 어려울 때는 시가로 계산하며,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원재료의 재고 등은 여기에서 제외

□ 건설공사내역 : 조사대상연도에 이룩한 모든 공사를 건별로 계약액, 당년도 기성액 등을 공사종류별, 발주자별 및 공사지역별로 조사

- 해외공사의 경우 외환금액은 연평균의 한국은행 기준환율에 의한 원화 환산치로 계상
- 계약종류 : 도급방법에 따라 원도급과 하도급으로 구분 조사하며, 도급이란 발주자로부터 1차적으로 도급받은 경우이고, 하도급이란 재도급 또는 하청을 말함
 - 이 조사에서는 국내 타 건설 업체로부터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으로 간주하였으며 국내 건설회사가 아닌 외국 건설회사나 국내 종합무역상사 등에서 하도급 받은 경우에는 원도급으로 취급
 - 건설회사의 자기 건설이나 산하기업, 모기업을 위한 직영공사인 경우에도 원도급으로 취급
- 당년도 기성액 : 공사의 완공여부나 대금의 수취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당년도에 공사를 한 금액(기성액)을 조사하며, 타업체에 하도급을 준 공사액은 원도급업체의 기성액에서 제외하고, 하도급업체에서는 이를 하도급 공사액

으로 조사

- 기성액(공사액) : 건설업체에서 당년도에 시공한 공사액으로, 공사수주금액 중 공사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원도급자의 외주공사액)을 준 경우에는 원도급자의 기성액에서 제외
 - 당년도 계약액(수주액) : 조사대상 업체가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와 조사대상연도에 체결한 공사 계약액의 합계를 말함.
 - 미기성액 : 조사대상연도에 시공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된 공사액은 미기성액으로 취급
 - 발주자 :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하며,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
 - 도급 :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함
 - 원도급공사 : 발주자로부터 직접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한 공사를 말함
 - 하도급공사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로부터 재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말함
- 건설장비 보유대수 : 조사대상연도 12월 31일 현재 건설활동을 위하여 그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가동 가능한 기계 및 장비의 대수를 말함
- 타업체에 대여한 장비는 포함되나 타업체로부터 임차한 장비는 제외(소유주의 원칙)
 - 타워크레인, 콘크리트 믹싱프렌트, 12톤미만의 덤프트럭 등 비등록장비도 조사대상에 포함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각종 시험기 등 비등록장비보유대수는 비등록장비 기타 란에 포함

(3) 표본추출방식(난방시공업체)

□ 모집단 : 조사대상연도 말 현재 난방시공업을 등록한 12,526개 기업체

□ 표본설계 방법

- 부차 모집단 설정 : 시도별 통계작성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하여 부차 모집단 (sub-population)을 선정
- 층화 : 종사자 규모가 5인이상의 업체는 전수조사
- 표본규모 산출 : 종사자 5인이상의 업체는 전수조사로 선정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 종사자순으로 나열한 후 계통추출법에 의해 표본업체 추출

□ 모수 추정방법

- 전수 및 표본에 대한 추정식

<시·도별 총계추정>

$${}_j\hat{X}_i = cXh + \sum_k {}_k{}_j\chi_{ik} \cdot W_i$$

cXh : 시도별 전수부문의 합계

$$\left[\text{변수(=승수)} \quad W = \frac{N_i}{n_i} \right]$$

<전국 총계추정>

$${}_j\hat{X} = \sum_i {}_j\hat{X}_i$$

(4) 기타 유의사항

□ 결산사항 조사표 미회수업체(미회수율 51.1%)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체의 공사 실적(기성액) 중심으로 전가(imputation)

5. 운수업통계조사

□ 조사목적

- 운수업의 구조와 분포 및 영업활동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운수업에 관한 정책수립과 연구·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 조사연혁

- 중소기업은행에서 개발하여 1964년과 1969년에 조사 실시
- 1977년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현 통계청)으로 이관
- 1978년 : 철도(지하철 포함), 항공운송업 및 유로도로운영업을 조사대상에 추가하고, 육상운송업 중 택시업(한신택시)에 한해 최초로 표본조사를 실시
- 1980년 : 하역업(육상, 수상), 운송관련서비스업 중 보관·창고업(보통, 냉장, 농산물, 기타창고업)을 조사대상에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
- 1981년 : 개별용달업종을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변경
- 1983년 :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차량임대업, 항공운수보조서비스업, 화물중개업을 조사대상에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
- 1984년 : 장의차량운영업, 위험물창고업을 조사대상에 추가
- 1986년 : 여행알선업, 포장·검수 및 유사서비스업을 조사대상에 추가
- 1987년 : 수로안내업, 선박청소업을 조사대상에 추가하였고, 버스 및 택시운송업은 해당 조합을 통해 업체에서 직접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방법을 변경하였으며, 농산물창고업을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변경하여 조사를 실시
- 1989년 : 선박임대업, 기타내륙수상운송업, 선박구난업, 선박중개업을 조사대상에 추가
- 1990년 :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업종을 1개의 기업체로 조사(이전 조사시에는 각 시·도단위조합을 1개의 기업체로 간주하였음)

- 1991년 : 작성기관이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통계청으로 변경
- 1992년 : 산업분류의 6차 전면 개정(1991. 9. 9.고시)으로 일부 업종이 변경되어 대분류가 71에서 I(영문자)로, 항공운송업은 정기항공 및 부정기 항공운송업으로 분리되었고, 차량임대업은 운수업(I)에서 분리되어 대분류 K(사업서비스업)의 기계장비임대업으로 변경 되었으며, 개별화물운송업은 표본조사로 변경하여 조사를 실시
- 1994년 : 파이프라인운송업을 조사대상에 추가하여 조사
- 1997년 : 통신업부문을 추가하여 조사('98년부터는 정보통신부 조사자료 이용)하고, 『운수·통신업통계조사보고서』로 보고서 명칭을 변경
- 1998년 : 여행사업을 표본조사로 변경하여 조사
- 2000년 : 산업분류의 8차 전면 개정(2000. 1. 7.고시)으로 일부 업종이 변경
 - 노선화물, 특수화물, 구역화물업종이 일반화물(노선, 특수, 구역일부) 및 개별화물(구역일부)로 변경되고, 택시업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로 분리
 - 일반화물운송업을 표본조사로 변경하고, 운송관련대리서비스업의 일종인 복합운송주선업을 신규로 추가하여 표본조사로 실시
 - 『운수·통신업통계조사보고서』를 분리하여 운수업은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통신업은 『정보통신산업통계보고서』로 각각 발간
- 2001년 : 마을버스를 추가하고,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업을 표본조사로 변경하였으며, 시내버스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분리하여 조사
- 2002년 : 시외버스를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로 분리하였고, 육상운송주선업을 추가하여 표본조사로 실시
- 2003년 : 장의차량운영업을 표본조사로 변경하여 조사를 실시

〈표 2-12〉 연도별 조사대상 업종 변천

조사대상 연도	조 사 대 상 업 종
1977년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1978년	철도운송업, 항공운송업 추가
1980년	하역업, 운송관련서비스업 중 보관·창고업 추가
1984년	위험물창고업 추가
1986년	여행알선업 추가
1989년	선박임대업, 기타내륙수상운송업, 선박구난업, 선박중개업 추가
1994년	파이프라인운송업 추가
1997년	통신업 추가('98년부터는 정통부 조사자료 이용)
2000년	복합운송주선업 추가, 통신업 제외
2001년	마을버스 추가
2002년	육상운송주선업 추가

□ 조사주기 및 시기

- 조사주기 : 1년
- 조사기준일 : 조사대상연도 12월 31일
- 실시기간 : 익년도 4~5월에 약 30일간

□ 조사대상 및 단위

-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I 운수업
 - 육상운송업 : ①철도운송업(도시철도포함), ②시내버스운송업, ③마을버스운송업, ④시외버스운송업, ⑤고속버스운송업, ⑥전세버스운송업, ⑦법인택시운송업, ⑧개인택시운송업, ⑨일반화물운송업, ⑩개별화물운송업, ⑪용달화물운송업, ⑫장의차량운영업, ⑬파이프라인운송업
 - 수상운송업 : ①외항여객운송업, ②외항화물운송업, ③내항여객운송업, ④

내항화물운송업, ⑤내륙수상여객운송업, ⑥내륙수상화물운송업, ⑦항만내 운송업, ⑧기타내륙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① 정기항공운송업, ②부정기항공운송업
- 운송관련서비스업 : ①육상화물취급업, ②수상화물취급업, ③일반창고업, ④냉장 및 냉동창고업, ⑤농산물창고업, ⑥위험물품보관업, ⑦기타 창고업, ⑧여행사업, ⑨여객자동차터미널업, ⑩화물자동차터미널업 ⑪ 도로관련시설운영업, ⑫도선업, ⑬기타수상운송지원업, ⑭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 ⑮육상운송주선업, ⑯복합운송주선업, ⑰기타분류안된 운송관련서비스업

○ 조사단위 : 기업체 단위로 조사

- 기본원칙으로 영업소, 지사, 사업소 등은 본사에서 소속 기관분을 포함하여 조사
- 동일 기업체내 복수의 운수업종이 있는 경우 업종별로 분리하여 조사
- 단, 분리조사가 어려운 경우 주 업종으로 합산하여 조사

□ 조사방법 및 항목

○ 조사방법

- 육상(버스 및 철도업 등), 수상, 항공, 운송관련서비스업(육상화물취급업, 수상화물취급업 등)은 전수조사(조사원 기입방식)
- 육상운송업 중 법인택시·개인택시·전세버스·일반화물·개별화물·개별용달과 운송관련서비스업 중 농산물창고업·여행사업·육상운송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은 표본조사(응답자 기입방식)

○ 조사체계

- 버스와 법인택시를 제외한 업종은 통계청 지방통계사무소의 조사 담당 직원에 의한 방문면접조사, 버스 및 법인택시는 각 시·도 버스 및 법인택시 조합을 통해 기업체에서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는 자기기입식 조사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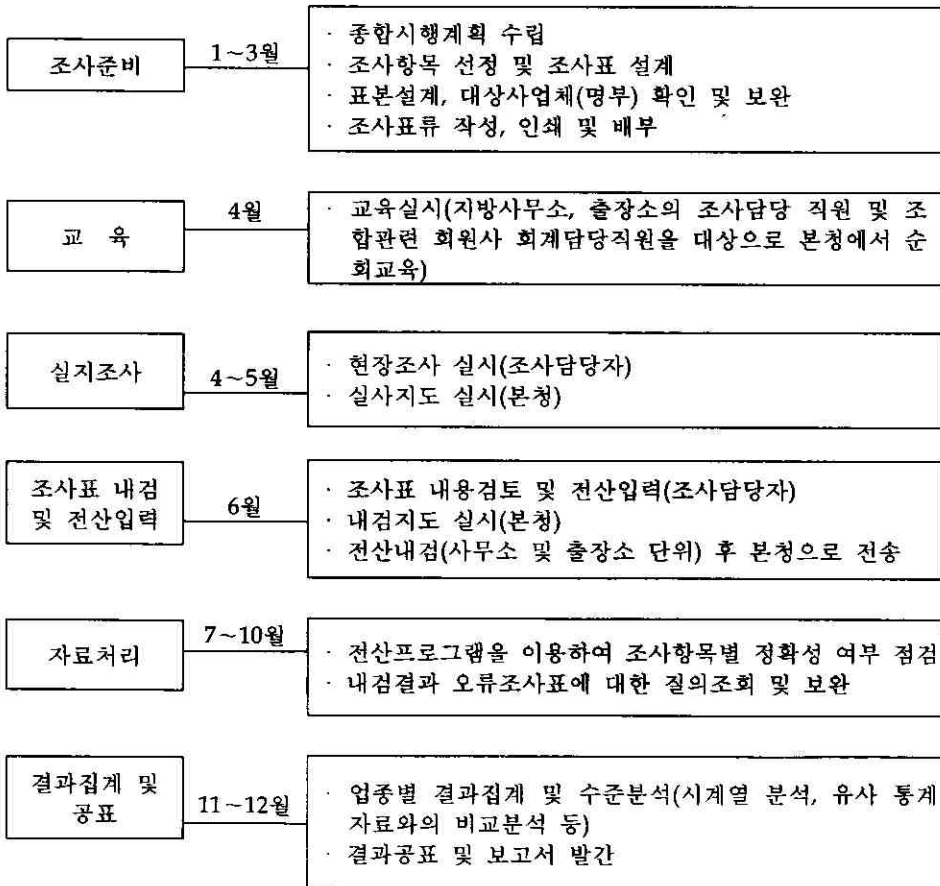
○ 조사항목

- 일반사항 : 사업체개황, 조직형태, 사업형태, 운송장비대수, 종사자수
- 결산사항 : 자본금, 급여액, 운수수입, 운수비용, 유형고정자산, 임대수입

□ 집계 및 공표

- 집계단위 : 전국 및 시·도
- 조사된 자료는 16개 시·도별로 산업세세분류까지 집계하여 매년 10월 중순 경에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하며, 12월에 『운수업통계조사 보고서』를 발간

[그림 2-4] 운수업통계조사의 조사업무흐름도



6. 정보통신기술산업통계

□ 조사목적

- 정보통신기술산업 부문의 구조와 경영실태 등을 매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부의 정보통신관련 정책 수립과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계·연구소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 조사연혁

- 1998년 : 통계청과 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연간 주기의 정보통신산업통계를 처음으로 작성하고 기관별로 보고서를 발간
 - 통계청 : 정보통신산업통계보고서
 -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 2001년 : 정보통신산업통계에 정보콘텐츠 산업을 추가하여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통계명칭을 정보산업통계로 변경
- 2003년 : 2001년에 추가하였던 정보콘텐츠 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 정보산업통계를 정보통신기술산업(ICT)통계로 변경

□ 조사주기 및 시기

- 별도로 독립된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며, 통계청과 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기존의 연간조사에 통계작성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거나 기 조사된 항목을 재집계하여 통계를 작성
- 따라서 조사기간은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4~6월), 서비스업통계조사(4~5월), 도소매업통계조사(4~5월),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산업실태조사(4~6월)의 실시기간과 동일

□ 조사대상

-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정보통신기기 유통업, 통신업, S/W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 구체적인 조사범위는 특수산업분류인 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2003. 4. 24. 설정)와 동일

□ 조사방법 및 단위

- 조사방법 :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하며, 조사수단도 방문면접, 우편, 전화 등을 병행
 -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은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를 전수조사
 - 정보통신기기 유통업, S/W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업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를 표본조사
 - 통신업은 종사자 1인 이상 기업체를 전수조사
 -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는 조사담당자가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로 실시
 -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산업실태조사는 방문면접조사, 우편조사 및 전화조사 방식을 병행
- 조사단위 :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또는 기업체
 -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정보통신기기 유통업, S/W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업은 사업체 단위
 - 통신업은 기업체 단위

〈표 2-13〉 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

중분류		세세분류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30011	컴퓨터 제조업
	30012	컴퓨터 기억장치 제조업
	30013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30021	복사기 제조업
	30029	그외 기타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기 제조업
	31301	절연금속선 및 케이블 제조업
	31302	절연광섬유 및 케이블 제조업
	3211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제조업
	32112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32191	전자관 제조업
	32192	인쇄회로판 제조업
	32193	전자축전기 제조업
	32194	전자저항기 제조업
	32195	전자카드 제조업
	32196	액정표시장치 제조업
	321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2201	유선통신기기 제조업
	32202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32300	방송 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33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33212	도안 및 제도기구 제조업
	33213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33214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33215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33216	기기용 자동조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33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33220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정보통신기기 유통업	51891	컴퓨터 및 패키지소프트웨어 도매업
	51893	통신·경보 및 탐지용 장비 도매업
	52514	통신기기 소매업
	52631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업	64211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업
	64219	유선전화 및 기타 유선통신업
	64221	무선 전화업
	64229	무선호출 및 기타 무선통신업
	64291	별정 통신업
	64292	부가 통신업
	64299	그 외 기타 전기통신업
S/W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72100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72200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72300	자료처리 및 컴퓨터기설 관리업
	7240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72900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 조사항목

-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 광업·제조업통계조사 항목을 활용하며, 사업체명 및 소재지, 경영조직, 자본금 또는 출자금,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연간출하액(매출액),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유형자산, 연간 제품출하액(매출액), 재고액 등
- 정보통신기기 유통업 : 도소매업통계조사 항목을 활용하며, 사업체명 및 소재지, 사업내용, 조직형태, 연간 영업개월수,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사업체 건물연면적, 사업실적 등
- 통신업 :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산업실태조사 항목을 활용하며, 사업체명, 소재지, 사업의 종류, 조직형태, 자본금 또는 출자금, 영업수입,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유형자산, 영업비용, 납부부가가치세 등
- S/W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 서비스업통계조사 항목을 활용하며, 사업체명 및 소재지, 사업내용, 조직형태, 연간 영업개월수,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사업체 건물연면적, 사업실적 등

□ 집계 및 공표

- 각 통계조사에서 수집된 자료 중 정보통신기술산업통계 작성에 필요한 항목을 집계(또는 재집계)하여 작성
 - 정보통신기기제조업은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결과에서 관련항목을 재 집계
 - 정보통신기기유통업은 도·소매업통계조사시 별도로 표본을 설계(산업세세 분류 기준)하여 조사를 실시한 항목을 집계
 - 통신업은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서 조사한 정보통신산업실태조사 결과를 재집계
 - S/W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업은 서비스업통계조사 결과에서 관련 항목을 재집계
- 공표 : 조사된 자료는 16개 시·도별로 산업세세분류까지 집계하며, 매년 12월에 보고서를 발간

□ 표본설계 개요(2002년 정보통신기기 유통업 부문)

- 산업세세분류별 및 16개 시도별 통계자료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표본을 설계
- 표본틀 : 2001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 산업세세분류 51891 컴퓨터 및 패키지소프트웨어 도매업, 51893 통신·경보 및 탐지용 장비 도매업, 52514 통신기기 소매업, 52631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소매업에 해당하는 약 25,000개 사업체를 표본추출을 위한 모집단으로 하여 약 2,700개의 표본(2002년 기준 정보통신기기 유통업 부문의 경우)을 추출
- 표본추출방법 : 산업세세분류별·시도별로 사업체를 종사자수 크기순으로 나열한 후 절사점을 기준으로 전수총과 표본총으로 총화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응용절사법 표본설계방법을 이용
 - 종사자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체는 전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전수총),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체는 주어진 표본규모에 따라 계통추출방법을 활용하여 표본을 선정(표본총)
 - 단, 표본총에서도 매출액이 100억 이상이거나 업종별 평균매출액의 100배 이상인 사업체는 절사점과 관계없이 전수총에 포함
- 모수추정 : 표본조사 결과 전수총 이상 사업체는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고, 표본총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의 정보통신기기 유통업 부문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업종 및 지역별 승수를 주어 총량을 추정

□ 기타 유의점

- 제조업 부문의 1998년 기준 자료는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부문 상품 및 서비스분류체계』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연계하여 집계하였기 때문에 같은 산업분류라도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결과와는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음
- 1999년 기준 제조업 부문도 1998년 기준과의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1998년 기준 집계방식을 적용하였으나, 2000년 기준부터는 특수분류에 맞추어 통계를 작성
- 1998년 기준 제조업 부문을 보면 DB와 보고서의 내용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보고서는 구 산업분류(제6차 개정)로 집계하였고, DB는 신 산업분류

(제8차 개정, 2000. 1. 7. 고시)에 따라 집계한 내용을 수록하였기 때문

- 1998년 기준 도·소매업 부문은 정보통신기기 품목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지만, 1999년 기준부터는 정보통신기기 전문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내용상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
- 통신업 부문은 기업체 단위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지역별 자료는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집계하였고, 1998년 기준은 품목단위로, 1999년 기준부터는 산업활동 단위로 집계

7. 환경산업통계조사

☐ 조사목적

- 환경산업의 구조 및 현황등을 파악하여 국가 환경산업·기술정책의 수립과 평가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연혁

- 2000년 : 통계청과 환경부가 공동 조사하여 제1회 종합작성

☐ 조사주기 및 시기

- 조사주기 : 1년
- 실시기간 : 매년 4~6월

☐ 조사대상 및 단위

- 조사대상 : 전산업(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대상으로 환경산업특수분류에 해당되는 전사업체
- 조사단위 : 사업체

□ 조사방법 및 항목

- 조사방법 : 전수조사로 응답자 기입방식에 의한 전자우편조사를 활용
- 조사체계 : 통계청과 환경부가 공동으로 실시
 - 통계청 : 조사대상(모집단) 선정, 조사표 작성 및 교육
 - 환경부 : 환경부 지방환경청(16개) 주관하여 조사실시
- 조사항목
 - 사업체현황 : 자본금, 총유형고정자산, 총투자액, 사업내용, 연간조업(영업) 개월수, 연간총매출액, 종사자수
 - 환경산업분류별(오염관리그룹, 청정기술및제품그룹, 자원관리그룹) : 매출액, 투자액, 유형고정자산, 수출금액, 연구인력, 자격증소지자, 환경관련종사자수

제3절 개별 통계조사의 비교 및 문제점

- 통계청의 산업구조 통계조사는 작성주기와 시기가 서로 달라 조사간 통일성을 유지하거나 통계 조사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대표적인 경제센서스 조사라고 할 수 있는 산업총조사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의 경우 조사시기가 끝자리가 3, 8자인 해와 2, 7자인 해로 서로 달라 활용도가 크게 저하됨
 - 산업별 장기 추세나 세부 지표를 얻을 수 있으나 특정 년도에 대해서 전체 경제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조사 방법에 있어서도 전수조사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일부 조사 대상에는 조사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비효율성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영세 사업체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는 대규모 사업체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정확한 조사에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

- 법인과 비법인 사이의 조사 환경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비법인에 대한 조사 부담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산업구조관련 통계가 많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기본적 경제통계들이 질적으로 신뢰성 높은 통계가 되기 위해서는 기준연도만큼은 전수조사에 입각하여 작성되는 기초통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국민들의 경제활동 결과를 통일된 국제적 기준에 의해서 생산, 분배, 지출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파악하는 국민계정의 기준연도가 0, 5자 년이며,
 - 이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연도 개편시 부문분류와 산업별 총산출 및 부가가치의 작성에 기초 자료가 되는 산업연관표도 0, 5자 년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음
- 통계 기준에 있어서도 기준, 분류 체계 그리고 구성 항목에 통일된 기준이 없어 자료의 활용에 문제가 있음
 - 대표적으로 종사자의 경우 산업별로 5대 분류와 3대 분류가 혼재되어 있고 분류도 통일되어 있지 않음
 - 무급가족종사자와 사업주가 한 분류에 포함(산업총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건설업 통계조사 등)되는 경우도 있으며 분리(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조사 등)되는 경우가 있음
 - 생산직과 사무직 등 업무를 중심으로 분류되는 경우(정보통신기술 산업통계조사, 운수업 통계조사)도 있으며 상사와 임시직 등 고용 형태를 중심으로 분류되는 경우 (건설업, 산업총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도·소매업 통계조사 등) 을 중심으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음

〈표 2-14〉 국내 산업구조통계의 조사개요 비교

통계조사	작성 주기	조사 기준일	조사시기	조사체계 및 방법
전국사업체 기초통계조사	1년	12월말	매년 2·4월중 1개월간	·전수조사(응답자 기입방식) ·읍·면·동직원 및 임시조사원이 면접조사
산업총조사	5년 (3,8)	12월말	익년 5.15일 ~ 6.15일 1개월간	·전수조사(응답자 기입방식) ·광업·제조업 : 임시조사원이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조사. 대규모 사업체는 응답자가 직접 작성 ·전기업·가스업·수도사업 : 우편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조사	5년 (2, 7)	12월말	익년 4월	·전수조사(응답자 기입방식) ·대규모 사업체는 조사원 기입방식 조사 병행)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1년	12월말	매년 5월15일 ~ 6월15일 1개월간	·전수조사(조사원 기입방식과 응답자 기입방식 병행). ·임시조사원이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조사 ·대규모 사업체는 응답자가 직접 작성
도·소매업 통계조사	1년	12월말	매년 6~7월 1개월간	·표본조사(응답자 기입방식) ·대규모 사업체는 조사원 기입방식 조사를 병행
서비스업 통계조사	1년	12월말	매년 6~7월 1개월간	·표본조사(응답자 기입방식) ·대규모 사업체는 조사원 기입방식 조사를 병행
운수업 통계조사	1년	12월말	매년 4월20일~ 5월19일 1개월간	·전수조사(조사원 기입방식), 표본조사(응답자 기입방식) 병행 ·육상, 수상, 항공, 운송관련서비스업은 전수조사(조사원 기입방식) ·법인·개인택시·전세버스·일반·개별화물·개별용달과 농산물창고업·여행사업·육상운송주선업·복합운송 주선업은 표본조사(응답자 기입방식)
건설업 통계조사	1년	12월말	매년 3월16일~ 4월15일 1개월간	·종합·전문·설비·전기·정보통신공사업체는 전수 및 배포조사(기업체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여 협회를 통하여 제출) ·소방, 오수, 난방시공업체 : 표본 및 면접조사(통계청 조 사요원이 기업체를 방문하여 면접조사)
정보통신기술 산업통계조사	1년	12월말	매년 4~6월	·별도 조사없이 연간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재 집계 ·제조업 부문 :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유통업 부문 : 도·소매업통계조사
환경산업 통계조사	1년	12월말	매년 4~6월	·전수조사(응답자 기입방식 및 전자우편조사)

〈표 2-15〉 국내 산업구조통계별 종사자 분류

통계조사	종사자 분류
전국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5대분류 ·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일종사자, · 무급종사자
산업총조사	- 광공업(종사자 5인이상) ·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 피고용자수(생산직 종사자, 사무직 및 기타 종사자) - 영세 광공업(종사자 4인이하) ·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 유급종사자
도·소매업 및 서 비스업 조사	- 5대분류 ·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일 종사자, 무급 종사자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 3대분류 ·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 피고용자수(생산직 종사자, 사무직 및 기타 종사자)
도·소매업 통계조사	- 5대분류 ·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일 종사자, · 무급 종사자
서비스업 통계조사	- 5대분류 ·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일 종사자, · 무급 종사자
운수업 통계조사	- 육상운송업 · 차량관계종사자 · 정비·수리공 및 기타 차량관계종사자 · 기타 종사자(사무직 및 기타종사자, 단순노무자) ·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 철도·도시철도(지하철)운송업·파이프라인운송업 · 열차·장비관계종사자(기관사, 기관조사, 여객전무 및 차장, 정비 및 수리공, 열차 · 관계 기타종사자) · 기타 종사자(사무직 및 기타, 단순노무자) - 수상운송업 · 선내근무 종사자(선박직원, 부원, 기타) - 항공운송업 · 항공기 관계종사자(조종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항공정비사, 객실 승무원, 항공 · 기관계 기타 종사자) - 운송관련서비스업 · 장비관계 종사자(냉동기기사) · 기타 종사자(안내원, 검수·검량·감정원)
건설업 통계조사	- 3대분류 ·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 피고용자 · 상용종사자(사무 및 기타 종업원, 기술자, 기술공, 기능공) · 임시종사자
정보통신기술 산업통계조사	- 5대분류 · 자영업주 및 무급종사자 · 생산직 종사자(정보통신기기제조업) · 사무직 및 기타 종사자(정보통신기기제조업) · 상용종사자(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기기유통업, 서비스업) · 임시 및 일일종사자

- 통계조사별로 차이가 있는 부가가치의 산출식은 무조건적인 통일보다는 산업별 부가가치의 창출과정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산업별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조사하는 방법은 그리 쉽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초적 통계조사가 마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측면도 고려되어야 함
 -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의 산출이 절대적인 국민계정이나 산업연관표에서도 산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방법으로 부가가치를 산출

〈표 2-16〉 국내 산업구조통계별 부가가치산출 비교

통계조사	부가가치 산출
전국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관련 항목을 조사하지 않음
산업총조사	- 광공업(종사자 5인이상) · 생산액에서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및 수선비 등 주요생산비를 공제 - 영세 광공업(종사자 4인이하) · 출하액에서 생산비(원재료비, 연료·전력·용수비, 수선비·위탁생산비)를 공제 - 전기업, 가스업, 증기 및 온수공급업, 수도 사업 · 영업수입액에서 주요생산비를 공제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조사	- 연간매출액을 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 생산액에서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및 수선비 등 주요 중간투입비를 공제한 것
도·소매업 통계조사	- 연간매출액을 조사
서비스업 통계조사	- 연간매출액(1년간 주업 및 겸업활동과 관련하여 얻어진 총 영업수입액) 을 조사
운수업 통계조사	급여총액+퇴직급여충당전입액+복리후생비+감가상각비+임차료+세금·공 과금+대손상각+국내선박용선료+영업이익+납부부가가치세
건설업 통계조사	· 인건비(임금 및 급료, 퇴직급여)+복리후생비+감가상각비+임차료+조 세공과+납부부가가치세+영업이익
정보통신기술 산업통계조사	-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센서스부가가치 기준 적용) · 생산액-직접생산비(원재료비+연료비+전력비+용수비+외주가공비+수리유지비) - 정보통신공사업 · 임금·급료+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복리후생비+감가상각비+지급임차료+ 세금공과금+건설매출이익+납부부가가치세 - 정보통신기기유통업 · 인건비+지급임차료+세금공과금+감가상각비+대손상각비+영업이익+납부 부가가치세 - 정보통신서비스업, S/W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 급여총액+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복리후생비+감가상각비+지급임차료+ 세금공과금+대손상각+영업이익+납부부가가치세

- 센서스 성격을 지닌 산업총조사와 도소매 및 서비스 총조사의 경우 모든 사업체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복잡하고 세분화된 사항까지 조사하고 있어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음
 - 모든 업체에 대해 동일한 조사항목으로 조사를 실시함으로 인해 영업실적과 관련한 세부항목의 경우 자료수집 자체가 곤란한 문제도 발생
- 총조사는 기본적인 항목과 최소한의 항목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특화된 연간조사 등에서 세부항목을 조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체는 세부항목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영세사업체는 간단한 항목으로 표본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
- 전산업을 포괄하는 기업체단위 통계조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경영실적 관련 자료가 부족한 상황임
 - 연구개발비, 유·무형자산 등과 같은 항목은 본사에서만 파악이 가능하나 사업체 단위 조사에서 동 항목을 포함시킴에 따라 세부내용 파악이 곤란함
 - 만일 본사에서 전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체별로 배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 최적의 배분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

제3장 미국의 경제센서스

제1절 미국 경제 센서스 개요

1. 일반사항

가. 개념

- 국가 경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자료의 주요 출처로서 공공 및 민간 부분의 통계적 작업을 위한 기초와 골격을 제공함
 - 1997년 센서스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약 97%를 포괄하고 있으며 단지 농업(1.6%)과 기타 일부 경제 활동(1.2%) 만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나. 조사 목적

- 경제 센서스(Economic Census)의 조사 목적은 미국 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며 조사범위, 정확성, 구체성, 역사성 등을 고려할 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로서 광범위한 활용범위를 가지고 있음.
- 경제 센서스의 조사 결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연방 정부는 센서스결과를 이용하여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생산 및 물가지수 등 보다 단기간의 경제 상황을 측정하는 통계지표 작성에 활용
 - 정책 입안 및 수행 기관에서 경제 활동 상황을 파악하거나 조세 및 신산업

개발정책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민간 기업에서 자신의 경영 상태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하거나 새로운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시장점유율, 관련 지역에 대한 정보, 신규 진출 지역의 결정, 관련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전망 작업에 활용
 - 소규모 사업자가 은행이나 투자자에게 자신의 계획을 소개하는 데 필요한 시장 및 산업자료로 활용
- 대학, 연구기관, 언론기관 등에서 강의자료, 장기 경제 추세에 대한 연구, 보도용 자료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다. 센서스 연혁

□ 19세기 : 센서스의 탄생과 확대

- 1810 : 미국의 3번째 센서스 조사에서 경제 부문이 처음으로 포함되면서 사실상 경제센서스가 처음 도입됨
 - 당시 센서스의 주기는 10년이었으며 제조업의 생산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음
- 1820 : 1810년과 유사하게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원자재, 고용, 설비 등 조사 대상이 확대되었음
- 1840 : 1830년 경제관련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됨
 - 제조업의 생산품에 따라 30개 분류로 나누어 조사했으며 광업과 어업이 조사대상에 포함됨
- 1840 : 1830년 경제관련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됨
- 1850 : 이전의 경제 관련 조사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이를 보완하여 보다 정확한 조사를 시도함
 - 법안을 통해 센서스 위원회(Census Board)를 설치하고 센서스 조사를 위해 전담 직원(full-time secretary)을 둠
- 1800-79 : 과거 조사와 비교했을 때 산업별로 차별성을 부각시킨 조사표가

활용되기 시작함

- 1880 : 새로운 센서스 법이 통과되면서 보다 광범위하고 자세한 조사가 가능하게 됨
 - 산업별로 차별화된 세부조사가 강화되며 29가지의 공통조사에 산업별 세부 조사는 2,000여 가지가 작성됨.
 - 센서스 조사의 관리는 대통령의 임명과 상원의 동의에 의해 선발된 전문가에 의하게 됨.
 - 센서스 관련 정보의 부정한 공개 및 조작 등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
- 1890, 1900 : 1880년에 실시된 센서스에서 지역, 산업별로 보다 세부적인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조사 항목이 너무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함.

□ 20세기 (2차 세계대전 이전) : 센서스 범위 확대 및 조사주기 축소

- 센서스국 발족 : 1902년 의회는 영구적인 센서스법(Permanent Census Act)을 통과시킴으로써 상무성 내에 센서스국(Bureau of the Census)이라는 별도 조직이 탄생함
 - 1905년부터는 매 10년 제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여 사실상 경제센서스는 5년에 한번 조사하는 형태가 됨
- 1905 : 제조업 사업체에 대한 사전 조사로 명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편조사를 실시
 - 1904년 사전 조사를 통해 명부를 확보하고 1904년 12월 조사표 발송
- 1910 : 센서스 정보의 비공개 원칙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조사 내용은 과거보다 단순화함
- 1915, 17, 18 : 미국의 1차 대전 참전과 관련하여 1915년 센서스는 발간이 지연된 반면, 1917과 1918년에는 과거에 실시되지 않았던 다양한 전쟁 및 군수 관련 산업에 대한 센서스가 실시됨
- 1920-29 : 의회는 제조업에 대해서 격년으로 조사토록 함으로써 제조업에 대한 센서스가 1921, 1923, 1925, 1927년에 실시됨

- 1930 : 1929년의 경제활동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제조업, 광업, 건설업, 유통산업, 숙박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당시까지 가장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됨.
- 1930 : 1929년의 경제활동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제조업, 광업, 건설업, 유통산업, 숙박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당시까지 중에서는 가장 광범위한 조사가 실시됨
- 1931, 33, 35, 37 : 의회가 31, 33년 센서스에 대한 예산을 축소하였으나 과거수준의 조사를 지속하였으며 35년에는 조사 산업을 광고, 라디오 방송, 은행, 보험까지 확대함
 - 반면 1937년에는 제조업에 한정하여 센서스를 실시함
- 1940년 이후 : 1940년에는 1935년에 확대했던 조사 대상 산업이 다시 축소되었으며 전쟁 관련 통계 작성의 필요성 때문에 43, 45년에는 경제 센서스가 실시되지 않음

□ 20세기 (2차 세계대전 이후) : 기술의 발전과 경제센서스의 정착

- 1947: 센서스국은 새롭게 업데이트한 표준산업분류(SIC: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를 활용하여 제조업에 대한 센서스를 실시함
 - 명부 작성을 위한 사전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서는 약식의 조사표가 사용됨
- 1948 : 새로운 법에 의해 1948년부터 매 5년마다 경제센서스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제조업, 소매업, 도매업 그리고 일부서비스업이 조사대상에 포함됨
- 1940년 이후 : 1940년에는 1935년에 확대했던 조사 대상 산업이 다시 축소되었으며 전쟁 관련 통계 작성의 필요성 때문에 43, 45년에는 경제 센서스가 실시되지 않음
- 1951년 : 센서스국은 처음으로 컴퓨터 UNIVAC I 을 도입하였으며 펀치카드를 사용하여 결과가 마그네틱테이프에 저장되는 형태로 작업 혁신을 단행함
- 1953, 54년 : 의회가 1953년 센서스에 대한 예산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경제 센서스 조사가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함

- 정부, 학계,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와킨스(Watkins) 박사가 주도하는 위원회에서 경제센서스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 검토할 결과 재개하기로 결정함
- 1954, 58년 : 1953년부터 센서스국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의 조세 자료를 활용하기 시작함
- 1963년 : 교통 관련 센서스가 조사 대상에 포함됨
- 1967년 : 의회는 인구 및 경제 센서스의 자료처리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경제센서스의 조사 대상 년도를 끝자리가 2와 7로 끝나는 해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
 - 건설산업이 주기적 발표 대상으로 포함
- 1972년 : 새롭게 작성된 표준산업분류(SIC)에 따라 센서스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소수민족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조사(Survey of Minority-owned business enterprises)도 실시됨
- 1977년 : 제조업, 소매업, 도매업, 서비스, 건설, 광업 등 조사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국민총생산(GDP) 통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조사가 기획됨
 - 센서스국은 표준통계사업체명부(SSEL: Standard Statistical Establishment List)와 연간 실시되는 기업체 조직 조사(COS : Company Organization Survey)를 실시
 - 산업, 소수민족에 더해 여성 소유의 기업 조사(SWOBE : Survey of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s)를 추가하여 특별 조사를 실시함
- 1982, 87년 : 1977년의 조사를 기본으로 조사 대상과 조사 내용을 더욱 세분화
- 1992년 : 금융부분까지를 포함하여 사실상 민간 경제 활동의 대부분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조사가 실시됨
- 1997년 : 산업 분류 체제는 SIC 대신 북미산업분류체계(NAICS :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를 채택함
 - 인터넷을 활용한 조사 및 정보 활용을 시도함

라. 일반 사항

- 조사 유형 : 미국의 경제센서스는 전체 산업에 대해서 가능한 한 통일된 기준과 시기에 조사하는 '통합센서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조사 주기 : 미국의 경우 연방법 13조(Title 13) 131, 191, 224항(Section)에 의하여 매5년 1자리수가 2, 7로 끝나는 해를 대상으로 경제 센서스를 실시
- 조사 방법 :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우편조사에 의해 센서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성실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음
- 산업분류 : 대분류는 2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3자리까지 표기되는 중분류는 96개 그리고 4자리까지 표기되는 소분류는 313종류 5자리와 6자리까지 표기되는 세부분류는 1170가지에 이름
 - 산업 분류는 1997년 이후 북미산업분류체계(NAICS :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를 사용하며 이는 미국,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채택하고 있음.
 - 본고는 미국 경제 센서스의 조사대상 산업 중 제조업, 건설, 광업, 소매업, 도매업, 교통창고, 정보, 금융 보험업 등 8개 산업을 연구대상으로 함
- 조사기준 : 각각의 사업체 위치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주별, 도시별, 카운티 등에 대해 각각 표의 형태로 작성되며 응답자의 주소가 우편 주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경제 센서스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한 곳 이상의 장소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매장, 공장 등 사업체별로 보고를 해야 함
 - 각각의 사업체는 그 고유의 기능에 따라 특정 산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모기업의 산업 분류와는 무관
 - 자료의 단위는 해당 년도 경상가격을 사용하며 천달러 기준으로 보고

〈표 3-1〉 미국의 산업 분류와 경제 센서스 대상

NAICS 분류기호	산업명
72	숙박, 요식업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s)
56	관리 (Administrative and Support and Waste Management and Remediation Services)
11	농림어업 (Agriculture, Forestry, Fishing and Hunting)
71	예술, 연예, 레크리에이션 (Arts, Entertainment, and Recreation)
23	건설(Construction)
61	교육 (Education Services)
52	금융, 보험 (Finance and Insurance)
62	의료 사회복지 (Health Care and Social Assistance)
51	정보 (Information)
55	기업 경영 (Management of Companies and Enterprises)
31-33	제조업 (Manufacturing)
21	광업(Mining)
81	공공부문을 제외한 다른 서비스 (Other services except Public Administration)
54	과학 기술 서비스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92	공공행정 (Public Administration)
53	부동산, 임대, 리스 (Real Estate and Rental and Leasing)
44-45	소매 (Retail Trade)
48-49	교통, 창고 (Transportation and Warehousing)
22	공공 설비(Uilities)
42	도매 (Wholesale Trade)

주 : 음영부분은 경제센서스의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센서스가 진행

□ 조사 절차 : 2002년 센서스의 경우

- 2002년 10월 : 선택된 소규모 기업체에 약식조사표(Classification Form,

NC99026, NC99023) 발송 (응답자는 조사표 입수 30일 안에 답변을 회신하여야 함)

- 2002년 12월 9일 : 다수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센서스 조사표 발송
- 2002년 12월 16일 : 단일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센서스 조사표 발송
- 2003년 2월 12일 : 센서스 마감

2. 주요 개념

가. 산업의 정의

□ 본고는 제조업, 도소매 등 8개 산업에 대해 조사함

- ① 제조업 : “어떤 물질을 구조적, 물리적, 화학적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물질로 만드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일부 구조물 제작업은 건설산업으로 포함
 - 공장과 같이 기계로 제조하는 시설뿐 아니라 수공업 형태 그리고 베이커리 형태의 시설도 포함
- ② 건설 : 기본적으로 건설활동에 관련된 일을 하며 1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함
 - 건설사업은 건설(building), 개발(developing), 청부(general contracting subsector)의 3개 부문을 나누어져 있으며 건물의 건설, 개발, 입찰, 설계 등 상업적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모든 건설을 포함
 - 발전소, 고속도로, 파이프라인과 같은 토목뿐만 아니라 배관, 페인팅, 전기 배선과 같은 건설 관련 작업을 하는 사업체도 포함
 - 건설산업의 생산에 대한 평가는 매매하거나 다른 부분과 겹쳐지는 경우가 많아 총공사비 개념보다는 부가가치 개념을 사용함

- ③ 광업 : 1명이상을 고용하고 자연에서 발생한 고체, 액체, 기체 물질을 추출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함
 - 광업은 크게 추출작업을 하는 분야와 탐사 등을 포함하는 지원 분야 나눌 수 있음
- ④ 운송 창고업 : 여객이나 화물의 운반, 저장, 관광 운송, 관련 지원 활동 등 교통수단과 관련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 교통 또는 운반 수단은 항공, 해운, 철도, 차량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포괄
- ⑤ 소매 판매업 : 상품의 판매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서비스를 포괄하는 산업이며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무점포 형태의 소매업을 모두 포함함
 - 지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류 판매 사업과 유급 종사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업체는 제외함
- ⑥ 도매 판매업 : 도매 상품의 판매와 그를 위한 서비스를 포괄하는 산업을 의미함
 - 도매 상품의 종류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자본재나 비소비 내구재, 생산에 활용되는 원자재, 부자재를 포괄함
- ⑦ 정보 산업 : 정보나 문화 상품을 만들거나 이러한 상품을 유통시키는 수단을 제공하거나 자료를 처리하는 활동을 하는 산업을 포괄함
- ⑧ 금융 보험업 : 신용 창출, 유동화, 금융 자산의 소유권 변경과 같은 금융 거래 및 금융 거래를 촉진시키는 사업

나. 주요 용어 정의

□ 사업체(establishment), 기업(company), 자회사(subsidiary)

- 사업체(establishment) : 기업활동, 산업활동 또는 서비스활동을 수행하는 단일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경제 활동의 기본 단위를 의미
 - 하나의 기업은 생산, 판매, 가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이 경우 동일 기업내의 조직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체는 모두 센서스에 응해야 함

- 기업체(company) : 하나의 소유권 또는 통제권 아래 단일 또는 다수의 사업체를 포괄하는 경제 활동 단위를 의미
 - 기업체는 단일 또는 다수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도 있으며 다수의 지역에서 사업체를 보유할 수도 있음
 - 기업체는 하부의 모든 조직, 지배적인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사업체 및 자회사를 모두 포괄한 개념임
 - 다지역 기업체(Multi-unit company) : 다수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의미
 - 단일 기업체(Single-unit company) : 사업체와 기업체가 일치하는 기업을 의미
- 자회사(subsidiary) : 다른 기업체에 의해 지분의 50% 이상이 소유되어 있거나 경영권 또는 회사의 경영 정책 통제되고 있는 기업체를 의미

□ 급여(payroll), 임금(wage), 복지비용(fringe benefit)

- 급여(payroll) : 임금을 비롯해서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종업원에 주어지는 모든 소득 형태의 지분을 의미
- 복지비용(fringe benefit) : 법에 의해 강제되거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실업 보험, 산재 보험, 복지 제도, 이익 배분 등을 위한 지급을 의미
- 따라서 급여는 임금(wage)과 복지비용(fringe benefit) 등을 모두 포괄한 개념

□ 부가가치 (Value added)

- 제조업 : 출하액에서 원자재 비용, 연료, 전기세, 기타 구입 서비스 등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를 의미

value added = value of shipment - cost of materials, supplies, containers, and purchased electricity - contract work
- 건설 : 종료된 사업의 가치에서 각종 원부자재, 연료, 구입 서비스 특히 하청에 의해 지불된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를 의미

value added = value of business done - construction work subcontracted

out to others - cost for materials, components, supplies and fuels

- 광업 : 총수입과 자본소비의 합에서 원부자재 구입, 설비 구입, 연료 구입 기타 구입 서비스 등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value added = value of shipment, receipts and capital expenditure - cost of supplies and minerals for preparation - purchased machinery installed - purchased fuel - purchased electricity - contract work
- 제조업, 건설, 광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은 부가가치를 산출하지 않고 수입 또는 매출을 파악하는데 그침

□ 건설업 : 사업(business), 건설(construction), 순건설(net construction)

- 사업(business) : 건설 사업체가 공사 뿐 아니라 다른 형태로 수행한 모든 경제 활동을 의미
- 건설(construction) : 수주하여 완성한 건축물의 전체를 의미
- 순건설(net construction) : 건설에서 다른 업체에게 하청을 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제2절 표본 및 조사 방법

1. 조사 표본

가. 제조업

- 조사 대상 : 제조업에 대한 조사는 기본적으로 우편에 의한 조사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조사 대상은 사업체의 크기와 『제조업연간통계조사』(ASM: Annual Survey of Manufactures) 조사의 대상에 포함되는가 여부에 의해 결정
- 정규 우편 조사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사업체 : 사업체의 수는 전체의 40%에 이르나 출하 규모에 있어서는 그 비중이 3%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

- 대략 5인이하를 고용한 사업체의 대부분이 포함
- 이들 사업체의 산업분류, 종업원, 수주 등의 자료는 다른 연방 기관으로부터 비밀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여 활용
- 행정 자료에 의한 분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간략한 우편 조사(classification form)를 실시하나 응답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타 "All other"로 분류
- 이러한 분류상의 문제가 대부분 큰 오류를 야기하지는 않지만 사업체에 대한 자료는 적어도 20명 이상의 종업원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표부터 정확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음
- 『제조업연간통계조사』(ASM) 조사대상 표본 : 사업체의 규모에 따른 비중을 감안하여 선정되는 만큼 표본 내에는 대중소규모의 사업체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비중은 전체의 15%임
 - 센서스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 이 외에 자산의 장부가, 자본 소비, 은퇴, 감가상각, 임대료, 부가 인건비 등의 자료가 요구됨
 - 이들 자료에 대한 센서스 결과는 ASM 조사 결과와 비ASM의 추정치를 통해서 산출
- ASM에 포함되지 않는 대중규모 사업체 : 종업원수에 의해 소규모 사업체와 분리되며 정규 형식의 센서스 양식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며 전체 제조업 사업체의 30%가 여기에 해당
- ASM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체 : 소규모 사업체는 약식의 우편조사(short form)를 실시하며 15%가 여기에 해당
 - 고용, 비용, 재고, 자본소비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는 요구되지 않음
- ※ 『제조업연간통계조사』(ASM: Annual Survey of Manufacture) : 1명 이상의 급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제조업 사업체에 대해서 표본 조사를 하여 작성한 통계임. 연 1회 조사하며 고용, 급여, 부가가치, 원부자재 비용, 출하액, 자본소비, 기타 인건비, 연료 및 전기 소비, 재고 등의 지표를 포함

〈표 3-2〉 미국 제조업 조사 대상 분류

규모별 분류	샘플 분류	센서스 조사 내용	비중
대중 규모 사업체	비 ASM 샘플	정규 센서스 실시	30%
	ASM 샘플	정규 센서스 실시	15%
소규모 사업체	ASM 샘플	정규 센서스 실시	
	비 ASM 샘플	약식 (short form) 조사	15%
	조사대상 제외	연방정부 기록 활용 또는 산업분류만 조사	40%

나. 건설업

- 건설 분야에서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1997년 기준 약 65만개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중 정규 우편 센서스의 대상은 13만개 사업체임
- Internal Revenue Service(IRS)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로부터 입수한 건설업체 리스트에서 추출함
 - 표본은 총 6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 2 그룹은 샘플에 무조건 포함 시킴
 - 1 그룹 : 복수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며 약 12,000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음
 - 2 그룹 : 한 곳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선정된 대규모 건설업체
 - 3~6 그룹 : 한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종업원 수에 따라 그룹별로 나뉘어 지며 표본은 무작위 추출에 의해 만들어짐

다. 광업

- 광업 사업자는 총 25,000에 이르고 있으며 주로 규모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분류하고 있음

- 정규 우편 조사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사업체 : 사업체의 수는 전체의 40%에 이르고 있으며 대략 5인이하를 고용한 사업체의 대부분 포함되며 제조업의 경우와 유사하게 취급됨
- 대중규모 사업체 : 전체의 약 48%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여기에 속하며 정규 형식의 센서스 양식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함
- 소규모 사업체 : 소규모 사업체는 약식의 우편조사를 실시하며 전체의 12%가 여기에 해당

라. 운수 창고업

☐ 정규 우편조사 대상

- 모든 대중규모 사업체와 한 기업이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기업들은 모두 우편조사 대상으로 포함됨
-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연방 기관의 정보에 의거하여 일부만 표본으로 추출됨

☐ 정규 우편조사 대상 제외

- 10명 이하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체가 포함되며 산업 전체의 수입에서 약 10%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추정
- 급여를 받는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 센서스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마. 소매업

☐ 정규 우편조사 대상

- 모든 대중규모 사업체와 한 기업이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기업들의 경우 모두 정규 우편조사 대상으로 포함됨
-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연방 기관의 정보에 의거하여 일부만 표본으로 추출됨

□ 정규 우편조사 대상 제외

- 10명 이하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체가 포함되며 산업 전체의 수입에서 약 10%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추정
- 급여를 받는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 센서스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바. 도매 판매업

- 조사 대상 : 도매 판매업의 경우는 모든 사업체가 정규 우편 조사의 대상에 포함됨

사. 정보산업

□ 정규 우편조사 대상

- 모든 대중규모 사업체와 한 기업이 다수의 사업체를 같은 기업들은 모두 정규 우편조사 대상으로 포함됨
-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연방 기관의 정보에 의거하여 일부만 표본으로 추출됨

□ 정규 우편조사 대상 제외

- 10명 이하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체가 포함되며 산업 전체의 수입에서 약 10%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
- 급여를 받는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 센서스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총 수입은 정보산업 전체의 10% 미만인 것으로 추정

아. 금융 보험

□ 정규 우편조사 대상

- 모든 대중규모 사업체와 한 기업이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기업들의 경우 모두 정규 우편조사 대상으로 포함됨
-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연방 기관의 정보에 의거하여 일부만 표본으로 추출됨

□ 정규 우편조사 대상 제외

- 10명 이하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체가 포함되며 산업 전체의 수입에서 약 10%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추정
- 급여를 받는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 센서스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표 3-3〉 미국의 산업별 센서스 비교

	주기	정규 조사 대상
제조업	5년, 끝 자 리 가 2, 7인 해	- 5인미만 사업체 제외 - 5~19인 부분적 포함 - 20인이상 사업체 모두 포함
건설업		- 다수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단일지역 사업체 중 대규모인 경우 - 나머지는 고용규모별로 4단계로 나누고 큰 규모일수록 더 많은 가중치를 두어 표본 추출
광업		- 5인이상 사업체
운수창고		- 10인이상 사업체
소매판매		- 10인이상 사업체
도매판매		- 전수 조사
정보		- 10인이상 사업체
금융 보험		- 10인이상 사업체

2. 센서스 이외의 정보 활용

- 미국은 ① 우편 조사를 기초로 센서스 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조사 대상에 대

한 명칭, 주소, 산업분류 등 풍부한 사전 정보가 필요하고 ②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의 유사 정보를 활용하여 비용 절감 및 정확성 제고를 도모함

가. 표본 통계 사업체 명부 (SSEL: Standard Statistical Establishment List)

□ SSEL은 센서스 조사를 위한 사전 명부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함

- 목적 : 행정 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출처의 사업체 관련 자료를 센서스에 활용하기 좋게 연결 지음으로써 센서스 조사를 위한 사전 명부를 작성
- 내용 : SSEL에는 센서스 조사를 위한 명부로서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고용주 등록 번호(EIN :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 SSEL 등록 번호
 - 회사명, 주소, 위치, 산업분류, 지역코드, 법적 형태
 - 수입, 급여 등 경영 관련 자료
- 자료 출처 및 작성 : 단일 사업체 기업(Single Establishment Company)과 복수 사업체 기업(Multiestablishment Company)로 나누어 별도의 작성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 단일 사업체 기업 : IRS(Internal Revenue Service)로부터 수입 및 조세 관련 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음
 - 복수 사업체 기업 : 센서스국의 다른 조사인 산업 동향 보고서(CIRs : Current Industrial Reports)와 기업체 조직 조사 (COS : Company Organization Survey)를 이용하여 연 1회 업데이트하고 있음

나. 행정 자료

- ☐ 목적 효율적인 조사와 참고 자료 활용을 위해 IRS(Internal Revenue Service), SSA(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BLA(Bureau of Labor Statistics)를 비롯한 다양한 행정기관의 자료를 활용함
 - 센서스 조사의 비용 절감
 - 소규모 사업체들의 답변 부담 경감
 - 회사 및 사업체에 대한 명칭 및 주소 등의 자료를 쉽게 확보
 - 자료 편집 및 수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 IRS(Internal Revenue Service) 자료
 - 연간 BMF(Business Master File) : 연간 자료이며 각 법인의 법인명, 주소, 기본 사업 분류를 수록
 - 월간 BMF(Business Master File) : 연간 BMF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법인명 주소 등의 변화를 수록
 - 조세 관련 자료
 - 연방세 : 주간으로 모든 기업의 연방세 관련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며 고용주등록번호, 고용 규모, 총 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법인세 : 기업체의 수입, 영업 기간, 기본 산업 분류, 다른 기업과의 협력 관계 등을 포함
- ☐ SSA(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자료
 - SSA가 제공하는 자료는 IRS의 자료 중 기업의 신규 개업과 관련된 자료임
 - 신규 등록한 기업의 고용주 등록 번호
 - 해당 기업의 기본 산업 분류(SIC :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와 영업 활동의 종류에 대한 자료

- 센서스국은 SSA에 년 1 회 자료 제공을 요청

□ BLS(Bureau of Labor Statistics)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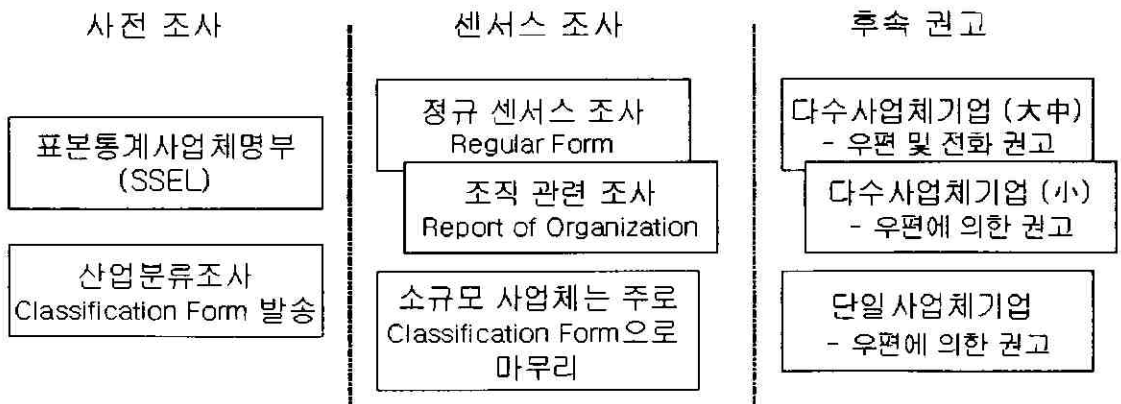
- BLS는 센서스국이 확보하고 있는 개별 고용주 등록 번호(EINs)에 BLS의 산업분류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을 지원해 주고 있음
 - 분류가 곤란한 경우에는 분류 코드 없이 센서스국으로 반송됨

3. 자료 수집

- 센서스국은 우편을 통해서 정확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기 위해서 사전 명부 작성에서 조사표의 회수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인 조사 진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음

- ① 산업 분류 조사 (Classification mailouts)
- ② 센서스 조사 (Census mailouts)
- ③ 후속 권고 (Following Up)

[그림 3-1] 미국의 센서스 진행 개념도



가. 산업 분류 조사

- 보다 정확한 사업체 명부의 작성을 위해서 산업분류조사가 실시됨
 - 시기 : 센서스의 조사 대상이 되는 해의 4/4분기에 산업분류조사표 (Classification form)가 발송되며 이는 30일 이내에 응답되어야 함
 - 대상 : 행정 자료를 기초로 했을 때 센서스를 위한 산업분류가 곤란한 사업체가 조사 대상이 됨
 -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산업분류조사가 이루어지면 정규센서스는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임
 - 신규 설립 사업체에 대한 조사 : 센서스의 조사 대상이 되는 해의 3/4분기와 4/4분기에 신규 설립된 사업체의 경우 추후 관련 정보를 확보함
 - 3/4분기에 설립된 사업체의 경우는 익년도 상반기에 산업분류조사 실시
 - 4/4분기에 설립된 사업체의 경우는 행정자료로 가능한 한 마무리

나. 센서스 조사

- 센서스 조사는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단일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나누어 별도의 발송 및 마감 시한을 가지고 우편을 발송함으로써 시작됨
 - 다수 사업체 기업 (Multi-establishment Company) : 2002년 센서스의 경우 2002년 12월 9일 발송
 - 단일 사업체 기업 (Single establishment Company) : 2002년 센서스의 경우 2002년 12월 16일 발송
 - 1997년 센서스에서 1차 조사표 발송도 센서스 조사 대상 해인 1997년 12월중에 발송되었음

□ 우편과 더불어서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한 조사도 시도되고 있음

- 1987년 : 대형 소매업, 음식, 호텔 산업을 중심으로 조사용지 대신 마그네틱 테이프를 이용한 센서스를 실시했음
- 1997년 : PC용 디스켓을 사용하는 조사를 시도하였으며 윈도우 환경에서 자체 도움말 기능을 장착한 프로그램을 사용
- 2002년 : 인터넷을 활용한 센서스를 시도
 - 센서스 용지에 할당되어 있는 고유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하고 전자 센서스를 실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은 후 온라인 에서 센서스 작성 및 발송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음.

다. 후속 권고 (follow-up)

□ 응답률을 최대한 높이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무응답자를 독려하고 오류 응답을 수정을 위해서 후속권고가 이루어지고 있음

- 대부분 우편에 의한 조사표 재발송 및 권고 우편 발송을 통해서 이루어지 나 복수 사업체 기업의 경우는 전화를 통한 권고도 이루어지고 있음

□ 단일 사업체 기업 : 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4차에 걸친 우편 재발송을 통해서 성실한 센서스조사 참여를 유도함

- 일반적인 단일 사업체 기업의 경우 4번의 조사표 발송에 의한 후속권고가 취해짐
- 『제조업연간통계조사』(ASM: Annual Survey of Manufacture)의 조사대상 샘플의 경우 한번의 권고 우편 발송으로 후속조치 마무리
- 산업분류조사(Classification form)만을 실시하는 기업의 경우는 1, 2차에 걸친 두 번의 후속권고가 이루어짐
- 조사 대상해 3분기에 신규 설립된 단일 사업체 기업에 대해서는 1회 조사로 마무리 (4분기 설립 기업에 대한 조사는 없으며 행정 자료로 마무리)

〈표 3-4〉 소규모 사업체 후속 권고 (1997년 센서스의 경우)

	발송물 형태	마감일	발송편수
1차 후속조치			
ASM 샘플	권고 우편	02/23/98	12,463
비 ASM (산업분류 조사대상 및 3분기 이후 신규 설립 사업체가 아닌 경우)	조사표	03/04/98	861,848
산업분류 조사 대상 (3분기 이후 신규 설립 사업체가 아닌 경우)	조사표	02/28/98	315,356
3분기 중 신규 설립 사업체	조사표	04/29/98	5,326
2차 후속조치			
단일 사업체(산업분류 조사대상 및 3분기 이후 신규 설립 사업체가 아닌 경우)	조사표	04/15/98	548,121
산업분류 조사 대상 (3분기 이후 신규 설립 사업체가 아닌 경우)	조사표		175,261
3차 후속조치			
단일 사업체 기업	조사표	05/22/98	415,809
4차 후속조치			
단일 사업체 기업	조사표	07/09/98	109,165

□ 복수 사업체 기업

- 4차에 걸친 후속권고가 있으나 대·중규모 기업과 소규모 기업 간에는 방법상의 차이가 있음

□ 대·중규모

- 무응답이 지속되고 기한 연장 신청도 하지 않는 경우 총 4회의 후속권고가 취해지며 1차 후속권고 시를 제외한 나머지 2~4차에 대해서 각각 1회 씩 총 3회의 전화 권고가 진행됨
- 부분적 무응답이 나타났으나 기한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는 총 2회의 후속권고가 취해지며 동시에 2회의 전화 권고가 진행됨
- 무응답 또는 부분적 무응답의 경우도 기한 연장 신청을 한 경우에 대해서

는 각각 1회의 우편 권고와 1회의 전화 권고가 진행됨

□ 소규모

- 무응답이면서 기한 연장 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회에 걸친 우편 권고가 진행되며 그래도 무응답이 지속될 경우에는 4차 권고는 조사표를 발송하는 형태로 진행됨
- 부분적인 무응답이면서 기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차와 4차 후속 권고시 2회에 걸친 우편 권고가 진행되며 기한 연장 신청을 한 경우에는 1회의 우편 권고가 실시됨

〈표 3-5〉 대중규모 사업체 후속 권고 (1997년 센서스의 경우)

	발송물 형태	마감일	발송편수
1차 후속조치 무응답 및 기한연장 신청을 안한 경우	권고 우편	02/02/98	73,333
2차 후속조치 무응답 및 기한연장 신청을 안한 경우	권고 우편	04/01/98	51,669
3차 후속조치 부분 무응답 및 기한 연장 신청을 안한 경우	권고 우편	05/ /98	5,326
무응답 및 기한 연장 신청을 안한 경우	권고 우편	05/ /98	40,772
부분 무응답 및 기한 연장 신청을 한 경우	권고 우편	05/ /98	1,709
4차 후속조치 부분 무응답 및 기한 연장 신청을 안한 경우	권고 우편	06/10/98	3,252
부분 무응답 및 기한 연장 신청을 한 경우	권고 우편	06/10/98	282
대중규모 기업 (무응답 및 기한 연장 신청을 안한 경우)	권고 우편	06/11/98	950
소규모 기업 (무응답 및 기한 연장 신청을 안한 경우)	조사표	06/25/98	31,661
기타 (무응답 및 기한 연장 신청을 한 경우)	권고 우편	06/11/98	846

4. 자료 공표

- 수집된 정보는 자료마다 다른 처리 및 가공 기간 등을 감안하여 3년여에 걸쳐 분산하여 공표됨

- 센서스 자료 조사는 후속 권고 기간까지 포함해도 센서스 조사 대상 해의 익년도 중반에는 자료수집이 종료
- 자료 발표는 자료 조사가 마무리된 해의 익년도부터 시작하여 3년여 걸쳐 진행됨
- 2002년 센서스의 경우 2003년 중반 조사가 마무리되며 자료 발표는 2004년에서 2006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어 있음

〈표 3-6〉 미국의 주요 센서스 보고서 발표 일정 (2002년 센서스)

	산업별	지역별	주제별			우편번호
			상품/수입원 별	사업체/기 업 규모별	기타	
제조업	2004 1-3분기 (전체, 주)	2004 3-4분기 (전체, 주, 카운 티, 대도시, 세 부지역)				
건설업	2004 1-4분기	2004 3-4분기 (전체, 주)				
광업	2004 1-3분기 (전체, 주)	2004 3-4분기 (전체, 주)				
운수창고업	2004 1-4분기 (전체, 주)	2004 4분기 - 2505 2분기 (전체, 주, 대도시)	2005 2-4분기 (전체)	2005 4분기 (전체)	2006 1분기 (전체, 주)	
소매판매	2004 1-4분기 (전체, 주)	2004 4분기 - 2005 2분기 (전체, 주, 대도시, 카운티, 세부지역)	2005 2-4분기(전체 , 주, 대도시)	2005 4분기 (전체)	2005 4분기 (전체, 주, 대도시)	2005 4분기 (전체, 주, 우편번호)
도매판매	2004 1-4분기 (전체, 주)	2004 4분기 - 2005 2분기 (전체, 주, 대도시, 카운티, 세부지역)	2005 2-4분기(전체 , 주, 대도시)	2005 4분기 (전체)	2005 4분기 (전체, 주, 대도시)	
정보	2004 1-4분기 (전체, 주)	2004 4분기 - 2005 2분기 (전체, 주, 대도시, 카운티, 세부지역)	2005 2-4분기(전체)	2005 4분기 (전체)	2006 1분기 (전체, 주)	2006 2분기 (전체, 주, 우편번호)
금융보험	2004 1-4분기 (전체, 주)	2004 4분기 - 2005 2분기 (전체, 주, 대도시)	2005 2-4분기(전체)	2005 4분기 (전체)	2006 1분기 (전체, 주)	

제3절 조사표의 구성

1. 개요

- 정규 우편 조사 대상 업체는 정규 조사표와 조직 관련 조사표의 두 가지 양식을 기입하나 일부 소규모 업체는 약식 조사표만을 작성하기도 함
 - 약식 조사표 (Classification Form) : 소규모 기업체 중 행정 자료를 통해서 충분한 산업분류가 곤란한 경우 발송되며 대개의 경우 약식 조사표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지면 추가적인 조사가 없음
 - 정규 조사표 (Regular Form) : 사업체의 세부적인 경제 활동의 내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정규 조사표임
 - 센서스국이 사전에 확보하고 있는 명부에 따라 각 사업체에 세부 산업분류에 따른 고유 조사표를 발송하며 해당 조사표에 답변하여 반송
 - 잘못 분류된 조사표가 왔을 경우는 조사번호 1~7 그리고 조사번호 29, 30번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면 되며 조사번호 29번 밑의 기타 사항란에 산업 종류 등 세부정보를 기록하여 반송하면 됨
 - 조직 관련 조사표 (Report of Organization) : 조사 대상기업이 소유하고 있거나 피소유되어 있는가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설문
 - 기존에 파악된 자회사 관련 정보의 확인 및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설문

2. 약식 조사표 (Classification Form) - <부록 1>

- 양식 NC-99023 : 주로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설문
 - 조사번호 1 (고용자 고유번호) : 고용자등록번호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조사

- 조사번호 2 (사업체 위치) : 사업체의 주소 조사
- 조사번호 3 (파견 근로자) : 파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가에 대해 조사
- 조사번호 4 (산업 분류) : 미국의 산업분류를 객관식으로 나열하여 해당 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조사번호 5 (고객 분류) : 고객이 일반 소비자인지, 다른 소매/도매업자인지에 대해서 조사
- 조사번호 6 (매출, 출하, 수입) : 수입원과 전체에서의 비중을 설문
- 조사번호 7 (기타 사항) : 기타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기록
- 조사번호 8 (응답자 확인) : 응답자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

☐ 양식 NC-99026 : 주로 건설,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설문

- 조사번호 1 (고용자 고유번호) : 고용자등록번호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조사
- 조사번호 2 (사업체 위치) : 사업체의 주소 조사
- 조사번호 3 (산업 분류) : 구체적인 산업 분류에 대해서 기록하도록 함
- 조사번호 8 (응답자 확인) : 조사 4~7은 없음

☐ 일부 산업은 별도의 약식 양식을 가지고 있음

☐ 약식 설문 대상의 경우 추가적인 설문은 없으나 제조업의 경우는 일부 추가 조사가 있음

3. 일반 조사표 - <부록 2>¹⁾

☐ 일반 조사의 개요

- 미국의 센서스는 5-digit 산업분류별로 별도의 조사표를 가지고 있으며 소

1) 철강산업의 경우를 수록

유구조 등과 관련한 추가적인 조사표가 있음

- 경제 센서스는 고용, 인건비, 생산 또는 수입, 자산·지출·재고, 비용, 그리고 기타 산업별로 부여된 특별한 조사항목의 총 6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조사항목의 내용은 첫째 제조업, 건설, 광업과 둘째 기타 서비스업의 크게 두가지 부류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음
- 고용 : 전체 고용 근로자의 수를 조사하고 2002년부터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별도 항목을 설정함
 - 그러나 제조업, 건설, 광업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별도조사와 노동 시간에 대한 조사를 추가함
- 인건비 : 전체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조사하고 2002년부터는 계약근로자에 대한 별도 항목을 설정함
 - 그러나 제조업, 건설, 광업의 경우 복지 관련 비용과 같은 부가 인건비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음
- 생산 또는 수입 : 총 매출 또는 수입과 더불어 세부 제품 또는 서비스별 내역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특히 2002년부터는 전자 상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진 수입에 대해서 조사
 - 건설산업의 경우는 공사가 수행된 건물의 종류를 조사
 - 서비스 업종의 경우 소비자의 종류, 판매의 방법, 배송 방법 등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짐
- 자산, 지출, 재고 : 제조업, 건설, 광업의 경우 자산, 지출, 재고, 자본 소비 등에 조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나 서비스업의 경우는 가능한 산업만 일부 조사됨
- 비용 : 제조업, 건설, 광업의 경우는 투입된 원부자재, 연료, 사용된 제조업, 건설, 광업의 경우 자산, 지출, 재고, 자본 소비 등에 조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나 서비스업의 경우는 가능한 산업만 일부 조사됨
- 산업 특별 : 대부분의 산업에 걸쳐 해당 산업 고유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실시

- 2002년 센서스에서는 사업체의 경영 활동 중 외주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문에 대한 조사를 실시

〈표 3-7〉 미국의 경제 센서스 주요 설문 내용

대분류	조사항목 번호	내용	제조업, 광업, 건설업	기타 서비스업
고용	6	총고용자		
	6	생산 또는 건설 근로자	모두 적용	모두 적용
	6	노동시간	모두 적용	
	7	계약 근로자	제조업 광업	모두 적용
인건비	6	전체 인건비	모두 적용	모두 적용
	6	임금	모두 적용	모두 적용
	6	부가 비용	모두 적용	
	7	계약 근로자 인건비	모두 적용	모두 적용
생산 수입	4	총 매출, 출하, 수입 등	모두 적용	모두 적용
	5	전자 상거래	모두 적용	모두 적용
	19	소비자 종류		일부 선택적 적용
	20	판매 방법		일부 선택적 적용
	22	세부 매출, 출하, 수입 등	모두 적용	모두 적용
	23	건축물 종류	건설	
	23	배송		일부 선택적 적용
	23	서비스 수출		일부 선택적 적용
자산 지출 재고	10	재고	모두 적용	일부 선택적 적용
	10	자산, 자본소비	모두 적용	
	13	임대료 비용	모두 적용	
비용	16	광물 자산 비용	광업	
	15	세부 비용	모두 적용	일부 선택적 적용
	16	원부자재 비용	제조업 광업	
	16	연료 비용	광업	
산업 특별	26-28	산업별 특별 내용	일부 선택적 적용	일부 선택적 적용
	28	산업 활동 외주 여부	제조업	일부 선택적 적용

〈표 3-8〉 미국 센서스의 조사항목 번호별 세부 내용(1)

조사항 목번호	항목	내용
1	사업 수행 기간	일년 중 산업활동을 수행한 개월수 조사
2	고용자등록번호	고용자등록번호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조사
3	사업체 위치	사업체의 주소 조사
4	매출, 출하, 수입	연간 수입액 총액을 조사 - 수출액, 다른 국내기업의 중간재를 공급하는 규모, 모든 매출이 단일 산업체의 중간재 공급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조사
5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에 의해 이루어진 수입총액에 대해 조사
6	고용과 급여	5월 12를 포함하는 급여 산정 기간 중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의 수 를 조사 - 파견 근로자는 제외 - 제조업, 건설, 공업은 3월 12일, 5월 12일, 8월 12일, 11월 12일이 포함 된 급여 산정 기간에 대해 각각의 고용 규모를 조사하고 생산직 근로 자의 수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항목 (4개 고용규모의 평균으로 고용 규모 산출) - 제조업, 건설, 공업은 급여 관련 조사항목에서 1/4분기 급여를 생산직 과 기타근로자로 나누어 조사하고 복지 비용 및 노동 시간에 대해서 도 조사함
7	파견 근로자	조사항목 6과 같은 형태의 조사항목을 파견근로자에 대해서 실시
10	재고	후입선출법에 의해 재고를 평가하는가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재고 규모 에 대해 조사 (달러 기준)
11	재고	선입선출법, 평균 비용, 기준 비용 등 다른 기법에 의한 재고 평가 규모 에 대해 조사 (달러 기준)
12	자산, 자본소비, 감가상각	감가상각, 자본 소비 규모에 대해서 조사 - 자본소비 규모에 대해서 1) 자동차 등 운송수단에 관련된 부분, 2) 컴 퓨터 등 자로 처리장비와 관련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
13	임대료	임대료에 대해서 1) 건물에 대한 부분과 2) 기계류에 대한 부분으로 나 누어 조사
14	광산물 관련 비용	광산물에 대한 탐사 및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조사
15	비용 세부 내역	사업체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 그 규 모를 조사
16	원부자재 세부 내 역	제조업 및 광업에서 생산에 필요한 각종 원부자재의 구입 규모를 물량, 금액 기준으로 모두 조사 - 세부산업별로 사용되는 모든 원부자재에 대해 별도의 항목을 사전에 작성하여 배포
17	연료 사용	공업의 생산 활동에 사용된 연료의 물량 및 금액을 조사

〈표 3-8〉 미국 센서스의 조사항목 번호별 세부 내용(2)

조사 항목 번호	항목	내용
18	업종 세부분류	생산, 판매 등 사업체의 경제 활동의 보다 구체적인 종류에 대해 객관 식의 형태로 조사
19	고객 분류	도/소매업에서 조사하며 고객이 일반 소비자인지, 다른 소매/도매업자 인지에 대해서 조사 - 고객의 분류를 해당 산업별로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전체 매출에 서의 비중을 파악
20	판매 방법	도/소매업에서 조사하며 판매 방법을 소매판매의 경우 상점, 전자상거 래, 우편 주문, 전화 주문, 자판기 등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 매출에서의 비중을 조사
21	해당 사업이 지원 한 산업	운수/창고업에서 조사하며 해당 운수 창고업이 지원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 설문
22	판매, 출하, 수입 세부 내역	모든 산업의 설문에 포함되는 조사로서 해당 산업의 세부적인 생산 또 는 서비스 항목에 대해서 판매 또는 수입 규모(불량) 및 금액에 대해 조사
23	건설물 형태	건설 산업에서 조사하며 공사한 건설물의 종류에 대해서 조사
24	배송	도/소매업에서 조사하며 배송을 통한 수입과 발생여부와 그 금액규모 에 대해 조사
26	업종별 특별 조사	업종별로 특별한 주제에 대한 조사 - 건설산업의 경우 건설물의 소유주, 제하청에 의해 수행되는 공사의 비중, 건설물의 위치(주명) 등에 대해 조사 - 철강 산업의 경우 미니밀의 건설 계획의 유무, 가장 먼 운송 거리와 짧은 운송거리를 조사
27	공동 사업	건설산업에서 조사하며 다른 기업 또는 기관과 공동 수주 및 건설활동 을 하는가 여부, 건수, 사업명을 조사하고 공동사업자명 및 주소도 조사
28	사업 활동 외주 여 부	해당 산업의 세부 단계별 경제 활동을 나열하고 그 중 외주에 의해 진 행되는 부분에 대해 조사 - 디자인, 주문, 재고 관리 등의 활동을 해당사업체, 동일 계열내의 다 른 사업체, 다른 기업에서 수행하는지 조사
29	사업 상황	경제 활동을 지속했는지, 일시적 계절적으로 중단하는지, 활동을 중단했 는지(중단 날짜 기록),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했는지(사업자명 및 주소 필요) 등에 대해 조사
30	응답자 확인	전화번호, e-mail 주소, 팩스 번호 등 응답자에 대한 정보를 기록

〈표 3-9〉 미국의 산업별 센서스 조사 항목 비교

조사 번호		제조	건설	광업	운수 창고	소매 판매	도매 판매	정보	금융 보험
1	사업수행 기간	●	●	●	●	●	●	●	●
2	고용자 등록 번호	●	●	●	●	●	●	●	●
3	사업체 위치	●	●	●	●	●	●	●	●
4	매출, 출하, 수입 (총량자료)	●	●	●	●	●	●	●	●
5	전자 상거래 (매출, 출하, 수입)	●	●	●	●	●	●	●	●
6	고용과 급여	●	●	●	●	●	●	●	●
7	파견 근로자 (고용과 급여)	●	●	●	●	●	●	●	●
8	미확인								
9	미확인								
10	재고 (후입선출 기준)	●	●	●	●		●		
11	재고 (기타 기준)	●			●		●		
12	자산, 자본소비, 감가상각	●	●	●					
13	임대료	●	●	●					
14	광산물 관련 비용			●					
15	비용 세부 내역	●	●	●	●		●		
16	원부자재 세부 내역	●		●					
17	연료 사용			●					
18	업종 세부분류	●		●	●	●	●	●	●
19	고객 분류					●	●		
20	판매 방법					●	●		
21	해당 사업이 지원한 산업				●				
22	판매, 출하, 수입 세부 내역	●	●	●	●	●	●	●	●
23	건설물 형태		●						
24	배송					●	●		
25	미확인								
26	업종별 특별 조사	●	●		●	●	●		●
27	공동 사업		●						
28	사업 활동 외주 여부	●	●		●	●	●		
29	사업 상황 (가동, 일시중단 등)	●	●	●	●	●	●	●	●
30	응답자 확인	●	●	●	●	●	●	●	●

주: 음영은 2002년 센서스에 추가된 조사

4. 조직 관련 조사항목 - <부록 3>

가. 조사표 양식

- ☐ 양식 NC-99510과 사실상 하나의 조사표인 NC-99001, NC-99002, NC-99003가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NC-9510의 경우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는 다소 다른 양식을 사용함.
- ☐ NC-99510 : 소유 및 통제 관계에 대해 조사
 - 조사 A : 설문 대상 기업이 ① 다른 국내 기업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되는 경우 ② 다수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대해 조사
 - ①, ②의 경우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 설문 지속
 - 조사 B : 해당기업의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기업명과 주소 그리고 지분의 소유 비중 등을 조사
 - 조사 C :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의 수와 이들 사업체의 명칭과 주소 그리고 고용, 급여, 매출과 관련한 총량기준의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 조사
- ☐ NC-99001~3은 NC-99510의 보다 세부적인 형태의 설문으로 파악됨
 - 조사 1 (NC-99001, 응답자 확인) : 응답자 확인
 - 조사 2 (NC-99001) : 전화번호, e-mail 주소, 팩스 번호 등 응답자에 대한 정보를 기록
 - 조사 3 (NC-99001, 소유권을 가진 국내 기업) : 소유 및 통제권을 가진 기업이 국내 기업일 경우 기업명 주소 지분을 등을 기록
 - 조사 4 (NC-99001, 해외 기업의 소유) : 해외 기업에 대해 10% 이상의 지분을 또는 그와 상응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
 - 조사 5A (NC-99002, 사전에 파악된 사업체에 대한 정보) : 해당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를 기록하고 주소, 고용, 급여 등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

를 파악

- 조사 5B (NC-99003, 사전에 파악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한 정보) : 센서스국에 의해 사전에 파악되지 못한 사업체에 대해 주소, 고용, 급여 등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 및 이전 소유자에 대한 정보 파악

나. 산업분류 55 : 기업 경영 (Management of Companies and Enterprises)

- 센서스의 산업분류(NAICS) 중에는 지주회사나 지역 본사와 같이 기업 경영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체에 대한 분류 코드인 55번 산업이 있음
 - 산업분류 55에 대한 센서스는 ① 지주회사(Holding Company)인 경우와 ② 기업 경영이나 기획 업무를 하는 회사, 자회사, 지역 본사(Corporate, Subsidiary, and Regional Managing Offices)의 2 종류로 나누어 조사함
 - 산업분류 55에 대한 조사는 관련 사업체 모두를 조사하는 전수 조사임
 - 사업체의 소유관계는 반드시 경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사업체의 소유 관계를 모두 파악할 수는 없음
 - 따라서 산업분류 55에 속한 사업체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해당 산업에 대한 일반 조사표와 조직관련 조사표를 작성해야 함

제4절 보고서의 구성

1. 개요

- ☐ 본고에서는 제조업, 건설, 광업, 소매업은 자세한 보고서 구성을 조사한 반면, 교통창고업, 도매업, 정보, 금융보험업은 개략적인 사항을 수록하였음.
- ☐ 본고는 1997년 센서스 보고서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어 2002년 센서스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는 전철의 조사표 관련 내용과는 전자상거래, 파견근로자, 외주 공정 등에서 차이가 날 것임.
- ☐ 광업, 제조업, 건설업과 기타 산업은 보고서의 구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존재함
 - 광업, 제조업, 건설업의 경우는 세부산업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지역별 보고서의 크게 3부류로 나눌 수 있음
 - 제조업의 경우 주제별 보고서의 종류가 요약 보고서, 생산품 보고서, 원자재 보고서, 집중도 보고서 등 4가지로 건설 및 광업에 비해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
 - 기타 산업의 경우 세부 산업별로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으며 대신 주제별 보고서에서 해당 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음
 - 주제별 보고서는 사업체 규모별 보고서, 요약 보고서, 기타 보고서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나 운수 창고업의 경우에는 수입원별 보고서가 추가로 작성됨

〈표 3-10〉 미국 산업별 센서스 비교

	전수 조사 대상	보고서 종류
제조업	-5인미만 사업체 제외 -5~19인 부분적 포함 -20인이상 사업체 모두 포함	산업별 주제별 - 요약, 생산품, 원자재, 집 중도 지역별
건설업	-다수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일지역 사업체 중 대규모인 경우 -나머지는 고용규모별로 4단계로 나누고 큰 규모일수록 더 많은 가중치를 두어 표본 추출	산업별 주제별 - 요약, 지역요약 지역별
광업	-5인이상 사업체	산업별 주제별 - 요약, 생산품, 원자재 지역별
운수창고	-10인이상 사업체	주제별 - 수입원별, 사업체 규모별, 기타, 요약 지역별
소매판매	-10인이상 사업체	주제별 - 상품별, 사업체 규모별, 기타, 요약 지역별
도매판매	-전수 조사	주제별 - 상품별, 사업체 규모별, 기타, 요약 지역별
정보	-10인이상 사업체	주제별 - 상품별, 사업체 규모별, 기타, 요약 지역별
금융 보험	-10인이상 사업체	주제별 - 상품별, 사업체 규모별, 기타, 요약 지역별

2. 산업별 보고서 구성

가. 제조업 : 산업별, 주제별, 지역별 보고서로 크게 분류할 수 있음

(1) 산업별 보고서 : NAICS의 6-digit 세부분류 산업 각각에 대한 보고서

□ 제조업 - 산업별보고서 - 표 1 : 산업자료 총괄

- 해당 제조업 기업체, 사업체, 고용, 임금, 부가가치 등에 대한 미국 전체 기준의 자료
- 세로 : 해당 제조업
- 표양식 : <제조업 A>

산업분류코드	산업명	기업체	사업체	고용		생산직 근로자			부가가치 천\$	비용 천\$	출하액 천\$	자본소비 천\$
				수	급여천\$	수	노동시간 천시간	임금 천\$				

□ 제조업 - 산업별보고서 - 표 2 : 지역별 산업 지표

- 산업별 소재 주별로 총괄 자료
- 세로 : 각각 제조업별로 소재하고 있는 주명을 나열
- 표양식 : <제조업 B>

산업 × 지역	사업체		고용		생산직 근로자			부가가치 천\$	비용 천\$	출하액 천\$	자본소비 천\$
	전체	20인 이상	수	급여천\$	수	노동시간 천시간	임금 천\$				

□ 제조업 - 산업별보고서 - 표 3 : 세부 산업별 지표

- 6-digit 항목별로 아래의 세부조사 항목(a)의 지표를 수록

- 새로 : 제조업 부문에 수록된 세부 조사 항목
- 제조업 세부조사 항목(a)
 - 회사수
 - 사업체수
 - 전체, 1~19명, 12~99명, 100명이상으로 나누어 수록
 - 전체고용
 - 인건비
 - 전체인건비, 급여, 복지비용으로 나누어 수록
 - 생산직 근로자
 - 연평균 고용, 3월 12, 5월 12, 8월 12일, 11월 12일의 고용을 각각 조사
 - 생산직 근로자 노동시간
 - 생산직 근로자 임금
 - 비용
 - 중간재, 재판매(구입 후 가공없이 판매하는 경우), 연료, 전기, 각종 서비스 비용
 - 전기 구입량 (1,000 kWh)
 - 전기 생산량에서 다른 사업체에 판매한량을 차감한 규모 (1,000 kWh)
 - 출하액
 - 재판매액에 대해서도 수록
 - 부가가치
 - 재고 (연초 기준)
 - 완제품재고, 가동중간단계제품 재고, 외부구입 원부자재 재고
 - 재고 (연말 기준)

- 완제품재고, 가동중간단계제품 재고, 외부구입 원부자재 재고
- 총자산의 장부가치 (연초 기준)
- 자본 소비, 건물이나 구조물에 대한 자본소비, 기계 및 장비에 대한 자본 소비, 완전상각 규모
- 총자산의 장부가치 (연말 기준)
- 연중 감가상각 규모
- 임대료
- 건물이나 구조물에 대한 임대료, 기계 및 장비에 대한 임대료
- ※ 이하의 항목은 ASM(Annual Survey of Manufactures)의 샘플에 기초한 자료임. ASM샘플의 총고용과 센서스 샘플의 총고용의 비율로 응답범위 (response coverage rate)도 제시함
- 건물이나 구조물에 대한 수리 서비스 비용
- 기계 및 장비에 대한 수리 서비스 비용
- 통신 서비스 비용
- 법률 서비스 비용
- 회계 서비스 비용
- 광고 서비스 비용
- 소프트웨어 구입 및 자료처리 서비스 비용
- 폐기물 처리 비용

□ 제조업 - 산업별보고서 - 표 4 : 고용 규모별 산업 지표

- 사업체의 고용 규모에 따라 나누어 소개
- 표양식은 <제조업 B>와 동일
- 세로 : 고용 규모 (0~4, 5~9, 10~19, 20~49, 50~99, 100~249, 250~499, 500~999, 1000~2499, 2500~)

□ 제조업 - 산업별보고서 - 표 5 : 생산품 종류별 산업 지표

- 해당 산업에 생산하는 생산품별로 사업체를 재분류하여 자료를 수록
- 표양식은 <제조업 A>와 동일
- 세로 : 생산품 8-digit

□ 제조업 - 산업별보고서 - 표 6 : 생산품 종류별 산업 지표

- 세부 생산품별 기업의 수나 출하규모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
- 세로 : 생산품의 세부분류 : 표 6a

생산품의 세부분류 × 해당 사업체 소재 주 : 표 6b

- 표 6a

산업 분류	생산품	1997				1992			
		출하액 10만불 이상의 기업수	총생산 규모	출하		출하액 10만불 이상의 기업수	총생산 규모		
				물량기준	금액기준 천\$			물량기준	금액기준 천\$

- 표 6b

산업분류	생산품 × 지역	출하액 천\$	
		1997	1992

□ 제조업 - 산업별보고서 - 표 7 : 원자재별 분류

- 해당제조업이 구입한 원자재의 세부분류별 비용을 수록
- 세로 : 원자재의 세부분류

산업분류	원부자재소비	1997		1992	
		물량기준	액수기준	물량기준	액수기준

(2) 주제별 보고서

- 제조업의 주제별보고서는 ① 일반요약보고서 ② 생산품보고서 ③ 원자재보고서 ④ 집중도보고서의 4종류로 구성됨

① 일반요약보고서

□ 제조업 - 주제별보고서 - 일반요약보고서 - 표 1-1a,b,c,d : 제조업 총괄

- 제조업 전체, 분류상변화로 제외되거나 신규로 포함된 부분, 제조업 6-digit까지의 세부분류에 대한 자료를 4개 표로 나누어 수록
- 표양식은 <제조업 A>와 동일
- 세로 : 제조업 6-digit 분류

□ 제조업 - 주제별보고서 - 일반요약보고서 - 표 1-2 : 지역별 제조업 지표

- 각 주별로 제조업을 3-digit까지의 분류에 대한 자료를 수록
- 표양식은 제조업 B와 동일
- 세로 : 미국의 주명 × 제조업 3-digit 분류

□ 제조업 - 주제별보고서 - 일반요약보고서 - 표 1-3 : 세부 제조업 업종별 지표

- 제조업부문에 수록된 세부 조사 항목(a)에 대해 제조업 3-digit 분류에 대한 결과를 수록
- 세로 : 제조업 3-digit분류 × 세부 조사 항목(a)

□ 제조업 - 주제별보고서 - 일반요약보고서 - 표 1-4 : 고용 규모별 지표

- 사업체의 고용 규모별로 나누어 3-digit분류까지 해당 지표를 소개
- 표양식은 <제조업 B>와 동일
- 세로 : 지역(주)명 × 고용 규모 분류(0~4, 5~9, 10~19, 20~49, 50~99, 100~249, 250~499, 500~999, 1000~2499, 2500~)

- 제조업 - 주제별보고서 - 일반요약보고서 - 표 2-1 : 지역별 제조업 지표
 - 각 주별로 제조업 전체에 대한 지표를 수록
 - 표양식은 <제조업 B>와 동일
 - 세로 : 지역(주)명

- 제조업 - 주제별보고서 - 일반요약보고서 - 표 2-2 : 대도시 지역별 제조업 지표
 - 각 대도시 지역별 제조업 전체에 대한 지표를 수록
 - 표양식은 <제조업 B>와 동일
 - 세로 : 대도시 지역명

- 제조업 - 주제별보고서 - 일반요약보고서 - 표 2-3 : 지역별 제조업 세부 지표
 - 주별로 제조업 전체 자료를 제조업 부문에 나타난 세부 항목(a)에 대해 지표를 수록
 - 표양식은 <제조업 B>와 동일
 - 세로 : 세부조사항목(a)

- 제조업 - 주제별보고서 - 일반요약보고서 - 표 3-1 : 평가 방법에 따른 재고 지표
 - 3-digit 분류에 대한 재고 평가 방식에 따른 재고 가치 평가 백분율로 표기
 - 세로 : 제조업 3-digit 분류 × 재고 평가 방식
 - 예)
 - 총 재고
 - 후입선출법 적용 대상
 - 후입선출 이외의 방법의 적용 대상
 - 선입선출법

평균 비용법
 기준 비용법
 기타 비후입선출법

· 보고되지 않은 평가법 적용

· 후입선출법 적용 대상 중 reserve와 value의 대상이 아닌 부분

□ 제조업 - 주제별보고서 - 일반요약보고서 - 표 3-2 : 후입선출(LIFO) 방식에 따른 재고 지표

○ 3-digit 분류에 대해 후입선출방식에 대한 재고 규모 수록

○ 세로 : 제조업 3-digit 분류 × 재고 관련 항목

○ 예)

- 총 재고

· 후입선출법 적용 대상

후입선출 reserve

후입선출 value

· 후입선출 이외의 방법 적용 대상

· 보고되지 않은 방법의 적용 대상

· 후입선출법 적용 대상 중 reserve와 value의 대상이 아닌 부분

□ 제조업 - 주제별보고서 - 일반요약보고서 - 표 3-3 : 소유구조 및 법적 형태 지표

○ 3-digit 분류에 대해 소유 구조 및 법적인 형태에 대한 지표

○ 주식회사 여부, 단일 회사 여부 등이 분류 기준

○ 세로 : 제조업 3-digit 분류 × 기업체의 종류

○ 예)

- 전체

· 소유구조의 형태

단일 사업체 기업

법인

비법인

복수 사업체 기업

법인

비법인

· 법적 형태

법인

비법인

개인소유

합자회사

기타

② 생산품보고서 :

□ 제조업 - 주제별보고서 - 생산품보고서 - 표 1 : 생산품 통계

- 생산품의 미세분류(NAICS의 모든 분류)에 대해서 97년과 92년 자료를 비교하여 수록 (출하 규모, 가치 등)
- 세로 : 모든 생산품 분류

산업 분류	생산품	1997				1992			
		출하액 10만불 이상의 기업수	총생산 규모	출하		출하액 10만불 이상의 기업수	총생산 규모		
				물량기준	금액기준 천\$			물량기준	금액기준 천\$

□ 제조업 - 주제별보고서 - 일반요약보고서 - 표 2 : 지역별 생산품 통계

- 생산품의 7-digit분류에 대해서 출하액을 주별로 수록
- 세로 : 생산품 7-digit 분류 × 지역

산업분류	생산품 × 지역	출하액 천\$	
		1997	1992

③ 원자재보고서

□ 제조업 - 주제별보고서 - 원자재보고서 - 표 1 : 원자재 통계

- 상품의 미세분류(NAICS의 모든 분류)에 대해서 원자재 구입 내역을 97년과 92년 자료를 비교하여 수록 (분량과 비용)
- 세로 : 상품 미세분류

산업분류	원자재 미세분류	출하액 천\$	
		1997	1992

④ 집중도보고서

□ 제조업 - 주제별보고서 - 원자재보고서 - 표 1 : 집중도 총괄

-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라 자료를 수록
- 세로 : 부가가치 순위 상위 50, 51~100, 101~150, 151~200, 201 이상

부가가치규모에 따른 기업체 분류	총고용	급여	생산직근로자			부가가치	비용	출하액	자본소비
			전체	노동시간	임금				

□ 제조업 - 주제별보고서 - 원자재보고서 - 표 2 : 산업별 출하액 집중도 보고서

- 제조업 6-digit산업의 출하액에 대해 집중도를 수록
- 세로 : 제조업 6-digit 분류

산업분류	산업명	기업체	출하액	출하규모별 분류				허핀달-허쉬 만 지수
				상위 4개	상위 8개	상위 20개	상위 50개	

□ 제조업 - 주제별보고서 - 원자재보고서 - 표 3 : 산업별 부가가치 집중도 보고서

- 제조업 6-digit산업의 부가가치에 대해 집중도를 수록

○ 세로 : 제조업 6-digit 분류

산업분류	산업명	기업체	부가가치액	부가가치 규모별 분류				허핀달-허쉬 만 지수
				상위 4개	상위 8개	상위 20개	상위 50개	

(3) 지역별 보고서 : 미국 50개 주에 대해 보고서가 있음

□ 제조업 - 주제별보고서 - 표 1 : 산업별 자료

- 해당 주의 산업 분류 6-digit의 분류에 대해 지표를 소개
- 표양식은 <제조업 B>와 동일
- 세로 : 제조업 6-digit 분류

□ 제조업 - 주제별보고서 - 표 2 : 대도시 지역별 산업 자료

- 주내의 대도시 지역별로 산업 분류 6-digit의 분류에 대해 지표를 소개
- 표양식은 <제조업 B>와 동일
- 세로 : 해당 주내 대도시 지역 × 제조업 6-digit 분류

□ 제조업 - 주제별보고서 - 표 3 : 카운티별 산업 자료

- 주내의 카운티별로 산업 분류 6-digit의 분류에 대해 지표를 소개
- 표양식은 <제조업 B>와 동일
- 세로 : 해당 주내 카운티 지역 × 제조업 6-digit 분류

□ 제조업 - 주제별보고서 - 표 4 : 세부지역별 산업 자료

- 주내의 세부지역별로 산업 분류 6-digit의 분류에 대해 지표를 소개하나 일부 세부지역의 경우 제조업 전체에 대해 소개
- 표양식은 <제조업 B>와 동일
- 세로 : 해당 주내 세부지역 지역 × 제조업 6-digit 분류

□ 제조업 - 주제별보고서 - 표 7 : 제조업 세부 지표

- 해당 주의 제조업 전체 자료를 제조업 부문에 나타난 세부 항목에 대해 지표를 수록
- 세로 : 세부 조사 항목(a)

나. 건설

(1) 산업별 보고서 : NAICS의 6-digit 세부분류 산업 각각에 대한 보고서

□ 건설 - 산업별 보고서 - 표 1 : 산업자료 총괄

- 해당 산업(6-digit 분류)에 대한 사업체, 고용, 부가가치 등에 대한 자료 수록
- 표양식 : <건설 A>

산업분류	산업명	사업체수	총고용	급여	총공사규모	순공사규모	부가가치	비용	자본소비
------	-----	------	-----	----	-------	-------	------	----	------

□ 건설 - 산업별 보고서 - 표 2 : 지역별 고용 지표

- 해당 산업이 소재한 주별로 고용 관련 지표를 수록
- 표양식 : <건설 B>

지역	사업체	고용		건설인력				급여		상대표준 편차
		전체	건설인력	1-3월	4-6월	7-9월	10-12월	전체근로자	건설 근로자	

주: 음영은 상대표준편차 산출 대상이며 상대표준오차는 추정치와 이론적으로 완전한 샘플로부터 나오는 결과 사이의 차이로부터 산출

□ 건설 - 산업별 보고서 - 표 3 : 지역별 일반 지표

- 해당 산업에 대하여 주별로 건설의 일반 지표를 수록

○ 표양식 : <건설 >

지역	총공사규모	순공사규모	부가가치	비용	하청	임대료	건설수비 (토지취득)	연말기준 자산의 장부가치	상대표준 편차
----	-------	-------	------	----	----	-----	----------------	---------------------	------------

주: 상동

□ 건설 - 산업별 보고서 - 표 4 : 세부 지표

- 해당 산업에 대해 건설산업 세부 항목에 대한 지표를 수록
- 건설산업의 세부조사항목 : 6digit 산업분류 세부 조사 항목 (B)
 - 사업체명
 - 총고용
 - 연평균 건설인력고용, 3월 12, 5월 12, 8월 12일, 11월 12일의 고용을 각각 조사
 - 연평균 고용, 3월 12, 5월 12, 8월 12일, 11월 12일의 고용을 각각 조사
 - 급여
 - 건설 인력 급여
 - 기타 인력 급여
 - 전체 고용인력의 1/4분기 급여
 - 전체 고용인력의 보직 비용
 - 법적으로 부과되는 비용
 - 자발적 비용
 - 총사업규모
 - 총 공사규모 (금액기준)
 - 하청에 의한 공사 규모
 - 기타 사업 수입

- 순공사 가치
- 부가가치
- 비용
 - 원부자재 비용
 - 하청 비용
 - 연료비용
 - 전기, 가스, 석유류(교통 및 비교통용으로 분리), 기타 연료
- 임대료
 - 기계 및 장비 임대료
 - 건물 임대료
- 서비스 구입 비용
 - 통신비
 - 건물 및 구조물 수리비
 - 기계 및 장비 수리비
- 총 공사 규모 (금액 기준)
 - 공공 건설
 - 연방정부 공사, 지방 정부 공사
 - 민간 건설
- 자산 가치 (연초 기준)
 - 토지를 제외한 자본 소비
 - 자산의 처분
- 자산 가치 (연말 기준)
- 연간 감가상각 규모

-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의 수
-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의 공사 규모
 - 1997년말 원부자재 재고
 - 1992년말 원부자재 재고
-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체의 수
-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체의 공사 규모
- 재고를 보고하지 않은 사업체의 수
- 재고를 보고하지 않은 사업체의 공사 규모

□ 건설 - 산업별 보고서 - 표 5 : 고용 규모별 지표

- 사업체의 고용 규모(0~4, 5~9, 10~19, 20~49, 50~99, 100~249, 250~499, 500~999, 1000~2499, 2500~)으로 나누어 소개
- 표양식 : <건설 D>

□ 건설 - 산업별 보고서 - 표 6 : 건설 규모별 지표

- 사업체의 건설 규모 가치에 따라 자료를 소개
- 표 형식 : <건설 D>

□ 건설 - 산업별 보고서 - 표 7 : 건설물 종류별 건설 규모 지표

- 건설물의 종류별로 해당 산업의 건설 규모 관련 지표 수록
- 표양식 : <건설 E>

건설물 종류	건설 규모				상대표준편차
	전체	신축 건설	중축 및 개조	유지 및 수리	

주 : 상등

고용규모 별 분류	사업채수	고용규모	급여	사업규모	공사 규모	순공사 규모	부가가치	원부자재 비용	하청비용	상대표준 편차
--------------	------	------	----	------	----------	-----------	------	------------	------	------------

□ 건설 - 산업별 보고서 - 표 8 : 건설물 종류별 사업 비율 지표

- 건설물의 종류별로 해당 산업에 어느 비율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를 수록
- 표양식 : <건설 F>

건설물 종류	사업채수	고용규모	급여	공사규모		순공사규모	부가가치	하청비용	상대표준 편차
				전체	특수 건물				

주: 상동

□ 건설 - 산업별 보고서 - 표 9 : 세부 사업 종류별 지표

- 해당 산업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업 형태에 따라 가치를 평가한 자료를 수록
- 표양식 : <건설 G>

사업의 형태	사업 규모	상대표준편차
--------	-------	--------

□ 건설 - 산업별 보고서 - 표 10 : 세부 사업 종류별 사업 비율 지표

- 표 9와 표 8이 결합된 형태로서 9의 세부 사업 종류에 대해 어느 비율과 사업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지표를 수록
- 표 양식 : <건설 F>

□ 건설 - 산업별 보고서 - 표 11 : 지역별 지표

- 해당산업에 관한 지표를 주별로 수록

○ 표양식 : 건설 H

주명	공사규모	해당주의 사업체에 의한 공사	공사규모	다른 주의 사업체에 의한 공사	공사규모	보고되지 않은 사업체에 의한 공사		상태표준편차
		건수		건수		건수	공사규모	

(2) 주제별 보고서 : 건설업의 주제별보고서는 ① 요약보고서 ② 지역보고서의 2종류로 구성됨

① 일반요약보고서 :

□ 건설 - 주제별 보고서 - 일반요약보고서 - 표 1 : 산업자료 총괄

- 건설 산업의 6-digit 분류 각각에 대한 사업체, 고용, 부가가치 등의 자료를 수록
- 표양식 : <건설 A>

□ 건설 - 주제별 보고서 - 일반요약보고서 - 표 2 : 산업별 고용 지표

- 건설 산업의 6-digit 분류에 대한 고용 관련 지표를 수록
- 표양식 : <건설 B>

□ 건설 - 주제별 보고서 - 일반요약보고서 - 표 3 : 산업별 일반 지표

- 건설 산업의 6-digit 분류에 대한 건설의 일반 지표를 수록
- 표양식 : <건설 C>

□ 건설 - 주제별 보고서 - 일반요약보고서 - 표 4 : 세부 지표

- 건설 산업 3-digit 분류에 대해 건설 산업 세부 항목(β)에 대한 지표를 수록

□ 건설 - 주제별 보고서 - 일반요약보고서 - 표 5 : 고용 규모별 지표

- 3-digit 분류에 대해 사업체의 고용 규모(0~4, 5~9, 10~19, 20~49, 50~99, 100~249, 250~499, 500~999, 1000~2499, 2500~)으로 나누어 소개

- 표양식 : <건설 D>

☐ 건설 - 주제별 보고서 - 일반요약보고서 - 표 6 : 건설 규모별 지표

- 3-digit 분류에 대해서 사업체의 건설 규모 가치에 따라 자료를 소개
- 표 형식 : <건설 D>

☐ 건설 - 주제별 보고서 - 일반요약보고서 - 표 7 : 건설물 종류별 건설 규모 지표

- 3-digit 분류에 대해서 건설물의 종류별로 해당 산업의 건설 규모 관련 지표 수록
- 표양식 : <건설 E>

☐ 건설 - 주제별 보고서 - 일반요약보고서 - 표 8 : 세부 사업 종류별 지표

- 3-digit 건설산업 분류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사업 형태에 따라 가치를 평가한 자료를 수록
- 표양식 : <건설 G>

☐ 건설 - 주제별 보고서 - 일반요약보고서 - 표 9 : 지역별 지표

- 3-digit 분류까지 지표를 주별로 수록
- 표양식 : <건설 H>

☐ 건설 - 주제별 보고서 - 일반요약보고서 - 표 10 : 세부 사업 종류별 사업 비율 지표

- 표 7과 표 8이 결합된 형태로서 8의 세부 사업 종류에 대해 어느 비율과 사업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지표를 수록
- 표 양식 : <건설 F>

② 지역보고서

☐ 건설 - 주제별 보고서 - 지역보고서 - 표 1 : 지역별 고용 지표

- 건설 전체에 대한 주별로 고용 관련 지표를 수록
 - 표양식 : <건설 B>
- ☐ 설 - 주제별 보고서 - 지역보고서 - 표 2 : 지역별 일반 지표
- 건설 전체에 대해서 주별로 건설의 일반 지표를 수록
 - 표양식 : <건설 C>
- ☐ 건설 - 주제별 보고서 - 지역보고서 - 표 3 : 세부 지표
- 건설 전체에 대해 건설 산업 세부 항목(B)에 대한 지표를 지역별(북동부, 남부, 중서부 등)로 수록
- ☐ 건설 - 주제별 보고서 - 지역보고서 - 표 4 : 고용 규모별 지표
- 건설 전체를 사업체의 고용 규모(0~4, 5~9, 10~19, 20~49, 50~99, 100~249, 250~499, 500~999, 1000~2499, 2500~)으로 나누어 소개
 - 표양식 : <건설 D>
- ☐ 건설 - 주제별 보고서 - 지역보고서 - 표 5 : 건설 규모별 지표
- 건설전체를 사업체의 건설 규모 가치에 따라 자료를 소개
 - 표 형식 : <건설 D>
- ☐ 건설 - 주제별 보고서 - 지역보고서 - 표 6 : 건설 현장 지역별 지표
- 건설산업이 이루어진 현장 지역(주)별로 건설 규모 자료를 수록
 - 표양식 : <건설 G>
- ☐ 건설 - 주제별 보고서 - 지역보고서 - 표 7 : 건설물 종류별 지역별 지표
- 건설물의 종류별로 미국의 지역(중서부, 동북부, 남부 등)별 자료를 수록
 - 표양식 : <건설 E>

- 건설 - 주제별 보고서 - 지역보고서 - 표 8 : 세부 사업 종류별 지역별 지표
 - 해당 산업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업 형태에 따라 가치를 평가한 자료를 지역(중서부, 동북부, 남부 등)별로 수록
 - 표양식 : <건설 G>

(3) 지역별 보고서 : 미국 50개 주에 대해 보고서가 있음

- 건설 - 지역별 보고서 - 표 1 : 산업별 고용 지표
 - 해당 주 건설 6-digit 분류에 대한 고용 지표를 수록
 - 표양식 : <건설 B>
- 건설 - 지역별 보고서 - 표 2 : 산업별 일반 지표
 - 건설 6-digit에 대한 건설 산업 일반 지표를 수록
 - 표양식 : <건설 C>
- 건설 - 지역별 보고서 - 표 3 : 세부 지표
 - 해당 주의 건설 전체에 대해 건설 산업 세부 조사 항목(β)에 대한 지표를 수록
- 건설 - 지역별 보고서 - 표 4 : 고용 규모별 지표
 - 해당 주의 건설 전체를 사업체의 고용 규모(0~4, 5~9, 10~19, 20~49, 50~99, 100~249, 250~499, 500~999, 1000~2499, 2500~)으로 나누어 소개
 - 표양식 : <건설 D>
- 건설 - 지역별 보고서 - 표 5 : 건설 규모별 지표
 - 해당 주의 건설전체를 사업체의 건설 규모 가치에 따라 자료를 소개
 - 표 형식 : <건설 D>

□ 건설 - 지역별 보고서 - 표 6 : 건설 현장 지역별 지표

- 해당 주의 건설 사업체가 건설산업을 수행한 현장 지역(주)별로 건설 규모 자료를 수록
- 표양식 : <건설 G>

□ 건설 - 지역별 보고서 - 표 7 : 건설물 종류별 지역별 지표

- 해당 주 사업체가 수행한 건설물의 종류별로 건설 규모를 수록
- 표양식 : <건설 E>

□ 건설 - 지역별 보고서 - 표 8 : 세부 사업 종류별 지역별 지표

- 해당 주의 건설 관련 세부적인 사업 형태에 따라 가치를 평가한 자료를 수록
- 표양식 : <건설 G>

다. 광업

(1) 산업별 보고서 : NAICS의 6-digit 세부분류 산업 각각에 대한 보고서

□ 광업 - 산업별 보고서 - 표 1 : 산업자료 총괄

- 해당 산업(6-digit 분류)에 대한 기업체, 사업체, 고용, 임금, 부가가치 등에 대한 미국 전체 기준의 자료
- 표양식 : <광업 A>

산업분류코드	산업명	기업체	사업체	고용		생산직 근로자			부가가치 천\$	비용 천\$	출하액 천\$	자본소비 천\$
				수	급여천\$	수	노동시간 천\$	임금 천\$				

□ 광업 - 산업별 보고서 - 표 2 : 지역별 산업 지표

○ 해당 산업이 소재한 주별로 자료를 수록

○ 표양식 : <광업 B>

산업 × 지역	사업체		고용		생산직 근로자			부가가치 천\$	비용 천\$	출하액 천\$	자본소 비 천\$
	전체	20인 이상	수	급여천\$	수	노동시간 천시간	임금 천\$				

□ 광업 - 산업별 보고서 - 표 3 : 세부 산업별 지표

○ 광업 부문에 수록된 세부 조사 항목(v)에 대해 해당 광업의 결과를 수록

- 회사수

- 사업체수

· 전체, 1~19명, 12~99명, 100명이상으로 나누어 수록

- 전체고용 (5월12일 기준 고용)

- 인건비

· 전체인건비, 급여, 복지비용으로 나누어 수록

- 생산직 근로자 (생산, 개발, 탐사)

· 연평균 고용, 3월 12, 5월 12, 8월 12일, 11월 12일의 고용을 각각 조사

- 생산직 근로자 노동시간

- 생산직 근로자 임금

- 비용

· 중간재, 재판매(구입 후 가공없이 판매하는 경우), 연료, 전기, 각종 서비스 비용

- 전기 구입량 (1,000 kWh)

- 전기 생산량에서 다른 사업체에 판매한 양을 차감한 규모 (1,000 kWh)

- 통신관련 서비스 비용

- 출하액에서 재판매액(구입후 가공없이 판매)을 차감한 금액
- 부가가치
- 재고 (1996년 말)
 - 광물, 원유, 액화 천연가스 재고
 - 원부자재, 연료 재고
- 재고 (1997년 말)
 - 광물, 원유, 액화 천연가스 재고
 - 원부자재, 연료 재고
- 총자산의 장부가치 (연초 기준)
 - 광산과 채굴권을 제외한 자본소비
 - 건물, 구조물, 기계, 장비에 대한 자본소비
 - 광물 탐사 및 개발을 위한 자본소비
 - 광산과 채굴권에 대한 자본소비
 - 연간 자산의 삭감액
- 총자산의 장부가치 (연말 기준)
- 연중 감가상각 규모
- 임대료
 - 건물이나 구조물에 대한 임대료, 기계 및 장비에 대한 임대료
- 리스 비용
- 광물 탐사, 광산, 채굴권 관련 지급

□ 광업 - 산업별 보고서 - 표 4 : 고용 규모별 산업 지표

- 사업체의 고용 규모(0~4, 5~9, 10~19, 20~49, 50~99, 100~249, 250~499, 500~999, 1000~2499, 2500~)으로 나누어 소개

- 표양식은 광업 B와 동일

□ 광업 - 산업별 보고서 - 표 5 : 공종 형태별 산업 지표

- 해당 산업을 광산만 있는 경우, 광산과 공장이 함께 있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지표를 수록

- 표양식 : <광업 >

공종 형태	사업체		고용		생산, 개발, 탐사 인력			부가가치
	전체	고용 20인 이상	급여 (3월 12일기준)	연간 급여	급여 (3월 12일기준)	연간 노동시간	연간 임금	

□ 광업 - 산업별 보고서 - 표 6 : 생산품 종류별 산업 지표

- 해당 산업에 생산하는 모든 생산품 코드 별로 출하 규모 지표를 수록

산업분류	생산품/ 서비스명	1997			1992		
		전체 생산	생산품출하 및 서비스 수입		전체 생산	생산품출하 및 서비스 수입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광업 - 산업별 보고서 - 표 7 : 비용 지표

- 해당 산업이 구입한 원자재, 연료에 대한 모든 상품 코드에 대한 비용 지표를 작성

산업분류	연료 소비	1997		1992	
		물량	인도 비용	물량	인도 비용

(2) 주제별 보고서 : 광업업의 주제별보고서는 ① 요약보고서 ② 생산품 보고서 ③ 원자재보고서의 3종류로 구성됨

① 요약보고서

- 광업 - 주제별 보고서 - 요약보고서 - 표 1-1 : 광업 총괄
 - 광업 6-digit 까지의 세부분류에 대한 자료를 수록
 - 표양식 : <광업 A>
- 광업 - 주제별 보고서 - 요약보고서 - 표 1-2 : 지역별 광업 지표
 - 각 주별로 광업을 3-digit까지의 분류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였으며 광업의 경우 지역에서 주에 포함되지 않는 해안 지역이 있음
 - 표양식 : <광업 B>
- 광업 - 주제별 보고서 - 요약보고서 - 표 1-3 : 세부 광업 업종별 지표
 - 광업부문에 수록된 세부 조사 항목(v)에 대해 광업 3-digit 분류에 대한 결과를 수록
- 광업 - 주제별 보고서 - 요약보고서 - 표 1-4 : 고용 규모별 지표
 - 사업체의 고용 규모(0~4, 5~9, 10~19, 20~49, 50~99, 100~249, 250~499, 500~999, 1000~2499, 2500~)으로 나누어 3-digit분류까지 해당 지표를 소개
 - 표양식 : <광업 B>
- 광업 - 주제별 보고서 - 요약보고서 - 표 1-5 : 공종 형태별 광업 지표
 - 광업 산업 분류 3-digit에 대해서 광산만 영위하는지 광산과 공장을 동시에 영위하는지 등의 분류에 따라 지표를 수록
 - 표양식 : <광업 C>
- 광업 - 주제별 보고서 - 요약보고서 - 표 2-1 : 지역별 광업 세부 지표
 - 주별로 광업 전체 자료를 광업의 세부 조사 항목(v)에 대해 지표를 수록
- 광업 - 주제별 보고서 - 요약보고서 - 표 2-2 : 공종 형태별 광업 지표

- 광업 전체에 대해서 광산만 영위하는지 광산과 공장을 동시에 영위하든지 등의 분류에 따라 지역별 (주별, 해안지역)지표를 수록
 - 표양식 : <광업 >
- 광업 - 주제별 보고서 - 요약보고서 - 표 3-1 : 후입선출(LIFO) 방식에 따른 재고 지표
- 3-digit 분류에 대해 후입 선출 방식에 대한 재고 규모 수록
 - 형식은 제조업의 경우와 동일
 - 예)
 - 총 재고
 - 후입선출법 적용 대상
 - 후입선출 reserve
 - 후입선출 value
 - 후입선출 이외의 방법 적용 대상
 - 보고되지 않은 방법의 적용 대상
 - 후입선출법 적용 대상 중 reserve와 value의 대상이 아닌 부분
- 광업 - 주제별 보고서 - 요약보고서 - 표 3-2 : 소유구조 및 법적 형태 지표
- 3-digit 분류에 대해 소유 구조 및 법적인 형태에 대한 지표
 - 주식 회사 여부, 단일 회사 여부 등이 분류 기준
 - 형식)
 - 전체
 - 소유구조의 형태
 - 단일 사업체 기업
 - 법인
 - 비법인
 - 복수 사업체 기업

법인
비법인

· 법적 형태
법인
비법인
개인소유
합자회사
기타

② 생산품보고서 :

☐ 광업 - 주제별 보고서 - 생산품보고서 - 표 1 : 생산품 통계

- 생산품 또는 서비스의 미세분류(NAICS의 모든 분류)에 대해서 97년과 92년 자료를 비교하여 수록 (출하 규모, 가치 등)
- 양식은 제조업의 경우와 거의 동일

산업분류	생산품/서비스명	1997			1992		
		전체 생산	생산품출하 및 서비스 수입		전체 생산	생산품출하 및 서비스 수입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광업 - 주제별 보고서 - 생산품보고서 - 표 2 : 지역별 출하/수입 통계

- 생산품의 7-digit분류에 대해서 출하액을 주별별로 나누어 수록

산업분류코드	생산품 7-digit × 주	출하액	
		1997	1992

③ 원자재보고서 :

☐ 광업 - 주제별 보고서 - 원자재보고서 - 표 1 : 원자재 통계

- 상품의 미세분류(NAICS의 모든 분류)에 대해서 원자재의 형태로 구입된 상품을 97년과 92년 자료를 비교하여 수록 (분량과 비용)

산업분류	산업 원자재 소비	1997		1992	
		물량	인도 비용	물량	인도 비용

(3) 지역별 보고서 : 미국 50개 주와 주에 속하지 않는 해안 지역 대한 보고서가 있으며 주로 광업 전체에 대해 자료를 수록

☐ 광업 - 지역별보고서 - 표 1 : 산업별 자료

- 해당 주의 산업 분류 6-digit의 분류에 대해 지표를 소개
- 표양식은 <광업 B>

☐ 광업 - 지역별보고서 - 표 2 : 광업 세부 지표

- 해당 주의 광업 전체 자료를 광업 부문에 나타난 세부 항목(v)에 대해 지표를 수록

☐ 광업 - 지역별보고서 - 표 3 : 공중 형태별 광업 지표

- 광업 전체에 대해서 광산만 영위하는지 광산과 공장을 동시에 영위하는지 등의 분류에 따라 지표를 수록
- 표양식 : <광업 C>

라. 운수창고업

- 지역별 보고서 : 주별로 별도의 보고서가 있으며 주내 하부 지역으로 도시 또는 광역도시에 대한 별도의 보고서도 작성됨
- 수입원 보고서 : 사업체의 영업 종류별로 수입원에 대한 미국 전체 수준의 자료를 포함하는 보고서가 있음
- 사업체 및 기업 규모 보고서 : 미국 전체 기준에서 수입 규모, 고용 규모, 사업체의 법적 형태 등에 대한 보고서
- 기타 산업별로 특이한 사항에 대한 자료로 구성된 보고서가 있음

마. 소매판매업

□ 소매판매업 자료는 주제별 보고서와 지역별 보고서로 크게 나누어 집

(1) 주제별 보고서 : ① 상품별, ② 사업체 및 기업별, ③ 기타 주제, ④ 요약 보고서가 있음

① 상품별 보고서

□ 소매판매업 - 주제별보고서 - 상품별보고서 - 표 1 : 사업종류별 판매상품별 지표

- 소매판매업 종류 7-digit별로 판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체 수 해당 상품의 전체에서의 비중 등을 소개
- 세로 : 소매판매업 종류 × 판매상품 종류

산업부류 코드	소매 판매업 종류 × 판매 상품	판매 사업체		매장 매출			판매 상품의 분류에서 대해서 보고한 사업체의 전체에서의 매출 비중
		업체수	매출	규모	비중		
					전체 매출에서의 비중	해당 소매 판매업에 서 해당 상품의 매출 비중	

□ 소매판매업 - 주제별보고서 - 상품별보고서 - 표 2 : 판매상품별 사업종류별 지표

- 판매 상품의 분류를 기초로 소매판매업 사업종류별로 해당 판매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체의 수, 판매규모 등을 소개
- 세로 : 판매상품의 종류 × 소매판매업 종류

분류코드	상품 × 소매판매업 종류	사업체	매출	판매 상품 구분별 해당 소매업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
------	------------------	-----	----	-------------------------------------

② 사업체별 보고서

□ 소매판매업 - 주제별보고서 - 사업체별보고서 - 표 1 : 사업체 크기별 지표

- 소매판매업 종류 7-digit별로 사업체의 매출규모 별 사업체수, 급여 등을 소개
- 세로 : 소매판매업 종류 × 사업체 매출 규모별 구분

분류코드	산업 × 매출 규모별 분류	사업체	매출	급여	1/4분기 급여	3월 12일 기준 고용
------	-------------------	-----	----	----	----------	-----------------

□ 소매판매업 - 주제별보고서 - 사업체별보고서 - 표 2 : 사업체 크기별 지표

- 소매판매업 종류 7-digit별로 사업체의 고용규모 별 사업체수, 급여 등을 소개
- 세로 : 소매판매업 종류 × 고용 규모별 구분

분류코드	산업 × 고용규모별 분류	사업체	매출	급여	1/4분기 급여	3월 12일 기준 고용
------	---------------------	-----	----	----	----------	-----------------

□ 소매판매업 - 주제별보고서 - 사업체별보고서 - 표 3 : 업종별 사업체 수별 지표

- 소매판매업의 업종별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의 수를 기준으로 자료를 소개
- 세로 : 소매판매업 종류 × 사업체의 수
- 표양식

분류코드	소매판매업 종류×보유사 업체의 수별 분류	기업체	사업체	매출	급여	1/4분기 급여	3월 12일 기준 고용
------	---------------------------------	-----	-----	----	----	----------	--------------------

□ 소매판매업 - 주제별보고서 - 사업체별보고서 - 표 4 : 기업 매출 규모별 지표

- 소매판매업 기업의 매출 규모별로 자료를 소개
- 세로 : 소매판매업 종류 × 기업 매출 규모
- 표양식

분류코드	소매판매업 종류×기업 매출 규모별 분류	기업체	사업체	매출	급여	1/4분기 급여	3월 12일 기준 고용
------	--------------------------------	-----	-----	----	----	----------	-----------------

□ 소매판매업 - 주제별보고서 - 사업체별보고서 - 표 5 : 기업 고용 규모별 지표

- 소매판매업 기업의 고용 규모별로 자료를 소개
- 세로 : 소매판매업 종류 × 기업 고용 규모
- 표양식

분류코드	소매판매업 종류×기업 고용 규모별 분류	기업체	사업체	매출	급여	1/4분기 급여	3월 12일 기준 고용
------	--------------------------------	-----	-----	----	----	----------	-----------------

□ 소매판매업 - 주제별보고서 - 사업체별보고서 - 표 6 : 업종별 집중도 지표

- 소매판매업 업종별로 집중도별 자료를 소개
- 세로 : 소매판매업 종류 × 매출상위 4, 8, 20, 50위

분류코드	소매판매업 종류×매출 순위별 분류	사업체	매출		연간급여	1/4분기 급여	3월 12일 기준 고용
			금액	전체에서의 비중			

□ 소매판매업 - 주제별보고서 - 사업체별보고서 - 표 7 : 업종별 사업체 법적 형태별 지표

- 소매판매업 업종별로 사업체의 법적 형태별 자료를 소개

- 세로 : 소매판매업 종류 × 사업체의 법적 형태
- 표양식

분류코드	소매판매업 종류×기업의 법적 분류	사업체	매출		연간급여	1/4분기 급여	3월 12일 기준 고용
			금액	전체에서의 비중			

③ 기타 주제별 보고서

□ 소매판매업 - 주제별보고서 - 기타 주제별보고서 - 표 1 : 업체별 영업면적 지 표

- 소매업체별(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로 사업체의 크기를 소개
- 세로 : 주별 × 소매업체별

분류코드	주 × 소매업체	사업체		매출	실내매장규모		판매면적 당 매출	실내 면적 에서 매장 비중	전체 매출에서 실내 면적을 보고한 사업체의 매출 비중	전체 매출에서 매장을 면적을 보고한 사업체의 매출 비중
		연중 기준(연중 아무 기간이나 영업율 한 경우)	연말기준		전체	판매매장				

□ 소매판매업 - 주제별보고서 - 기타 주제별보고서 - 표 2 : 업체별 영업면적 지 표

- 소매업종분류 7-digit에 대해 고객 종류별 자료를 수록
- 세로 : 소매업종 7-digit 분류

분류코드	소매업종	사업체	매출	매출 비중				
				일반고객(가 계 및 개인)	건설업체	소도매업자	기관 고객에 의 매출	전체 매출에서 고객의 분류를 보고한 사업체들의 매출 비중

④ 요약 보고서

□ 소매판매업 - 주제별보고서 - 요약보고서 - 표 1 : 소매판매업 총괄

- 소매판매업 종류 7-digit별로 요약자료를 소개
- 세로 : 소매판매업 7-digit 분류

분류코드	소매판매업 종류	사업체	매출	급여	1/4분기 급여	3월 12일 기준 고용	비중	
							연방정부 기록으로 부터의 비중	추정치

□ 소매판매업 - 주제별보고서 - 요약보고서 - 표 2 : 업종별 판매상품 지표

- 소매판매업 종류 7-digit별 판매상품별 자료를 소개
- 세로 : 소매판매업 7-digit 분류 × 판매상품

산업분류 코드	소매판매업 종류 × 판매 상품	판매 사업체		매장 매출			판매 상품의 분류에 대해서 보고한 사업체의 전체에서의 매출 비중
		업체수	매출	규모	비중		
					전체 매출에서의 비중	해당 소매판매업에 서 해당 상품의 매출 비중	

□ 소매판매업 - 주제별보고서 - 요약보고서 - 표 3 : 판매상품별 업종 지표

- 판매상품별로 이를 판매하는 소매판매업종류 7-digit 분류에 대한 자료
- 세로 : 판매상품 × 소매판매업 7-digit 분류

분류코드	상품 × 소매판매업 종류	사업체	매출	판매 상품 구분별 해당 소매업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
------	------------------	-----	----	-------------------------------------

□ 소매판매업 - 주제별보고서 - 요약보고서 - 표 4 : 업종별 사업체규모별 지표

- 소매판매업업종별 (7-digit)별 사업체의 규모별로 자료를 소개

○ 세로 : 소매판매업종 × 사업체매출규모별 분류

분류코드	소매판매업 종류×기업 매출 규모별 분류	기업체	사업체	매출	급여	1/4분기 급여	3월 12월 기준 고용
------	--------------------------------	-----	-----	----	----	----------	-----------------

□ 소매판매업 - 주제별보고서 - 요약보고서 - 표 5 : 업종별 고용규모별 지표

○ 소매판매업업종별 (7-digit)별 사업체의 고용규모별로 자료를 소개

○ 세로 : 소매판매업종 × 고용 규모별

○ 표양식은 표 4와 동일

□ 소매판매업 - 주제별보고서 - 요약보고서 - 표 6 : 업종별 사업체 수별 지표

○ 소매판매업업종별 (7-digit)별 기업들의 사업체 수별로 자료를 소개

○ 세로 : 소매판매업종 × 사업체의 수

분류코드	소매판매업 종류×기업 고용 규모별 분류	기업체	사업체	매출	급여	1/4분기 급여	3월 12월 기준 고용
------	--------------------------------	-----	-----	----	----	----------	-----------------

□ 소매판매업 - 주제별보고서 - 요약보고서 - 표 7 : 업종별 집중도별 지표

○ 소매판매업업종별 (7-digit)별 기업들의 상위기업 집중도별로 자료를 소개

○ 세로 : 소매판매업 종류 × 매출상위 4, 8, 20, 50위

분류코드	소매판매업 종류×매출 순위별 분류	사업체	매출		연간급여	1/4분기 급여	3월 12월 기준 고용
			금액	전체에서의 비중			

□ 소매판매업 - 주제별보고서 - 요약보고서 - 표 8 : 지역별 업태별 지표

○ 각 주별로 소매판매업태별로 지표를 소개

- 세로 : 각 주 × 소매판매업태(편의점, 백화점, 슈퍼마켓 등)

분류코드	주 × 소매업태	사업체		매출	실내매장규모		판매면적당 매출	실내매장비중	면적당 매출	전체매출에서 면적을 보고한 사업체의 매출 비중	전체매출에서 면적을 보고한 사업체의 매출 비중
		연중 기준(연중 아무 기간이나 영업울 한 경우)	연말기준		전체	판매매장					

- 소매판매업 - 주제별보고서 - 요약보고서 - 표 9 : 업종별 고객 지표

- 소매판매업종(7-digit)별로 고객 관련 지표를 소개
- 세로 : 소매판매업종

분류코드	소매업종	사업체	매출	매출 비중				
				일반고객(가계 및 개인)	건설업체	소도매업자	기관고객의 매출	전체매출에서 고객 분류를 보고한 사업체들의 매출 비중

(2) 지역별 보고서 : 각 주별로 소매판매업 보고서가 있음

- 소매판매업 - 지역별보고서 - 표 1 : 소매판매업 총괄

- 해당 주의 소매판매업 관련 주요 지표를 소개
- 세로 : 소매판매업종(7-digit)

분류코드	소매판매업 종류	사업체	매출	급여	1/4분기 급여	3월 12일 기준 고용	비중	
							연방정부 기록으로 부터의 비중	추정치

- 소매판매업 - 지역별보고서 - 표 2 : 대도시 지역별 지표

- 해당 주내 대도시 지역별 소매판매업 관련 주요 지표를 소개
- 표양식은 표 1의 경우와 동일
- 세로 : 대도시지역분류 × 소매판매업종(7-digit)

분류코드	대도시지역 × 소매판매업 종류	사업체	매출	급여	1/4분기 급여	3월 12일 기준 고용	비중	
							연방정부 기록으로 부터의 비중	추정치

□ 소매판매업 - 지역별보고서 - 표 3 : 카운티별 지표

- 해당 주내 카운티별 소매판매업 관련 주요 지표를 소개
- 세로 : 해당주 카운티분류 × 소매판매업종(7-digit)
- 표양식

분류코드	카운티 × 소매판매업 종류	사업체	매출	급여	1/4분기 급여	3월 12일 기준 고용	비중	
							연방정부 기록으로 부터의 비중	추정치

□ 소매판매업 - 지역별보고서 - 표 4 : 세부지역별 지표

- 해당 주내 세부지역별 소매판매업 관련 주요 지표를 소개
- 세로 : 해당주 세부지역분류 × 소매판매업종(7-digit)
- 표양식

분류코드	주내 세부지역 분류 × 소매판매업 종류	사업체	매출	급여	1/4분기 급여	3월 12일 기준 고용	비중	
							연방정부 기록으로 부터의 비중	추정치

바. 도매 판매업

- 지역별 보고서 : 미국전체, 주별, 카운티 등 다양하고 세부적인 지역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됨
- 판매 상품 보고서 : 주로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에 대한 자료가 미국 전체 수준, 주별, 대도시 지역별로 자료를 작성한 보고서가 있음
- 사업체 및 기업 규모 보고서 : 미국 전체 기준에서 수입 규모, 고용 규모, 사업체의 법적 형태 등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됨
- 기타 사업 종류, 고객 계층별 판매, 재고 평가 방법,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작성함

사. 정보 산업

- 지역별 보고서 : 주별 도시 카운티 등 다양하고 세부적인 지역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됨
- 수입원 보고서 : 사업체의 영업 종류별로 수입원에 대한 미국 전체 수준의 자료를 포함하는 보고서가 있음
- 사업체 및 기업 규모 보고서 : 미국 전체 기준에서 수입 규모, 고용 규모, 사업체의 법적 형태 등에 대한 보고서
- 기타 산업별로 특이한 사항에 대한 자료로 구성된 보고서가 있음

아. 금융 보험업

- 지역별 보고서 : 각 주별 그리고 미국 전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주별 보고서는 사업별로 사업체수, 수입, 급여, 고용 등 자료를 보고하며 미국 전체 보고서에는 보다 세부적인 자료를 수록함
- 수입원 보고서 : 미국 전체 수준에서 사업체별로 수입원을 보고
- 기업 규모별 보고서 : 미국 전체 수준에 대해 수입 규모, 고용 규모, 사업체의 형태(단일 또는 그룹)에 따른 사업체 자료를 수록

- 기타 보고서 : 기타 사업별 특이 사항에 대한 보고서가 있음

3. 정규 센서스 이외의 보고서

- ☐ 5년에 한번 조사하는 정상적인 센서스 이외에 연간 보고서로서 County Business Patterns가 산업별 사업체수, 고용, 급여에 대한 카운티별 자료를 발표함
- ☐ 산업별로 필요에 따라 센서스 조사에 활용된 표본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다양한 다른 주기의 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함

〈표 3-11〉 센서스조사와 다른 주기의 보고서

			특 징
제조업	Annual Survey of Manufactures	센서스가 없는 4년	58000여 샘플에 의해작성 사업체의 수, 세부 생산품 또는 원자재, 각 주의 지역내 자료는 불포함
	Current Industrial Report	년 분기 월	미국 전체 수준에 대해 조사 일부 지표는 월 또는 분기로 작성
	Shipments, Inventories and Orders (m3)	월	미국 전체수준에서 출하, 재고, 수주를 조 사
건설	Construction Report (Series C30)	월	건설 주체와 상관 없이 모든 신규건설 센서스에서는 포함하지 않는 설계, 엔지니 어링 비용 등도 포함
운수 창고	Transportation Annual Survey (TAS)	년	센서스보다는 조사 대상 지표를 단순화하 여 보고서 작성
소매 판매업	Annual & Monthly Survey	월, 년	센서스보다는 조사 대상 지표를 단순화하 여 보고서 작성
도매 판매업	Annual Survey	년	센서스보다는 조사 대상 지표를 단순화하 여 보고서 작성
정보	Service Annual Survey (SAS)	년	센서스보다는 적은 분류에 기초한 자료 작 성
	Annual Survey of Communication Services (ASCS)	년	센서스보다는 적은 분류에 기초한 자료 작 성

제5절 특징 및 시사점

1. 요약

가. 일반 사항

- ☐ 목적 : 미국의 경제센서스는 미국 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함
- ☐ 활용 :
 - ①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생산 및 물가 지수 등 통계지표 작성
 - ② 정책 입안 및 수행 기관에서 경제 활동 상황을 파악
 - ③ 민간 기업에서 자신의 경영 상태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단
 - ④ 대학, 연구기관, 언론기관 등에서 강의자료, 장기 경제 추세에 대한 연구, 보도용 자료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 연혁 : 미국 센서스는 약 2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
 - 19세기 : 1810년 미국 센서스 조사에서 경제부문이 포함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1850년 조사에는 전담 직원을 둘 정도로 위상이 강화됨
 - 2차 세계대전 이전 : 1902년 센서스국이 발족하였으며 이후 전쟁의 혼란 속에서 정상적인 조사가 어려운 와중에도 조사 대상 산업을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 등으로 확대하는 등 성과가 있었음
 - 2차 세계대전 이후 : 1951년 경제센서스 조사에 컴퓨터가 도입되고 1967년에는 현재의 주기로 통합 경제 센서스가 실시되기로 하였으며 1992년부터는 사실상 전 민간 경제활동을 포괄하게 됨

- 조사 주기 및 방법: 미국의 경우 연방법 13조(Title) 131, 191, 224항(Section)에 의거하여 매5년 1자리수가 2, 7로 끝나는 해를 대상으로 우편 조사에 의해 경제 센서스를 실시함

나. 자료 수집 및 발표

- 표본 : 미국 센서스는 도매업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주로 고용 규모에 따라 전수 조사 대상과 약식 조사 대상으로 분리
 - 제조업, 광업 등은 주로 고용규모 5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 기타 서비스 업종은 10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임
 - 전수 조사 대상에는 일반적으로 정규 센서스 조사표 (Regular Form)와 조직 관련 조사(Report of Organization)이 발송됨
 - 약식 조사 대상은 행정자료를 활용하거나 충분치 않을 경우는 약식조사표 (Classification Form)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짐
- 행정 자료 : 센서스국은 다양한 행정 자료를 이용하여 사전명부작성, 산업분류,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정보 획득 및 센서스 조사 결과 보완 등에 활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 IRS(Internal Revenue Service)를 중심으로 한 연방기관들이 사업체들의 명칭, 사업분류, 수입, 조세, 고용 관련 자료를 지원함으로써 센서스국은 효과적으로 표본 통계 사업체 명부 (Standard Statistical Establishment List)를 작성하거나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정보를 획득함
- 자료 수집 절차 : 산업 분류 조사, 정규 센서스 등을 위한 조사표가 발송되는 우편과 전화를 이용한 후속 권고(follow-up)를 통해 성실한 참여를 유도함
 - 대부분이 4차에 걸친 우편 권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나 복수 사업체 기업 중 대·중규모 기업인 경우에는 전화를 이용한 권고도 동시에 진행됨

- 자료 발표 : 수집된 정보는 자료마다 다른 처리 및 가공 기간 등을 감안하여 3년여에 걸쳐 분산하여 공표됨

다. 조사표의 구성

- 센서스를 위한 조사표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약식 조사표 (Classification Form) : 소규모 기업체 중 행정 자료를 통해서 충분한 산업분류가 곤란한 경우 발송되며 대개의 경우 약식 조사표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지면 추가적인 조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정규 조사표 (Regular Form) : 사업체의 세부적인 경제 활동의 내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정규 조사표임
 - 센서스국이 사전에 확보하고 있는 명부에 따라 각 사업체에 세부 산업분류에 따른 고유 조사표를 발송하며 해당 조사표에 답변하여 반송하면 절차 마무리
 - 조직 관련 조사표 (Report of Organization) : 조사 대상기업이 소유하고 있거나 피소유되어 있는가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설문

라. 보고서 구성

- 보고서의 구성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과 기타 산업은 보고서의 구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존재함
- 광업, 제조업, 건설업의 경우는 세부산업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지역별 보고서의 크게 3부류로 나눌 수 있음
 - 기타 산업의 경우 세부 산업별로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으며 대신 주제별 보고서에서 해당 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음

2. 미국 센서스의 특징

□ 전반적 특징 : 미국은 통합센서스를 우편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우편에 의한 조사인 만큼 철저하고 다양한 기획에 의해 조사가 진행됨

○ 통합센서스 : 일부 산업이 아닌 전체 산업에 대해 통일된 체제 하에 동시에 센서스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타기관 협조 : 사업체 및 기업체에 대한 기초정보를 IRS(Internal Revenue Service) 등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효율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우편 조사 : 우편을 통해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나라인 만큼 센서스조사도 철저히 우편조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보완하기도 함

※ 미국의 경우 우편에 의한 제품 주문, 배송, 지불 등이 우체국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자택의 편지함을 통해서 가능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음

○ 기획 조사 : 일대일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편조사인 만큼 산업별로 응답하기 편리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산업분류가 잘못되었을 때의 지침도 마련하여 중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함

- 분류가 잘못되어 조사표를 지침에 따라 약식으로 작성하게 된 경우 필요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만큼 사실상 사전 명부 조사를 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센서스를 진행하고 있음

□ 조사 항목

○ 기업/사업체 동시 조사 : 센서스 조사시 다른 기업과의 소유 피소유 관계, 다수의 지역에서 존재하는 사업체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체와 기업체 명부를 동시에 조사하고 보완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음

- 센서스 조사에 있어서도 한지역에서 단일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과 다수의 지역에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서로 다른 일정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음

○ 산업별 차별화 : 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 항목의 차이가 크게 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광업/건설산업과 다른 산업사이의 조사항목은 많은 차이가 있음

- 제조업/광업/건설의 경우 산업간의 연관 관계 및 부가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용 및 수익 구조 파악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기타 산업은 부가가치 산출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고객의 종류, 판매 방법 등 경제 활동의 유형을 파악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 특히 산업별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설문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설정하여 조사함으로써 조사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있음
- 최근 동향 반영 : 경제활동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경향을 반영해서 설문 내용을 조정하고 있으며 2002년 센서스의 경우 파견근로자, 전자상거래, 외주에 의한 사업활동 등에 관련한 내용이 추가되었음

□ 조사 기획 및 자료 처리

- 표본 조사 : 도매업을 제외하고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 않으며 5인 이상 또는 10인상 등 산업별로 적절한 표본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조사하고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서는 무작위 추출에 의한 약식 조사를 함으로써 조사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 자료 처리 기간 : 조사가 마무리되어도 약 3년여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자료 처리 및 보고서 발간을 하고 있음
 - 2002년 센서스조사가 사실상 2003년 중반에 마무리됨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2004년부터 200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발표되도록 하고 있음

3. 시사점

□ 미국의 경제센서스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이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기업체/사업체 동시 조사 : 사업체 센서스 조사시 다른 사업체와 소유 및 피소유 관계를 동시에 조사하여 기업체 사업체 조사 및 명부 작성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조사항목 작성시 ① 해당 사업체를 경영 또는 소유하고 있는 기업명 및 주소 그리고 ② 해당 사업체가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다른 기업 또는 사업체 관련 항목을 포함.
- 산업별 차별성 : 조사지에 별도의 항목을 두어 분류된 산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 산업에 국한된 유용한 정보를 조사할 수 있을 것임
 - 본 조사항목은 인쇄상태에서는 공란으로 두고 사전에 산업분류가 파악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산업코드를 컴퓨터가 인쇄할 때 해당 질문이 공란에 인쇄되어 산업별로 별도의 질문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을 것임
- 충분한 자료처리 기간 : 산업별로 조사 항목별로 자료를 처리하고 정리하는 데 요구되는 시간은 다룰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자료 처리 부담을 고려한 적절한 자료 공표시기의 분산이 필요할 것임
 - 일정한 시점에 모든 결과를 동시에 발표하는 형태는 많은 산업을 조사해야 하는 통합 센서스의 경우 매우 어려운 만큼 적절한 발표 시점의 분산이 필요함
- 표본 조사 : 산업별로 전수조사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적절한 표본 선정 기준을 설정하여 조사 역량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개선안이 필요할 것임
 - 전수 조사를 위한 조사 부문에 많은 역량을 투입하기보다는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정합성을 높이는 분석 능력 제고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정부기관간 협조 : 소규모사업체의 경우 사업체 센서스 조사시 다른 사업체와 소유 및 피소유 관계를 동시에 조사하여 기업체 사업체 조사 및 명부 작성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특히 표본조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사전정보가 필요하며 이 경우 국세청 등의 관련 명부만 확보되어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다양한 종류의 통계보고서 발간

- 미국 경제센서스는 지역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등 다양한 종류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통계조사보고서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것이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것임.

제4장 일본의 사업체·기업체 대상 통계

제1절 산업구조 및 기업활동 통계조사의 개괄

- 일본의 통계제도는 분산형 통계제도로써 산업 및 기업활동 관련 통계조사도 관련 정책을 소관하는 부처를 중심으로 조사
 - 농업(농작물, 양잠, 축산), 임업(삼림, 임산물), 수산업(어선, 수산물) 등의 산업으로 구성되는 농림수산업분야의 통계는 주로 농림수산성에서 조사
 - 광업·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는 주로 경제산업성에서 조사
 - 건설업 및 운수업에 관련된 통계는 국토교통성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운수업관련 통계는 운송수단별로 나누어 조사
 - 통신업에 관한 것은 총무성 통신정책국에서 조사 분석
 - 총무성 통계국은 모집단적인 성격의 통계조사를 실시하며, 다른 부처에서 조사된 주요 결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일본통계연감, 일본통계 월보를 편집·간행
- 사업체(기업 포함)의 모집단적 성격을 갖는 『사업소·기업통계조사』는 총무성 통계국이 조사·작성하고 있음.
 - 이 통계는 우리나라의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본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음.

□ 기업활동 관련 통계조사는 주로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작성

- 산업의 기초통계로서의 역할을 하는 『공업통계조사』, 『특정서비스업통계조사』 등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임. 이들 통계는 기업단위에서도 집계됨으로서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음.
- 기업의 사업활동 다각화, 국제화, 연구개발, 정보화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업의 경영전략이나 산업구조의 변화의 실태를 파악하여 기업에 관한 각종 행정 시책의 기초자료를 제공
- 기업·사업소의 지역분포, 경영조직·산업의 속성, 종업원, 자산·부채·자본 현황, 손익현황, 도산 등 기업의 경영상태를 조사
- 대표적인 조사로는 기업활동기본조사, 외자계기업동향조사, 기업의 해외사업활동조사 등을 들 수 있음

〈표 4-1〉 일본의 산업구조 및 기업활동 관련 주요 통계조사 현황

통계조사(종류)	조사대상	조사분야	조사기관	조사 개시
농림업센서스(지정 26호)	농임가·농림업사업체	농림업	농림수산성	1950
농업구조통계조사(승인)	농가·농업사업체	농업	농림수산성	1951
어업센서스(지정 67호)	어업경영체	어업	농림수산성	1949
어업동태조사(승인)	해면어업경영체 (종사30일이상)	어업	농림수산성	1952
本邦産業趨勢調査(승인)	광업경영 기업·사업소	광업	경제산업성	1905
공업통계조사(지정 10호)*	제조업사업소	제조업	경제산업성	1909
건설업구조기본조사(승인)	건설업기업	건설업	국토교통성	1975
상공업실태기본조사 (지정 120호)*	제조업기업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	경제산업성	1959
상업통계조사(지정 23호)*	도소매사업소, 음식점	도소매업 음식점	경제산업성	1931
서비스업기본조사 (지정 117호)*	서비스업 사업소	서비스업 (일부제외)	총무성통계국	1990
특정서비스산업실태통계조사 (지정 13호)*	특정서비스업 사업소	특정서비스업	경제산업성	1973
자동차운송통계조사 (지정 99호)	운송자동차	운수업 (자동차)	국토교통성	1960
철도운송통계조사(승인)	철도여객·화물 운송기업	운수업 (철도)	국토교통성	1960
내항선박운송통계조사 (지정 103호)	내선선박운송사업소	운수업(선박)	국토교통성	1963
항공운송통계조사(승인)	항공운송사업소	운수업(항공)	국토교통성	1973
통신산업실태조사(승인)	전기통신기업	통신업	총무성 정보통신정책국	1988
사업소·기업통계조사 (지정 2호)	전산업사업소·기업	전산업	총무성통계국	1947
기업활동기본조사 (지정 118호)	광공업·상업 관련 기업	광공업, 상업	경제산업성	1992
외자기업동향조사(승인)	외국투자기업	전산업 (금융·보험업제외)	경제산업성	1971
해외사업활동조사(승인)	외국법인 일본기업	전산업 (금융·보험업제외)	경제산업성	1972
법인기업통계조사 (지정 110호)	법인기업	전산업 (금융·보험업제외)	재무성	1958
개인기업경제조사 (지정 57호)	개인기업	제조·도소매· 음식점·서비스업	총무성통계국	1947

주: * 표시는 본 연구에서 중점 분석할 통계조사임.

자료: 총무성통계국통계기준부, 통계조사총람, 1996 및 각 기관의 홈페이지 참조

- 주요 산업구조통계의 산업포괄범위는 일부 3차산업을 제외하고는 전산업을 포괄
-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은 에너지관련 통계조사를 통해 조사
 - 금융 및 보험업은 금융관련 기관조사를 통해 파악
 - 또한 산업구조통계 이외 동태통계, 특별조사 등을 통해 전산업에 관한 구조 및 동향을 파악

〈표 4-2〉 통계조사별 산업포괄 범위

표준산업대분류	2년이상 주기조사		매년조사
A 농업	사 업 소	농업센서스	농업구조통태조사
B 임업		임업센서스	
C 어업		어업총조사	
D 광업		상공업실태조사	본방광업추세조사 공업통계조사
F 제조업			
E 건설업	기 업	건설업구조기본조사	
G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			
H 운수·통신업			자동차운송통계조사 철도운송통계조사 내항선박운송통계조사 항공운송통계조사 통신산업실태조사
I 도매·소매업·음식점	통	상업통계조사 상공업실태조사	
J 금융 및 보험업	계		
K 부동산 및 임대업			
L 서비스업	조	서비스업기본조사	특정서비스산업실태통계조사
M 공무(다르게 분류되지 않는 것)	사		
N 분류불능의 산업			

제2절 사업체 및 기업 관련 통계현황

1. 사업소²⁾·기업통계조사

가. 개요

☐ 조사목적 및 활용

- 산업 활동의 모체가 되는 전국 모든 사업소를 조사하여 국가의 산업구조나 산업 활동의 실태 파악
- 정부가 사업소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의 기본 골격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
- 사업소 및 기업의 산업, 종사자수 등의 기본적 구조를 전국 및 지역별로 파악하기 때문에 중앙부처, 도도부현(都道府縣: 우리나라의 시도에 해당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시정촌(市町村: 우리나라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각종 행정시책의 계획, 입안, 평가에 기초 자료로 활용됨
- 정비된 사업소 및 기업의 명부자료는 사업소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통계 예를 들면, 매월노동통계조사, 고용동향조사, 임금구조기본조사, 민간비영리단체실태조사, 통신이용동향조사, 특정서비스업실태조사, 전국기업단기예측조사 등의 모집단정보로서 이용됨

☐ 조사연혁

- 1947년 10월 「사업소통계조사」의 명칭으로 제1회 조사를 실시되었는데, 연합국 총사령부(GHQ)의 지령에 근거해, 전쟁에 의해 파괴된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산업의 실태나 사업활동 상태 등을 파악
- 제2회 조사는 1948년에 「사업소임금조사」로서 실시, 이것은 사업소의 실태를 파악하기 보다는 임금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는데 주 목적을 둠
- 제3회 조사는 1951년에 제1회 조사와 마찬가지로 사업소에 관한 사항들을

2) 우리나라의 “사업체”에 해당함.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이후 1981년까지 3년마다, 그 후에는 5년마다 실시

- 1954년 제4회 : 개인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을조사」로 개시되고, 일부의 사업소에 대해서 급여지급액과 사업수입이 조사됨
- 1960년 제6회 : 회사에 대해서 유형고정자산을 조사항목으로 포함(제8회 조사까지)
- 1972년 제10회 :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비현업부문, 소위 「공무」를 조사 대상에 포함
- 1981년 제13회 : 조사결과의 조기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집계방법을 중앙에서 행하는 방식에서 지방에서 행하는 지방분조사방식으로 변경하고, 각 도도부현(都道府縣)에서 조사표의 내용을 수록한 磁氣테이프를 작성하며, 통계국에서 모아 최종적으로 집계를 행함
- 1986년 제14회 조사부터는 이전까지 3년 주기 조사를 5년 주기로 변경하고, 개인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한 「을조사」는 폐지하는 대신 서비스업 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기본조사」가 1988년부터 행해짐
- 1991년 제15회 조사는 상업통계조사와 동시에 실시하여 조사대상의 중복을 배제함으로써 기업자의 기업부담 등을 경감
- 1996년 제16회 조사부터는 기업에 관한 조사항목을 확충하고, 명칭도 「사업소통계조사」에서 현재와 같은 「사업소·기업통계조사」로 변경하였고, 종래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丙조사」가 「乙조사」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3년마다 간이 조사를 실시
- 1999년 제17회 조사에서는 민영사업소를 대상으로 간이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업소·기업통계조사와 상업통계조사를 1개의 조사표로 동시에 실시
- 2001년 제18회에서는 기업에 관한 조사항목을 보완
 - 최근 기업활동의 다각화, 기업재편의 활성화 등에 따라 기업집단의 구조, 기업의 합병·분할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해 종래의 기업관련 조사항목 이외에 추가로 「등기상의 회사설립 연월」, 「모회사의 명칭·소재지」, 「관계회사(출자자)의 유무」, 「1996년 이후 회사의 합병·분할 현황」과 더불어 기업활동의 정보화 확충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현황」 등을 조사

□ 조사주기 및 기준일

- 조사주기 : 부정기(보통 3-5년)
- 조사기일 : 해당연도 10월 1일

□ 조사대상 및 단위

- 일본의 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소 중 다음 ①, ②에 해당되는 사업소를 제외한 모든 사업소가 조사대상

① 대분류 A-농업, B-임업, C-어업에 속하는 개인경영사업소

② 대분류 L-서비스업 중에서 중분류 74기타 생활관련 서비스업(소분류 741-가사서비스업-동거하는 경우, 742-가사서비스업-비동거인 경우에 한함) 및 중분류 96-외국공무에 속하는 사업체

- 단, 일본에 소재하는 외국기업의 본사나 지사 등도 포함

○ 조사단위 : 사업소

- 사업소의 정의 : 물건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개별 장소로서, 사람이 수입을 얻기 위해 일하는 개별 장소, 영리 목적이나 비영리 목적인가는 무관
- 예를 들면, 상점, 공장, 사무소, 영업소, 은행, 학교, 사원, 병원, 여관, 정련소, 광산, 발전소등과 같이 고정 장소를 차지해 사업을 실시하는 장소
- 자가영업의 목수, 미장, 택시등과 같이 사업을 실시하는 장소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자택을 사업소로 간주
- 공원, 도로상 등에서 간단하고 쉬운 설비로 영업함으로써 장소가 고정되지 않는 경우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장소가 아니고, 거기를 관리하는 사무소나 영업소 등 상품판매 등의 활동을 행하기 위한 거점이 되고 있는 장소를 사업소로 정의함.

나. 조사방법

- 기본적으로는 조사원 기입방식 전수조사이며, 「조사표甲」과 「조사표乙」로 구분되어 실시

- 조사표甲은 민영사업소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원이 조사표를 사업소에 배부, 수집하며 다음과 같은 조사경로를 거침
 - 총무성장관→도도부현(都道府縣)지사→시정촌(市町村)장→통계지도원(약5400명)→통계조사원(약10만명)→민영사업소(약614만개소)
- 조사표乙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조사용으로, 국가사업소에 대해서는 총무성장관이, 도도부현(都道府縣)의 사업소에 대해서는 도도부현(都道府縣)지사가, 시정촌(市町村)의 사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촌(市町村)장이 조사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회수함
 - 국가사업소 : 총무성장관→조사사업소
 - 도도부현(都道府縣)사업소 : 총무성장관→도도부현(都道府縣)지사→조사사업소
 - 시정촌(市町村)사업소 : 총무성장관→도도부현(都道府縣)지사→시정촌(市町村)장→조사사업소

□ 기관별 역할

- 총무성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상 필요한 사무절차를 작성하며, 조사의 실시상 있어서는 도도부현(都道府縣)을 지휘 감독. 총무성 통계센터에서는 조사가 종료한 뒤 도도부현(都道府縣)으로부터 제출되는 자기테이프 등의 심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의 최종적인 집계를 수행하고 집계된 결과는 신문이나 TV에 보고서를 공표
- 도도부현(都道府縣)은 시구읍면을 지휘 감독
- 시구읍면은 실제의 조사에 종사하는 지도원이나 조사원에게 조사의 방법을 설명하고, 정확한 조사를 하도록 지시
- 지도원은 조사원의 조사표 배포·취집활동의 지도를 실시하고, 조사원으로부터 제출되는 조사표등의 조사 서류의 검사
- 조사원은 담당하는 지역의 사업소를 방문해 조사표를 배포하고, 기입을 의뢰함과 동시에 조사표의 취합하며, 취합한 조사표는 조사원이 기입오류나 기입의 잘못을 체크하고, 지도원(시정촌(市町村))에게 제출.
- 지도원과 조사원은 시정촌(市町村)장의 추천에 의해 도도부현(都道府縣) 지

사가 임명

다. 조사항목과 용도

(1) 사업소에 관한 사항

① 사업소의 명칭 및 전화번호

- 사업소 및 기업의 명부에 사용되어 사업소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 정보로서 이용
-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소의 조사 누락이나 중복의 발견, 회사에 대해서는 기업 단위의 통계를 만들기 위한 「名寄」의 표지로서 사용

② 사업소의 소재지

- 조사결과를 지역별로 집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소재지의 정정·자명, 우편 번호는 정정·대자별 집계 등의 소지역 통계에 사용
- 회사에 대해서는 본사와 지사 등의 「名寄(본사의 조사표에 지사의 조사표를 모음)」의 표지로서 사용

③ 경영조직

- 개인경영이나 회사조직인가 등 기본적인 속성인 조직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
- 산업분류나 종업원수 등과 조합하는 것으로, 경제구조의 변화나 동향을 파악하는데 사용

④ 본소·지소의 구별

- 기업경영의 의사결정 등 중추를 맡는 「본소」와 생산활동이나 영업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지소」와는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소가 본소(본사·본점)인지, 지소(지사·지점)인지는 그 경제활동의 내용을 보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
- 조사 결과를 지역과 조합하는 것으로, 본사 기능의 지역별 분포나 집중의 상황, 그 변화를 파악

⑤ 사업소의 개설 시기

- 사업소가 현재의 장소에서 개설했던 시기를 파악
- 산업 분류나 지역과 조합하는 것으로, 어느 업종에 새로운 사업소가 많고, 어느 업종에 오래된 사업소가 많은가를 지역별로 파악
- 산업이나 경영조직별로 사업소의 개설상황을 시계열에 보는 것으로, 산업 구조의 변화나 새로운 사업의 진전 상황 등에 대한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⑥ 사업소의 종업원수

- 종업원수는 사업소에 관한 기본적인 속성의 하나로 사업소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
- 산업분류나 경영조직과 조합하는 것으로, 산업구조의 실태나 그 변화를 파악하여 경제 대책, 지역의 경제계획, 고용대책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 남녀별, 고용형태별로 종업원수를 파악하는 것은 여성의 직장 진출의 실태, 파견·하청 종업원 현황 등 다양화하는 기업의 고용형태의 실태가 파악하는 자료
- 또, 어느 산업에 어떠한 규모의 사업소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의 자료는 산업·경제 시책의 입안에 매우 중요한 통계로서 이를 제공하고 위해서도 종업원수는 중요한 조사 사항

⑦ 사업소의 사업 종류·업태

- 사업소가 어떠한 사업을 경영하고 어떠한 사업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하는 사업소의 성격을 특징짓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
- 사업의 종류는 사업소의 산업을 결정짓는 사용
- 업태 및 생산품은 사업소의 산업결정이 어려울 경우 사용되는 지표

⑧ 사업소의 형태

- 점포, 음식점, 영업소, 공장 등 다양한 사업소의 형태를 파악
- 지역별로 사업소 형태의 분포를 파악하여 상가, 오피스거리, 공업단지 등의 식별을 가능하게 함
- 또, 토지의 유효 이용이나 재개발, 사업소의 적정 배치 계획 등을 입안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됨

(2) 기업에 관한 사항

⑨ 본소 등의 명칭·소재지

- 기업 단위에 본소(본사·본점)와 지소(지사·지점)를 정리하는 명기를 위해서 사용되며, 이 결과에 의해 기업활동의 경제권 확대나 지역간의 관계 등이 파악됨
- 명기 된 정보는 기업의 명부로서 정비되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통계조사 실시를 위한 모집단 정보로서 이용됨

⑩ 등기상 회사의 성립 연월

- 회사기업의 상황에 대해 지역별, 자본금계급별, 상용고용자규모별, 산업별 등의 통계 작성이 가능

⑪ 자본금액 및 외국 자본 비율

- 자본금액은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서, 자본금계급별 기업수와 산업분류를 조합하는 것으로, 업종별 대기업과 중기업의 분포 상황을 파악
- 외국자본비율은 외국으로부터 국내기업에의 투자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업종별 국제화의 진전 등을 분석할 수 있음

⑫ 모회사·자회사 등의 유무 및 모회사의 명칭·소재지

- 최근에는 기업활동의 다각화나 분사화가 진전되고 있어 개개의 회사만이 아니고, 자회사나 관련회사를 포함한 기업집단을 파악하기 위한 사항
- 2001년 조사에서는 모회사·자회사·관련 회사(출자처)의 유무에 추가하여 모회사의 명칭·소재지도 조사하고, 기업(모회사, 자회사)의 명기 실시 및 관계회사(출자원)의 유무에 대해서도 파악
- 따라서 기업그룹의 규모나 구조에 대한 파악과 동시에 기업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표본조사 실시를 위한 모집단 정보로 이용도 가능
- 또 해외 자회사 등의 유무 파악은 기업활동의 국제화 상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됨

⑬ 지소·지사·지점의 수

- 지소(지사·지점)의 수는 기업규모를 알기 위한 지표로서, 특히 금융 부문

이나 서비스 부문의 업종에서는 영업활동의 거점이 되는 지사·지점의 수가 기업활동의 활발함을 나타내는 지표가 됨

- 또한 해외의 지소수를 파악하는 것으로써 국제화의 진전 상황도 파악이 가능

⑭ 회사 전체의 상용 고용자수

- 기업에 관한 기본적인 속성의 하나로, 자본금액과 함께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 해외의 상용고용자수로부터는 기업의 해외전개 상황을 파악

⑮ 회사 전체의 주된 사업의 종류

- 지소(지사·지점)를 포함한 기업 전체의 사업 내용을 조사하는 사항으로, 기업 단위를 기준으로 산업을 결정하는 것이며, 기업단위의 산업구조를 파악
- 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 정보로서 사용할 때에 자본금액이나 회사전체의 상용고용자수 등과 함께 기업의 그룹분류를 위한 지표로 사용됨

⑯ 회사의 합병·분할 등의 상황

- 기업조직의 개편, 예를 들면, 대기업, 은행의 합병이나 분할과 같이 대규모 합병이나 분사 등에 대한 파악

⑰ 전자 상거래의 상황

- 전자상거래의 실시 상황에 대한 파악과 더불어 전자상거래에 관한 다른 조사에 필요한 각종 표본 조사 실시를 위한 모집단 정보를 제공

라. 집계 및 공표(2001년 조사 기준)

- ☐ 수집된 조사표는 조사원, 지도원, 시정촌(市町村) 각각의 단계에서 심사되어 조사 관계서류와 함께 도도부현(都道府縣)에서 모아짐
- ☐ 도도부현(都道府縣)에서의 집계
 - 도도부현(都道府縣)에는 시정촌(市町村)에서 제출된 민영사업소와 관련되는 조사표 甲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컴퓨터 처리에 의해 전자적

기록으로 수록하여 총무성 통계센터에 제출

☐ 통계센터에서의 집계

-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등 민영사업소 이외의 사업소와 관련되는 조사표乙은 총무성 통계센터에 모아져서 그 내용을 심사 후, 컴퓨터 처리에 의해 전자적 기록으로 수록
- 도도부현(都道府縣)으로부터 제출된 민영사업소와 관련되는 전자적 기록과 통계센터에서 수록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등에 관계되는 전자적 기록을 이용하여 전사업소에 대한 각종의 통계를 작성

☐ 속보 : 2002년7월19일 공표

☐ 확보 : 사업소 및 회사기업 집계

- 전국집계 : 2002년12월27일 공표
- 도도부현(都道府縣)집계 : 2002년10월23일~12월17일 공표

〈표 4-3〉 결과의 공표(1): 집계별 지역범위

집계구분			집계내용	표장지역
概數집계			전자 상거래 상황에 대한 결과를 조기 집계	전국, 도도부현(都道府縣)
속보집계			주요 사항에 대해 사업소수, 종업원수 및 회사 기업수를 조기에 집계	전국, 도도부현(都道府縣), 14대도시, 시구정촌(市區町村)
확 보 집 계	사업소 · 회사 기업 집계	전국집계	도도부현(都道府縣)별 집계 종료후, 상세한 사항에 대해, 전국의 사업소수, 종업원수, 전국의 회사기업수를 집계	전국, 도도부현(都道府縣), 14대도시, 시구정촌(市區町村), 11대도시권, 특별지역
		도도부현(都道府縣)별 집계	도도부현(都道府縣)별로, 상세한 사항에 대해, 사업소수 및 종업원수, 회사기업수를 집계	도도부현(都道府縣), 14대도시, 현청소재지, 시구정촌(市區町村), 인구 30만 이상시, 현내 블록
	사업소 집계	町丁・大字別 집계	전국 집계 종료후, 정정·대자별로 시구정촌(市區町村)별 결과와 같은 사항(산업, 종업원 규모, 경영 조직별 등)에 대해 사업소수 및 종업원수를 집계	시구정촌(市區町村), 정정·대자
		조사 구별 집계	조사구별로 사업소, 종업원수 및 조사구의 특성을 집계	시구정촌(市區町村), 조사구
회사기업에 대한 名寄집계		단독사업소 및 본소사업소와 국내지소 사업소의 명기에 의한 집계	본소에 국내 지사를 명기한 복수 사업소 기업과 단일 사업소 기업에 대해 집계한 결과로, 주요한 사항에 대해 기업수 등을 집계	전국, 도도부현(都道府縣), 14 대도시, 11 대도시권
		모회사와 자회사의 명기에 의한 집계	모회사에 자회사를 명기 한 기업 그룹에 대해 집계	전국, 도도부현(都道府縣), 14 대도시
조사구 등에 관한 집계			주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구수 및 조사구의 특성별 사업소수 등을 집계	전국, 도도부현(都道府縣), 14 대도시, 시구정촌(市區町村)

〈표 4-4〉 결과의 공표(2): 집계별 공표시기, 방법 등

집계구분			공표관계		
			공표시기	공표방법	보고서
概數집계			2002년4월23일	전자적 기록에 의한 관람 공표	
속보집계			2002년7월	매스컴 공표 및 전자적 기록에 의한 관람 공표 후 보고서를 발간	속보결과
확 보 집 계	사업소 · 회사 기업 집계	전국집계	2002월12월	전자적 기록에 의한 관람 공표 후 보고서를 발간	제1권 사업소에 관한 집계전국결과(수분책) 제2권 회사기업에 관한 집계전국결과 제2권의 1 단독사업소 및 본소사업소에 의한 결과
		도도부현(都道府縣)별 집계	2002월10월-12월	상동	제3권 사업소 및 회사기업에 관한 집계 도도부현(都道府縣)별 결과(47분책)
	사업소 집계	町丁目大字別 집계	2003월1월	전자적 기록에 의한 관람 공표	
		조사 구별 집계	2003월2월	상동	
	회사기업 에 대한 名寄집계	단독사업소 및 본소사업소와 국내지소 사업소의 명기에 의한 집계	2003월6월	전자적 기록에 의한 관람 공표 후 보고서 발간	제2권의 2 단독사업소 및 본소사업소와 국내지소 사업소의 명기에 의한 결과
		모회사와 자회사의 명기에 의한 집계	2003월12월	전자적 기록에 의한 관람 공표	
조사구 등에 관한 집계			2003월4월	전자적 기록에 의한 관람 공표 후 보고서 발간	조사구 관계자료

마. 조사결과로부터 얻는 주요 지식

☐ 산업구성과 그 변천

-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산업구성도 일정한 법칙성을 가지고 화하는 것은 알려져 있는데, 이를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종업원수의 비중으로 보면 서비스업은 조사년도마다 확대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은 다소 축소되고 있어 종업원의 비중이 제2차 산업에서 제3차 산업으로 이행 하고 있는 것을 조사결과를 통해 이해할 수 있음

☐ 경제의 서비스화와 고용의 변화

- 종업원의 측면, 생산 및 소득의 측면에서도 서비스 부문의 비율이 증대해 나가는 현상을 경제의 서비스화라 부르고 있는데 조사결과를 보면 산업별 종업원수의 경우 매년 서비스산업에서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어 경제의 서비스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

☐ 산업의 지역별 분포

- 지역별로 입지하는 산업의 규모나 종류를 파악할 수 있어 지역경제활동의 규모나 특징 등을 이해

☐ 사업소의 입지 조건

- 사업소의 입지에는 자연 조건, 인적자원(노동력의 공급과 질), 교통·통신 수단, 지가, 생산물의 성질(상품 혹은 서비스)등이 중요하며, 이러한 조건의 중요도는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나 진보에 따라 차츰 변화하고, 이에 대응해서 사업소의 입지 상황도 변화
- 본 조사결과를 통해서 지역별로 어떤 사업소가 입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으며, 이는 행정, 기업경영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됨

☐ 사업소의 집적과 상권의 형성

- 사업소의 집적 상황이나 상권의 형성 상황에 대한 파악

- 인구, 교통 등의 관련 자료와 조합함으로써, 도시의 재개발이나 산업의 적정 배치 등에 대한 계획 입안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

☐ 에너지의 공급

- 사업소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전기, 가스, 물 등 각종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산업별, 규모별 등의 사업소에 대한 정보는 각종 에너지 공급에의 대응책 입안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

☐ 교통·통신설비

- 사업소의 활동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인 교통기관, 통신설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본 조사를 통해 지역별, 규모별로 본 사업소에 대한 정보는 이러한 교통 및 통신 서비스 등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

☐ 보안·방재 대책

- 사업소의 활동은 그 자체가 위험을 수반하는 일도 있고, 자연·환경파괴 등에 연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업소에 일하는 종업원의 안전 확보도 중요한데, 조사결과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책 입안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 공공 서비스의 공급

- 사회, 경제의 활동이 순조롭게 행해지기 위해서 그 윤택유로서 적절한 공공 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져야하는데, 본 조사의 결과는 이러한 측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바. 조사결과의 이용

☐ 법령에 근거하는 이용

- 지방 교부세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 : 국가로부터 지방공공단체에 지방 교부세 교부금을 배분할 때 본 조사에 의한 사업소수와 종업원수가 사용되고 있음
- 지방 소비세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 : 국내거래, 수입거래 시에 신고 납부된

소비세는 국세 4%와 지방소비세 1%를 합한 5%이며, 국가에 납부된 지방소비세는 「도도부현(都道府縣)별 소비에 상당하는 액수」에 대응하여 배분하고, 도도부현(都道府縣)간에 있어 청산을 실시한 다음, 청산 후의 금액의 2분의 1을 시정촌(市町村)에 교부하는데, 이 「도도부현(都道府縣)간의 청산」 및 「시정촌(市町村)에의 교부」 할 때, 본 조사에 의한 종업원수가 사용되고 있음

□ 국토 종합이용계획의 입안

- 특정지역에 인구나 여러 기능의 과도 집중을 피해 지역간에서 서로 교류하고, 상호 기능을 보완하는 다극분산형 국토의 형성을 위해 시구정촌(市區町村)별 사업소의 분포상황은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이용되고 있음

□ 사업소의 집적과 그 대책

- 대도시에 있어서는 야간인구와 주간인구의 불균형 등에서 생기는 주택, 교통, 환경의 문제나 지진 등의 재해에 대한 보안대책,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획, 쓰레기 처리대책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본조사 결과는 이러한 대책입안의 기초자료로서 이용되고 있음

□ 지역개발 계획, 도시계획의 입안

- 지방도시에 대해서는 ① 기업 유치, 지방특색산업 육성 등의 산업진흥책을 통한 고용기회의 확충 ② 경제의 소프트화·서비스화에 수반하는 대사업소 서비스 산업 등의 육성, 유치, ③ 고령화, 정보화, 국제화 등에 대응한 도시 기능의 정비 등 많은 계획에 기초자료로서 이용되고 있음

□ 산업의 육성과 고용 문제

- 최근 청장년층의 취직난이나 중노년의 정리해고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경제구조의 변화에 수반하여 파트·아르바이트 등의 단시간 노동자의 증가나 인재파견업의 진전 등에 의해 새로운 고용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본 조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로서 이용되고 있음

□ 사회 복지 시설 및 공공·문화 시설의 정비 계획

- 국민생활에서 진정한 풍부함의 실현이나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으로서 보험, 의료, 개호 등의 사회복지 시설, 평생학습 등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공공·문화 시설의 정비, 충실 등의 대책이 필요한데 본 조사의 결과는 이러한 정비계획에도 기초자료로 활용됨

□ 산업연관표의 작성, 국민경제계산 등의 추계

- 산업연관표의 작성이나 국민경제계산의 추계에 있어서는 종업원은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수」로서 이용됨
- 도도부현(都道府縣)민 소득이나 시구정촌(市區町村)민 소득의 추계에도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소지역 통계,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 정보로서의 이용

- 본 조사는 전수 조사로서, 시구정촌(市區町村)별 집계외, 정정·대자별 등의 소지역 단위집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월노동통계조사, 고용동향조사, 임금구조기본조사, 민간비영리단체실태조사, 기업활동 기본조사, 통신이용동향조사, 특정서비스산업실태조사, 전국기업단기관측조사 등 사업소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 정보로서 이용

사. 관련 용어의 설명

□ 사업소 : 경제활동의 장소 단위이며, 원칙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

- 1) 경제활동이 단일 경영주체 하에서 일정한 장소(1區劃)를 차지해 행해지고 있는 것.
- 2) 물건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이 종업원과 설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

□ 파견·하청 종업원만의 사업소

- 평성13년(2001년)조사부터 해당 사업소에 소속하는 종업원이 1명도 없고, 다른 회사 등의 사업소로부터 파견된 사람만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사업소

□ 경영조직

- 민영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등의 사업소를 제외한 사업소
- 개인경영 : 개인이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법인조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공동경영의 경우도 개인경영에 포함
- 법인 : 법률의 규정에 의해 법인격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 회사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상호보험회사 및 외국의 회사
 - 외국의 회사란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의 지점, 영업소등으로, 상법의 규정에 의해 일본에 그 사무소 등을 등기한 것, 그리고 외국인이 경영하는 회사나 외국의 자본이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이른바 외자계의 회사는 외국의 회사로는 하지 않음
- 회사 이외의 법인 :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회사 이외의 법인으로,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 복지 법인, 학교 법인, 의료법인, 종교 법인, 사업 협동조합, 농(어)업협동조합, 노동조합(법인격을 가진 것), 공제조합, 국민건강보험조합, 신용금고, 일본방송협회(NHK), 각종의 공단·공고·사업단 등이 포함
- 법인이 아닌 단체 : 단체이지만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예를 들면, 후원회, 동창회, 방범 협회, 학회, 노동조합(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것)등

□ 사업소의 산업 분류

- 사업소가 주로(원칙으로서 과거 1년간의 판매액 또는 수입액이 많은 것) 가지고 있는 사업의 종류를 일본표준산업분류(평성5년(1993년) 10월 총무성 고시 제60호)에 의해 분류한 것으로, 일부 소분류 항목에 대해서는 분할한 것도 소분류에 포함하여 나타내고 있음

□ 종업원 : 조사일 현재 해당 사업소에 소속되어 일하는 모든 사람

- 다른 회사나 하청사업소 등의 별도 경영 사업소에 파견된 사람도 포함하는 개념

- 해당 사업소에 있는 사람이라도 다른 회사나 하청사업소 등의 별도 경영 사업소로부터 파견된 사람과 같이 당해사업소로부터 임금·급여(현물급여를 포함)가 지급되지 않는 사람은 종업원에 포함하지 않음
 - 그리고 개인경영 사업소의 가족종업원은 임금·급여를 지급되어 있지 않아도 종업원으로 포함
- ☐ 개인업주 : 개인경영 사업소에서 실제로 그 사업소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
- ☐ 무급가족종업원 : 개인업주의 가족으로, 임금·급여를 받지 않고 사업소의 일을 돕고 있는 사람
- 가족이라도 실제로 고용자 같은 수준의 임금·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은 「상용고용자」 또는 「임시고용자」에 포함
- ☐ 유급임원 : 법인, 단체의 임원(상근, 비상근을 구분하지 않음)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중역이나 이사 등이라도 사무직원, 노무직원을 겸해 일정한 직무에 올라 일반직원과 같이 급여 규칙에 의해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상용고용자」에 포함
- ☐ 상용고용자 : 사업소에 상시 고용되고 있는 사람
-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사람 혹은 1개월을 넘는 기간을 정해 고용되고 있는 사람 또는 2001년 조사의 경우 2001년 8월과 9월에 각각 18일 이상 고용되고 있는 사람
- ☐ 정사원·직원 : 상용고용자 가운데 일반적으로 「정사원」, 「정직원」 등으로 불리는 사람
- ☐ 정사원·정직원 이외 : 상용고용자 가운데, 일반적으로 「정사원」, 「정직원」 등으로 불리는 사람 이외, 「촉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불리는 사람
- ☐ 임시고용자 : 상용고용자 이외의 고용자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고용되

고 있는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고 있는 사람

- ☐ 파견·하청 종업원 : 노동자파견법에 의해 파견노동자, 재직출항 등 출항처에 적이 있으면서 해당사업소에 와 있는 사람의외, 하청으로서 다른 회사 등 별도 경영사업소로부터 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

☐ 본소·지소의 구별

- 단독사업소 : 다른 장소에 동일 경영의 본소(본사·본점)나 지소(지사·지점)를 가지지 않는 사업소
- 본소(본사·본점) : 다른 장소에 동일 경영의 지소·지사·지점 등이 있어 그 모든 것을 통괄하고 있는 사업소이며, 본소의 각 부문이 몇 개의 장소에 나누어져 있는 경우는 사장 등의 대표자가 있는 사업소를 본소로 하고 이외는 지소로 함
- 지소(지사·지점) : 다른 장소에 있는 본소(본사·본점)의 통괄을 받고 있는 사업소이며, 상위의 사업소에 대한 통괄을 받고 있는 한편, 하위의 사업소를 통괄하고 있는 중간적인 사업소도 지소하며, 지사, 지점이외에 영업소, 출장소 등도 포함

☐ 설립시기 : 사업소가 현재의 장소에서 사업을 시작한 연도

- ☐ 회사기업 : 경영조직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상호보험회사로, 본소와 지소를 포함한 전체를 말함.

- 단독사업소의 경우는 바로 회사기업이 되며, 본조사에서 「기업」이란 이 회사기업을 말함

- ☐ 기업산업분류 : 기업단위의 산업분류로 지소를 포함한 기업전체의 주된 사업종류(기업 전체의 과거 1년간의 총수입액 또는 총판매액의 가장 많은 것)에 의해 분류

- ☐ 자본금액수: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액수,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에 대해서는 출자금의 액수, 상호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기금의 액수를 말함

☐ 모회사·자회사·관계회사·관련 회사

- 모회사 : 해당기업에의 출자비율이 50%를 넘는 회사
- 자회사 : 해당기업의 출자비율이 50%를 넘는 회사
- 관계회사 : 해당기업에의 출자비율이 20%이상 50%이하의 회사
- 관련회사 : 해당기업의 출자비율이 20%이상 50%이하의 회사

☐ 회사성립시기 : 상업(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의 연월

☐ 회사의 합병·분할 등의 상황

- 신설합병 : 2개 이상 회사의 모든 것이 해산하여 새롭게 회사를 설립했을 경우
- 흡수합병 : 1개의 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가 해산하여 존속 회사에 흡수되었을 경우
- 분사·분할 : 회사조직의 일부를 분리 또는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로서 설립했을 경우
- 이전 : 사업소가 다른 장소로부터 현재의 장소에 이전했을 경우
- 정식명칭의 변경 : 회사 정식명칭(등기상 명칭)을 변경했을 경우

☐ 전자상거래 : 인터넷이나 인터넷 이외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상거래로서, 다만, 결제 및 동일 기업내 사업소간의 상거래는 여기서 말하는 전자 상거래에는 포함되지 않음

☐ 전자상거래의 내용

- 수주 : 물품, 서비스 판매, 배송, 제조 등의 주문을 받는 것
- 발주 : 물품, 서비스 구입, 배송, 제조 등의 주문을 발표하는 것
- 배송 등 또는 그 손배 : 음악, 영상, 메일 신문 등의 서비스 송신, 물품의 배송을 준비하는 것.

- 애프터서비스 등 그 외 : 판매한 물품, 서비스의 애프터서비스 등 상기의 「수주」, 「발주」, 「배송 등 또는 그 손배」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 상거래

2. 서비스업기본조사

가. 개요

□ 조사목적

- 서비스업의 사업·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소·점포·시설(사업소)의 기본적인 속성, 경리 사항 및 업무의 실태에 관한 일을 조사하여 서비스업의 경제활동 및 업무의 실태를 전국 및 지역별로 파악해서 각종 행정시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 조사연혁

- 1989년을 기준으로 처음 조사를 실시하여 1994년과 1999년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3회를 조사
- 1999년 조사의 특징은 결과 정밀도의 향상을 위하여 산업별 표본배분의 효율화, 조사표 등 조사관계 서류의 소형화(A4판), 1999년 사업소·기업통계조사결과와 데이터 공유화 등 조사전반에 걸쳐 효율화를 도모

□ 조사주기 및 기준일

- 조사주기 : 5년(이전끝자리 3, 8년)
- 조사기일 : 제1회 7월1일, 제2회 11월1일, 제3회 11월15일

나.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대상

- 일본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L-서비스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민영의 사업소 가운데 총무성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업소(이하 조사사업소)를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
- 다만 대분류「L-서비스업」중에서 소분류 741, 742-가사 서비스업, 중분류

88-의료업(소분류 881~883에 한정) 및 중분류 91-교육(소분류 911~917에 한정)은 제외

- 경제산업성에서 조사하고 있는 「특정서비스산업실태조사」의 조사대상 사업소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조사의 집계결과를 이용

〈표 4-5〉 평성 11년(1999년) 서비스업기본조사의 조사대상 산업

산업번호	중분류 산업
72	세탁·이용·목욕탕업
73	주차장업
74	그 외의 생활 관련 서비스업(산업소분류 「741 가사 서비스업(주포함의 것)」, 동 「742 가사 서비스업(주포함이 아닌 것)」를 제외)
75	여관, 그 외의 숙박소
76	오락업(영화·비디오 제작업을 제외)
77	자동차 정비업
78	기계·가구등 수리업
79	물품 임대업
80	영화·비디오 제작업
81	방송업
82	정보 서비스·조사업
83	광고업
84	전문 서비스업(그 밖에 분류되지 않는 것)
85	협동조합(그 밖에 분류되지 않는 것)
86	그 외의 사업 서비스업
87	폐기물 처리업
88	의료업(「885 료술업」~「889 그 외의 의료업」만을 포함)
89	보건 위생
90	사회보험, 사회 복지
91	교육(「918 사회교육」 및 「919 그 외의 교육시설」만을 포함)
92	학술연구기관
93	종교
94	정치·경제·문화 단체
95	그 외의 서비스업

□ 조사단위 : 조사대상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소

- 사업소·기업통계조사에서 종업원 규모 30명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함
- 종업원 규모 30명 미만의 사업소 중에서 도도부현(都道府縣), 산업소분류별의 추출율에 의해 선정한 사업소 및 지정한 사업소·기업 통계조사구(추출율 20분의 1)의 조사구에 사업소·기업 통계조사 후에 개설한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상기의 조사사업소 가운데, 경제산업성의 「특정서비스산업실태 조사」의 조사 사업소에 대해서는 동조사로 얻을 수 있던 데이터를 이용

□ 조사방법

- 조사원 기입방식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조사경로에 의해 조사원이 담당하는 조사구역내에 있는 조사사업소에 조사표를 배포하고 조사사업소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대신하는 사람이 기입한 조사표를 수집하는 방법을 통해 조사
 - 총무청장관→도도부현(都道府縣)지사→시정촌(市町村)장→(지도원)→조사원
→ 조사사업소(지도원은 일부의 시정촌(市町村)에 배치)
- 다만, 조사사업소의 종업원수에 대해서는 평성11년(1999년) 사업소·기업 통계조사의 조사표를 기록한 자기테이프로부터 해당사업소의 종업상 지위별 종업원수를 이용

다. 조사항목 및 용어설명

(1) 조사항목

□ 조사항목

- ① 사무소·점포·시설의 명칭
- ② 경영조직
- ③ 자본금액
- ④ 본소·출장소의 구별

- ⑤ 개설시기
- ⑥ 개설형태
- ⑦ 경리사항의 기입 대상기간
- ⑧ 수입금액(연간)
- ⑨ 사업·활동의 내용별 수입금액 비율
- ⑩ 수입을 얻은 상대방별 비율
- ⑪ 연간 경비 총액
- ⑫ 연간 급여 지급 총액
- ⑬ 연간 설비투자액
- ⑭ 사업·활동의 번창 상황

(2) 용어설명

☐ 사업소, 경영조직, 자본금, 개설시기, 종업원 등은 사업소·기업통계조사의 용어 설명과 동일

☐ 개설형태

- 창업·창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또는 개인경영의 사업소에서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경영권을 이전하여 경영자가 변경되는 경우 혹은 2개 이상의 사업소가 신설회사로 대등합병한 경우
- 기타 기업·단체로부터 전환 : 현재의 사업이 예를 들어 세탁업으로부터 사 진업과 같이 전의 사업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경우
- 지소·지사·지점·영업소·지부로서 개설 : 지소·지사·지점·영업소·지부 등 다 른 장소에 있는 본사·본점·본부의 통괄을 받는 형태로서 개설한 경우

☐ 수입금액(연간)

- 연간 사업소에서 전사업소로부터의 수입액(「경비총액」 및 「급여지급총액」을 공제하기 전 사업상의 수입액(소비세를 포함)

- 다만, 예금, 유가증권 등에서 생긴 이자·배당수입, 토지나 건물 등을 매각해서 얻은 수입, 차입금 등의 사업외 수입액은 제외
 - 공익법인 등 (회사 이외의 법인 및 법인 이외의 단체)의 경우는 사업·활동에 의해 얻은 수입외,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수입(기부금, 현금, 보조금, 회비, 회원이나 가입의 부담금) 및 사원이나 신사의 기부금, 시주, 새전은 수입에 포함
- 산업 : 산업 분류는 원칙으로서 일본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 항목에 의하지만, 일부의 소분류 항목에 대해서는 그것을 더욱 분할한 세분류를 이용
- 영리적 업종 : 산업 중분류 72-84, 86-87(앞의 산업분류표 참조)
- 주산업·종산업
- 주산업 : 1 종류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소의 경우는 해당 업종을 말하고, 복수 종류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소의 경우는 사업 수입액의 가장 많은 업종
 - 종산업 : 복수 종류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소의 주산업 이외의 업종
- 수입을 얻은 상대방 : 수입을 얻은 상대방(판매처)을 말함
- 개인(일반소비자) : 일반소비자로부터 얻은 수입
 - 기업·단체 : 본사와 지사 등 동일 경영의 사업소간 거래도 포함
 - 관공청 : 관공청으로부터의 보조금 수입 등도 포함
- 경비 총액(연간)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의 매입에 필요로 하는 비용 및 조세공과, 수도 광열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지가·집세·그 외의 임차료, 광고선전비, 수선비, 손해 보험료, 소모품비, 감가상각비, 복리후생비, 접대 교제비 등 사업에 필요로 한 비용의 총액
- 급여지급총액(연간) : 사업소의 종업원 중 유급임원을 포함한 고용자에 지불한 세금 포함(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의 임금·급여의 총액

- ☐ 설비투자액(연간) :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 취득가격이 10만엔 이상의 건물 및 설비의 구입에 필요로 한 비용의 총액
 - 토지의 구입비나 토지의 개량 정비비 등은 제외

라. 결과의 추계 및 집계와 공표(1999년 조사기준)

- ☐ 결과수치는 1999년 서비스업기본조사의 결과를 1999년 사업소·기업통계조사 결과에 의해 1999년 7월1일 현재의 도도부현(都道府縣), 산업소분류별 사업소수를 벤치마크해서 비례적으로 보정하여 추계
- ☐ 집계는 전국 및 지역별, 산업소분류별 다음 항목에 대해 실시
 - 사업소의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 사업소의 경비에 관한 사항
 - 사업소의 업무실태에 관한 사항
- ☐ 조사결과는 보고서의 간행 또는 결과원표를 열람에 제공하는 방법에 의해 공표
 - 1999년 서비스업기본조사 결과의 보고서는 2000년에 전국편 및 지역편을 2001년도에 해설편을 간행

〈표 4-6〉 평성 11년(1999년) 서비스업기본조사 결과일람

(평성12년(2000년) 11월 15일 공표)

【전국편】 : 시제일표

표번호	조사결과의 내용
제1표	산업(소분류)별 사업소수·종업원수·상용고용자수 및 수입금액수·경비 총액·급여 지급 총액·설비투자액(총액, 1 사업소 정답)(1999년·1994년·1988년)
사업소수 및 종업원수에 관한 표	
제2-1표	산업(소분류), 종업원 규모(6구분), 경영조직(7구분)별 사업소수(총수)
제2-2표	산업(소분류), 종업원 규모(6구분), 경영조직(7구분)별 사업소수(단독사업소)
제2-3표	산업(소분류), 종업원 규모(6구분), 경영조직(7구분)별 사업소수(본소·본사·본점)
제2-4표	산업(소분류), 종업원 규모(6구분), 경영조직(7구분)별 사업소수(지소·지사·지점)
제3-1표	산업(소분류), 종업상의 지위(5구분), 경영조직(7구분)별 종업원수 및 파견·하청 종업원수(총수)
제3-2표	산업(소분류), 종업상의 지위(5구분), 경영 조직(7구분)별 종업원수 및 파견·하청 종업원수(단독사업소)
제3-3표	산업(소분류), 종업상의 지위(5구분), 경영 조직(7구분)별 종업원수 및 파견·하청 종업원수 (본소·본사·본점)
제3-4표	산업(소분류), 종업상의 지위(5구분), 경영 조직(7구분)별 종업원수 및 파견·하청 종업원수 (지소·지사·지점)
개설시기 및 개설 형태에 관한 표	
제4-1표	산업(소분류), 개설 시기(10구분), 경영 조직(7구분)별 사업소수
제4-2표	산업(소분류), 개설 시기(10구분), 종업원 규모(4구분)별 사업소수
제4-3표	산업(소분류), 개설 시기(10구분), 개설 형태(5구분) 별 사업소수
제5표	산업(소분류), 개설시기(19구분)별 사업소수
경영 사항에 관한 표	
제6표	산업(소분류), 본소·지소(3구분), 경영 조직(3구분)별 사업소수·수입금액수·경비 총액·급여 지급 총액·설비투자액
제7표	산업(소분류), 종업원 규모(6구분)별 수입금액(총액, 1 사업소 당)
제8표	산업(소분류), 경영조직(7구분)별 수입금액(총액, 1 사업소 당)
제9표	산업(소분류), 본사·출장소(3구분), 자본금 계급(11구분)별 사업소수·종업원수·수입금액(외국의 회사를 제외하는 회사에 도착)
제10표	산업(소분류), 개설시기(18구분)별 수입금액(1 사업소 당)
제11표	산업(소분류), 경영조직(3구분), 수입금액 계급(12구분)별 사업소수
제12표	산업(소분류), 경영조직(7구분)별 경비 총액(총액, 1 사업소당)
제13표	산업(소분류), 자본금 계급(6구분)별 경비 총액(총액, 1 사업소당)(외국의 회사를 제외하는 회사에 도착)
제14표	산업(소분류), 경영 조직(3구분), 경비 총액 계급(12구분) 별 사업소수
제15표	산업(소분류), 경영 조직(7구분)별 급여 지급 총액(총액, 사업소 당, 고용자 당)

자료: 총무성 홈페이지(<http://www.stat.go.jp/data/service/1999/1.htm>)

〈표 4-6〉 평성 11년(1999년) 서비스업기본조사 결과일람(계속)

표번호	조사결과 내용
제16표	산업(소분류), 자본금 계급(6구분)별 급여지급총액(총액, 사업소 당, 고용자 당)(외국의 회사를 제외하는 회사에 도착)
제17-1표	산업(소분류), 종업원 규모(4구분), 경비 총액에 차지하는 급여지급총액 비율 계급(10구분)별 사업소수·경비총액에 차지하는 급여지급총액 비율의 평균치(총수)
제17-2표	산업(소분류), 종업원 규모(4구분), 경비 총액에 차지하는 급여 지급 총액 비율 계급(10구분)별 사업소수·경비 총액에 차지하는 급여지급총액비율의 평균치(개인)
제17-3표	산업(소분류), 종업원 규모(4구분), 경비 총액에 차지하는 급여 지급 총액 비율 계급(10구분)별 사업소수·경비 총액에 차지하는 급여 지급 총액 비율의 평균치(회사)
제17-4표	산업(소분류), 종업원 규모(4구분), 경비 총액에 차지하는 급여 지급 총액 비율 계급(10구분)별 사업소수·경비 총액에 차지하는 급여지급총액 비율의 평균치(그외)
제18표	산업(소분류), 경영조직(7구분)별 설비투자액(총액, 1 사업소 당)
제19표	산업(소분류), 자본금 계급(6구분)별 설비투자액(총액, 1 사업소 당)(외국의 회사를 제외하는 회사에 도착)
제20표	산업(소분류), 경영 조직(3구분), 설비투자액 계급(8구분)별 사업소수
주산업, 종산업 및 활동 베이스에 관한 표	
제21표	주산업(소분류), 종산업(서비스업은 소분류, 이외는 대분류) 별 사업소수
제22표	주산업(소분류), 종산업(대분류)별 수입금액
제23-1표	산업(소분류), 종업원 규모(4구분), 수입금액에 차지하는 주산업의 비율 계급(7구분) 별 사업소수·수입금액에 차지하는 주산업의 비율의 평균치·1 사업소당의 수입금액 및 주산업분의 수입금액(총수)
제23-2표	산업(소분류), 종업원 규모(4구분), 수입금액에 차지하는 주산업의 비율 계급(7구분) 별 사업소수·수입금액에 차지하는 주산업의 비율의 평균치·1 사업소 당의 수입금액 및 주산업분의 수입금액(개인)
제23-3표	산업(소분류), 종업원 규모(4구분), 수입금액에 차지하는 주산업의 비율 계급(7구분) 별 사업소수·수입금액에 차지하는 주산업의 비율의 평균치·사업소 당의 수입금액 및 주산업분의 수입금액(회사)
제23-4표	산업(소분류), 종업원 규모(4구분), 수입금액에 차지하는 주산업의 비율 계급(7구분) 별 사업소수·수입금액에 차지하는 주산업의 비율의 평균치·사업소 당의 수입금액 및 주산업 분의 수입금액(그 외)
제24표	활동기준 산업(서비스업은 소분류, 이외는 대분류), (경영조직 3구분)별 사업소수·수입금액
[수입을 얻은 상대방에 관한 표]	
제25표	산업(소분류), 경영 조직(3구분)별 사업소수·수입금액수·수입을 얻은 상대방(9구분)별 수입금액
[업무 번한 상황에 관한 표]	
제26표	산업(소분류), 요일·월별 사업소수 [경영 조직이 「개인」 또는 「회사」 중대 개인(일반소비자)으로부터의 수입 비율이 30%이상의 사업소에 대해]
제27표	산업(소분류), 종업원 규모(4구분), 요일·달의 대응별 사업소수 [경영 조직이 「개인」 또는 「회사」 중대 개인(일반소비자)으로부터의 수입 비율이 30%이상의 사업소에 대해]

자료: 총무성 홈페이지(<http://www.stat.go.jp/data/service/1999/1.htm>)

〈표 4-6〉 평성 11년(1999년) 서비스업기본조사 결과일람(계속)

【지역편】 : 시계열표

표번호	조사결과의 내용
제1-1표	산업(중간 분류)별 사업소수·종업원수·상용 고용자수 및 수입금액수·경비 총액·급여 지급 총액·설비투자액(총액, 사업소 당)(1999년·1994년·1988년) - 홋카이도·미에현-
제1-2표	산업(중간 분류) 별일업소수·종업원수·상용 고용자수 및 수입금액수·경비 총액·급여 지급 총액·설비투자액(총액, 사업소 당)(1999년·1994년·1988년) - 시가현~오кина와현-
제1-3표	산업(중간 분류)별 업소수·종업원수·상용 고용자수 및 수입금액수·경비 총액·급여 지급 총액·설비투자액(총액, 사업소 당)(1999년·1994년·1988년) - 13 대도시-
사업소수 및 종업원수에 관한 표	
제2-1표	산업(중간 분류), 본소·지소(3구분), 경영 조직(7구분)별 사업소수 - 홋카이도~미에현-
제2-2표	산업(중간 분류), 본소·지소(3구분), 경영 조직(7구분)별 사업소수 - 시가현~오кина와현-
제2-3표	산업(중간 분류), 본소·지소(3구분), 경영 조직(7구분)별 사업소수 - 13 대도시-
제3표	산업(중간 분류), 종업상의 지위(5구분)별 종업원수 및 파견·하청 종업원수 - 도도부현(都道府縣), 13 대도시
개설시기 개설행태 및 자본금 계급에 관한 표	
제4표	산업(중간 분류), 개설 시기(10구분)별 사업소수 - 도도부현(都道府縣), 13 대도시-
제5표	산업(중간 분류), 개설 형태(5구분)별 사업소수 - 도도부현(都道府縣), 13 대도시-
제6표	산업(중간 분류), 자본금 계급(6구분)별 사업소수·종업원수(외국의 회사를 제외하는 회사에 도착) - 도도부현(都道府縣), 13 대도시-
경영 사항에 관한 표	
제7표	산업(중간 분류), 경영 조직(3구분)별 사업소수·종업원수·수입금액수·경비 총액·급여 지급 총액·설비투자액(L서비스업만) - 도도부현(都道府縣), 13 대도시-
제8표	산업(중간 분류), 경영 조직(3구분)별 수입금액(총액, 1 사업소 당) - 도도부현(都道府縣), 13 대도시-
제9표	산업(중간 분류), 경영 조직(3구분)별 경비 총액(총액, 1 사업소 당) - 도도부현(都道府縣), 13 대도시-
제10표	산업(중간 분류), 경영 조직(7구분)별 급여 지급 총액(총액, 1 고용자 당) - 도도부현(都道府縣), 13 대도시-
제11표	산업(중간 분류), 경영 조직(3구분)별 설비투자액 - 도도부현(都道府縣), 13 대도시-
주산업, 종산업 및 활동 베이스에 관한 표	
제12-1표	산업(중간 분류), 수입금액에 차지하는 주산업의 비율 계급(7구분)별 사업소수·수입금액에 차지하는 주산업의 비율의 평균치(총수) - 도도부현(都道府縣), 13 대도시-
제12-2표	산업(중간 분류), 수입금액에 차지하는 주산업의 비율 계급(7구분)별 사업소수·수입금액에 차지하는 주산업의 비율의 평균치(개인) - 도도부현(都道府縣), 13 대도시-

자료: 총무성 <http://www.stat.go.jp/data/service/1999/1.htm>

〈표 4-6〉 평성 11년(1999년) 서비스업기본조사 결과일람(계속)

표번호	조사결과와 내용
제12-3표	산업(중간 분류), 수입금액에 차지하는 주산업의 비율 계급(7구분)별 사업소수·수입금액에 차지하는 주산업의 비율의 평균치(회사) -도도부현(都道府縣), 13 대도시-
제12-4표	산업(중간 분류), 수입금액에 차지하는 주산업의 비율 계급(7구분)별 사업소수·수입금액에 차지하는 주산업의 비율의 평균치(그 외) -도도부현(都道府縣), 13 대도시-
제13표	활동 베이스의 산업(서비스업은 중간 분류, 외는 대분류), 경영 조직(3구분)별 사업소수·수입금액 - 도도부현(都道府縣), 13 대도시-
수입을 얻은 상대방에 관한 표	
제14-1표	산업(중간 분류)별 사업소수·수입금액수·수입을 얻은 상대방(9구분)별 수입금액(총수) - 도도부현(都道府縣), 13 대도시-
제14-2표	산업(중간 분류)별 사업소수·수입금액수·수입을 얻은 상대방(9구분)별 수입금액(개인) - 도도부현(都道府縣), 13 대도시-
제14-3표	산업(중간 분류)별 사업소수·수입금액수·수입을 얻은 상대방(9구분)별 수입금액(회사) -도도부현(都道府縣), 13 대도시-
제14-4표	산업(중간 분류)별 사업소수·수입금액수·수입을 얻은 상대방(9구분)별 수입금액(그 외) -도도부현(都道府縣), 13 대도시-

마. 조사결과와 활용

□ 각종 법령의 시행에 기초자료로서 이용

- 지방 소비세는 최종적으로 소비를 한 도도부현(都道府縣)의 세수입이 되도록 하고, 각 도도부현(都道府縣)의 「소비에 상당하는 액수」에 따라 배분되고 있는데, 「소비에 상당하는 액수」는 지방 소비세 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소비에 관련하는 지표」에 근거해 계산되고 있음
- 그 지표의 하나로서 도도부현(都道府縣)별 서비스업의 사업소가 개인(일반 소비자)으로부터 얻은 수입금액이 있음

□ 행정상 정책에 활용

- 서비스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여러 시책의 기획·입안에 활용되는데, 예를 들면 기업용 서비스가격지수의 계산을 위한 기초자료, 신규산업시책 관련-시니어 벤처 연구회 기초자료(업종별 사업수입액 등), 기업거래연구회(역무 위탁거래의 공정을 목표)의 기초자료(서비스의 산업 시장규모),

- 노동관련 : 산업별 최저임금 심의 자료

□ 국민경제계산, 현민경제계산, 산업연관표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 서비스업 관련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소의 생산액, 투입액, 산출액을 추계할 때 이용

□ 백서 등에서 분석 자료로 활용

- 『지역경제 리포트 2002』에서 서비스 산업 고용 창출에 관한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 서비스 산업분야의 취업자수의 상황, 서비스 산업분야의 취업자 지역 분포 등을 분석하는데 활용
- 『2001년판 중소기업 백서』에서는 규모별 제 3차 산업 활동 지수의 시산, 제 3차 산업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제3차 산업 전체를 파악하는 「제3차 산업활동지수」로부터 시산된 규모별 지수 결과의 검증에 이용

□ 행정상의 계획

- 도도부현(都道府縣)에 있어서 장기 종합 계획의 추진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수입금액, 사업소수, 종업원수가 이용
- 도도부현(都道府縣)에 있어서 IT기본전략 책정의 기초 자료로서 전국 및 지역의 정보서비스 산업의 상황이 이용

3. 공업통계조사

가. 개요

□ 조사목적

- 국가전체의 공업실태를 파악하여 산업정책, 중소기업정책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시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 경제통계체계의 근간이 되도록 하며, 경제백서, 중소기업 백서 등의 경제 분석 및 각종의 경제지표에 데이터를 제공

□ 조사연혁³⁾

- 明治42년(1909년)에 개시되어 大正9년(1920년)부터 매년 조사를 하고 서기를 기준으로 끝자리 「0, 3, 5, 8」의 해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80년의 역사를 지님
- 공업생산통계로서는 明治初年(1868년) 民部省이 시작한 「府縣物産表」조사, 明治16년(1883년)부터 農商務統計 중 「工場調査」(종업원 10명 이상, 매년 조사)이 있지만, 독립적인 조사로서는 明治42년(1909년)부터 「工場統計調査」가 개시됨.
 - 이 조사는 종업원 5명 이상의 공장에 대해서 5년에 1회 실시되었지만, 大正9년(1920년)부터 매년조사로 변경하고, 서기를 기준으로 끝자리 「0, 3, 5, 8」의 해에는 전수조사를 실시
 - 昭和14년(1939년)부터는 「공장조사」로서 종업원수에 관계없이 모든 공장·작업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
- 현재의 형태가 된 것은 통계법(昭和22년(1947년)법률18호)에 근거하는 지정 통계조사(지정통계 제10호)로 지정된 이후로, 일본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업조사」로 변경되었고, 쇼와25년(1950)에는 「昭和25년 공업센서스」, 昭和26년 이후는 「공업통계조사」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쇼와31년부터는 본사·본점조사가, 쇼와38년부터는 용지·용수조사가 본조사에 추가(용수조사는 쇼와 33년과 쇼와 37년에, 용지조사는 쇼와 36년, 쇼와 37년에 부대조사로서 행해졌음).
 - 쇼와51년부터는 갑조사는 종업원 30명 이상의 사업소(종래는 20명 이상), 을조사는 29명 이하의 사업소(종래에는 19명 이하)를 대상으로 조사하게 됨
 - 쇼와60년 및 쇼와 61년에는 「병조사」가 중지되었지만, 쇼와 62년에는 종래의 병조사를 다시 본 새로운 병조사(기업의 다각화, 소프트화, 국제화에 대해 파악)가 실시되어 평성원년에는 그 2번째 조사를 실시
 - 쇼와56년 조사로부터는 예산상의 제약에 수반하는 통계조사의 효율적인 실시의 요청에 응하기 위해 동년 조사 이후의 특정 연차(원칙으로서 서기 끝년도가 0, 3, 5, 8 이외 해)에 대해서는 조사를 간소화함

3) 獨立行政法人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홈페이지(<http://www.jil.go.jp/status/shozai/A1703.htm>)참조

- 쇼와25년, 쇼와38년, 쇼와48년에는 세계 광공업 센서스(census)에 참가
- 평성3년(1991년)에는, 나가사키현의 시마바라시 및 후카에초에 대해 분화 재해로 조사범위로부터 제외
- 평성4년 이후는 경제산업성의 「기업활동기본조사」가 실시됨에 따라 병조사를 폐지

- 국가의 기본 통계조사로서 「제조업의 국세조사」라고 할 수 있음

□ 조사주기 및 기준일

- 조사주기 : 1년
- 조사기일 : 매년 12월31

나. 조사대상

(1) 조사대상산업

- 일본 표준산업분류에 있어서 대분류「F-제조업」에 속하는 전국의 사업소(국가에 속하는 사업소는 제외)를 대상으로 조사

- 끝자리가 「0, 3, 5, 8」인 해에는 전사업소 조사, 그 이외 연도에는 종업원 4명 이상의 사업소, 종업원 3인 이하의 사업소 내에서 특정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소에 대해 조사
- 특정업종(3자리기준)에는 연사제조업, 직물업, 니트옷감제조업, 니트製外衣·샤츠제조업, 하의제조업의 일부, 기타의복·섬유장신구제조업의 일부, 가구제조업, 建具제조업, 고무제품, 창호제조업, 고무제·플라스틱제신발·부속품제조업, 유피제품제조업, 공업용혁제품제조업(장갑 제외), 혁제신발용재료·부속품 제조업, 혁제신발제조업, 혁제장갑제조업, 가방 제조업, 마구류제조업, 모피 제조업, 기타유피제품 제조업 등이 포함됨
- 2002년 이후에는 끝자리가 「1, 2, 4, 6, 7, 9」의 년도에 대해서는 종업원수 3명 이하의 특정 업종에 대한 조사가 중지가 됨

-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소는 다음 ①, ② 조건 모두를 만족하는 사업소를 의미함.

① 주로 신제품의 제조·가공을 실시하는 사업소.

- 여기서 말하는 「신제품」이란, 「再製品」이 아니라는 의미로, 재제품은 한번4 시장에 출시된 제품을 원래 상태에 되돌린 제품이며, 신제품은 반드시 완제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주조한 그 상태의 기계부품 등도 포함됨.

② 제조 가공한 신제품을 주로 도매하는 사업소.

- 여기서 말하는 「도매」는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것, 산업용 사용자(공장, 광산, 건설업자, 법인조직의 농림수산자, 각종 회사, 관공청, 학교, 병원, 호텔 등)에 대량 또는 고액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 사무용 기계 및 가구, 병원, 미용실, 레스토랑, 호텔 등의 설비, 산업용 기계(농업용기도구는 제외), 건설 재료(목재, 시멘트, 판유리 등)와 같이 업무용에 주로 사용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 같은 기업에 속하는 다른 사업소(같은 회사의 다른 공장, 판매소등)에 제품을 인도하는 것 등을 의미.

(2) 조사단위 : 사업소

- 사업소는 「1區劃을 점하여 경제활동을 행하고 있는 장소」로서 ① 1構內에 있어서는 경영주체가 단일 혹은 동일한 경우 원칙적으로 1사업소(1區劃)으로 하며, ② 1구내에서도 경영주체가 다를 경우 각각의 사업소로 취급함.

- 공업통계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이 제조업이므로 공장, 제작소, 제조소 혹은 가공소 등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1區劃을 점하여 주로 제조 혹은 가공을 행하는 장소」를 「제조사무소」라고 함.

□ 조사방법

- 기본적으로는 甲조사, 乙조사로 나누어 모두 정해진 양식의 조사표를 조사원이 대상 사업소에 배포하여 기입을 의뢰하고 회수하는 조사원 기입방식 전수조사로 실시함
- 종업원 30명 이상의 사업소(제조, 가공 혹은 수리를 행하고 있지 않은 본사나 본점은 제외)에 대해서는 「공업조사표甲」, 종업원 29명 이하의 사업소(제조, 가공 혹은 수리를 행하고 있지 않은 본사나 본점은 제외)에 대해서는 「공업조사표乙」을 사용하고, 신고자(사업소의 관리책임자)의 자제신

고에 의해 행함.

○ 조사경로

- 경제산업성장관 → 도도부현(都道府縣) 지사→시정촌장→공업통계지도원
→공업통계조사원→ 조사사업소

다. 조사항목 및 설명

(1) 조사표甲의 경우

- ①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주소 및 전화번호 포함)
- ② 본사 또는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주소 및 전화번호 포함)
- ③ 다른 사업소의 유무: 다음에서 선택
 - 공장이 1개이고, 본사·본점이 공장과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
 - 공장이 1개이고, 본사·본점이 공장과 다른 장소에 있는 경우
 - 공장이 2개있는 경우(상기 이외의 경우)
- ④ 사업소의 경영 조직: 회사(주식, 유한, 합자, 합명), 조합·기타 법인, 개인 중 선택
- 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회사에 한함): 금액으로 작성
- ⑥ 종사자수: 개인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고용자(정사원·정직원, 파트·아르바이트 포함), 임시고용자 등 3가지로 분류
 - 개인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사업주와 그 가족으로 무보수로 상시 취업하고 있는 사람.
 - 상용노동자: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사원·정직원」, 「파트·아르바이트」, 「출향·파견수입자」로 분류
 - 기간을 결정하지 않거나 1개월을 넘는 기간을 결정해 고용되고 있는 사람
 - 1개월 이내의 기한에 고용되고 있는 사람 중 해당 월과 이전 월에 각각 18일 이상 고용된 사람

- 모기업으로부터 출항종업원, 인재파견 회사로부터의 파견종업원 등으로 앞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 중역, 이사 등의 임원 가운데, 상시 근무하여 매월 급여를 받는 사람
 - 사업주의 가족으로 해당 사업소에 상시 근무해 매월 급여의 지분을 받고 있는 사람
 - * 정사원·정직원 : 고용된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정사원」, 「정직원」등으로 불리고 있는 사람
 - * 파트·아르바이트 : 정직원 혹은 정사원 이외 「촉탁」, 「파트타임어」, 「아르바이트」 또는 이와 유사하게 불리는 사람
 - * 출항·파견수입자 : 다른 기업으로부터 수입된 출항자 및 파견기업으로부터의 파견자
 - 임시고용자 : 상시 노동자 이외의 고용자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고용되고 있는 사람이나 매일 고용되고 있는 사람
- ⑦ 현금급여총액 : 상용근로자 내의 고용자에 대한 기본급, 제수당과 특별지급(연말상여 등)의 총액과 기타급여액으로 구분
- 상용근로자 내의 고용자에 대한 기본급, 제수당과 특별지급의 총액 : 노동계약, 단체계약, 급여규칙 등에 의해 명확하게 결정된 급여조건에 따른 것으로 기본급이외에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통근수당, 휴업수당 등과 일시적인 이유로 특별한 때 지불되는 결혼수당, 기말상여 등을 포함. 단, 출항·파견수입자에 대하여 지불하는 것은 제외됨.
 - 기타급여액 : 상용근로자 내의 고용자에 대한 퇴직금 또는 해고예고수당, 출항·파견수입자에 대한 지불액, 임시고용자에 대한 급여, 출항된 종업원에 대한 부담금 등을 포함
 - 소득세, 보험료, 조합비 등이 차감되지 않고 소위 세금포함 총액을 기준으로 조사
- ⑧ 원재료·연료·전력 사용액 및 위탁생산비(소비세액 포함): 원재료사용액, 연료사용액, 전력사용액, 위탁생산비로 분류
- 원재료 사용액: 주요 원재료, 보조재료, 구입부분품, 용기, 포장재료, 공장유지용 재료, 소모품 등으로 실제 사용한 총사용액

- 연료 이외의 모든 제조가공용 원재료 및 공장유지·관리를 위한 재료, 비품, 소모품, 구입한 물 등 가운데 실제로 사용한 총사용액
 - 원재료를 사용해서 중간제품을 만들고, 특히 그 중간제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는 처음으로 사용한 원재료비만을 조사
 - 동일 기업에 속하는 다른 사업소로부터 입수한 것과 농업, 임업, 수산업, 광업 활동에 있어서 자가 취득한 것을 사용한 액도 시가로 환산하여 조사
 - 연료로 사용한 것도 원재료로서 사용한 경우 예를 들면 코크스(cokes) 제조용 석탄, 고무 용제에 사용된 석유 등은 원재료사용액에 포함
 - 연료사용액: 석유, 가스, 석탄 등(화물운수용 및 난방용 연료 포함)
 - 동일 기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소에 송전하고 있는 자가발전소가 사용한 석탄, 석유 등의 사용액은 제조품출하액 등이 가장 많은 사업소로 작성
 - 전력사용액: 공장의 전등용은 포함하나 자가발전용은 제외
 - 위탁생산비: 원재료 또는 제품을 다른 기업의 사업소에 지급해서 제조, 가공을 위탁한 경우 이것에 지불된 가공임 또는 지불해야 할 가공비
- ⑨ 유형고정자산액: 토지, 건물·건축물, 기계·장치, 선박·차량, 내구년수 1년 이상의 공구, 기구, 철강제품 등을 연초현재고, 연간취득액, 연간제거액, 감가상각액 등으로 분리하여 작성
- 사업소가 소유하는 모든 유형고정자산(사업소 구외의 것도 포함)을 장부가액으로 조사
 - 연초현재고: 토지와 토지를 제외한 유형고정자산(건물·건축물, 기계·장치, 선박·차량, 내구년수 1년 이상의 공구, 기구, 철강제품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
 - 취득액
 - 구입, 건설, 자가제작, 동일기업에 속하는 다른 사업소로부터 입수, 건설가계정으로부터 대체를, 취득시의 장부가액 또는 대체시의 평가액으로 조사
 - 증개축, 개조, 증설 등에 있어서는, 기존 자산의 장부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그 증가액을 조사하지만, 단지 자산재평가에 의한 고정자산의 증가는 조사하지 않음.
 - 제거액: 매각, 철거, 동일기업에 속하는 다른 사업소에 인도 또는 감모 및 손실에 의한 제거액을 토지와 이외 유형고정자산으로 구분하여 조사

- 감가상각액: 감가상각비로는 유형고정자산계정으로부터 공제한 금액 또는 감가상각누계액에 당기분으로 새로 적용된 금액으로조사
- 건물, 구축물
 - 건물에는 공장, 사업소 이외 사업소의 고정자산장부때 포함된 사택, 이외 경영부속물(構外 것을 포함), 부속설비가 포함됨.
 - 구축물에는 독(Doc), 다리, 암벽, 棧橋, 궤도, 저수지, 갯도, 굴뚝, 기타 토지에 정착하는 토목설비, 공작물, 포장도로, 주차장 등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조사
- 건설가계정을 설정하고 있는 사업소는 차입 쪽에 추가되는 금액을 「増」으로, 그 계정으로부터 유형고정자산계정 혹은 다른 계정으로 대체된 금액의 합계를 「減」으로 조사

⑩ 리스계약에 의한 계약액 및 지불액(소비세액 포함)

- 리스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물건을 사용하는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계약기간 중 원칙적으로 도중에 해약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함.
- 「리스계약액」은 신규로 계약한 리스 가운데 1년간 검수가 완료된 물건차수령증을 교부한 물건에 대한 리스계약액(리스료총액)의 합계금액(소비세액 포함)을 의미
- 「리스지불액」은 사업소에 존재하는 모든 리스물건에 대한 연간지불리스료의 합계금액(소비세액 포함)을 의미
- 리스거래를 매매거래에 연계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행하는 경우에는 리스항목으로 작성하지 않고 유형고정자산항목에서 장부가액으로 조사

⑪ 제조품재고액, 반제품, 제작 중인 제품의 가액 및 원재료, 연료의 재고액(연초액과 연말액을 구분)

- 재고액에는 사업소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한정하며, 하청임가공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지불한 원재료 및 하청임가공한 제조품은 포함하지 않음.
- 금액은 장부가액을 기준이며,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건적시가로 조사

⑫ 제조품의 출하액, 재고액 등: 연간 품목별 제조품 출하액 품목별 제조품 재고

액, 연간가공임수입액, 연간수수료수입액(소비세액 포함) 등을 구분하여 조사

- 소비세 등 국내소비세액 등을 포함한 금액기준이며, 재고액은 연말현재로 장부가액 기준으로 조사
- 제조품에는 부산물, 제조과정에서 나오지 않은 폐물도 포함
- 제조품명, 임가공품명, 번호, 수량단위명 등은 조사표와 함께 배포하는 「상품준류표」를 기준
- 품목별 제조품출하액
 - 동일기업에 속하는 다른 사업소에 인도한 것, 원재료 또는 제조품을 다른 기업의 사업소에 지급해서 제조, 가공하여 출하한 제조품도 포함
 - 동일기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소에 송전하고 있는 자가발전소가 잉여전력을 다른 곳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판매전력을 제조품출하액 등이 가장 많은 사업소의 출하액에 포함
 - 할인, 에누리의 경우에는 해당 분을 차감
 - 동일기업의 다른 사업소에 인도한 것은 시가로 출하액에 포함
- 품목별 제조품재고액에는 반제품 및 제작 중인 제품은 제외
- 가공임수입액에는 다른 기업의 사업소가 소유하는 원재료 또는 제품에 임가공해서 해당 연도 중에 인도한 것에 대해서 얻은 가공임을 조사
 - 이 조사에 있어서 임가공이라는 것은 다른 기업의 사업소에서 지급된 주요 원재료에 의해서 제조하고 혹은 다른 기업의 사업소가 소유하는 제품, 반제품에 가공처리를 가하고, 이것에 의해 가공임을 얻은 경우에 한 함. 따라서 보통 가공업이라는 산업에 속하는 사업소에서 자기 소유하는 원재료나 제품에 가공하는 경우는 그 사업소의 「제조품」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품목별제조품출하액」으로 조사
- 수리료수입액에는 타인의 것을 수리해서 얻은 수수료를 조사
 - 선박, 철도차량의 수리, 항공기 및 항공기용 원동기의 분해정비 등은 수리로 취급하지 않음
 - 자기소유의 원재료에 의해서 수리를 행한 경우에는 품목별제조품출하액에

포함하며, 다른 곳에서 원재료를 받은 경우에는 가공임수입액에 포함.

⑬ 연간 주세, 담배세, 휘발유세, 지방도로세의 합계

- 국내소비세액은 소비세를 제외한 납세기준으로 조사

⑭ 연간 제조품출하액에서 점하는 직접수출액의 비율

- 직접수출이란 사업소가 직접 자사 혹은 지기명의로 통관절차를 행하고, 수출허가증의 교부를 받은 것을 말하며, 상사 등 다른 기업을 경유해서 수출한 것은 제외됨.
- 제조품출하액에서 점하는 직접수출액의 비율은 소수점 2자리까지 조사

⑮ 주요 원재료명: 구입한 것(동일기업의 다른 사업소로부터 입수한 것을 포함)과 다른 기업으로부터 지급된 것(무상)으로 구분

- 구입 혹은 지급된 원재료명 가운데 주요한 것을 조사
- 구입한 원재료를 사용해서 중간제품을 만들고, 특히 그 중간제품을 원재료로 해서 제품을 만드는 경우 최초로 구입한 원재료명을 조사

⑯ 작업공정

- 제조품의 출하액, 재고액 등으로 조사한 제조품 및 임가공품 중 주요한 것에 대해서 그 사업서의 작업공정을 단계적으로 조사
- 2종류이상의 제조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운데 어느 방법에 의하는가 또 기계에 의하는가 아니면, 수작업에 의하는가를 중심으로 조사

⑰ 공업용지 및 공업용수

- 사업소의 부지면적 및 건축면적 : 임차 포함 연말현재 기준
- 1일당 수원별 용수량은 공업용수도, 상수도, 정호수, 기타담수, 회수수 등 담수와 해수로 구분
- 1일당 용도별 용수량은 보일러용수, 원료용수, 제품처리용수·세척용수, 냉각용수·온조용수, 기타용수로 구분

⑮ 신고자(대표자)의 기명

⑯ 본조사표의 내용에 대하여 응답이 가능한 사람의 성명(필명)

⑰ 비고란에는 휴업 중, 조업준비 중 혹은 조업개시 후 미출하의 사업소는 그 요지를 기입

(2) 조사표乙의 경우

□ 조사표乙에는 상기 조사표甲의 조사항목 중에서 다음의 항목이 제외됨

- 리스계약에 의한 계약액 및 지불액(소비세액 포함)
- 제조품재고액, 반제품, 제작 중인 제품의 가액 및 원재료, 연료의 재고액(연초액과 연말액을 구분)
- 제조품의 재고액

(3) 2001년 조사에 있어서 조사항목의 개정

□ 종사자수 항목의 세분화(조사표갑을 공통): 상용노동자와 개인사업주 및 무급종사자 2개 항목으로 구분되었던 것을, 상용노동자를 정사원·정직원 등, 파트·아르바이트 등, 출항·파견수입자로 세분화하고 임시고용자를 구분하여 조사

변경이전 조사표

종업원수	남	여	계
상용노동자			
개인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합 계			

변경이후 조사표

종사자	개인사업주 및 무급가족종 사자	상용노동자			계	임시 고용자
		고용자		출항·파견 수입자		
		정사원, 정직원	파트· 아르파이트 등			
남						
여						
합 계						

☐ 내국소비세 중에서 소비세만을 폐지

☐ 제조품출하액에서 점하는 직접수출액의 비율 신설

☐ 현금급여 총액의 항목에 대한 정의를 종업원의 구분 변경에 적합하도록 변경

기타급여의 정의 변경

<변경 전>

상용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또는 해고예정수당과 상용노동자에 포함되지 않는 임시·일용자에 대한 급여

<변경 후>

상용근로자 내의 고용자에 대한 퇴직금 또는 해고예고수당, 출항·파견수입자에 대한 지불액, 임시고용자에 대한 급여, 출항된 종업원에 대한 부담금 등으로 변경

☐ 조사표갑: 공업용수 항목의 내역을 일부 통합

통합내용

1일당 수원별 용수량 조사에서 지표수·복유수, 정호수를 정호수로 통합

1일당 용도별용수량 조사에서 별도 항목으로 조사하였던 냉각용수, 온조용수를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

- 조사표율: 유형고정자산 항목의 조사를 매년 조사에서 5년주기 조사로 변경 (0, 5 연도)

라. 집계 및 공표

☐ 종업원 4명 이상의 사업소에 대해, 조사 실시로부터 약 9개월 후에, 주요 조사 항목(사업소수, 종업원수, 현금 급여 총액, 원재료 사용액, 제조품 출하액, 유형 고정자산액)을 산업 중분류(2자리수 분류), 종업원 규모별, 도도부현(都道府縣) 별로 집계하여 속보로 공표

평성13(2001)년 공업통계속보의 구성

- 제목: 평성13년 공업통계속보
- 헤드라인
 - 출하액, 부가가치액은 재차 감소,
 - 사업소수는 미미하나마 10년만에 증가
- 속보의 포인트 정리
 - 전체동향
 - 토픽
- 속보의 본문
 1. 우리나라의 공업개요(종업원10인이상의 사업소)
 - ①사업소수
 - ②종업원수
 - ③출하액
 - ④부가가치액
 - ⑤유형고정자산취득액
 - ⑥리스계약액·지불액
 3. 지역별 현황(종업원10인이상의 사업소)
 - ①사업소수
 - ②출하액
 - ③부가가치액
- <토픽>
 1. 사업소의 개업·폐업·계속현황(종업원10인이상의 사업소)
 - ①개업을·폐업을·계속사업소
 - ②계속사업소의 출하액 전년비
 2. 지역별로 본 구조변화(종업원10인이상의 사업소)
 - (1)산업별
 - (2)지역별

□ 조사 실시로부터 약 1년 3개월 후에 「공업통계표」로서, 각 편(「산업편」, 「품목편」, 「시정촌(市町村)편」, 「용지·용수편」, 「공업지구편」, 「기업통계편」)을 차례 차례 집계하여 확보로 공표

- 산업편은 종업원 4인이상 사업소에 대해서 일본표준산업분류에 기초하여 추가 되는 제조활동에 의해 산업을 부여하고 산업별로 집계한 것
- 품목편은 종업원 4인이상 사업소에 대해서 각 사업소의 제조품 및 가공품을 품목별로 집계한 것

- 시구정촌(市區町村)편은 종업원 4인이상 사업소에 대해서 주요한 조사항목을 시구정촌(市區町村)별로 집계한 것
- 공업지구편은 종업원 4인이상 사업소에 대해서 주요한 조사항목을 도도부현(都道府縣)별, 공업단지별로 집계한 것
- 용지·용수편은 종업원 30인이상 사업소에 대해서 공업용지, 공업용수에 관한 조사항목을 집계한 것으로, 공업용지·공업용수의 사용상황 등을 파악
- 기업통계편은 종업원 4인이상 사업소에 대해서 사업소단위의 조사결과를 기업단위로 전환하여 집계한 것

□ 산업편의 집계관련 특이 사항

- 산업편은 「공업조사표갑」 및 「공업조사표을」의 종업원 4인이상 사업소에 대해서 산업별 집계를 한 것
- 사업소의 산업별 집계를 위한 산업 결정 방법

<일반적인 방법>

- ① 제조품이 단품만의 사업소에 대해서는 품목분류 6자리수 번호 상에서 4자리수로 산업세분류를 결정
- ② 제조품이 복수의 품목에 걸치는 사업소의 경우는, 우선 앞의 2자리수(중분류)를 기준으로 동일 품목에 속하는 제조품 출하액을 합계하여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자리번호를 결정한 다음, 그 결정된 자리수의 번호 2자리수 내에서, 3자리 번호(소분류) 특히 4자리 번호(세분류)를 결정하여 최종적인 산업으로 분류

<특수 방법>

- 상기 방법 이외에, 원재료, 작업공정, 기계설비 등에 의해 산업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중분류26 철강업」에 속하는 「용광로에 의한 제철업」, 「전로·전기로에 의한 제강·제강압연업」, 「열간압연업」, 「냉간압연업」, 「냉간롤성형형강제조업」, 「강관제조업」, 「신철업」, 「마봉강철제조업」, 「人拔강관제조업」, 「신선업」 및 「기타 제강을 실시하지 않는 강재제조업」 등 11개 산업

□ 품목편의 집계관련 특이 사항

- 품목편은 「공업조사표갑」의 품목별제조품출하액, 품목별제조재고액, 가공임수입액, 「공업조사표을」의 품목별제조품출하액, 가공임수입액 등을 집계한 것
- 품목편의 사업소수는 산업과 관계없이 해당품목을 생산한 모든 사업소수를 집계한 것

□ 기호 및 주기

- 통계표에서 「-」는 해당값이 없는 것이며, 「0」는 사사오입에 의한 단위미만, 「▲」은 마이너스의 값을 나타냄
- 「x」는 1 또는 2개의 사업소에 관한 값으로, 이것을 그대로 발표하면 개인신고자의 비밀이 누출될 우려가 있어 은닉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3개이상의 사업소에 관한 수치에도 1 또는 2개 사업소의 값이 전후의 관계로부터 판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은닉한 것을 의미함
- 금액표시의 단위는 백만엔으로 하며, 단위미만은 사사오입하고, 구성비는 소수점 이하 3자리 미만은 버림
- 「중분류 29 일반기계기구제조업」에 있어서 이탤릭 수치는 「중분류 33 무기제조업」의 값을 가산한 것

마. 특별 집계방법

□ 품목과 산업의 관계에 대한 사항

- 공업통계조사에서는 복수 품목을 제조하는 사업소의 산업명은 생산하는 품목별 제조품출하액의 비율이 큰 산업에 따르기 때문에 생산품목은 동일품목일지라도 동일산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포함될 수 있음
- 이러한 품목과 산업의 관계는 「품목별 출하에 있어서 산업별 사업소수 및 출하액」의 산출율과 「산업별 출하에 있어서 품목별 사업소 및 출하액」의 출하율 통계표에 기초하며 모두 종업원 10인이상 사업소에 대한 것으로 파악

- ① 「품목별 출하에 있어서 산업별 사업소수 및 출하액」은 생산품목이 어느 산업에 의해서 생산되었는가를 산출율이 높은 산업순(산출율이 2%미만의 산업은

$$A\text{품목의 } B\text{산업 산출율} = \frac{(A\text{품목의 } B\text{산업출하액})}{(A\text{품목 전체출하액})} \times 100$$

생략)으로 나타난 것이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

- ② 「산업별 출하에 있어서 품목별 사업소수 및 출하액」은 각각의 산업에서 출하되는 품목을 출하율이 높은 품목순(출하율이 2%미만의 산업은 생략)으로 나타난 것이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

$$A\text{산업의 } B\text{품목 출하율} = \frac{(A\text{산업의 } B\text{품목출하액})}{(A\text{산업 전체출하액})} \times 100$$

※ 단, 산업별 출하에 있어서 품목별 사업소수 및 출하액의 산업 사업수는 임가공전업의 사업소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편의 사업소수와 불일치할 수도 있음

□ 용지·용수편의 집계관련 특이 사항

- 용지·용수편은 「공업조사표갑」에 항목을 산업별로 집계한 것

- 공업용지·용수에 관한 조사는 통계 보고 조정법(昭和27년(1962년)법률제 148호)에 근거하는 승인 통계조사로서 1965년에 공업 통계조사의 부대 조사로서 개시되었지만, 조사결과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행정시책 자료로서 중요하고 공업통계조사의 집계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등에 의해 1973년 조사부터 공업 통계조사의 지정조사항목이 되었음

- 공업용지, 공업용수, 공업지구 등관한 용어의 정의

- 사업소의 부지면적 및 건축면적
 - 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차를 포함하는 부지의 전면적을 조사하며, 다만 鑛區⁴⁾, 주택, 기숙사, 그랜드, 창고, 기타복리후생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생산시설 등이 있는 부지와, 도로, 담, 울타리 등으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경우 또는 이들 부지의 면적이 어떤 방법으로든 구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나, 사업소의 인접지에 있는 확장예정지를 사업소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

4) 광업권이 미치는 토지의 범위에서, 광물의 사굴 또는 채굴이 허가된 구역

- 사업소 건축면적은 상기의 부지면적 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의 면적을 합계한 것으로 조사
- 공업용수: 사업소 내에서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용수(종사자 음료수, 잡용수를 포함)
- 1일당 용수량: 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 1년 동안 그 사업소에서 사용한 공업용수의 총량을 조업일수로 나눈 것
- 1일당 수원별 용수량: 공공수도(공업용수도, 상수도), 정호수, 기타담수, 회수수 등 담수와 해수로 구분하여 조사
 - 공공수도는 도도부현(都道府縣) 또는 시정촌(市町村)에 의해서 경영되고 있는 공업용수도 또는 상수도로부터 공급을 받는 물
 - 井戸水(보통의 우물물)는 淺井戸, 深井戸 또는 湧水로부터 취수한 물
 - 기타담수는 상기의 어느 경우에도 속하지 않는 「회수수」 이외의 것으로 예를 들면, 하천, 호수 또는 저수지로부터 취수한 물(지표수) 및 하천부지 또는 과거 하천부지 내에서 집수매거(빗물 등을 모으는 集水)들을 연결한 것)에 의해 취수하는 물(복유수), 농업용수로에서 공급을 받는 물, 다른 사업소 내에서 한번 사용한 물을 순환해서 사용하는 물 등이 포함됨.
 - 回收水는 사업소에서 사용한 물을 순환해서 사용하는 물
 - 해수는 해수 및 하천 중 상시조수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으로부터 취수한 염소 이온 농도 이상의 물
- 1일당 용도별 용수량: 보일러용수, 원료용수, 제품처리용수·세척용수, 냉각용수·온조용수, 기타용수로 분류하여 조사
 - 보일러용수는 보일러 내에서 증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물
 - 원료용수는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원료로서 그대로 사용한 물, 혹은 제품 원료의 일부로 첨가 사용한 물
 - 제품처리용수·세척용수는 원료, 반제품, 제품 등의 침식이나 용해 등의 물리적인 처리를 가하기 위해 사용한 물 및 공장의 설비 또는 원료·제품 등의 세척용으로 사용한 물
 - 냉각용수는 공장의 설비 또는 원료·제품 등의 냉각용으로 사용한 물
 - 온조용수는 공장 내의 온도 또는 습도의 조정 등을 위해 사용한 물
 - 기타용수는 상기 이외의 물로 종사자의 음료수, 잡무수 등

□ 기업통계편의 집계관련 특이사항

- 기업통계편은 기업단위로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라 사업소를 기업단위로

전환한 것으로, 여기서 기업수는 기업에 속하는 사업소를 기업별로 명기한, 다음의 ①과 ②의 합계임

- ① 「1사1사업소를 보유하는 기업」이란 1기업으로 제조사업소가 1개인 기업
- ② 「1사2사업소이상 보유하는 기업」이란 기업에서 제조사업소가 2개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산업분류
 - ① 「1사1사업소를 보유하는 기업」은 해당 사업소(=기업)의 제조품 출하액 등에 의해 산업을 결정
 - ② 「1사2사업소이상 보유하는 기업」은 산하에 있는 각 사업소의 산업 세분류별 제조품 출하액 등을 집계하여 기업의 주된 제조활동에 의해 그 기업의 산업을 결정
 - 경영조직은 「회사」, 「조합·그 외의 법인」 및 「개인」으로 구분
 - ① 회사란 법률규정에 의해 법인격을 인정받아 사업을 경영하지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를 말함
 - ② 조합·그 외의 법인이란 법률규정에 의해 법인격을 인정받은 사업을 경영하는 조합, 상기①의 회사를 제외한 그 외의 법인 등을 말함
 - ③ 개인이란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공동경영의 경우도 법률규정에 의해 법인격을 인정받지 않은 경우는 개인에게 포함됨
 - 제조업이 아닌 기업에 속하는 사업소는 해당사업소의 제조품출하액 등에 의해 산업을 결정하고 이를 해당사업소를 1기업으로 함
 - 「기업통계편」과 「산업편」은 산업별 집계결과의 관계
 - 산업편의 산업별 집계결과는 사업소 마다 그 주된 제조활동에 의해 산업을 결정하고 이것을 산업별로 집계한 것이며
 - 기업통계편의 산업별 집계결과는 사업소를 명기한 통합체(기업)의 주된 제조활동에 의해 산업을 결정하고 이것을 산업별로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통계편과 산업편에서는 동일한 산업일지라도 그 집계결과는 같지 않음

바. 분석을 위한 산출식

(1) 통계지표의 산출

□ 부가가치액의 산출

○ 종업원 30명 이상의 사업소

- 부가가치액 = 생산액 - 소비세를 제외한 내국 소비세액수 + 추계소비세액 - 원재료사용액등 - 감가상각액
- 생산액 = 제조품 출하액등+(제조품 연말 재고액-제조품 연초 재고액)+(반제품 및 제작중인 물건 연말 재고액-반제품 및 제작중인 물건 연초 재고액)
- 소비세를 제외한 내국소비세액수: 주세, 담배세, 휘발유세 및 지방 도로세의 납부 세액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합계
- 추계소비세액: 2001년 조사부터 소비세액 조사를 폐지했기 때문에 추계한 것으로 직접 수출분을 제외

○ 종업원 10~29명의 사업소: 연도 끝자리가 0, 5년인 경우에는 종업원 30명 이상에 적용한 산식에 입각하나, 이외의 년도에 대해서는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출

- 조부가가치액 = 제조품 출하액등 - (소비세를 제외한 내국소비세액수+추계소비세액) - 원재료 사용액등
- 종업원 10~29명 사업소의 경우 제조품의 연초 및 연말의 재고액, 반제품 및 제작중인 제품의 연초 및 연말 가액의 조사는 끝자리 0, 5년뿐이기 때문에 0, 5년 이외의 해는 제조품 출하액 등을 생산액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액을 산출

○ 종업원 9명 이하

- 조부가가치액 = 제조품 출하액등 - (소비세를 제외한 내국소비세액수+추계소비세액) - 원재료 사용액등
- 종업원 9명 이하의 사업소는 제조품 출하액 등을 생산액으로 간주하고, 감가상각액을 조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부가가치액으로 산출

□ 종업원 1인당 지표

○ 종업원 30인이상

- 종업원 1인당 제조업출하액 등 =

$$\frac{(\text{제조품출하액 등}) - (\text{국내소비세액})}{(\text{상용노동자연간월평균수}) + (\text{개인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수})}$$

-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 =

$$\frac{(\text{부가가치액})}{(\text{상용노동자연간월평균수}) + (\text{개인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수})}$$

- 상용노동자 내 고용자 1인당 현금급여액 =

$$\frac{(\text{상용노동자 내 고용자에 대한 기본급, 제수당과 특별지출 급여액})}{(\text{상용노동자 내 고용자수})}$$

○ 종업원 429이하

· 종업원 1인당 제조업출하액 등 =

$$\frac{(\text{제조품출하액 등}) - (\text{국내소비세액})}{(\text{상용노동자수}) + (\text{개인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수})}$$

·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 =

$$\frac{(\text{부가가치액})}{(\text{상용노동자수}) + (\text{개인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수})}$$

· 종업원 1인당 현금급여총액 =

$$\frac{(\text{현금급여총액})}{(\text{상용노동자수}) + (\text{개인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수})}$$

(2) 영세사업체에 대한 추계

- 종업원 3인이하 사업소수의 추계: 공업통계는 연도 끝자리가 0, 3, 5, 8 이외의 연도에 대해서는 종업원 4인이상의 사업소를 대상으로만 조사하므로 종업원 3인이하의 사업소 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추계

○ 추계항목: 사업소수, 종업원수, 현금급여총액, 원재료사용액, 제조품출하액

등 5개 항목

○ <추계방법>

① 사업수 및 종업원수

· 공업조사준비조사명부에 의해 추계

② 현금급여총액, 원재료사용액, 제조품출하액

· 전국의 종업원 49인 사업소의 산업세분류별(4자리) 전년대비 증감률을 이용하여 도도부현(都道府縣)별의 산업세분류별 값에 추계하고, 산업소분류(3자리), 산업중분류(2자리)에서 합한 값을 각 도도부현(都道府縣)의 추계치로 하며, 이들을 합한 것을 전국의 값으로 함

□ 그러나 종업원 3인이하의 사업소에서도 특정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소의 값 및 현 자체로 종업원 3인이하 사업소에 대하여 조사를 행하고 있는 곳(니가타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기후현)에 대해서는 실사 통계를 사용

4. 상업통계조사

가. 개요

□ 조사목적

- 도소매업의 모든 사업소를 조사하여 도소매업 산업구조나 사업 활동의 실태 파악
- 국가나 도도부현(都道府縣), 시정촌(市町村)에 있어서 상업의 육성, 중심시가지의 활성화 등의 시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소의 경영방침을 작성하는데도 활용되고 있음

□ 조사연혁

- 昭和6-11년(1931-36년)까지 매년 실시된 상공성의 「東京市商業調査」가 효시
- 통계법에 의하여 昭和22(1947)년 지정통계 23호로 지정된 이후 昭和24-26(1949-51)년까지는 특정시에 대하여 매년 실시

- 昭和27(1952)년부터는 본격적인 센서스로서 2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
 - 昭和27-31(1952-56)년에는 갑조사(법인조직의 상점과 상용종사자를 사용하는 개인상점), 을조사(상용종사자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상점) 2종,
 - 昭和33(1958)년부터는 갑 조사와 을조사에서 음식점을 분리하여 병조사를 실시
- 昭和47(1972)년부터 갑조사는 법인조직의 상점에, 을조사는 개인상점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개정, 昭和51(1976)년 이후에는 3년 주기로 개정됨
- 昭和54(1979)년부터는 조사일을 종래의 5월에서 6월로 변경함과 동시에 병조사의 조사표를 「병」 과 「병의 2」로 분리하고, 「매장면적」의 정의변경(「대규모소매점호에 대한 소매업 사업활동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의로 일치), 손님전용주차장의 유무 등 조사항목의 추가 등을 개정함.
- 昭和57(1982)년조사에서는 손님전용주차장의 유무에 부가해서 「개점시각과 폐점시각」 및 「불런터리체인 또는 프랜차이즈 체인 조직에의 가맹 유무」의 조사항목 추가, 또한 「병의 2」 조사는 소화57조사에서는 응답자 기입방식으로 개정하고, 昭和61(1986)년부터는 중지되었음.
- 昭和60(1985)년부터는 재정 등의 사정에 의해 갑·을조사와 병조사가 2년에 걸쳐 분리 실시됨. 즉, 昭和60(1985)년에는 갑과 을조사, 昭和61(1986)년에는 병조사, 昭和63(1988)년에 갑과 을조사, 평성 원년(1989)년에는 병조사가 실시
- 평성4(1992)년에는 음식점에서 손님전용주차장의 유무항목이 추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상점수의 추이가 다음과 같이 변화
 - 1974년 238만점, 1976년 257만점
 - 1979년 278만점, 1982년 299만점
 - 1985-86년 254만점(병의 2 제외)
 - 1988-89년 254만점(병의 2 제외)
 - 1991-92년 254만점(병의 2 제외)
- 평성9(1997)년 이후 조사부터는 5년마다 실시하고, 이후 2년인 중간년도에 간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표 4-7〉 일본 상업통계의 조사기일

조사연차	조사기일	조사기일	조사연차	조사기일	조사기일
1952년	9월1일	도매·소매업, 음식점	1979년	6월1일	도매·소매업, 음식점
1954년	9월1일	도매·소매업, 음식점	1982년	6월1일	도매·소매업, 음식점
1956년	7월1일	도매·소매업, 음식점	1985년	5월1일	도매·소매업
1958년	7월1일	도매·소매업, 음식점	1986년	10월1일	일반음식점
1960년	6월1일	도매·소매업, 음식점	1988년	6월1일	도매·소매업
1962년	7월1일	도매·소매업, 음식점	1989년	10월1일	일반음식점
1964년	7월1일	도매·소매업, 음식점	1991년	7월1일	도매·소매업
1966년	7월1일	도매·소매업, 음식점	1992년	10월1일	일반음식점
1968년	7월1일	도매·소매업, 음식점	1994년	7월1일	도매·소매업
1970년	6월1일	도매·소매업, 음식점	1997년	6월1일	도매·소매업
1972년	5월1일	도매·소매업, 음식점	1999년	7월1일	도매·소매업(간이조사)
1974년	5월1일	도매·소매업, 음식점	2002년	6월1일	도매·소매업
1976년	6월1일	도매·소매업, 음식점			

자료: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http://www.meti.go.jp/statistics/index.html>

□ 2002년 조사의 특징

- 조사항목의 충실 : 최근 유통구조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한 유통 네트워크화, 유통시장의 국제화, 규제완화의 진전 등을 배경으로 한 유통경로의 단축화·집약화, 인터넷의 보급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확대, 체인전개의 대형 잡화점(drugstore)의 출현 등으로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유통구조의 최근 변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체인조직에의 가맹현황을 새로운 조사항목으로 추가
- 집계사항의 충실 : 이전까지의 업체에 추가하여 홈센터나 대형잡화점 응에 대한 집계를 추가
- 결과공표의 조기화: 확보 및 2차가공통계표를 수개월 앞당겨 공표할 예정

□ 조사주기 및 기준일

- 조사주기 : 3년

- 조사기일 : 2002년에는 6월1일

나.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대상 : 일본표준산업분류 「대분류J-도매·소매업」에 속하는 사업소

- 공영, 민영의 사업소(회사, 관공서, 학교, 공장 등의 구내에 있는 별도 경영 사업소(매점 등), 또한 점포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상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 통신 및 카탈로그판매 등의 사업소)를 대상
- 민영의 사업소이지만 역의 개찰구내, 극장내, 운동경기장내, 유로도로내 등 요금을 지불하고 출입하는 유료시설내의 사업소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다만, 유료의 공원, 유원지, 테마파크 내에 있는 별도 경영의 사업소는 조사 대상에 포함
- 일본에 소재하는 외국기업의 지사·지점 등도 포함되나, 개인경영의 농림어업은 제외

□ 조사단위 : 사업소

□ 조사방법: 조사원 기입방식으로 전수조사

- 도도부현(都道府縣)의 지사가 임명한 상업통계조사원이 담당하는 조사 구역 내에 있는 조사 사업소에 조사표를 배포하고, 조사 사업소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대리인이 기입한 조사표를 취합

□ 조사경로: 사업소조사와 기업조사를 병행하고 있음.

- 사업소조사(조사원 조사방식): 신고자(사업소)가 자기 조사표에 기입하는 자체방식
 - 경제산업성장관⇄도도부현(都道府縣)지사⇄시읍면장(지도원)⇄조사원⇄조사사업소
- 기업조사: 상업기업의 본사·본점 등이 산하 사업소의 조사표를 일괄해서 작성하고, 경제산업성 또는 도도부현(都道府縣)에 직접 제출하는 본사 등 일괄조사방식

- 경제산업성장관 또는 도도부현(都道府縣)⇔대상기업

다. 조사항목 및 설명(2002년 조사 기준)

□ 조사표이 조사항목은 법인조직의 사업소에 대해서는 ①-⑬의 전항목, 개인경영의 사업소에 대해서는 ⑬-⑮항목을 제외하며, ⑩-⑮항목은 소매업만 조사

① 명칭 및 전화번호

② 사업소의 소재지

③ 경영조직 및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④ 본점·지점별 및 본점의 소재지별 전화번호

⑤ 사업소의 개설시기

⑥ 종업원수, 사업의 종류 등 기본적인 속성

○ 종업원 및 취업자: 조사기준일에 해당 사업소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 취업자로서, 종업원은 「개인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업원」, 「유급임원」, 「상용고용자」의 합계를 말하며, 취업자는 종업원 중에 「임시고용자」와 「출향·파견수입자」를 합친 것을 말함

- 개인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업원 : 개인경영의 사업주로 그 사업소의 실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과, 개인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급여를 받지 않고 보통 사업소의 일을 돕고 있는 사람
- 유급임원 : 법인, 단체의 임원(상근, 비상근 불문)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상용고용자 : 「정사원·정직원」, 「파트·아르바이트 등」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사람, 1개월이 넘는 기간을 정해 고용된 사람, 이외의 고용자 가운데 조사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한달에 18일 이상 고용된 사람
- 임시고용자 : 상용고용자 이외의 고용자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고용된 사람이나 일일 고용된 사람

- 출향·파견수입자 : 인재파견회사 등 별도경영의 사업소로부터 파견된 사람
- 파트·아르바이트 등의 8시간 환산 고용자수 : 파트·아르바이트 등의 종업원에 대해 평균적인 1일당 노동시간인 8시간으로 환산한 것

⑦ 연간상품판매액 등

- 연간상품판매액 : 연간 해당 사업소에서 실제로 상품을 판매한 액수로 소비세액을 포함
- 그 외의 수입액 : 연간 판매상품에 대한 수리료, 중개수수료, 제조업 출하액, 음식 부문 수입액, 서비스업 수입액 등 상품 판매액 이외 사업에 의한 수입액을 합계한 것으로 소비세액을 포함
- 중개수수료 : 타인 또는 다른 사업소를 위해 중개인으로서 도매업 상품매매의 알선을 행하고, 그 중개행위로부터 얻는 수수료

⑧ 연간상품판매액의 판매방법별 비율

- 판매방법의 구분
 - 현금판매 : 현금으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로, 수표, 상품권, 선불카드, 데빗 카드(debit card)에 의한 판매를 포함
 - 신용판매 : 신용카드에 의한 판매, 어음에 의한 거래,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않는 할부판매, 비할부판매 등

⑨ 상품 현물액

- 상품소유액 : 조사기준년도 말일 현재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 상품액으로 매입시 원가에 의함

⑩ 연간상품판매액 중 소매판매액의 상품판매형태별 비율

- 상품판매형태(소매업 한정)의 구분
 - 매장판매 :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한 경우로 이동 판매도 포함
 - 방문판매 : 방문판매원 등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상품을 판매한 경우
 - 통신·카탈로그판매 : 카탈로그,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

용해 광고를 하고 소비자로부터 우편, 전화, FAX, 인터넷, 은행입금 등의 통신 수단에 의한 구입신청을 받아 상품을 판매한 경우

- 자동판매기에 의한 판매 : 상업사업소가 관리하고 있는 자동판매기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
- 기타 판매 : 피자의 택배, 배달원, 생활협동조합의 공동구입방식, 신문이나 우유 등의 월정 판매 및 상기 이외의 판매형태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

⑪ 셀프서비스방식의 채용 유무

○ 셀프서비스 방식(소매업만)

- ㉠상품이 무포장 혹은 자유롭게 포장된 상태로 가격이 붙여있는 것
- ㉡배치해 둔 쇼퍼바구니, 쇼퍼카 등으로 손님이 자유롭게 상품을 모을 수 있는 형식
- ㉢판매장의 출구 등에 설치된 계산대에서 손님이 일괄해 대금지불을 실시하는 형식 등 세 개의 조건을 겸비하고 있는 장소
- 셀프서비스방식채용의 사업소란 상기 조건에 의한 판매를 판매장 면적의 50%이상으로 갖고 있는 사업소를 말함

⑫ 매장면적

- 판매장 면적(소매업에 한함) : 조사기일 현재 사업소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판매장의 총건평(식당·다방, 옥외 전시장(식목, 석재 등), 배송소, 계단, 연락통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휴게실, 세면소, 사무실, 창고, 그 밖에 빌려 주고 있는 점포(세입자)분 등은 제외)
- 단, 우유소매업, 자동차소매업, 건구소매업, 다다미소매업, 주유소, 신문소매업의 사업소에 대해서는 판매장면적을 조사하지 않음

⑬ 영업시간 등

- 우유소매업, 신문소매업의 사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을 조사하지 않음

⑭ 손님전용주차장의 유무 및 수용대수

- 손님의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 전용주차장 : 자기 소유 또는 계약 등에 의해 그 사업소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손님용 주차장
- 공용주차장 : 다른 사업소 등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해당사업소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획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손님용 주차장
- 수용 대수 : 만차 상태로 수용할 수 있는 대수
- 병용이란 전용주차장과 공용주차장 양쪽 모두를 가지고 있는 사업소

⑮ 체인 조직에 대한 가맹 유무

○ 체인조직(소매업 한정) 구분

- 프랜차이즈(franchise)체인 가맹 사업소 : 사업소(franchise)가 다른 사업소(franchiser: 본부)와의 사이에 계약을 맺고(가맹) franchiser의 상표나 경영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동일 이미지로 상품판매 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소
- 볼런터리체인(voluntary chain) 가맹 사업소 : 사업소가 동일업종의 사업소끼리 본부를 중심으로 공동 매입하고, 배송, 선전, 매출 등을 실시하는 공동사업에 가맹하고 있는 사업소
- 어느 것에도 가맹하고 있지 않는 사업소 : 상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소로, 예를 들면, 레귤러·체인(직영점, 자동차 메이커)의 특약점, 가전메이커의 판매점, 주유소 등

⑯ 연간상품구입액의 구입처별 비율

- 상품구입액(법인 사업소에 한함) : 연간 기업전체의 상업사업소에 있어서 기업 이외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액수로, 기업 내의 본지점간, 지점상호간의 대체 이동을 실시한 거래액수는 제외하며, 다만, 국외에 있는 자기기업의 지점에서 수입했을 경우는 구입액에 포함
- 본지점간이동: 자기기업내의 본지점간, 지점 상호간 또는 자기기업의 다른 장소에 있는 공장등에서 장부상, 상품의 대체를갔을 경우.
 - 自店內 제조 : 사업소가 소매 판매하기 위해서 그 자리소에서 상품을 제조했을 경우.
 - 생산업자 : 자사주식 총수의 50%를 넘는 주식, 또는 자본의 50%를 넘는 출자구수를 가진 생산업자(모회사)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했을 경우, 또는 모회사 이외의 생산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했을 경우

- 도매업자·기타 : 기업의 도매업자, 소매업자로부터 매입한 경우 및 생산업자 직영의 지점, 영업소 등의 판매사업소로부터 매입한 경우.
- 국외(직접 수입) : 자사(자신) 명의로 통관 수속을 밟아 국외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한 경우

⑰ 연간상품판매액 중 도매판매액의 판매처별 비율

○ 판매처의 구분

- 본지점간이동 : 자기업 내의 본지점간, 지점 상호간 또는 자기업의 다른 장소에 있는 공장 등에 장부상, 상품의 대체를 행한 경우
- 도매업자 : 다른 도매업자에 상품을 도매한 경우
- 소매업자 : 소매업자에게 상품을 도매한 경우
- 산업용사용자·기타 : 산업용 사용자(건설업, 제조업, 운송업, 음식점, 숙박업, 병원, 학교, 관공청등)에 업무용으로 상품을 도매한 경우
- 국외(직접 수출) : 자사(자신) 명의로 통관 수속을 밟아 국외에 상품을 직접 수출한 경우

⑱ 기업의 사업소수 등

라. 집계 및 공표

☐ 집계단위 : 도도부현(都道府縣), 산업소분류별

☐ 공표는 속보와 확보를 기본으로 발표

- 2차 가공 공표 : 업태별 통계편, 유통경로별 통계편, 입지환경특성별 통계편 등을 2차가공으로 공표

〈표 4-8〉 2002년 기준 상업통계조사의 집계결과 공표 형식

종 류	주요내용
제1권 산업편 (총괄표)	주로 산업분류별 종업원 규모별, 연간상품판매액계급별, 매장면적규모별 등의 계급별 통계표를 게재
제2권 산업편 (도도부현(都道府縣)편)	주로 도도부현(都道府縣)별, 동경특별구, 정령지정도시별이 산업분류별 통계표를 게재
제3권 산업편 (시구정촌(市區町村)편)	시구정촌(市區町村)별의 산업분류별 통계표 게재
제4권 품목편	상품(품목)분류별 사업소수 및 연간상품판매액을 게재
<2차 가공>	
업태별 통계편	소매사업소에 대해, 주로 도도부현(都道府縣)별 업태별의 통계표 게재
유통경로별 통계편	법인조직의 도매사업소에 대해, 산업분류별, 도도부현(都道府縣)별의 유통단계·경로별 관련 통계표를 게재
입지환경특성별 통계편	소매사업소에 대해, 도도부현(都道府縣)별의 입지환경특성별, 특성별대규모소매점포의 통계표 게재

□ 조사결과의 활용

○ 유통관련시책의 입안이나 실시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 및 소매상업조정특별법의 운영
- 중심시가지활성화법의 운영
- 중소소매상업진흥법의 운영
- 상업근대화지역계획의 책정
- 도매상업단지 등 계획의 책정
- 상점가근대화계획의 작성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추진
- 도시계획, 시가지재개발계획, 시의 특성분석

○ 소득통계, 구조분석 등의 기초 자료

- 산업연관표 및 지역산업연관표의 작성
- 국민경제계산의 추계
- 현민소득, 시정촌(市町村)소득의 추계

- 지역산업구조분석 및 지역산업비전의 책정
- 각종 백서(경제백서, 중소기업백서, 노동백서 등), 기타 현세요람 등의 작성
- 유통산업비전의 책정
- 기타 민간, 학술연구단체에서 연구, 시장예측, 수요예측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

마. 상업통계표의 산업분류(2002년 기준)

- 상업 통계조사용 분류는 원칙으로서 일본 표준 산업 분류에 준거
- 제11회 일본 표준 산업 분류의 개정에 따라 상업 부문에 대해서는 해당 부문의 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하여 세분류를 중심으로 신설, 통합, 명칭 변경 등 필요한 개정을 실시
- 도매업의 개정 내용
 - 선도적 환경 산업으로서 향후 큰 발전이 전망되는 자동차도매업에 「자동차 중고부물건 도매업(세분류)」을 신설
 - 양적 비중의 저하로 인해 「석탄도매업」, 「금속광물도매업」, 「비금속광물도매업」을 통합해 「광물도매업」을 신설
 - 「화약류도매업」은 「그 외의 화학제품 도매업」에 통합
 - 「대리상, 중개업」은 소분류를 폐지하고 「이의 분류되지 않는 도매업」의 세분류에 이전
 - 「연료도매업」을 「이외에 분류 되지 않는 기타 도매업」에 통합
 - 귀금속제품 및 보석제품을 총칭해 「주얼리」라고 언급하므로 「귀금속 제품도매업」을 「주얼리제품 도매업」으로 명칭을 변경
 - 주류, 우유를 제외한 음료를 통합하여 「청량음료도매업」을 「음료도매업」으로 명칭과 정의를 변경
- 소매업의 개정 내용
 - 「종합 슈퍼」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 「백화점」을 「백화점, 종

합슈퍼」라고 명칭을 변경

- 점포수, 판매규모의 확대에 따라 「기타 음식료품 소매업」에 「편의점(음식료품 중심으로 한정)(세분류)를 신설
- 의약 분업의 진전에 따라 주로 조제를 행하는 약국의 증가를 반영하여 「의약품소매업」에서 「조제약국」(세분류)을 분리 신설
- 시대의 변화에 반영하여 「그 밖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 소매업」과 「비료·사료 소매업」에서 「애완동물·애완동물 용품소매업」(세분류)을 신설
-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소매업」을 「전기기계기구 소매업」과 「전기사무기계기구 소매업」으로 분할
- 청량음료 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반영하여 「그 밖에 분류되지 않는 음식료품 소매업」으로부터 주류 및 우유를 제외한 음료를 「음료 소매업」(세분류)으로 신설
- 「부인·아동복 소매업」은 각각의 전문화가 진전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여성복 소매업」과 「아동복 소매업」으로 분할
- 제조와 비제조의 구분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남성복소매업(제조소매)」, 「남성복소매업(비제조소매)」는 「남성복소매업」으로 통합하고, 「두부·어묵 등 가공식품 소매업(제조소매)」, 「두부·어묵 등 가공식품 소매업(제조소매가 아닌 것)」은 「두부·어묵 등 가공식품 소매업」으로 통합
- 「귀금속제품 소매업」을 도매업과 마찬가지로 「주얼리제품 소매업」에 명칭과 정의를 변경

□ 사업소의 산업결정 방법

- 사업소를 산업 분류별로 집계하기 위한 산업결정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일반적 방법과 특수한 방법에 의해서 등급설정이 이루어짐
- 일반적 방법
 - ① 취급상품이 단품인 경우는 상품분류번호 5자리수 중 상위4자리수의 분류 번호로 세분류를 결정

- ② 취급상품이 복수인 경우는 우선 상품분류 번호 상 2자리수의 도매품목(50~54)과 소매품목(56~60)을 기초로 어느 판매액이 많은가에 따라 도매업인지 소매업인지를 결정
- ③ 산업분류의 등급설정에 대해서는 상품분류 번호 상 2자리수의 판매액으로 분류집계하고 그 중 가장 큰 상위 2자리수에 의해 중분류(2자리수 분류)를 결정하고, 같은 방법으로 상위 3자리수, 상위 4자리수 순서로 분류하여 세분류(4자리수 분류)를 등급설정
- 특수한 방법 : 도매업 중 「각종 상품 도매업」, 「그 외의 각종 상품 도매업」, 「대리상·중개업 소매업 중 「백화점, 종합 슈퍼」, 「그 외의 각종 상품 소매업」, 「각종 식료품 소매업 「편의점」, 「담배·흡연도구전문 소매업」에 대해서 다음의 방법으로 산업분류 및 등급설정

〈표 4-9〉 재화별 소분류 산업 분류

재화종류	소분류번호	산업분류
생산재	501	섬유품(의복 신변품 제외)
	522	화학제품
	523	광물·금속재료
	524	재생자원
자본재	521	건축재료
	531	일반기계기구
	532	자동차
	533	전기기계기구
	539	기타기계기구
소비재	502	의복·신변품
	511	농축산물·수산물
	512	식료·음료
	541	가구·건구·총기 등
	542	의약품·화장품 등
	549	기타 분류되지 않는 도매

① 도매업

- 「4911 각종상품 도매업(종업원이 상시인 100인이상)」 : 생산재, 자본재, 소비재의 3개 재화에 걸쳐서 상품을 판매하고, 각 재화의 판매액이 모두 도매판매 총액의 10%이상이고, 종업원이 100인이상인 사업소(표 참조)
- 「4919 그 외의 각종 상품 도매업」 : 생산재, 자본재, 소비재의 3개 재화에

걸쳐서 상품을 판매하고, 각 소분류의 판매액이 모두 도매 판매액의 50% 미만이며, 종업원이 100인미만의 사업소

- 또한 위의 두 가지에 대해 생산재, 자본재, 소비재의 3개 재화에 걸치는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도, 생산재의 품목이 「524 재생자원도매」에 한정, 소비재의 품목이 「549 그 밖에 분류되지 않는 도매」에 한정될 경우에는 일반적 방법에 따르는 도매업 등급으로 함
- 「5497 대리상, 중개업」: 연간 상품판매액과 그 외 수입액의 중개수수료를 비교해 중개수수료가 많은 경우에 「대리상, 중개업」으로 등급을 설정

② 소매업

- 「5511 백화점, 종합 슈퍼」: 옷(중분류 56) 음식(중분류 57), 주택(중분류 58~60)에 걸치는 상품을 소매하고 의, 식, 주의 각 판매액이 모두 소매판매 총액의 10%이상 70%미만이며, 종업원이 50인이상의 사업소
- 「5599 그 외의 각종 상품 소매업(종업원이 상시 50인미만)」: 의, 식, 주의 각 판매액이 모두 소매판매 총액의 50%미만이며, 종업원이 50인미만의 사업소
- 「5711 각종 식료품 소매업」: 중분류 「57 음식료품 소매업」에 등급이 설정된 사업소 가운데, 소분류 「572~579」 중 3개 이상의 소분류에 해당하는 상품을 소매하며, 그 판매액 모두가 「음식료품 소매 판매액」의 50%를 채우지 못하는 사업소
- 「5791 편의점(음식료품으로 한정)」: 「57 음식료품 소매업」에 등급을 설정된 사업소 가운데, 셀프서비스 방식을 채용하고 있으며, 판매장면적이 30㎡이상 250㎡미만으로, 영업시간이 14시간 이상인 사업소
- 「6091 담배·흡연도구 전문 소매업」: 「60911 담배·흡연도구」의 판매액이 소매판매 총액의 90%이상인 사업소

〈표 4-10〉 의·식·주별 중분류 산업 분류

재화종류	중분류번호	산업분류
생산재	56	옷·직물·의복·신변품
자본재	57	음식·음식료품
소비재	58	자동차·자전거
	59	주택도구·총기·기계·기구
	60	그 외

□ 산업편과 품목편의 집계방법

○ 어떤 사업소의 연간판매액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

상품분류번호	상품명	연간판매액
56111	포복·服地	700
56311	여성복	300
60131	화장품	800
합 계		1800

○ 사업소의 산업결정 방법에 의해 「5611 포복·복지소매업」으로 등급이 설정되어 산업편에서는 사업소수가 1로 계상됨

산업분류	사업소수	연간판매액
5611 포복·服地소매업	1	1800

○ 한편 품목편에서는 상품별로 사업소수가 계상되므로 상기의 예에 대해 취급 상품 「56111 포복·복지」, 「56311 여성복」, 「60131화장품」의 각 상품마다 사업소수 1이 계상되어 중분류 「56」, 「60」의 사업소수 합계는 延事業所數가 됨

산업분류	56 직물·의복·신변품 소매업						60 기타 소매업			
	계		56111 포복·복지		56311 여성복		계		60131 화장품	
	연사업소수	연간상품판매액	사업소수	연간상품판매액	사업소수	연간상품판매액	사업소수	연간상품판매액	사업소수	연간상품판매액
5611 포복·복지소매업	2	1000만엔	1	700만엔	1	300만엔	1	800만엔	1	800만엔

바.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

□ 사업소(상업 사업소): 원칙으로서 일정한 장소(1區劃)를 차지해 「사실적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소」이며, 일반적으로 도매업, 소매업이라고 불리는 는 사업소

□ 도매업 : 다음의 업무를 실시하는 사업소

- ① 소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소
- ② 산업용 사용자(건설업, 제조업, 운송업, 음식점, 숙박업, 병원, 학교, 관공청 등)에 업무용으로서 상품을 대량 또는 고액에 판매하는 사업소
- ③ 주로 업무용에 사용되는 상품(사무용 기계 및 가구, 병원·미용실·레스토랑·호텔 등의 설비, 산업용 기계(농업기구 제외), 건설재료(목재, 시멘트, 판유리 등)를 판매 하는 사업소
- ④ 제조업 회사가 다른 장소에 경영하고 있는 자기 제품의 도매사업소(주로 통괄적 관리적 사무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 예를 들면, 가전메이커의 지점, 영업소가 자기 제품을 도매상 등에 판매하고 있는 경우, 그 지점, 영업소는 도매사업소가 됨
- ⑤ 상품을 도매하는 한편 동종 상품의 수리를 실시하는 사업소, 또한 수리료 수입이 많아도 동종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는 수리업아니라 도매업으로 취급
- ⑥ 주로 수수료를 얻어 다른 사업소를 위해 상품의 매매 대리 또는 중개를 실시하는 사업소(대리상, 중개업), 대리상, 중개업에는 일반적으로 買繼商, 중매인, 농산물집하업으로 불리고 있는 사업소를 포함

□ 소매업 : 다음의 업무를 실시하는 사업소

- ① 개인(개인경영의 농림어가 판매를 포함) 또는 가정용 소비자를 위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소
- ② 산업용 사용자에게 소량 또는 소액에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소
- ③ 상품을 판매하는 한편, 동종 상품의 수리를 실시하는 사업소로, 수리료 수입액이 많아도 동종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장함은 수리업으로 하지 못하고 소매업. 단, 수리만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소는 수리업(서비스업(기타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며, 이 경우 수리를 위해 부품 등을 바꾸어도 상품판매는 하지 않음.
- ④ 제조소매사업소 : 자기 사업소에서 제조한 상품을 그 자리에서 개인 또는

가정용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소로, 예를 들면, 과자점, 빵가게, 도시락 가게, 두부가게, 조제약국 등이 포함

⑤ 주유소

⑥ 주로 무점포 판매를 행하는 사업소 : 판매하는 장소 그 자체는 무점포이지만 상품의 판매활동을 행하기 위해 거점이 되는 사무소 등이 있는 방문판매 또는 통신·카탈로그판매 등의 사업소로 주로 개인 또는 가정용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소

⑦ 별도경영의 사업소 : 관공청, 회사, 공장, 단체, 극장, 유원지 등의 안에 있는 매점으로 다른 사업소에 의해 경영되고 있는 장소는 각각 독립된 사업소로서 소매업으로 분류

☐ 단독 사업소 : 지점을 갖지 않는 1기업 1사업소

☐ 본점 : 다른 장소에 지점, 지사, 영업소 등의 판매 사업소를 갖고 있는 사업소로 법인 조직의 경우는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본점을, 개인경영의 경우는 영업의 본거지가 되고 있는 본점을 말함

☐ 지점 : 지점이라는 명칭의 사업소외, 영업소, 매점, 출장소, 기업조합의 판매소 등의 명칭으로 상품의 매매를 주로 행하고 있는 사업소를 포함

5. 특정서비스산업실태통계조사

가. 개요

☐ 조사목적: 서비스산업 내의 특정서비스산업에 대해서 그 활동실태와 사업경영의 현상을 전국 및 지역별로 파악해서 각종 행정시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연혁

○ 1973(昭和48)년 「특정서비스업실태조사」의 명칭으로 시작되어 매년 조사하는 기본업종과 연차별로 조사하는 주기(로테이션)업종을 구분하여 조사

- 기본업종 : 물품임대업, 정보서비스업, 광고업

- 주기업종 : 지식관련산업, 여가관련산업, 공해관련산업

- 1979(소화54)년 부터는 조사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조사명칭도 현재의 「특정 서비스산업실태조사」로 개정
- 1992(평성3)년부터는 기본업종에 신용카드업과 엔지니어링업 2종을 추가하여 총5종에 대해서 매년조사를 실시하고, 영화관, 골프장, 디스플레이업, 디자인업, 볼링장, 피트니스 클럽, 테니스장, 기계설계업 및 골프연습장 등 9개종을 주기(3년)업종으로 하고, 매년 1-2개업종을 선택조사업종으로 실시
- 2000(평성12)조사부터는 대사업소 서비스업을 비지니스지원산업으로서 1년 단위로, 대개인 서비스업을 오락 관련 산업과 교양·생활 관련 산업으로 구분하여 각각 2년단위와 3년단위로 조사를 실시하는 3년 주기조사로 전환
- 다만, 비지니스지원산업 가운데, 물품임대업에 대해서는 구입으로부터 리스 중심에 바뀌고 있는 설비투자의 구조분석 등을 위해, 그리고 정보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IT(정보) 화의 급속한 진전에 수반하여 구조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이들 2업종에 대해서는 매년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
- 2001(평성13)년 제29회 조사에서는 매년조사업종의 「물품임대업」「정보서비스업」에 3년주기 조사업종내의 오락연관산업 8업종을 추가한 전체10개업종에 대해 11월1일 기준으로 조사실 실시

〈표 4-11〉 조사연도별 조사업종의 변화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 물품임대업	○	○	○	○	○	○	○	○	○	○	○	○	○	○	○
2. 정보서비스업	○	○	○	○	○	○	○	○	○	○	○	○	○	○	○
3. 광고업	○	○	○	○	○	○	○	○	○	○	○	○	○	○	○
4. 신용카드업							○					○			
5. 엔지니어링업										○			○		○
6. 디자인업	○	○					○			○			○		
7. 컨설팅업	○	○					○				○				
8. 영화관			○	○				○							
9. 골프장			○	○				○					○		
10. 환경계량증명업					○	○			○			○			
11. 경품권업							○								
12. 테니스장								○							
13. 볼링장								○							○
14. 디스플레이업									○					○	
15. 기계설계업											○				
16. 장의업														○	
17. 자전거임대업														○	
18. 유원지·테마파크														○	
19. 파트너스클럽															
20. 골프연습장															
21. 리조트클럽															
22. 사진업															
23. 문화센터															
24. 극장(임대호텔포함)															
25. 연구개발지원조사분석업															
26. 결혼식장업															
27. 외국어회화교실															
28. 영화제작·배포업, 비디오발매업															
29. 텔레마케팅업															
조사업종수	5	5	5	5	4	4	7	7	5	5	5	5	6	7	5

자료: 경제산업성 통계홈페이지(<http://www.meti.go.jp/statistics/index.html>)

〈표 4-11〉 조사연도별 조사업종의 변화(계속)

연 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 물품임대업	○	○	○	○	○	○	○	○	○	○	○	○	○	○
2. 정보서비스업	○	○	○	○	○	○	○	○	○	○	○	○	○	○
3. 광고업	○	○	○	○	○	○	○	○	○	○	○	○	○	
4. 신용카드업		○	○	○	○	○	○	○	○	○	○	○		
5. 엔지니어링업	○			○	○	○	○	○	○	○	○	○	○	
6. 디자인업			○		○			○			○		○	
7. 컨설팅업														
8. 영화관				○			○			○				○
9. 골프장	○			○	○		○			○				○
10. 환경계량증명업													○	
11. 경품권업														
12. 테니스장			○			○			○			○		○
13. 볼링장					○			○			○			○
14. 디스플레이업				○			○			○			○	
15. 기계설계업			○			○			○			○	○	
16. 장의업														
17. 자전거임대업														
18. 유원지·테마파크						○				○				○
19. 피트니스클럽		○			○			○			○			
20. 골프연습장			○			○			○			○		○
21. 리조트클럽				○										
22. 사진업					○									
23. 문화센터						○								
24. 극장(임대호텔포함)							○							○
25. 연구개발지원조사 분석업								○					○	
26. 결혼식장업									○					
27. 외국어회화교실										○				
28. 영화제작·배포업, 비디오발매업									○			○		
29. 텔레마케팅업												○	○	
조사업종수	5	5	8	9	10	10	9	9	9	10	9	9	10	10

자료: 경제산업성 통계홈페이지(<http://www.meti.go.jp/statistics/index.html>)

나.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조사대상 및 단위

- 조사대상 : 서비스산업 중 경제산업성이 소관하는 서비스산업

〈표 4-12〉 최근의 조사대상 산업

	2000년조사	2001년조사	2002년조사
기본조사업종	물품임대업 정보서비스업	물품임대업 정보서비스업	물품임대업 정보서비스업
3년 주기 조사업종	비즈니스지원산업 광고업 엔지니어링업 디자인업 환경계량증명업 디스플레이업 기계설계업 연구개발지원검사분석업 텔레마케팅업	오락 관련 산업 영화관 골프장 테니스장(연습장포함) 볼링장 유원지·테마파크 골프연습장 극장(대여홀포함) 영화제작·배급업 비디오발매업	교양·생활 관련 산업 신용카드업 장의업 피트니스클럽 문화센터 결혼식장업 외국어회화교실 에스테틱업

- 조사단위 : 해당산업의 사업소

□ 조사방법 및 경로

- 경제산업성 장관이 지정한 대상사업소 또는 기업에 대해 도도부현(都道府縣)지사가 임명한 특정서비스산업실태조사원 또는 우송에 의해 배포된 해당 업종의 조사표를 신고자의 자계 신고 방식에 의해 실시
 - 경제산업성장관 ↔ 도도부현(都道府縣)지사 ↔ 조사원 또는 우편의 조사표배포 ↔ 신고자
- 조사표는 매년조사업종인 물품임대업과 정보서비스업 및 주기조사업종이 각각 별도로 사용

다. 조사항목

□ 조사항목 및 설명(1999년 물품임대업조사표)

1. 사업소명 및 소재지(직접기입)

- (1) 사업소명
- (2) 사업소의 소재지
- (3) 본사의 소재지(해당사업소가 지사, 영업소인 경우)

2. 영업조직 및 자본금액

- (1) 기업의 경영조직(선택사항)
 - ①주식회사, ②유한회사, ③기타회사 ⇒ 자본금액 직접기입
 - ④회사이의 법인, ⑤법인이외 단체, ⑥개인, ⑦외국회사

3. 본·지사별 및 업무의 개시연도

- (1) 사업소의 본·지사별(선택사항)
 - ①단독사업소(지사·영업소 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업소)
 - ②본사(지사·영업소 등을 가지고 있는 본사·본점)
 - ③지사(지사·영업소 등)
- (2) 사업소의 물품임대업 개시년(선택사항)
 - ①1954(소화29)년 이전, ②1955(소화30)년 이후, ③1988년 이후
- (3) 사업소의 개시형태(선택사항)
 - ①다른 기업으로부터 분리, 독립, ②지소·지사·지점으로 개설
 - ③다른 사업으로부터 전환, ④창업·창설, ⑤사업소의 이전

4. 종업원수

- (1) 사업소의 종업원수(유급역원, 임시 및 일용직을 포함하여 직접기입)
- (2) 사업소의 종업원 중 물품임대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수
 - ①개인사업주, 가족종사자 또는 유급역원, ②정사원·직원,
 - ③정사원·정직원 이외 상시고용종업원, ④임시·일용
 - 가족종사자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상시고용종업원으로 취급
 - 상시고용종업원은 1개월을 초과한 고용계약자와 9월, 10월에 각각 18일이상 근무하고, 현재에도 고용되어 있는 사람
 - 정직원·정사원 이외의 상시고용자는 사업소에서 촉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사람
 - 파견(혹은 출향)종업원은 해당사업소에서 급여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만을 포함

5. 연간매출액, 계약액 및 계약건수

- (1) 사업소의 매출액(소비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직접기입)

- (2) 사업소의 매출액 가운데 물품임대업에 의한 임대방법별(리스, 렌트) 연간매출액(소비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직접기입)
- (3) 연간매출액에서 점하는 각 업종별 비율
 - 물품임대업, 제조업무, 도매소매업무, 금융보험업무, 서비스업무, 서비스산업, 기타로 구분하여 각 업무별 %를 직접기입
- (4) 사업소의 연간리스계약금액(소비세 포함 직접기입) 및 리스계약건수
- (5) 리스계약건수의 기간별(1-3년미만, 3-5년미만, 5년이상) 건수
6. 연간매출액(계약액)의 계약처 산업별 비율
 - 리스연간계약액, 렌트연간매출액의 계약처 산업별 비율(제조업, 도소매·음식점, 건설·부동산업, 금융·보험업, 운수·통신업, 전기·가스·수도업, 물품임대업 이외 서비스, 공무, 물품임대업을 행하는 동업자, 기타)
7. 연간매출액(계약액)의 물건별 비율
 - 리스연간계약액, 렌트연간매출액의 물건별 비율(공작기계(NC 포함), 토목·건설기계(자재 포함), 의료용기기, 수출용기기(자동차, 기타), 산업용 및 서비스전용 기계·설비(산업용기계·설비, 서비스업용 기계·설비, 전자계산기·관련기기), 정보관련기기(전자계산기·관련기기, 통신기기), 사무용기기, 기타)
8. 사업소의 영업비용 및 영업용유형고정자산
 - (1) 사업소의 연간영업비용(매입액을 포함한 금액을 직접기입)
 - (2) 사업소의 연간영업비용 중 급여지급총액(종업원에 지불되는 급여액을 소득세, 사회보험료, 조합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직접기입)
 - (3) 사업소의 과거 1년간 영업용유형고정자산취득액(토지, 건물·기계·설비·기타, 합계 등으로 구분하여 본사·지사만을 기입)
 - 내용연수 1년이상으로 취득가액 10만엔이상(단, 1998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20만엔이상)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기입
9. 기업의 영업용유형고정자산 및 영업비용 등(독립사업소 및 본사만 기입)
 - (1) 기업의 과거 1년간 영업용유형고정자산취득액(소비세포함 금액 직접기입)
 - 리스 및 렌트용자산, 토지, 건물·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
 - (2) 기업의 물품임대업에 관련한 사업소수 및 연간영업비용 등(소비세포함 금액 직접기입)
 - 물품임대업을 행하는 사업소수(본사 포함)
 - 물품임대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수
 - 물품임대업무에 의한 기업전체의 연간매출액
 - 물품임대업무에 관계된 기업전체의 영업비용(급여지급총액, 대여자산

원가, 자금원가, 기타영업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

□ 조사업종에 대한 정의

- 「물품임대업」: 각종 산업에서 사용되는 생산설비, 기계기구나 건설공사에 이용하는 건설기계 또는 사무용기계기구, 컴퓨터(전자계산기) 및 관련기기의 리스나 렌트를 행하는 사업소
 - 단, 자동차, 스포츠·오락용품과 같은 개인이 사용하는 것만을 취급하는 사업소 소위 「렌트카샵」, 「의장임대점」, 「렌트비디오·CD점」 등은 제외
 - 여기서 「리스」는 물품을 사용하는 기간이 1년을 넘고, 계약기간 중에 해약신청이 불가능한 것을 말하며, 「렌트」는 리스 이외의 임대계약을 말함.
- 「정보서비스업」: ①컴퓨터(전자계산기)의 프로그램 작성 및 그 작성에 관련된 조사·분석·조언 등의 서비스, ②컴퓨터를 사용해서 위탁된 계산을 행하는 서비스, ③컴퓨터처리용에 데이터를 전자매체 등에 쓰는 서비스, ④각종 데이터를 수집·가공·축적하고 정보로서 제공하는 서비스, ⑤사용자의 정보처리시스템, 컴퓨터실 등의 관리운영서비스, ⑥시장조사나 싱크탱크업무 등 기타 정보서비스를 업무로 하는 사업소
- 「신용카드업」: 소비자(신용카드회사의 회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판매회사(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로부터 상품, 서비스를 구입할 때에 소비자의 신용보증, 구입대금의 입체지불이나 소비자에 대해 청구, 집금 등의 업무를 행하는 기업으로 은행계, 信販회사, 중소소매상단체, 백화점·量販店, 유통계, 전기메이커계, 전기제품소매전문점, 석유원매회사의 기업이 조사 대상이 됨
 - 그러나 대금회수라는 일부업무만을 행하는 기업, 통신판매회사, 방문판매회사, 자동차딜러, 자동차메이커계 신용회사, 신용보증회사, 민간금융기관, 소비자금융회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문화센터」: 교양의 향상, 취미·차도의 학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학습강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직원 및 고정교실을 마련하여 복수의 학습강좌영역을 개강하고 있는 민영의 사업소
 - 단, 대학공개강좌, 학습소, 전수학교, 각종학교나 인재육성을 목적으로한 것과 피트니스클럽이나 수영클럽 등 스포츠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외국어회화교실」: 외국어회화교실을 위한 상설시설(임대포함)을 가지고 외국어회화의 교수 및 지도업무를 행하는 기업(회사, 법인·단체 및 개인)

- 단, 학교(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 각종 학교)가 행하는 외국어회화교실, 종교법인이 행하는 외국어회화교실, 문화센터의 외국어회화교실, 학습소, 자택의 거주부분으로 행하는 외국어회화교실, 이동교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피트니스클럽」: 실내풀, 트레닝룸, 스타디오 등 실내의 운동시설을 가지고 이스터렉터, 트레이너 등의 지도자를 배치하여 클럽회원에게 스포츠체력향상 등의 훈련방법 등을 교수하는 사업소
-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사업소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수영클럽만의 사업소도 제외
- 「에스테틱업」: 손기술, 화장품·기계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피부를 청결, 미화하고, 체형을 정돈하거나 체중이 줄도록 지도, 시술을 행하는 사업소
- 단, 미용실, 이용업, 피트니스클럽, 안마마사지지압사나 柔道整體復師 등의 시술소, 네일사롱, 매뉴큐업, 패티큐업, 숙박전용에스테, 방문에스테 등은 제외
- 「결혼식장업」: 행사장과 피로연회장을 갖고 있는 사업소(호텔 등을 포함)
- 따라서 행사장 혹은 피로연회장 중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되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직영 사업소도 제외
- 「장의업」: 장의를 위한 제단 등 장구의 대출, 通夜·장의식의 진행·운영 및 기타서비스 제공 등 장의에 관련된 일체 서비스의 업무를 행하는 사업소
- 단, 종교관련 단체(신사, 사원, 교회 등), 지역자치단체조직(町内會, 부인회 등), 상호부조조직(농협, 어협, 생협 등), 지방자치체(시정촌(市町村)) 등과 또한 장구의 제조 및 판매, 장의·법사 등의 중개를 행하는 사업소는 제외

라. 집계 및 공표

☐ 조사실시 약8개월 후에 속보를, 약12개월 후에 확보를 조사업종별로 공표

☐ 확보는 조사업종별로 별도 권으로 구성

- 2002년의 경우 물품임대업편, 정보서비스업편, 신용카드업편, 장의업편, 피

트니스클럽편, 문화센터편, 결혼식장업편, 외국어회화교실편, 에스테틱업편 등 총 9권으로 확보보고서가 구성될 예정

6. 상공업실태기본조사

가. 개요

□ 조사목적

- 제조업, 도매·소매업, 음식점에 속하는 사업소를 가지는 법인기업 및 개인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조직, 종업원수, 매상고 및 영업비용, 매상고의 종류, 상품 판매처, 상품 구입처 등을 조사하여 상공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해 중소 상공업 시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

□ 조사연혁

-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의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목적으로昭和32년(1957년)에 제정된 중소기업종합기본조사(지정통계 제93호), 상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의 실태파악을 목적으로昭和34년(1959년)에 제정된 중소상업기본조사(지정통계 제98호)로서 개시
- 이후 중소기업종합기본조사는昭和46년(1971년)에 공업실태기본 조사(지정통계 제93호), 중소상업기본조사는昭和42년(1967년)에 상업실태기본조사(지정통계 제98호)로 명칭이 변경되어 제조업에 관한 조사로서는 7회, 상업에 관한 조사로서는 6회 실시
- 이러한 조사는 교대로 5년부터 7년의 주기로 실시되어 온 다른 주요통계조사와의 주기조정에 대한 필요성과 중소기업의 다양한 활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업, 상업을 통한 조사에 재편성 하는 필요성이 지적됨
- 이로 인하여 평성7년(1995년)3월 통계심의회의 답신된 「통계행정의 신중·장기구상」에 근거하여 공업실태기본조사 및 상업실태기본조사를 당시 경제산업성 기업활동기본조사(지정통계 제118호)와 제휴를 꾀하면서, 중소상공업의 다양한 활동실태를 횡단적으로 파악하는 조사로서 평성10년(1998년)조사를 제1회로 그리고 이후에는 서기의 끝자리년도 3, 8해에 실시하는 것으로 재편성

- 평성10년(1998년)조사의 재편성에 있어서는 음식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음식점을 조사대상으로 포함

□ 조사주기 및 기준일

- 조사주기 : 5년
- 조사기준 : 1년간 및 연도말 실적을 조사

나.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대상 및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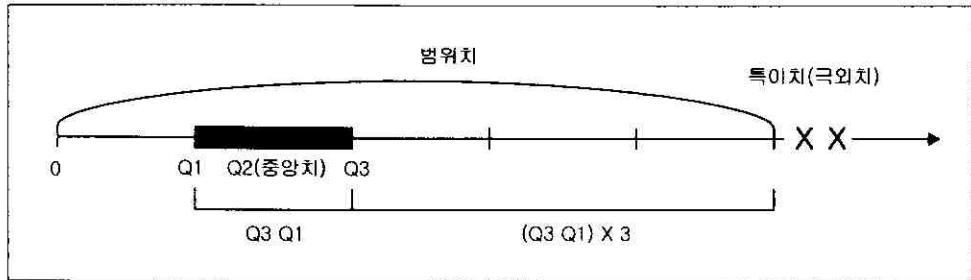
- 조사대상
 - 일본표준산업분류에서 대분류 F-제조업, I-도매·소매업, 음식점(중분류 61-그 외의 음식점은 제외)에 속하는 사업소를 가진 기업(이하 「상공업」이라 부름)으로 경제산업성 장관이 지정하는 기업
 - 상공업기업 중에서 경제산업성 기업활동기본조사(지정통계 제118호)가 대상으로 하는 종업원 50명이상이며, 또한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천만엔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는 조사대상기업으로 함
- 조사단위 : 회사(기업)

- 조사방법: 추출된 표본에 대하여 통계조사원(도도부현(都道府縣) 지사의 임명)이 배부하는 조사표에 신고자가 작성하는 조사원 기입방식 표본조사

□ 표본의 설계

- ① 표본수는 평성 6년(1994) 공업통계, 상업통계 및 사업소통계(일반 음식점)에 이용한 명부에 근거하여 업종별, 종업원 규모별로 구분한 층별(stratification)의 정밀도(precision)가 5%이하가 되도록 계산
- ② 모집단은 「평성 8년(1996년) 사업소·기업통계조사」의 제조업, 도매·소매업 및 음식점(그 외의 음식점 제외)에 등급이 설정된 기업의 본점 또는 단독점
- ③ 표본은 ①의 표본수에 상당하는 기업수를 ②의 모집단 기업으로부터 추출하고, 추출된 표본수는 도도부현(都道府縣) 모집단의 크기에 의해 배분

[그림 4-1] 분위점에 의한 특이치의 검출



- 업종 : 제조업 76업종, 도매·소매업 26업종, 일반음식점 8업종
- 종업원 규모 : 1~4명, 5~9명, 10~19명, 20~29명, 30~49명
- 종업원 50명 이상 및 특이치의 기업 : 1분의 1추출

□ 조사경로

- 경제산업성장관 ↔ 도도부현(都道府縣) ↔ 시구정촌

다. 조사항목 및 설명

① 기업의 명칭 및 소재지 : 직접 기업

- 주소 및 전화번호, 기업을 대표하는 자(신고의무자)의 이름, 조사표에 회답이 가능한 사람의 이름, 소속, 전화번호 등

② 경영조직 : 체크 형식

- 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는 모회사가 있는 경우, 회사 이외의 모법인이 있는 경우,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체크
- 개인기업(음식점을 포함)

③ 종업원수 : 상시종업원, 개인사업자, 가족종사자, 상시고용자 및 파트타임 종업원, 기타종업원(임시, 일용고용자)을 구분하여 직접기업

④ 판매액 및 영업비용(법인, 개인) : 판매액(제품판매액, 가공료수입, 상품판매액, 음식판매액, 기타 사업수입 등), 판매원가(상품매입액, 기말상품(제품) 재고액),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경비, 각종 준비금) 등을 직접기입하고 소비세의 포함 여부를 체크

⑤ 판매액의 종류(법인, 개인)

- 제품판매액 및 가공료수입의 종류 : 제품판매액 또는 가공료수입이 있는 경우 제품판매액 및 가공료수입을 많은 것부터 차례로 제조업의 업종분류표 가운데 3가지를 선택하고 분류번호와 판매비율을 직접기입
- 상품판매액의 종류 : 상품판매액을 많은 것부터 차례로 도·소매의 업종분류표 가운데 5가지를 선택하고 분류번호와 판매비율을 기입
- 음식판매액의 종류 : 일반식당, 일본요리점, 서양요리점, 중화요리점, 동양요리점, 소바·우동점, 스시점, 찻집, 기호식당, 기타식당 중 1곳을 선택
- 기타 사업수입 종류 : 기타사업수입이 있는 경우 사업수입을 많은 것부터 차례로 기타사업 업종분류표 가운데 3가지를 선택하고 분류번호와 판매비율을 직접기입

⑥ 상품 등의 판매처(법인, 개인): 제품판매액 또는 상품판매액이 있는 경우 판매처별 비율을 기입

- 도매업자, 소매업자에 판매한 비율, 산업용사용자, 해외직접수출 비율, 일반소비자에 판매한 비율

⑦ 상품구입처(법인, 개인) : 상품구입액이 있는 경우 구입처별 비율을 기입

- 도매업자, 소매업자에 판매한 비율, 산업용사용자, 해외직접수출 비율, 일반소비자에 판매한 비율

⑧ 외주 및 수주 현황(법인, 개인)

- 외주현황 : 과거 1년간 다른 기업에서 제조 혹은 가공을 외주한 경우 국내, 해외를 구분하여 외주처 기업수와 외주금액을 기입하며, 소매업 등의 유통업자가 제조업자에게 위탁해서 생산하는 private brand 상품에 대해서도 기입
- 수주현황 : 과거 1년간 다른 기업에서 제조 혹은 가공을 수주한 경우 국내, 해외를 구분하여 수주처 기업수와 수주금액을 기입하며, 또한 모기업으로부터

터 하청이 있는 경우도 기입

⑨ 자산, 부채 및 자본 현황(법인) : 전년도 대차대조표에 입각

- 자산(유동자산, 유형고정자산 구분)합계 기입
- 부채(고정부채 구분) 기입
- 자본(자본금, 법정준비금 구분)합계 기입

⑩ 연구개발비 현황(법인)

- 연구개발비 : 과거 1년간 신제품 또는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행한 경우에 이에 소요된 비용을 기입
- 공업소유권 : 당해 회사에서 연구한 공업소유권이 있는 경우 또는 자기소유의 것으로 과거 1년간 사용한 것이 있는 경우 이를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종류별로 기입

⑪ 해외활동 현황(법인)

- 원재료의 구입현황 : 과거 1년간 원재료의 구입이 있는 경우 구입액과 해외로부터 직접수입(자기명의로 통관절차를 밟은 것)한 금액을 구분하여 기입
- 해외자회사 등의 소유현황 : 연도말 현재 해외에 자회사, 관련회사 또는 사업소(지점, 영업소,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이의 종류별 개수를 기입

⑫ 정보화 현황(법인, 개인)

- PC의 이용현황 : 귀사에서 이용하고 있는 PC의 대수(LAN 연결 여부 구분)
- 컴퓨터 네트워크 이용형태 : 기업에서 이용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형태를 기업내 네트워크, 특정기업간 네트워크, 오픈네트워크 가운데 선택
- 정보시스템의 종류 : POS EOS, CAD CAM, EDI, EC, CALS 가운데 선택

⑬ 共同化 등의 현황(법인, 개인)

- 공동사업 현황 : 공동수주,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보관·배치, 공동연구개발

발, 공동선전, 공동신용사업, 공동정보사업, 모집·교육·복리후생사업, 기타사업, 無 가운데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선택

- 단체가입 현황 : 상공회·상공회의소, 사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상공조합, 상점가진흥조합, 기타 법률에 기초한 조합, 기타단체, 공동출자회사, 무가입 가운데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선택
- 체인점가맹 현황 : 불문터리체인, 프랜차이즈체인, 무가맹 중 선택
- 경쟁관계 현황 : 슈퍼, 편의점, 할인점, 쇼핑센터, 기타업체 중 강한 경쟁관계가 있는 업체가 있는 모든 것에 체크

⑭ 기업경영 과제(법인, 개인)

- 인재의 확보·육성, 후계자문제, 자금조달·채무보증, 경영노하우 도입, 수주량의 확보, 해외로의 이전·진출, 연구개발·신제품개발, 환경대책·재활용·폐기물처리, 대형점과의 경합, 신업태의 출점, 저가격경쟁, 상점가관련 문제, 기타 등 가운데 기업경영에 중요한 과제는 모두 선택

라. 조사관련 특이사항

☐ 기업산업 분류의 범위

- 기업집계에 대해 이용한 기업단위의 산업분류를 말하며, 지점, 공장 등을 포함한 기업전체의 주된 사업에 의해 분류한 것
- 기업산업분류는 일본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로 기업산업분류의 명칭은 다음 표에서 기술하는 약칭을 사용

〈표 4-13〉 산업의 약칭과 표준명칭(제조업)

중분류 약칭	중분류 표준명칭
제 조 업	
식료품	12 식료품 제조업
음료·담배	13 음료·담배·사료 제조업
섬유공업	14 섬유공업
의복섬유제품	15 의복·기타섬유제품 제조업
목재·목제품	16 목재·목제품 제조업
가구·장비품	17 가구·장비품 제조업
지펄프	18 펄프·지·지가공품 제조업
출판·인쇄	19 출판·인쇄·관련 산업
화학공업	20 화학공업
석유석탄제품	21 석유제품·석탄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2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23 고무제품 제조업
피혁제품	24 가죽·혁제품·모피제품 제조업
요업토석제품	25 요업·토석제품 제조업
철강업	26 철강업
비철금속	27 비철금속 제조업
금속제품	28 금속제품 제조업
일반기계기구	29 일반기계기구 제조업
전기기계기구	30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	31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정밀기계기구	32 정밀기계기구 제조업
기타제조	34 기타 제조업

〈표 4-14〉 산업의 약칭과 표준명칭(도소매 및 음식점)

중분류 약칭	중분류 표준명칭
도매업	
각종상품도매	48 각종상품 도매업
섬유의복도매	49 섬유·의복 등 도매업
음식료품도매	50 음식료품 도매업
건축재료도매	51 건축재료·광물·금속재료광물 등 도매업
기계기구도매	52 기계기구 도매업
기타도매	53 기타 도매업
소매업	
각종상품소매	48 각종상품 소매업
섬유의복소매	49 섬유·의복·장신품 소매업
음식료품소매	50 음식료품 소매업
자동차등소매	51 자동차·자전거 소매업
가정용기소매	52 가구·주거·가정용기계기구 소매업
기타소매	53 기타 소매업
음식점	60 일반음식점

☐ 기업의 범위 : 비교분석이 가능한 법인기업

☐ 규모구분

- 중소기업 기본법(평성11년 법률 제 146호) 제2조 제1호에 입각한 자본금 기준에 근거하여 자본금 3억엔 미만의 법인(이하 「중소기업」) 및 자본금 3억엔 이상의 법인(이하 「대기업」)의 2구분
- 중소기업 등의 범위 다음 표에서 제시하는 종업원 기준에 의함

〈표 4-15〉 종업원기준에 의한 규모구분

구분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
중 소 기 업	종업원 300명 미만	종업원 100명 미만	종업원 50명 미만
소규모기업	종업원 20명 미만	종업원 5명 미만	
중규모기업	종업원 20명 이상 종업원 300명 미만	종업원 5명 이상 종업원 100명 미만	종업원 5명 이상 종업원 50명 미만
대 기 업	종업원 300명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종업원 50명 이상

〈표 4-16〉 제조기업의 규모 구분

중 분 류	전기업수	자본금		
		개인 기업	3억엔미만의 법인기업	3억엔이상의 법인기업
제조 기업	663,183	335,132	324,364	3,687
12 식료품 제조업	52,450	25,293	26,863	294
13 음료·담배·사료 제조업	7,321	2,672	4,552	97
14 섬유 공업	48,319	34,971	13,268	80
15 의복·그 외의 섬유 제품 제조업	66,158	42,129	23,993	36
16 목재·목제품 제조업	25,217	13,692	11,499	26
17 가구·장비품 제조업	35,345	24,701	10,611	33
18 펄프·지·지 가공품 제조업	14,856	6,442	8,329	85
19 출판·인쇄·동관련 산업	55,769	21,716	33,945	108
20 화학공업	4,829	718	3,608	503
22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7,419	11,874	15,401	144
23 고무 제품 제조업	7,375	4,262	3,070	43
25 요업·토석 제품 제조업	26,828	13,544	13,114	170
26 철강업	7,619	2,330	5,137	152
27 비철금속 제조업	4,732	1,666	2,940	126
28 금속제품 제조업	80,441	39,518	40,717	206
29 일반 기계 기구 제조업	70,182	28,120	41,640	422
30 전기 기계 기구 제조업	36,206	11,152	24,435	619
31 수송용 기계 기구 제조업	24,219	9,706	14,181	332
32 정밀 기계 기구 제조업	11,409	4,473	6,848	88
34 그 외의 제조업	44,745	27,801	16,860	84

주: 석유 제품·석탄 제품 제조업 및 혁·동제품·모피 제조업을 제외

□ 다른 조사

- 제조기업에 인용하고 있는 1971년 조사, 1976년 조사, 1981년 조사, 1987년 조사란 해당년에 실시한 공업실태기본조사를 말함
- 도매기업 및 소매기업에 인용하고 있는 1973년 조사, 1979년 조사, 1986년 조사, 1992년 조사란, 해당 년에 실시한 상업실태 기본조사를 말함

마. 용어의 설명

□ 총자본 영업이익율(return on total assets; ROA): 당기의 영업이익을 총자본으로 나눈 것

- 경영체의 입장에서 본 기업의 종합적 수익성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 기업활동에 투입한 총자본(자산)이 그 활동에 의해 얼마나 이익을 주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 자기자본 영업이익율(return on equity; ROE) : 당기의 영업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

- 출자자(주주)의 입장에서 기업의 종합적 수익성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 자기자본이 그 활동에 의해 얼마나 이익을 주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높을 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 중소기업의 경우, 출자자와 경영자가 동일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시비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중요

□ 판매액 영업이익율(ratio of profit to net sales) 영업이익을 판매액으로 나눈 것

- 기업의 수익성, 경영능률의 양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이익 폭의 정도를 나타내며, 비율로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 경영능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

□ 자기자본 비율(equity ratio) : 자기자본을 총자본으로 나눈 것

- 기업이 차입한 자본과 자기 조달한 자본을 비교한 것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의 안정성이 높음

- 대기업의 경우는 금융기관 등에서의 차입이나 사채발행의 주식발행에 자금 조달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대기업에 비해 자기자본 비율은 일반적으로 낮아짐
- 또한 채무초과는 총자본보다 부채 총액이 큰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기업자금의 원천이 모두 타인자본으로 구성된다고 하는 지극히 위험한 재무 상황을 나타냄

□ 고정비율(fixed assets to net worth ratio) : 유형고정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

- 이 비율은 유형고정자산이 반제기간이 없는 자기자본으로 어느 정도 조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
- 통상 100%이하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 있고, 100%를 넘는 경우 초과부분은 타인자본으로 조달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 비율이 마이너스인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

□ 유동비율(current ratio) :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것

- 이 비율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통상 150%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 있음
- 유동자산 : 현금예금, 수취어음, 수취계정 등 단기간에 현금화 또는 비용화 되는 자산
- 유동부채 : 지불수표, 지불계정, 단기 차입금 등 단기간 내에 지불기한 또는 재화·서비스의 제공 기한이 도래하는 부채

□ 연구개발(reserch and development;R&D) : 기업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한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위한 연구개발

- 다만, 정상적인 시험연구, 신경영조직의 채용, 자원의 개발 및 시장의 개척은 포함하지 않음

□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 : POS/EOS(판매시점 정보관리·온라인 수발주

시스템), CAD/CAM(컴퓨터 설계·생산 지원 시스템), EDI(전자데이터교환), EC(전자상거래), CALS(생산·조달·운용 지원 통합 정보 시스템)를 말한다.

바. 집계 및 결과의 공표

□ 집계결과는 속보(조사 실시 다음 년도)와 확보(조사 실시 2년후)로 공표

- 1997년도실적에 대하여 조사한 평성10년(1998년)조사의 경우 조사결과가 1999년 6월30일에 속보를 공표

평성10(1998)년 상공업실태기본조사속보의 구성

■ 제목: 평성 10년 상공업실태기본조사 속보

■ 조사의 개황

제1장 중소기업의 위치설정

종업원 기준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규정하고, 기업수, 종업원수 및 판매액에 의해 중소기업의 위치를 설정

제2장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

중소기업 경영상황을 판매액영업이익율, 판매총이익률, 판매관리비 비율 및 재고 정리자산회전율 등을 통해 분석

제3장 중소기업의 재무 상황

기업 재무상황을 자기자본 비율, 고정자산비율 및 유동비율 등을 통해 분석

제4장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

중소기업 사업활동을 제조업으로부터 도매업을 거쳐 소매업에 이르는 유통 구조 및 해외 전개에의 상황을 통해 파악

제5장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을 고용형태, 연구개발, 공업소유권 및 정보화의 상황을 통해 파악

제6장 중소 경영자의 의식

종업원 50명 미만의 중소기업자 경영 의식을 사업의 공동화, 조직화, 체인·스토어의 가맹상황, 경쟁관계 및 기업경영상의 과제 등을 통해 파악

■ 조사의 개요·범례

■ 통계표

□ 확보는 전국편, 도도부현(都道府縣)편, 해설편으로 분류됨

- 전국편은 전국의 제조업 및 도매·소매업, 음식점에 대해 기업산업(중분류, 업종분류), 종업원(경영 조직·자본금) 규모별의 종업원수, 판매액, 판매원가, 판매관리비 및 경영지표 등의 주요한 결과를 수록

□ 도도부현(都道府縣)편은 도도부현(都道府縣)의 제조업 및 도매·소매업, 음식점에 대해, 기업산업별 종업원수, 판매액, 판매원가, 판매관리비 및 경영지표 등의 주요한 결과를 수록

□ 해설편은 조사결과를 분석 및 해설과 더불어 종업원규모별·자본금규모별 크로스 집계, 주요한 경영 지표의 분포 등을 수록

〈표 4-17〉 확보 간행물의 종류와 발행시기: 평성10년(1998년)조사결과

편부권			명칭	발행일
전국편	총괄부	제1권	총괄편	2000.2.15
	제조업부	제2권	식품공업편	2000.3.31
		제3권	섬유·목재·가구·펄프지·출판 인쇄공업	2000.3.31
		제4권	화학·플라스틱·고무·피혁·기타 공업편	2000.3.31
		제5권	요업·철강·금속공업편	2000.3.31
		제6권	기계공업편	2000.3.31
	도매·소매업 음식점 부	제7권	도매·소매업, 음식점편	2000.3.31
		제8권	도도부현(都道府縣) 제조업	
도도부현(都道府縣)편		1	기업수 및 종업원수	2000.3.31
		2	수익, 유통 및 하청	2000.3.31
		3	공동사업, 단체가입 및 경영문제	2000.3.31
		제9권	도도부현(都道府縣) 도매·소매업, 음식점	2000.3.31
해설편	해설부	제10권	해설편	
		1	제조업편	2000.12.20
		2	도매·소매업, 음식점편	2001.2.26
		3	도도부현(都道府縣)편	2001.2.26

자료: 경제산업성 홈페이지(<http://www.meti.go.jp/statistics/index.html>)

7. 기업활동기본조사

가. 개요

□ 조사목적

- 기업의 사업활동 다각화, 국제화, 연구개발, 정보화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업의 경영전략이나 산업구조의 변화의 실태를 파악하여 기업에 관한 각종 행정 시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
- 업계 단체, 민간기업에 있어서의 비전 작성, 경영전략의 책정 등에 이용

□ 조사연혁

- 1990년대에 들어 기업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다각화·조직화·계열화·국제화·소프트화 등을 중심으로 다양화가 심화
- 또한 이러한 사업활동의 다각화, 국제화 등에 의한 새로운 진전으로 동일 기업내의 복수사업소 또는 단일기업의 영역을 초월한 복수 기업에 걸친 활동형태로서 현실화·구체화되는 추세
- 이에 경제산업성에서는 이전까지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업통계조사(지정 10호)의 병조사를 통해서 기업 사업활동의 다각화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왔지만 사업활동의 다각화는 제조업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 있어서도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어 공업통계의 병조사만으로는 이러한 현상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
- 이를 위하여 조사대상업종을 상업 및 광업까지 포괄하고, 조사사항에는 기업활동의 소프트화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는 새로운 지정통계조사로서 본 조사를 3년 주기 조사로 계획 하고 1992(평성 4)년에 제1회조사 및 1995(평성 7)년에 2회 조사를 실시
- 그러나 다각화, 분사화, 생산거점의 해외이전 등 기업화동이 복잡 내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1996년부터는 매년 조사가 실시되어 2003년 현재 10 회로 2002년도 실적이 조사되어 집계 중이며, 9회로 조사된 2001년 실적이 2003년 5월에 공표됨

- 1998년조사(1997년실적)부터 일반음식점을 가지는 기업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고, 「기업간의 거래 및 해외거래」 중 해외의 지역별, 상품유별 거래액은 직접수출액, 직접 수입액의 수치로 함
- 2001년조사(2000년실적)부터는 경제의 서비스화, 정보화 등 최근의 경제구조의 변화를 근거로 하여 기업활동 파악의 충실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기·가스업, 신용카드업·할부금융업, 서비스업 등 경제산업성 소관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그 업종에 속하는 사업소를 가지는 기업을 새로운 조사대상에 포함

□ 조사주기 및 시기

- 조사주기 : 1년
- 조사기준 : 매년 6월 1일 현재, 실시연도의 전년 1년간 및 연도말 실적을 조사

나. 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단위

- 조사대상: 광공업 및 상업에 속하는 사업소를 소유한 전국의 기업 가운데, 종업원 50인이상으로 자본금 혹은 출자금인 3,000만엔 이상의 기업
 - 일본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기준으로 D-광업, F-제조업, G-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 I-도매·소매업, 음식점, J-금융·보험업 및 L-서비스업을 대상
 - 단, G-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 중에서는 중분류37-열공급업, 중분류37-수도업은 제외
 - 도매·소매업, 음식점 중에서는 중분류 61-기타 음식점은 제외
 - J-금융·보험업 중에서는 소분류 663-신용카드업·할부금융업만을 대상
 - L-서비스업 중에서는 경제산업성 소관 업종으로 사진현상·인화업, 관혼장제업(상조회는 제외), 골프장, 유원지·테마파크, 기계수리업, 물품임대업(리스업), 영화·비디오 제작업, 소프트웨어업, 정보처리·제공 서비스업, 광고 대리업, 엔지니어링업, 개인 교습소(문화센터, 피트니스클럽 및 외국어회화교실)에 속하는 사업소를 가진 기업만을 대상

2001년 조사(2000년 실적)에서 추가된 업종

▶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 ▷ 전기업 ▷ 가스업
▶ 금융업 ▷ 대금업, 투자업 등 비예금신용기관 ▷ 신용카드업·할부금융업
▶ 서비스업 ▷ 기타생활관련서비스업 ▷ 사진현상·인화업 ▷ 관혼상제업(상조회 제외) ▷ 오락업(영화·비디오 제작업 제외) ▷ 골프장 ▷ 유원지·테마파크 ▷ 기계·가구 등 수리업 ▷ 기계수리업 ▷ 물품임대업(리스업), ▷ 각종물품임대업 ▷ 산업용기계기구임대업 ▷ 사무용기계기구임대업 ▷ 자동차임대업 ▷ 스포츠·오락용품임대업 ▷ 기타물품임대업 ▷ 영화·비디오 제작업 ▷ 영화·비디오 제작업 ▷ 정보서비스·조사업 ▷ 소프트웨어업 ▷ 정보처리·제공서비스업 ▷ 광고업 ▷ 광고 대리업 ▷ 전문서비스업 ▷ 엔지니어링업 ▷ 개인 교습소 ▷ 문화센터(종합적인 것) ▷ 피트니스클럽 ▷ 외국어회화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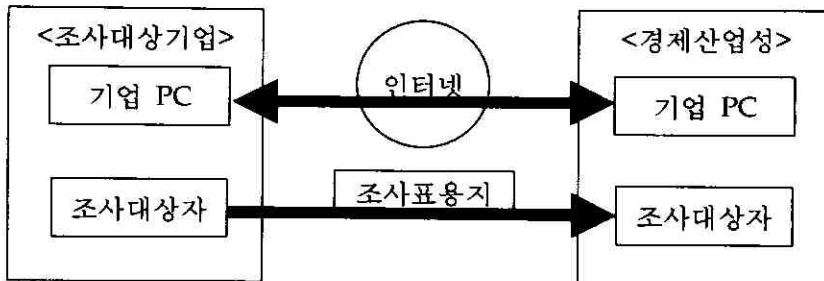
□ 조사단위 : 회사(기업)

(2) 조사방법

□ 신고자의 자체 신고 방식에 의해 우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제산업성장
관 ↔ 경제산업국장 ↔ 신고 의무자”의 조사경로에 따라 조사

- 2004년 조사부터는 조사표관련 사무의 간소화와 통계데이터의 광범위한 활용을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기업활동기본조사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그림 4-2] 향후 조사방법의 개요도



□ 온라인 조사의 장점

- 조사표용지의 전기나 운송이 불필요
- 과거에 온라인제출한 조사내용에 대한 참조 가능
- 간이입력 체크기능으로 오기입 등을 미연에 방지
- 인터넷으로 공표된 집계결과와 데이터를 검색 가능
- 검색한 데이터는 다운로드해서 표제산 소프트웨어로 간단히 활용이 가능

□ 온라인 보호를 위한 조치

- 기업별 라이선스 ID와 이용자를 확정하기 위한 PIN 번호를 발행
- 경제산업성 내에서 방화벽(firewall)을 설치하여 제출된 데이터를 보호
- 각종 컴퓨터 바이러스 검색, 전송데이터의 암호화, 전자인증서비스를 도입
- 하드웨어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각종 보호 장치를 구비

□ 온라인 자료제출과 관련한 기타 사항

- 웹브라우저(Internet Explorer 등), PDF Reader(Adobe Reader 등)이 작동하

는 컴퓨터

- 인터넷에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 환경
- 온라인이용을 위한 비용은 무료
- 전용 소프트웨어 인스톨이 불필요

다. 조사항목 및 설명(2002년 조사표 기준)

1. 기업의 개요

- (1) 기업의 명칭(전화번호 포함)
- (2) 본사 혹은 본점의 소재지(실제 본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소)
-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조사기준일 시점)
 - 자본금에서 접하는 외국자본의 비율(%로 소수점 1자리까지 기입)
- (4) 기업의 설립형태 및 설립시기
 - 합병, 분할, 기업조직의 변경, 신규설립, 기타 중 선택
 - 설립시기는 직접 기입
- (5) 기업의 결산월
 - 조사표신고자(기업의 대표자) 성명, 기업자의 성명
 - 조사표의 내용 조화에 회답할 사람(기업자)의 소속부서 및 소재지
 - 소비세의 취급(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세입만을 기입하나 회계처리상 세입을 기입하기 어려운 경우 세입별도란에 체크하고 특기사항을 비교란에 기입)

2. 사업조직 및 종업원수

- (1) 사업조직별 사업소수 및 항시종업원수
 - 본사·본점
 - 본사기능부문 : 조사기획부문, 정보처리부문, 연구개발부문, 국제사업부문, 기타총무·경리·인사 등의 부문으로 분류하여 직접 기입
 - 현업부문 : 광산사업부문, 제조사업부문, 상업사업부문, 음식점부문, 서비스사업부문, 전기·가스사업부문, 신용카드업·할부금융사업부문, 정보서비스사업부문, 외국어회화교실·피트니스클럽·문화교실,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직접기입
 - 본사·본점 이외
 - 국내 : 광산사업소, 제조사업소, 상업사업소(상업점포, 광업·제조업의 지

사·지점·사업소 등), 음식점, 서비스사업소, 전기·가스사업소(제조사업소 제외), 연구소, 정보서비스사업소, 신용카드업·할부금융사업소, 외국어회화교실·피트니스클럽·문화교실, 기타사업소 등으로 구분하여 직접기업

· 해외 : 해외지사, 지점, 주재소 등을 포함하여 전체로 기업

- 타기업 등으로 출항자(출항자 중 파트타임종업원을 구분하여 기업)

(2) 기타 종업원

- 임시·일용고용자, 수입파견자로 구분하여 기업

3. 모회사, 자회사 및 관련회사의 현황

(1) 자회사·관련회사의 보유현황

출자비율별		업종분류번호	자회사관련회사				
			국내	해외			
				계	아시아	유럽	북미
자회사	100%						
	100%미만						
	~50%超						
관련회사	50%미만						
	~20%이상						

(2) 자회사·관련회사의 신규설립

구 분	신규설립(보유)사수	
분사화에 의한 것	社	社
기업의 매수에 의한 것		社
기타(상기 이외)	社	社

(3) 모회사의 명칭, 소재지, 업종, 출자비율

- 해당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출자비율(% 소수점 1자리까지)을 직접 기업
- 모회사의 명칭, 모회사의 소재지, 모회사의 업종명 등을 기업

4. 자산·부채, 자본, 및 투자

(1) 자산·부채 및 자본(연도말 현재액)

항 목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엔
자산								
유동자산								
기말상제품, 상품재고액								
고정자산								
유형고정자산								
기계장치								
투자자산								
이월자산								
자산합계								
부채 및 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자 본 금								
법정준비금								
잉여금(△결손금)								
부채 및 자본금합계								

(2) 관계회사에의 투자액 등(모회사, 자회사, 관련회사에 투자한 경우 기업)

항 목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엔
국내							
관계회사에의 투융자잔고							
주식 및 출자금잔고							
장기대부금							
해외							
관계회사에의 투융자잔고							
주식 및 출자금잔고							
장기대부금							

(3) 유형고정자산의 증감

항 목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엔
유형고정자산의 당기취득액								
기계장치								
유형고정자산의 당기재거액								

5. 사업내용

(1) 판매액 및 비용 등

항 목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엔
판매액									
영업비용	판매원가								
	판매비·일반관리비								
영업외손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경상이익(△손실)									
세입전당기이익(△손실)									

(2) 비용내역(特掲)

항 목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엔
광고선전비								
정보처리·통신비								
임차료								
토지·건물								
하역운임비								
급여총액(상여·퇴직금 포함)								
감가상각비								
조세공과								
지불이자·할인료								

(3) 리스지불로 사용하고 있는 설비관련 지불리스료

- 지불리스료를 총액으로 기입

(4) 판매액 내역

- ①자사광산품·제조품판매액, ②가공임수입액, ③도매·소매·음식·숙박판매액, ④서비스사업수입액, ⑤기타사업수입액 등을 「기업활동기보조사비분류표」의 품목분류 또는 사업분류의 구분에 따라 판매금액 혹은 수입금액을 크기순서로 분류번호, 주요취급품 또는 사업의 구체적 명칭 및 금액을 기입

6. 기업간의 거래 및 해외거래

(1) 판매액, 매입액의 거래현황

- 국내 및 해외판매액, 그리고 이중 직접수출액을 총거래액과 관련회사와의 거래액으로 구분하여 기입
- 국내 및 해외로부터의 구입액, 그리고 이중 직접수입액을 총거래액과 관련회사와의 거래액으로 구분하여 기입

(2) 지역별 수출액 및 수입액

- 직접수출액과 직접수입액을 아시아, 중동, 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로 구분하여 기입

(3) 상품별 수출액 및 수입액

- 직접수출액과 직접수입액을 식료품, 원재료, 연료, 화학제품, 섬유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 및 동제품, 일반기계, 전기기계, 운송기계, 정밀기계, 기타제품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

7. 사업의 외주현황

(1) 외주비(연도)

- 외주비 총액 및 관련회사의 비율(%)을 기입

(2) 외부위탁분야 (3) 외부위탁 확대 분야

- 조사 당시 외부위탁을 행하고 있는 분야 그리고 최근 들어 외부위탁을 확대하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다음 분야 중 해당하는 것을 선택
- 관련 분야 : ①정보처리관련, ②조사·양케이팅, ③디자인·제품기획, ④일반사무처리, ⑤복리후생 등의 종업원복지관련, ⑥세무·회계 등 특수분야, ⑦사내연수 등 종업원교육, ⑧접수·안내·비서 등 섬외업무, ⑨운송·배달·보관 등 물류업무, ⑩청소·보완·보수 등의 환경 및 방법관련, ⑪연구개발관련분야, ⑫특히 없음

8. 연구개발

- 자사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수탁연구개발비 등을 각각의 금액과 관련회사의 비율(%)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

9. 기술의 소유 및 거래현황

(1) 특허권 등의 소유, 사용현황(연도말현재)

내 용	소유하고 있는 것	사용하고 있는 것	자사개발한 것
특허권	건	건	건
실용신안권	건	건	건
의장권	건	건	건

(2) 특허권 등의 소유, 사용현황(연도말현재)

항 목		건수		지불금액						수취금액					
		도 입	공 여	천 억	백 억	십 억	억	천 만	백만 엔	천억	백 억	십 억	억	천 만	백 만 엔
특허권	국내	건	건												
	해외	건	건												
실용신안권	국내	건	건												
	해외	건	건												
의장권	국내	건	건												
	해외	건	건												
저작권	국내	건	건												
	해외	건	건												
소프트웨어	국내	건	건												
	해외	건	건												
기타	국내	건	건												
	해외	건	건												

10. 정보화 현황

(1) 컴퓨터·네트워크의 이용유무(연도말현재)

- 다음 사항에서 해당되는 것을 선택

- ①기업내 컴퓨터·네트워크를 이용(기업내 구축된 LAN 등의 네트워크)
- ②특정기업간 컴퓨터·네트워크를 이용(계열기업 등 특정기업간 네트워크)
- ③오픈·컴퓨터·네트워크를 이용(불특정 기업간에 구축된 네트워크)
- ④이용하지 않음

(2) 전자상거래(e-commerce)의 실시현황(연도)

- 전자상거래의 실시 여부 선택 : ①실시하고 있다 ②하지 않고 있다
- 실시할 경우 전자상거래의 거래대상 선택 : ①법인(BtoB), ②개인소비자(BtoC), ③정부 및 공공기관(BtoG)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경제활동 선택 : ①판매, ②생산관리, ③재고관리, ④설계관리, ⑤구매, ⑥물류관리, ⑦회계관리, ⑧원가관리, ⑨인사·급여관리

(3) 정보화 관련 투자현황

- 투자대상의 종류 : 다음 사항에서 해당되는 것을 선택

- ①컴퓨터·OA관련설비 등(하드웨어)의 도입(리스계약 포함)
- ②네트워크 환경정비
- ③클라이언트/서버시스템의 구축
- ④기타()

- PC(손바닥크기의 휴대용단말기, 워드전용기 제외)의 보유대수(연도말현재)

11. 기업경영의 방향(연도말현재)

(1) 스톡옵션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 제도 도입현황 선택 : ①도입, ②도입을 검토 중, ③ 도입 및 검토 하고 있지 않음
- 사내제도의 대상범위 선택 : ①중역의 일부, ②중역전체, ③중역과 일부간부 사원, ④중역 및 전사원, ⑤현단계에서는 불명

(2) 특수회사의 검토현황에 대하여

- 해당사항에 체크 : ①기설립·금회설립, ②설립을 검토 중에 있음, ③상황에 따라 설립을 검토할 수 있음, ④설립을 검토할 예정이 없음

라. 용어설명

- ☐ 「상시종업원」: 유급임원, 상시고용자(정사원, 준사원, 아르바이트 등의 호칭에 관계없이 1개월을 넘는 고용자와 해당연도 말 또는 근처 시점 이전 2개월 중 18일 이상 일한 고용자)를 말함.
- ☐ 「파트타임 종업원」: 정사원, 준사원, 아르바이트 등의 호칭에 관계없이, 상시종업원 중 일반사원보다 1일의 소정 노동시간 또는 1주간의 노동일수가 짧은 사람
- ☐ 「(받는) 파견 종업원」: 노동자 파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고용하는 종업원으로, 파견처 기업과 해당 노동자 파견 사업주와의 계약을 기초로, 파견처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파견처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
- ☐ 「본사·본점」: 기업의 사업 전체를 관리, 통괄,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
 - 등기부상과 실제 본사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는 실제 본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업소(장소)를 본사·본점으로 함.
 - 본사기능부문의 정의
 - 조사·기획부문 : 사업, 제품, 상품의 기획·입안이나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부문

- 정보처리부문 : 시스템설계, 프로그램작성, 오퍼레이션, 계산처리, 키펀치 등을 실시하고 있는 부문
- 연구개발 부문 기초 연구, 응용 연구, 개발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부문
- 국제 사업 부문 수출입에 수반하는 무역업무나 해외 사업의 통괄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부문
- 기타부문 상기 이외의 본사·본점의 총무, 경리, 인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부문

○ 현업부문의 정의

- 광산업부문 : 본사·본점의 동일 부지내에 있어, 광업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부문
- 제조사업부문 : 본사·본점의 동일 부지내에 있어, 제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부문
- 상업사업부문 : 본사·본점의 동일 부지내에 있어 도매·소매를 실시하고 있는 영업 부문, 판매 부문
- 음식점부문 : 본사·본점의 동일 부지내에 있어 요리, 그 외의 식료품을 만들어 사업하는 부문
- 서비스사업부문 : 본사·본점의 동일 부지내에 있어,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부문
- 전기·가스사업부문 : 전기사업법, 가스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관련 되는 본사·본점의 동일 부지내에 있어, 전기사업, 가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부문
- 신용카드·할부금융사업부문 : 본사·본점의 동일 부지내에 있어, 신용카드·할부금융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부문
- 그 외의 부문 본사·본점의 동일 부지내에서 상기 이외의 현업(농림 수산업, 건설업, 운수·통신업, 부동산업 등) 부문

□ 「본사·본점」이외의 사업소에 대해서는 동일부지 내에서 복수의 사업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 활동에 의해 구분

□ 「해외사업소」: 해외의 지사, 주재소 등으로, 해외 현지 자회사 등의 별도 법인은 포함하지 않음.

□ 「판매액」의 구분

- 자사광산품 : 자사에서 생산하여 판매한 광산품의 판매액
 - 제조품 : 자사에서 생산하여 판매한 제조품의 판매액으로 타기업에 원재료, 반제품, 부품을 공급하여 제조한 위탁생산품의 판매액 및 가공임 수입액을 포함
 - 도매·소매·음식점 : 기업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기업 또는 일반소비자에 판매한 금액 및 음식점의 판매액
 - 전기·가스사업 : 전기 또는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의한 수입액
 - 신용카드·할부금융사업 : 신용카드사업, 할부금융사업에 의한 수입액
 - 서비스사업 :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의한 수입액
 - 기타사업 : 상기 이외의 농림수산업, 건설업, 운수·통신업, 부동산업 등의 사업에 의한 수입액
- ☐ 「자회사」: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50%를 넘게 출자하고 있는 회사(자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손자 회사는 제외)
- ☐ 「관련 회사」: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20%이상 50%이하의 출자를 하고 있는 회사(자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손자 회사를 제외)
- 관련 회사 수는 복수의 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되고 있음.
- ☐ 자회사·관련 회사의 신규 보유와 관련하여
- 「분사화에 의하는 것」이란, 사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별도 법인화 한 것
 - 「기업의 매수에 의하는 것」이란, 타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의 전부 내지 50%이상을 소유하여 그 기업의 지배권을 장악 한 것.
 - 「그 외(상기 이외)」란 분할 또는 매수 이외의 이유(합병, 신규사업에 의한 신설 등)에 의해 신설한 것.
- ☐ 「직접 수출액」: 자사 명의로 통관 수속을 실시한 수출액

☐ 「직접 수입액」: 자사 명의로 통관 수속을 실시한 수입액

☐ 「외주비」: 제조원가, 매출원가, 영업원가 등에 계상한 외주비의 총액

☐ 연구 개발비:

- 「자사 연구 개발비」란, 자사를 위한 연구개발과 관련되는 인건비, 원재료비, 연구개발과 관련되는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광열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총액
- 「위탁연구 개발비」란, 다른 기업에 위탁한 연구 개발비의 총액
- 「수탁 연구비」란, 다른 기업으로부터 연구비로서 받은 총액
- 「유형고정자산 중 연구개발 관련 당기 취득액」이란, 유형고정자산의 당기 취득액 가운데, 연구개발 관련 유형고정자산의 구입, 자가건설 등에 의한 취득가액

☐ 특허권 등의 「소유하고 있는 것」이란, 해당연도 말 현재 등록료 등을 계속 지불하고 있는 건수.

- 「내부 사용」이란, 자사 소유 가운데, 타사의 공여를 포함하여 해당연도 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수.
- 「내부 자사개발」이란, 자사 소유 가운데, 타사의 공여를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수 중 자사에서 개발한 건수.

☐ 특허권 등에 관한 정의

- 특허권 :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 할 수 있을 권리이며, 특허법에 따라 등록한 것
- 실용신안권 : 물품의 형상, 구조, 편성의 고안이며, 실용신안법에 따라 등록한 것
- 의장권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에 대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이며, 의장법에 따라 등록한 것

- 「기술 거래」란, 내외 기업과의 사이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노하우나 기술지도 등 기술의 수용, 기술의 제공을 말함
- 「도입 건수」 및 「공여 건수」란, 유상·무상의 대가를 불문하고, 해당년도 1년간 기술거래의 계약이 성립한 총 건수
 - 「지불금액」 및 「수취금액」이란, 신규, 계속을 불문하고, 해당년도 1년간 대가의 수입, 대가의 지불을 실시한 금액의 총액
- 영업비용 등에 관한 내역
- 매출원가 : 판매액에 대응하는 원가(제조에 필요로 한 재료비, 노무비, 제경비)
 - 상품 구입고등의 원가 : 판매비·일반 관리비 판매 업무, 일반 관리 업무에 관해서 발생하는 비용
 - 광고 선전비 : 판매촉진을 위한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 광고 매체에 의한 선전, 이벤트 등의 비용
 - 정보처리·통신비 :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나 데이터 통신 등의 전문 부서에 있어서 정보처리 비용과 전보, 전화, 우편 등의 통신 비용. 다만, 전자계산기 매입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제외.
 - 대차료 : 토지, 건물, 광산기계, 제조기계, 자동차, 진열장, 사무용 기계 등의 대차료. 다만, 컴퓨터의 대차료는 「정보처리·통신비」에 포함
 - 총급여액 : 해당년도 1년간에 지급된 급여액 또는 지급되어야 할 급여액(기본급, 제수당, 기말상여, 퇴직금 등)의 총액으로, 세금 포함된 금액
 - 감가상각비 : 해당년도 1년간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으로서 계상된 금액
 - 포장 운반비 : 광산물품, 제조품, 상품의 포장을 위한 재료비, 포장료 또는 운송료 등의 비용이며, 위탁 비용도 포함
 - 조세공과 : 고정 자산세, 인지세 등의 기업이 부담하는 조세, 기업이 가입하고 있는 각종 단체의 부과금
 - 지불이자·할인료 : 차입금리, 사채이자, 수취어음의 할인료 등

- 영업의 수익 : 수취이자, 수취 배당금, 유가증권 매각이익 등
 - 영업의 비용 : 지불이자·할인료, 유가증권 매각손 등의 비용
 - 지불 리스료 : 리스계약에 근거하여 지불한 금액으로 토지, 건물의 임차, 단기간의 렌트, 전세 등은 포함하지 않음.
- ☐ 「유형 고정자산의 당기 취득액」: 해당년도 1년간에 있어서 유형 고정자산의 구입, 자가건설 등에 의한 취득가격
- ☐ 「국내 관계회사(자회사, 관련 회사 및 모회사)에 대한 투융자 잔고」: 국내의 관계 회사에 대한 출자금, 관계회사의 주식, 사채, 관계회사에 대한 장기대부금 등의 합계
- ☐ 「해외 관계 회사에 대한 투융자 잔고」: 해외에 있는 관계회사에 대한 출자금, 관계회사의 주식, 사채, 관계회사에의 장기대부금 등의 합계
- ☐ 정보화의 상황
- 「컴퓨터·네트워크」란, 기업 내 또는 다른 기업(복수의 기업을 포함)의 복수 컴퓨터, 혹은 1대의 초대형기와 다수의 단말기를 각각 통신회선(특정, 공중, 사설) 등으로 연결하여 정보처리, 데이터 교환, 전자 메일 등 효율적인 정보 교환을 실시하는 시스템
 - 「전자 상거래(e-commerce)」란, 상거래(기업의 수익으로 계상된 금전목표 대가를 수반하는 상품으로서 물품, 서비스, 정보의 교환에 관련되는 일련의 업무·행위) 가운데, 일부에서 컴퓨터를 개입시킨 네트워크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 ☐ 「스톡옵션제도」: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기업의 종업원, 역원 등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을 권리
- 「지회사주」란, 타사의 주식을 투자가 아니라 사업 활동을 지배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영 형태
- ☐ 관혼상제업(관혼상제상조회는 제외)은 「관혼상제업」, 유원지(테마파크를 포함)

는 「유원지」, 물품임대업(리스업)은 「물품 임대업」이라고 표현

마. 집계 및 공표

☐ 조사실시 약10개월 후에 속보를, 약1년 4개월 후에 확보를 공표

☐ 속보 : 조사 사항 가운데, 주요 항목을 집계

평성14(2002)년 기업활동기본조사속보의 구성

평성14년 기업활동기본조사속보

개 황
<목 차>

이용상의 주의
조사결과와 개요

제1장 우리나라 기업의 구조와 고용 현황

1. 기업수
2. 사업소수
3. 고용현황
 - 1) 상시종업원수
 - 2) 파트타임종업원의 비율
 - 3) 파견종업원수

제2장 판매액으로 본 국내사업의 현황

1. 제조업의 현황
 - 1) 전업현황
 - 2) 겸업현황
2. 도·소매·음식기업의 현황
 - 1) 도매기업
 - 2) 소매기업
 - 3) 음식기업

제3장 전기·가스기업, 정보서비스·정보제작기업, 서비스기업 등의 현황

1. 자회사의 보유현황
2. 국내자회사의 산업별 보유현황
3. 국내자회사에 의한 사업전개 현황
 - 1) 제조기업의 전개현황
 - 2) 도·소매·음식기업의 전개현황
 - 3) 전기·가스기업의 전개현황
 - 4) 신용카드업·할부금융기업의 전개현황
 - 5) 정보서비스·정보제작기업의 전개현황
 - 6) 개인교습소기업의 전개현황
 - 7) 서비스기업의 현황
4. 해외자회사의 현황
 - 1) 해외자회사의 산업별 보유현황
 - 2) 해외자회사의 지역별 보유현황
5. 해외자회사에 의한 사업의 전개현황
 - 1) 제조기업의 전개현황
 - 2) 도매기업의 전개현황
 - 3) 소매기업의 전개현황
 - 4) 음식기업의 전개현황
 - 5) 전기·가스기업의 전개현황
 - 6) 신용카드업·할부금융기업의 전개현황
 - 7) 정보서비스·정보제작기업의 전개현황
 - 8) 개인교습소기업의 전개현황
 - 9) 서비스기업의 현황

제4장 연구개발 현황

1. 연구개발부문의 종업원수
2. 연구개발비

평성14(2002)년 기업활동기본조사속보의 구성(계속)

제5장 기업수익 현황

1. 판매액 현황
2. 이익현황
3. 판매액경상이익률, 판매액영업이익률
4.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당기이익률
5. 부가가치율, 노동분배율, 항시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
6. 비용현황
 - 1) 영업비용
 - 2) 개별비용

제6장 정보화 현황

1. 컴퓨터·네트워크 이용현황
 - 1) 컴퓨터·네트워크 이용률
 - 2) 컴퓨터·네트워크의 종류별 이용률
2. 전자상거래(e-commerce) 실시현황
 - 1) 전자상거래 실시현황
 - 2) 전자상거래 거래현황
 - 3)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경제활동의 종류
3. 판매액경상이익률, 판매액영업이익률
 - 1) 투자대상의 종류별 현황
 - 2) PC의 보유현황

제7장 업무의 외부위탁 현황

1. 외부위탁 현황
2. 외부위탁의 확대방향

제8장 기업경영 등의 현황

1. 스톡옵션제도의 도입현황
2. 지주회사의 검토현황

토픽 : 기업의 대차대조표와 영업이익의 현황

[참고] 기업에 있어서 구조조정과 기업성과간의 관계

- 기업활동기본조사 판넬자료를 활용한 분석(제조업)

□ 확보는 총 3권으로 구성

- 제1권 : 종합 통계표에는 조사 사항 가운데 「기업간의 거래 및 해외 거래」, 「모회사, 자회사·관련 회사의 상황」이외의 항목을 집계
- 제2권 : 사업 다각화 등 통계표에는 조사 사항 가운데 「사업 내용」, 「기업간의 거래 및 해외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집계
- 제3권 : 자회사등 통계표에는 조사 사항 가운데, 「모회사, 자회사·관련 회

사의 상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집계

□ 공표 수치에 대한 설명

- 기업수, 사업소수, 상시종업원수는 연도말의 수치(스톡)이며, 판매액 등은 1년간의 실적(플로우)
- 개황 및 통계표의 합계는 상광공업(광업,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의 합계), 전기·가스업, 신용카드업·할부금융업 및 서비스업의 합계, 서비스업은 사진현상·인화업, 관혼상제업(상조회를 제외), 골프장, 유원지·테마파크, 기계수리업, 물품임대업(리스업), 영화·비디오 제작업, 소프트웨어업, 정보처리·제공 서비스업, 광고 대리업, 엔지니어링업, 개인 교습소의 합계
- 연구개발비 및 외주비의 기업당의 수치는 기업한 기업 수로 산출하며, 기업당 자회사 보유수는 자회사를 보유하는 기업수로, 국내·해외의 기업 근처 자회사 보유수에 대해서도 국내·해외 자회사를 보유하는 기업 수로 각각 산출
- 「기업수익 현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산식
 - 판매액 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text{판매액}} \times 100$
 - 판매액 경상이익률 = $\frac{\text{경상이익}}{\text{판매액}} \times 100$
 - 자기자본 = 자본금 + 법정 준비금 + 잉여금
 - 자기자본 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총자산(총자산)}} \times 100$
 - 자기자본 당기 이익률 = $\frac{\text{세금공제 후 당기 이익}}{\text{자기자본}} \times 100$
 - 부가가치액 = 영업이익 + 급여 총액 + 조세공과 + 감가상각비 + 임차료
 - 부가가치율 = $\frac{\text{부가가치액}}{\text{판매액}} \times 100$
 - 노동분배율 = $\frac{\text{급여총액}}{\text{부가가치액}} \times 100$
 - 노동 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액}}{\text{상시종업원수}}$
- 수치, 구성비의 누적은 단위 미만을 사사오입하기 때문에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기업 당 증감률 등에서는 단위 미만을 포함한 계산치로 게재
- 통계표 중 「-」은 해당 숫자가 없는 것, 「0」은 단위 미만의 것이고, 「x」는 1 또는 2개의 기업에 관한 숫자이기 때문에 개개 신고자의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어 은닉 한 것을 나타냄.

- 그리고 이 은닉에도 불구하고 x가 산출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수가 3개 이상에서도 은닉 하는 기업이 있음.

바. 기업의 산업분류

□ 기업의 산업분류

- 본 조사의 산업 분류는 사업소에 대해 적용하는 일본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하고 있지만, 제조업에 대해서는 일부분류를 통합하여 일반 기계 기구 제조업에는 무기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음
- 동일한 분류를 기계적으로 적용시키면 사업소기준에 비해서 기업기준이 겸업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품도매업, 상품소매업 및 물품임대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조사 목적 중 하나인 다각화에 대한 파악 등의 분석에 부적합하게 됨
- 이를 위해 조사보고서에서는 이 3개의 산업을 분류로 채용하지 않고 해당 기업의 주요활동에 의해 각각의 산업을 분류
- 그 결과 「종합상사」와 같은 기업은 섬유품 도매업, 광물금속재료 도매업, 기계기구 도매업 등으로, 「백화점」이나 「슈퍼」 등은 직물·의복·장신구 소매업이나 음식료 소매업 등으로, 「종합리스업」은 산업용 기계기구 임대업, 사무용 기계기구 임대업 등으로 분류되고 있음.

□ 기업의 산업분류 결정방법

- 기업의 판매액을, 기업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①광산품의 판매, ②제조품의 판매, ③제조품의 가공비 수입, 다른 기업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④도매·소매의 매상, 음식점 매상, ⑤전기·가스사업 수입, ⑥신용카드업·할부금융업의 사업 수입, ⑦서비스사업 수입, ①~⑦이외의 ⑧그 외의 사업 수입으로 나누어 본조사의 분류 마다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음.
- 이것들을 ①~⑧별로 합산하여 판매액이 가장 큰 것으로 대분류(광업, 제조업, 도매·소매·음식점, 전기·가스업, 신용카드업·할부금융업, 서비스업, 그 외 산업)을 결정하고 있음.
- 그 대분류 내에서는 가장 높은 판매 품목(사업 수입)으로 산업(소분류)을 결정

□ 용어 「산업」의 사용법

- 본조사의 보고서에서 「산업」이라는 용어의 사용법은 2가지
 - 기업의 주력 업종 판매액에 의해 산업을 결정하고, 광업기업, 제조기업, 도매기업, 소매기업, 전기·가스기업, 신용카드업·할부금융기업, 서비스기업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00기업이라는 용어를 이용하고,
 - 각각 산업의 내역을 보는 경우에는 00제조업, 00도매업, 00소매업, 00업이라고 함.
- 문화센터, 피트니스클럽 및 외국어회화교실을 총칭하여 개인 교습소라고 하는 용어(혹은 이 약칭)를 이용

8. 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

가. 개요

□ 조사목적

- 기업의 해외사업활동에 대한 현황과 해외사업활동이 현지 및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향후 산업정책 및 통상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연혁

- 1971(소화 46)년에 1970년 실적을 매년 조사로 「해외사업활동동향조사」를 실시하기 시작
 - 1974(소화 49)년 조사에서는 조사표갑인 일본본사기업용과 조사표을인 해외현지법인용의 구별을 폐지하고 일체화하였으며, 조사대상에 농림어업을 추가하고 섬유관계의 조사사항을 추가
 - 1975(소화 50)년 조사에서는 OECD권고안인 다국적기업의 행동지침에 의거하여 관계조상을 추가하고, 앙케이트항목을 대폭적으로 삭제
 - 1976(소화 51)년 조사에서는 유형고정자산증가액, 부가가치의 내역삭제, 증권취득실적건수 등의 추가 등 조사항목의 정비 및 앙케이트 항목의 약간 증가
 - 1978(소화 53)년 조사에서는 조사항목 가운데 종업원평균급여, 앙케이트항

목, 일본측간사기업명, 현지재투자액, 귀사파견자수 등을 삭제하고, 세입전
순이익, 투자자금조달방법, 손회사의 개요 등을 추가

- 1979(소화 54)년 조사에서는 조사실시일을 12월조사에서 9월조사로 변경
- 1981(소화 56)부터는 3년 주기로 보다 상세한 조사로서 「해외사업활동기본
조사」를 개시
- 기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연도에는 동향조사가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조사명을 기본조사로 동일하였고 2000(평성 10)년에 1999년 실적,
2001(평성 11)년에 2000년 실적을 동향조사로 실시하였고, 2002(평성 14)
년에 2001년 실적에 대하여 32회 기본조사를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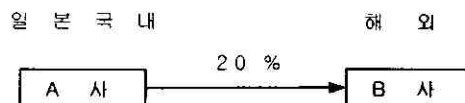
□ 조사주기 및 기준일

- 조사주기 : 1년
- 조사기준 : 해당연도 3월 말, 연간실적은 해당연도 1년 중의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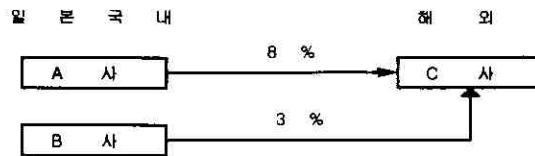
나.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조사대상 : 조사대상연도의 3월말 기준으로 해외에 현지법인을 갖고 있는 일본
기업(금융·보험업, 부동산업을 제외, 이하 「본사기업」이라함)으로 본사기업과
현지법인이 조사의 대상

- 본사기업 : 해외에 현지법인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가지고 있
었던 일본기업
- 현지법인 : 일본측 출자비율합계가 10%이상인 외국법인(자회사) 및 일본측
출자비율합계가 50%를 넘는 자회사가 50%를 넘는 출자를 하고 있는 외국
법인(손회사)을 대상(단, 50%출자는 미포함)
- 자회사 사례 1) A사로부터 B사에의 출자비율 합계가 10%이상이기 때문에
B사는 조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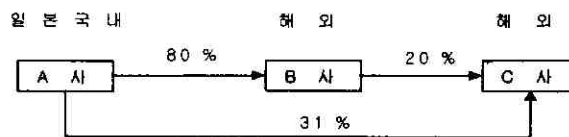
- 자회사 사례 2) A사와 B사로부터 C사에의 일본측 출자비율 합계가 10%이
상이기 때문에 C사는 조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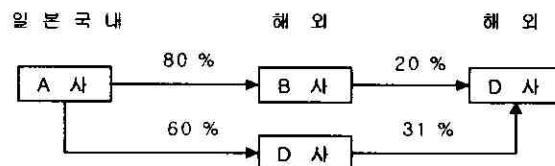
- 손회사 사례 1) A사로부터 B사에의 출자비율이 50%를 넘고, B사로부터 C사에의 출자비율도 50%를 넘기 때문에 C사는 조사대상



- 손회사 사례 2) $20+31=51$ 로 50%가 넘기 때문에 C사는 조사대상



- 손회사 사례 3) $20+31=51$ 로 50%가 넘기 때문에 D사는 조사대상



□ 조사단위 : 회사(기업)

□ 조사방법: 본사기업에 조사표(「본사기업 조사표」 및 「현지법인 조사표」)를 우송에 의해배포하고, 각 본사기업에서 파악한 정보를 기초로 신고자의 자계 신고 방식에 의해 우편조사를 실시

- 필요에 따라서는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도 실시
- 금액은 모두 엔화로 환산하여 기입

다. 조사항목 및 설명(2002년 조사표 기준)

(I) 본사기업조사표

1. 기업의 개요

- (1) 기업의 명칭 : 상호 또는 영업 상 사용하고 있는 정식 명칭을 기입
- (2) 소재지 : 정관에 기재된 본사 혹은 본점의 소재지를 기입, 단 실제로 조사표에 기입한 부서의 소재지가 본사 혹은 본점의 주소와 다를 경우는 (4)의 실제 조사표를 기입한 부서의 소재지를 기입
- (3) 우편번호 : (2)의 소재지 우편번호를 기입
- (4) 담당부서 : 조사표를 기입한 부서명
- (5) 전화번호 : (4)의 담당부서 전화번호를 시외, 시내국번을 「-」로 연결 기입
- (6) 업종분류 : 분류표의 해당 코드를 기입
- 업종분류표는 기업활동기본조사의 조사대상업종을 참조
- (7) 소비세의 취급 : 세금포함의 경우에는 「1」,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2」로 구분하여 0안의 숫자로 표시
- (8) 자본금 또는 출자금 : 불입제 자본금 혹은 출자금을 기입
- (9) 상시종업원수 : 유급직원, 상시고용자(정사원, 준사원, 아르바이트 등의 명칭과 관계없이 1개월을 초과하는 고용계약자와 기준년도말 또는 조사시점 전 2개월에 있어서 각각 18일이상 고용된 사람)의 합계를 기입

2. 손액계산서항목

- (1) 판매액 : 자사광산품판매액, 자사제조품판매액, 가공임수입액(다른 산업으로부터 지급된 원재료, 반제품, 부품을 가공한 경우의 가공임), 매입상품판매액, 기타사업수입(건설업의 완공공사고, 농림수산업, 음식점, 서비스업의 수입액 등)의 합계를 기입
- (2) 수출액 : 자사명의로 통관절차를 행한 직접 수출한 금액
- (3) 현지법인 수출액 : (2)의 수출액 중 현지법인에의 직접수출액
- (4) 매입액 : 원재료, 반제품, 부품 등 매입액, 다른 기업으로부터의 상품매입액을 기입
- (5) 수입액 : 자사명의로 통관절차를 행한 직접 수입한 금액

- (6)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입액 : (5)의 수입액 중 현지법인으로부터 직접수입액

(2) 현지법인조사표

1. 현지법인의 개요

- (1) 현지법인명 : 영문명 또는 ABC 등의 알파벳으로 기입
- (2) 국(주, 성) 분류(국은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음) : 국가분류표, 지역분류표를 참고하여 해당코드를 기입
- (3) 업종분류 : 분류표의 해당 코드를 기입
- (4) 설립·자본참가시기 : 현지법인의 진출시기를 기입
 - 설립시기와 자본참가시기가 다른 경우 자본참가시기를 우선적으로 기입
- (5) 결산일 : 본 조사에 기입한 결산내용의 결산시기를 월로 기입
 - 결산시기가 복수인 경우는 여백에 기입
- (6) 구분 : 자회사, 손회사 등을 구분
- (7) 자회사명 : 현지법인이 귀사의 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귀사로 볼 때 자회사(해당 현지법인으로 볼 때 모회사)의 명칭을 영문 또는 ABC 등 알파벳으로 기입

2. 출자, 고용현황

- (1) 자본금 또는 출자금 : 출자금이란 주식회사 등에서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조합 등을 상정한 것으로, 일본측출자자가 출자 부담한 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엔화로 환산할때에는 귀사가 자본금 등에 출자한 때에 사용한 환율을 계속적으로 사용
- (2) 일본측출자비율 : 현지법인의 현재 귀사를 포함한 일본측의 출자비율을 기입
- (3) 종업원수 : 유급역원수와 종업원수의 합을 기입

3. 조업현황 및 진출현황

- (1) 조업현황 : 다음 ①-⑦ 중 해당 번호를 선택
 - ① 조업(영업)중
 - ② 설립후 초기결산전 : 조업중이지만, 최초의 결산을 맞이하지 않은 경우
 - ③ 미설립·미조업 : 미설립은 출자 신고 등을 했지만 아직 설립되지 않

은 경우이며, 미조업은 설립은 되었으나, 아직 조업은 하지 않는 경우

- ④ 휴면(휴업)중 : 조업(영업)을 행하지 않는 기업
- ⑤ 청산 : 합병이외의 원인에 의해 회사가 해산한 후 회사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
 - 본 조사에서는 광의의 해산(회사가 영업활동을 중지하고, 그 법인격의 소멸 기일을 정하고 있는 상태)이나 청산형의 소위 도산, 파산에 대해서도 청산이라고 정의
- ⑥ 퇴거·이전 : 퇴거는 해당현지법인의 매각, 흡수 및 합병이 행해져 결과적으로 일본측출자비율이 0%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전은 다른 지역으로 전거·통합되었지만, 해당현지법인의 영업은 허가된 형태가 계속되고 있는 등 구체적으로는 현지법인이 해당소재지로부터 소멸된 뒤에, 제3국지역 및 일본국내에 완전히 이전한 경우와 미국에 있어서는 州, 중국에 있어서는 省을 넘어 이전한 경우
- ⑦ 출자비율의 저하 : 현지법인의 일본측 출자비율이 10%미만으로 떨어져서 0%는 넘으나 10%미만이 된 경우

(2) 퇴거·이전 현황

- ① 퇴거·이전시기 혹은 예정시기를 해당란에 표시
- ② 현지법인소재국으로부터 제3국, 지역 및 일본국내에 완전 이전한 경우에는 「예」란에 표시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이전지역을 분류표에 입각하여 직접 기입
- ③ 퇴거·이전이유 : 보기 중에 1개를 선택

(3) 진출동기 : 보기 중 해당하는 것을 순서로 3개 선택

4. 설비투자 등의 현황

(1) 당해연도 실적

- ① 설비투자실적
 - 설비투자액 = 해당연도유형고정자산잔액-전연도유형고정자산잔액
+ 해당연도감가상각실시액+해당연도유형고정자산상각액
- ② 자금조달 일본측출자자 인수 : ① 중 중자 등이 행해질 때 일본측출자자 인수, 혹은 출자자로부터 차입 내 일본측출자자로부터 차입 등의 합계액을 기입
- ③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설비조달액 : ① 중 설비의 구입처가 일본인 경우 설비투자액을 기입

(2) 차기연도 목표

- ① 설비투자목표
- ② 자금조달 일본측출자자 인수 예정액
- ③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설비조달 예정액

5. 사업활동 현황

(1) 판매액

- ① 당해연도 실적
 - 판매액 총계, 일본수출, 현지판매, 제3국수출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
- ② 차기연도 목표
 - 판매액 총계, 일본수출, 현지판매, 제3국수출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

(2) 매입액

- ① 당해연도 실적
 - 매입액 총계, 일본수입, 현지조달, 제3국수입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
- ② 차기연도 목표
 - 매입액 총계, 일본수입, 현지조달, 제3국수입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

(3) 연구개발 현황

- ① 연구개발비 : 시험연구를 위한 인건비, 물건비에 연구관계 유형고정 자산의 감가상각액, 공동연구분담금, 연구위탁비를 포함

(4) 비용·수익·이익처분 현황

- ① 판매원가 : 판매액에 대응하는 제조원가(재료비, 노무비, 제경비), 상품매입액 등으로 귀사 전체의 원가(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공사원가)를 기입
- ② 판매비·일반관리비 : 판매업무, 일반관리업무에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영업이나 기업전반에 걸친 관리업무에 필요한 급료, 여비, 광고선전비, 정보처리비, 통신비, 부동산임차료, 동산임차료 등)을 기입
- ③ 급여총액 :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으로 정기적, 임시적으로 지불된 급여의 총액을 세금(소득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노동보험 등)을 차감하기 전의 액) 포함하여 기입
- ④ 하조운반비 : 광산품, 제조품, 상품의 梱包를 위한 하조재료비, 하조비 또는 수송을 위한 운반비 등의 비용(당해업무의 위탁비용 포함)을 기입
- ⑤ 임차료 :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임차료와 광산기계, 제조기계, 자동차, 사무용기계 등의 동산임차료의 합계금액을 기입
- ⑥ 감가상각비 :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기입
- ⑦ 경상이익 :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의 합계

- ⑧ 세입후 당기손익 : 경상손익에서 특별손익, 세금을 차감한 금액
 ⑨ 당기내부유보액 : 이익처분후 당해연도 적립 내부유보액을 기입
 ⑩ 당해연도말 내부유보잔액 : 이익처분후 당해연도 내부유보액을 가산한 내부유보액의 스톡액을 기입
- (5) 일본측출자자 지불비용 : 당해연도에 지불된 배당금, 차입금리차, 로열티, 기술지도료 등의 합계액을 현지법인의 송금실행 기준 금액으로 기입

라. 집계 및 공표

- ☐ 조사실시 약 1년 후에 주요 항목에 대해 산업별, 규모별, 지역별로 집계하고,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과 제휴하여 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해외사업 활동기본조사개요」 또는 「해외사업활동동향조사개요」로 공표
- ☐ 약9개월 후에 「일본기업의 해외사업 활동」으로 보고서(간행물)를 공표
- ☐ 조사결과에 대한 유의점
- 유효회답만을 집계하므로 항목에 의해 회답기업의 수에서 차이가 존재
 - 조사결과를 전회 조사, 혹은 그 이전의 조사결과와 비교할 경우 각각 조사연도의 대상수가 달라 회수율의 차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표준산업분류의 개정에 따라 2000년도의 수치를 신분류에 의해 재집계한 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2000년도 공표수치 및 통계표 수치와 차이가 있음

〈표 4-18〉 최근의 조사대상기업과 응답상황

실시연도 (조사회)	1993 (5기)	1994 (24동)	1995 (25동)	1996 (6기)	1997 (27동)	1998 (28동)	1999 (7기)	2000 (30동)	2001 (31동)	2002 (32동)
조사표발송수	3378	3650	3650	3959	3860	3862	3841	3539	3430	3037
응답수	1594	2329	2590	2390	2281	2448	2151	2244	2157	1886
회수율(%)	47.2	63.8	70.1	60.4	59.1	63.4	56.0	63.4	62.9	62.1

주: 조사회에서 '기'는 기본조사, '동'은 동향조사를 의미함.

□ 조사결과보고서는 1권 4편으로 구성

- 제1편 : 조사의 개요, 회답상황, 이용상의 주의
- 제2편 : 조사의 포인트, 조사의 요지
- 제3편 : 조사의 분석
 - 제1장 : 기업의 해외전개 동향
 - 제2장 : 해외에서의 사업활동 현황
 - 제3장 : 현지법인의 판매조달활동과 국내와의 무역
- 제4편 : 집계결과표
 - 제1장 : 본사기업에 관한 집계표
 - 제2장 : 현지법인에 관한 집계표
 - 제3장 : 손회사에 관한 집계표
 - 제4장 : 출자비율50%초과 현지법인에 관한 집계표
 - 제5장 : 현지법인의 시계열통계
 - 제6장 : 참고자료

마. 조사관련 특이 사항

□ 현지법인에 관한 집계항목의 엔환산

- 현지법인에 관한 집계항목의 통화단위는 원칙으로서 「백만엔」
- 현지통화와 일본엔의 환산은 IMF공표의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에 있어서 연평균 환율 기준

□ 지역의 정의

- 홍콩은 중국에 포함
- EU : 벨기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 NIEs3 : 싱가포르, 대만, 한국
- ASEAN4 :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 본사기업의 기업규모 정의

- 대기업 : 자본금 10억엔 초과
- 중견기업 : 제조업,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및 기타에 대해서는 자본금 3억엔 초과 10억엔 이하, 도매업은 자본금 1억엔초 10억엔 이하, 소매업, 서비스업의 경우는 자본금 5 천만원초 10억엔 이하
- 중소기업 : 제조업,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기타에 대해서는 자본금 3억엔 이하, 도매업의 경우는 자본금 1억엔 이하, 소매업,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자본금 5 천만엔 이하

□ 업종분류: 일본표준산업분류에 준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 제조업
 - 식료품 :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담배제조업, 사료·유기질비료제조업
 - 섬유 : 섬유공업, 의복·기타섬유제품제조업, 화학섬유제조업
 - 목재지파 : 목재·목제품제조업, 펄프·지제조업, 종이·가공품제조업
 - 화학 : 화학공업(화학섬유제조업 제외)
 - 석유석탄 : 석유제품·석탄제품제조업
 - 철강 : 철강업
 - 비철금속 : 비철금속제조업
 - 일반기계 : 일반기계기구제조업
 - 전기기계 : 산업용전기기계기구제조업, 민생용전기기계기구제조업, 전자용장치제조업,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
 - 정보통신기계 : 통신기계기구·관련기계기구제조업, 전자계산기·부속장치제조업, 전자부품·디바이스제조업
 - 수송기계 :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 정밀기계 : 정밀기계기구제조업
 - 기타제조업 : 가구·장비품제조업, 인쇄·관련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고무제품제조업, 피혁·동제품·모피제조업, 요업·토석제품제조업, 금속제품제조업, 기타제조업
- 비제조업
 - 농림어업 : 농업, 임업, 어업·수산양식업

- 광업 : 금속광업, 석탄·아연광업, 원유·천연가스광업, 비금속광업
- 건설업 : 종합공사업, 직별공사업, 설비공사업
- 정보통신·운송업 : 정보통신업, 운송업
- 도매·소매업 : 도매업, 소매업
- 서비스업 : 전문서비스업, 물품임대업, 광고업, 기타서비스업
- 기타비제조업 : 전기·가스·열공급업, 수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음식점, 숙박업, 의료·복지·교육·학습지원·복합서비스업

9. 외자계기업 동향조사

가. 개요

☐ 조사목적

- 국내의 외자계기업에 대한 현황과 외자계기업이 국내외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향후 산업정책 및 통상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연혁

- 1967(소화 42)년에 1966년 실적을 매년 조사로 실시하기 시작
- 2003년 현재 2001년 실적에 대하여 36회 조사가 실시됨

☐ 조사주기 및 기준일

- 조사주기 : 1년
- 조사기준 : 해당연도 3월 말, 연간실적은 해당연도 1년 중의 실적

나.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 조사대상 및 단위: 외환 및 외국무역법에 근거해 경제산업성 등에 대내직접투자의 신고 또는 사후보고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 외국투자가가 소유 주식 또는 지분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규모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

- 단, 금융·보험업, 부동산업은 제외

- ☐ 조사방법: 대상기업에 조사표를 우송하고, 자체신고 방식에 의한 메일 조사를

실시

다. 조사항목 및 설명(2002년 조사표 기준)

1. 기업의 개요

- (1) 기업의 명칭 : 상호 또는 영업 상 사용하고 있는 정식 명칭을 기입
- (2) 소재지 : 정관에 기재된 본사 혹은 본점의 소재지를 기입, 단 실제로 조사표에 기입한 부서의 소재지가 본사 혹은 본점의 주소와 다를 경우는 (4)의 실제 조사표를 기입한 부서의 소재지를 기입
- (3) 담당부서명 및 전화번호
- (4) 업종분류 : 분류표의 해당 코드를 기입
 - 업종분류표는 기업활동기본조사의 조사대상업종을 참조
 - 2업종이상 점업을 하는 경우에는 판매액이 가장 큰 주업종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
- (5) 설립·외자참여연도 및 청산일
 - 청산일은 회사의 결산기구분에 입각하여 ① 1년결산의 경우 매년 4월 1일에서 다음해 3월31일까지 도래한 결산월을 기입, ②반년결산의 경우 매년 10월1일에서 다음해 3월31일까지 도래한 결산월을 기입
- (6) 자본금 또는 출자금 : 불입제 자본금 혹은 출자금을 기입
- (7) 외자비율, 소비세의 취급
 - 외자비율은 발생주식총수 또는 출자금총액에서 점하는 외국투자가에 의한 소유주식 또는 출자금액의 비율을 소수점 한자리까지 기입
 - 세금포함의 경우에는 「1」,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2」로 구분하여 0안의 숫자로 표시

2. 출자현황

- (1) 외국측필두출자자명, 일본측필두출자자명을 카타가나 혹은 알파벳으로 기입
- (2) 국적 : 국가분류표를 참조하여 기입
- (3) 업종 : 업종분류표를 참조하여 기입
- (4) 출자비율 : 발생주식총수(또는 출자금총액)에서 점하는 출자순위 제1위 국측 및 일본측출자자에 의한 소유주식(또는 출자금액)의 비율을 소수점 한자리까지 기입상기

3. 조업현황 및 진출현황

(1) 조업현황 : 다음 ①-⑧ 중 해당 번호에 ○ 표시

① 조업(영업)중

② 미설립·미조업 : 미설립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에 의한 진출이나 사후 신고를 했지만 아직 설립되지 않은 경우이며, 미조업은 설립은 되었으나, 아직 조업은 하지 않는 경우

- 설립이 예정된 기업의 경우에는 기입 가능한 조사항목에 예정사항을 기입

③ 휴면(휴업)중 : 조업(영업)을 하지 않는 기업으로 자산현황 이후를 기입할 필요가 없음

④ 해산 : 회사가 청산, 도산, 흡수합병 등에 의해 해산한 경우로 자산현황 이후를 기입할 필요가 없음

⑤ 출자비율의 저하 : 외국투자자(복수의 경우는 그 합계)의 출자비율이 1/3이하로 낮아진 경우로 자산현황 이후를 기입할 필요가 없음

⑥ 퇴거 : 이미 외국투자자가 퇴거한 기업의 경우로, 자산현황 이후를 기입할 필요가 없음

⑦ 설립후 초기결산전 : 설립후 또는 외자도입후 최초의 결산을 맞이하지 않은 경우로 자산현황 이후를 기입할 필요가 없음

⑧ 조사대상 제외업종 :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일 경우로 자산현황 이후를 기입할 필요가 없음

4. 자산현황

(1) 총자산 : 현금, 예금, 외상매출금, 당좌수표, 유가증권 등 유동자산,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 투자 등 고정자산, 이월자산의 합계를 기입

(2) 고정자산 : 토지, 건물, 기계 등 유형고정자산, 전화기입권, 특허권 등 무형고정자산, 투자유가증권, 자회사주식 등 투자의 합계를 기입

(3) 토지관계 :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합계액을 기입

(4) 건물관계(임거보증금을 포함) : 소유하고 있는 사무소, 점포, 공장, 창고, 사택 및 건물부속설비로서의 설비 등 건물에 대해서 임거보증금을 포함해서 기입

(5) 자기자본 : 자본금 또는 출자금, 법정준비금, 잉여금, 신주식불입금 등의 합계를 기입

5. 손익현황

(1) 판매액 : 자사광산품판매액, 자사제조품판매액, 가공임수입액, 매입상품 판매액, 기타사업수입의 합계를 기입

- 대리점, 중개업에 있어서 판매액은 상품의 취급액이 아니고 수수료수입액을 의미하며, 또한 보세지역으로부터의 판매도 포함
 - (2) 수출액 : 자사명의로 통관절차를 행한 직접 수출한 금액을 기입
 - (3) 외국측출자자에의 판매액 : (2)의 수출액 중 외국측출자자에 대한 판매액(직접수출)의 합계액을 기입
 - (4) 판매액의 차년도 목표액
 - (5) 매입액 : 원재료, 반제품, 부품 등 매입액, 다른 기업으로부터의 상품매입액을 기입
 - (6) 수입액 : 자사명의로 통관절차를 행한 직접 수입한 금액
 - (7) 외국측출자자로부터 수입액 : (6)의 수입액 중 외국측출자자로부터의 직접수입액을 기입
 - (8) 판매원가 : 판매액에 대한 제조원가(제조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제경비), 상품매입액 등 기업의 전체원가를 기입
 - (9)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 판매업무, 일반관리업무에 관하여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영업이나 기업전반에 걸친 관리업무에 필요한 급료, 여비, 광고선전비, 정보처리비, 통신비, 부동산임차료, 동산임차료 등의 비용 합계를 기입
 - (10) 급여총액 :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 정기적, 임시적으로 지불한 모든 것의 총액을 소득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노동보험료 등 세금을 차감하기 이전의 액으로 기입
 - 단, 회사부담의 법정복리후생비(사회보험료, 노동보험료)는 급여에 포함하지 않음
 - (11) 하역운반비 : 광산품, 제조품, 상품의 포장을 위한 하역재료비, 하역비 또는 수송을 위한 운송료 등의 비용을 당해업무의 위탁비용을 포함해서 기입
 - (12) 임차료 :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임차료, 광산기계, 제조기계, 자동차, 사무용기계 등의 동산임차료 합계를 기입
 - (13) 감가상각액 : 유형고정자산액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기입
 - (14) 경상이익(Δ 손익) :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의 합계액을 기입하되 손실의 경우에는 숫자 앞에 「 Δ 」을 붙임
 - (15) 세후당기이익(Δ 손익) : 경상손익에서 특별손익, 세금을 차감한 세금부과 후 순이익을 기입하되, 손실의 경우에는 숫자 앞에 「 Δ 」을 붙임
6. 수출입현황·지역별내역
- (1) 지역별 수출비율 : 총수출이 100%가 되도록 기입

- (2) 지역별 수입비율 : 총수입이 100%가 되도록 기입
7. 연구개발비 : 시험연구를 위한 인건비, 물건비에 연구관계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 공동연구분담금, 연구위탁비를 포함
8. 자금조달현황
- (1) 차입금총액 : 금융기관 및 이외로부터 자기자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차입에 의해 조달한 자금의 합계를 기입
- (2) 차입형태별 차입금내역
- ① 단기차입금 : 변제기간이 1년 이내(장기차입금에서 변제기간이 1년 이내가 된 것을 포함)의 차입금을 기입
- ② 채무보증차입금 : 차입금총액에서 채무보증에 의한 차입금을 기입
9. 설비투자 현황
- (1) 당해연도 실적
- 설비투자액 = 해당연도유형고정자산잔액-전연도유형고정자산잔액
+ 해당연도감가상각실시액+해당연도유형고정자산상각액
- (2) 외국측출자자 인수액 : 당해연도 실적 (1) 가운데 외국측출자자인수액 또는 출자자로부터의 차입 중 외국측출자자로부터 차입 등의 합계를 기입
10. 이익처분현황
- (1) 역원상여금 : 이익처분으로서 역원에 대해서 지불된 상여금액을 기입
- (2) 배당금 : 이익처분으로서 주주에 대해서 지불된 배당금액을 기입
- (3) 당기내부유보액 : 이익처분후 당해연도 적립 내부유보액을 기입
- 당기내부유보액 = 세후당기손익-역원상여금-배당금
- (4) 당해연도말 내부유보잔액 : 이익처분후 당해연도 내부유보액을 가산한 내부유보액의 스톡액을 기입
- 당기내부유보잔액 = 자기자본-자본금-자본준비금-신주식불입금
11. 외국측출자자에의 지불현황
- (1) 배당금 : 외국측출자자에 지불한 배당금을 귀사의 지불기준으로 기입
- (2) 차입이자액 : 외국측출자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를 귀사의 지불기준으로 기입
- (3) 로열티 : 외국측출자자가 귀사에 제공한 특허권, 저작권 등의 지적소유권에 대한 대가를 귀사의 지불기준으로 기입
12. 고용현황
- 상시종업원수 : 유급역원, 상시고용자(정사원, 준사원, 아르바이트 등의 명칭과 관계없이 1개월을 초과하는 고용계약자와 기준년도말 또는 조사

시점 전 2개월에 있어서 각각 18일 이상 고용된 사람)를 의미

- ① 상근역원 : 경영, 관리에 관련된 유급의 상시역원수를 기입
- ② 상근역원 가운데 외국측에서 파견된 상근역원수를 기입
- ③ 종업원 : 상시고용자의 총수를 기입
- ④ 종업원 가운데 외국측에서 파견된 종업원수를 기입
- ⑤ 종업원 가운데 특정부분의 장으로서 부하를 통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직의 수를 기입
- ⑥ 관리직 가운데 외국측에서 파견된 관리직수를 기입
- 외국측에서의 파견자란 외국모회사로부터 출항이나 파견된 상근역원, 관리직, 종업원 및 파견사원(기술지도 등을 위한 임시파견된 사원 등)을 말함

13. 생산현황

- 공장을 국내에 가지고 있는 기업만이 해당
 - (1) 공장설립연도
 - (2) 공장소재지
 - (3) 상시종업원수

라. 집계 및 공표

- ☐ 조사 실시 약 10개월 후에 주요 항목에 대해 산업별, 규모별, 지역별로 집계하고,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과 제휴하여 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외자계기업동향조사개요」로 공표
- ☐ 약 9개월 후에 「외자계기업의 동향」으로 보고서(간행물)를 공표
- ☐ 조사결과에 대한 유의점
 - 유효회답만을 집계하므로 항목에 의해 회답기업의 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조사결과를 전회 조사, 혹은 그 이전의 조사결과와 비교할 경우 각각 조사 연도의 대상수가 달라 회수율의 차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표 4-19〉 최근의 조사대상기업과 응답상황

실시연도 (조사회)	1996 (30회)	1997 (31회)	1998 (32회)	1999 (33회)	2000 (34회)	2001 (35회)	2002 (36회)
조사표발송수	2730	2847	3185	3150	3513	3742	3870
응답수	1421	1467	1775	1613	1978	1935	1985
회수율(%)	52.1	51.5	55.7	51.2	56.3	51.7	51.3

- 일본표준산업분류의 개정에 따라 2000년도의 수치를 신분류에 의해 재집계한 값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도의 공표수치 및 통계표의 수치와 차이가 있음

☐ 조사결과보고서는 1권 2장으로 구성

- 조사의 개요, 이용상의 주의
- 제1장 : 외자계기업의 분포, 지출, 퇴출현황
- 제2장 : 외자계기업의 사업활동 현황
- 부표 : 집계표, 지역분류, 국분류표

마. 조사관련 특이 사항

☐ 지역의 정의

- 모국적별이란 외국출자자의 소재국을 의미로, 국가와 어떤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음
- 미국계는 아메리카합중국이 모국적별의 경우를 가리키며, 북미계는 캐나다를 포함한 지역이 모국적 별도인 경우를 가리킴

☐ 업종분류 : 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와 동일

☐ 「기업수익 현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산식

- 부가가치액 = 판매액-매출원가-판매비+급여총액+임차료

- 판매원가비율 = $\text{판매원가} \div \text{판매액} \times 100$
- 판매액총이익률 = $\text{판매총이익}(\text{판매액} - \text{판매원가}) \div \text{판매액} \times 100$
- 판매액영업이익률 = $\text{영업이익}(\text{판매액} - \text{영업비용}(\text{판매원가} + \text{판관비})) \div \text{판매액} \times 100$
- 판매액경상이익률 = $\text{경상이익} \div \text{판매액} \times 100$
- 판매액당기순이익률 = $\text{세후당기이익} \div \text{판매액} \times 100$
- 총자본당영업이익률 = $\text{영업이익}(\text{판매액} - \text{영업비용}(\text{판매원가} + \text{판관비})) \div \text{총자산}(\text{총자본}) \times 100$
- 총자본경상이익률 = $\text{경상이익} \div \text{총자산}(\text{총자본}) \times 100$
- 부가가치율 = $\text{부가가치액} \div \text{판매액} \times 100$
- 자기자본이익률 = $\text{세후당기이익} \div \text{자기자본} \times 100$
- 자기자본 비율 = $\text{자기자본} \div \text{총자본}(\text{총자산}) \times 100$
- 배당률 = $\text{배당금} \div \text{자기자본} \times 100$
- 배당성향 = $\text{배당금} \div \text{세후당기이익} \times 100$
- 내부유보율 = $\text{당기내부유보액} \div \text{세후당기이익} \times 100$
- 고정자산비율 = $\text{고정자산} \div \text{총자산} \times 100$
- 건물토지자산비율 = $(\text{건물} + \text{토지}) \div \text{총자산} \times 100$
- 건물토지공정자산비율 = $(\text{건물} + \text{토지}) \div \text{고정자산} \times 100$
- 고정장기적합률 = $\text{고정자산} \div (\text{자기자본} + \text{장기차입금}) \times 100$

제3절 사업체·기업체 대상통계의 특징과 시사점

1. 분산형 통계제도

- 일본의 산업구조통계는 중앙분처별로 소관산업에 관련된 통계를 직접 조사하는 분산형으로 개발되어 발전
 - 일본의 산업구조 통계는 대부분 1960년대 이전에 개발되어 산업의 발전단계를 반영하면서 발전해왔으며, 정부의 각 부처가 통계생산조직을 갖추고 해당부처의 정책과 관련된 통계를 직접 생산하는 분산형제도
- 이러한 분산형은 각 부처가 필요한 통계를 적기에 개발·작성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는 시의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산업구조 통계에서 중요한 산업간 비교를 위한 정합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특히 산업정책 담당부서인 경제산업성의 경우 담당 정책영역에 포함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통계들은 곧바로 정책수립·집행의 기초자료로서 연결됨.
 -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부처간 관할영역에 대한 집착으로 인하여 관할산업에 대한 조사집중과 관할 이외의 분야에 대한 조사기피 등 통계조사의 기형적 발전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 실제로 경제산업성에서 작성하고 있는 『공업통계조사』, 『상공업실태기본조사』, 『상업통계조사』 등은 조사대상업종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서비스업과 관련해서는 『특정서비스업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경제산업성 관할 서비스업에 한정되어 있고, 이외의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총무성 통계국이 『서비스업기본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음
 - 현재 일본은 경제센서스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도 이러한 특정분야의 조사집중이나 조사기피 등 통계조정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현재의 통계청이 중심이 된 집중형적 요소가 강한 분산형 통계제도를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경제센서스의 개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앙 부처별 통계조직이 매우 빈약할 뿐만 아니라, 통계청 자체의 통계조사 인프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지만,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통계청이 중심이 되어 앞으로 늘어나는 통계수요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2. 사회적 수요에 대응한 통계의 공급

- 경제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통계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일본은 기존 통계의 개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통계를 속속 개발함으로써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새로운 조사항목의 개발
 - 대부분의 사업체대상 통계에 대해 기업 혹은 기업집단통계로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직형태, 소유구조 등에 관한 조사항목을 보강
 - 기업활동형태가 다양화·복합화 됨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정책과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기초자료로서 다양한 형태의 통계 개발
- 기업활동의 다면적 측면을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조사항목의 개발
 - 대부분의 사업체·기업 대상통계에서 기업활동의 정보화를 파악하기 위한 IT기술 도입·사용 현황, 정보화 장비 사용현황 등에 대한 조사항목 보강
- 기업통계로의 활용도 제고
 - 과거 일본의 기초 산업구조통계부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조사 단위를 사업체로 하고 있으며, 통계의 집계도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였음
 - 1990년대이후 기업활동의 다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사업체 단위의 통계로서는 산업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기존의 사업체대상 통계에 대해서도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 및 기업집단에 관한 사항을 대폭 보강하였음.

- 이 결과 지금에 와서는 대부분의 사업체대상 통계에서 조사표의 프레임부분(사업체특성부분)에서 기업에 관한 사항, 조직에 관한 사항, 소유관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키고 있음.
 - 이로 인해 기존의 사업체대상 통계도 기업통계로서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졌음.
- 기업활동이 복잡화·다변화되고, 기업의 활동무대가 전지구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러한 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개발하였음.
- 기업의 특성이 사업체보다는 하나의 경영통합체로서의 기업, 나아가서는 이러한 기업의 집합체로서의 기업집단의 활동 등에 의해 파악되는 경향이 높아짐으로서, 기존의 사업체대상 통계가 아니라 조사단위를 기업으로 하는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였음.
 - 기업활동기본조사, 해외기업활동 기본조사, 외자계기업 동향조사 등은 모두 새로이 등장한 기업정책 혹은 산업정책적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 차원에서 1990년대이후 새로이 개발된 통계임.
 - 이러한 기업활동에 관한 통계는 연구개발, 종합적 경영전략, 기업의 해외활동 등 현대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다면적 활동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 정책 현안과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의 통계조사
- 유통부문의 예를 보면 서비스업 기본조사, 특정서비스업 실태조사, 상업통계조사 등에서 도소매업에 대해 통계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들 각 통계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서로 다름.
 - 유통정보화, 대형화, 프랜차이즈 방식의 확대 등 1980년대이후 유통혁명이 급속히 진전되자, 이러한 유통업의 구조적·조직적 변화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각각의 통계에서 새로운 조사항목을 신설

3. 다양한 조사방식의 채택

- 일본은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관련 통계가 많이 조사·작성되고 있으면서 다양한 조사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우선 조사주기, 조사기준일 등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양하여 특정시점이나 특정주기로 통일되어 있지는 않음
 - 조사주기도 산업의 특성이나 조사대상의 성격에 따라 월별에서 연간 혹은 5년 또는 부정기적인 경우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운영
 - 또한 조사주기는 일정하나 주기별로 조사업종을 다르게 선택하는 방식
⇒ 『특정서비스업실태조사』
 - 일정한 조사주기년도 사이에 조사항목을 간소화하여 간이조사를 실시하는 방식도 채택 ⇒ 『상업통계조사』, 『해외사업활동조사』 등
- 조사방법은 대부분 조사원 기입방식에 의한 전수조사를 선택하고 있으며, 조사표의 수집도 우편이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 건설업 및 운송관련 일부 조사를 제외하고는 산업구조와 관련된 통계는 대부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
 - 기술방식도 일부 농림어업을 제외하고는 조사항목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조사원 기입방식을 채택
 - 기업활동기본조사 등 기업단위통계들은 우편을 통해서 조사표를 배포·수집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활용하여 조사표의 배포·기제·수집을 조사방법을 개발하여 시험하는 단계
- 또한 상대적으로 기초가 많이 작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계정이나 산업연관표 등 기본적 통계의 내적 충실을 위해 특별조사도 많이 실시
- 산업연관표의 작성만을 위한 특별조사 1995년 산업연관표 작성의 경우 51개 조사가 실시 될 정도로 기본통계 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표 4-20〉 일본 산업구조 및 기업관련 통계의 작성방법

통계조사(종류)	작성주기	기준일 ¹⁾	조사대상	조사방법
농림업센서스	5년 (임업10년)	0, 5년 2월1일 (임업0년2월1일)	농임가· 농림업사업체	전수, 타계
농업구조통태조사	1년	매년 1월1일	농가·농업사업체	표본, 타계
어업센서스	5년	3, 8년 11월1일	어업경영체	전수, 자·타계
어업동태조사	1년	매년 1월1일	해면어업경영체 (종사30일이상)	전수, 자·타계
本邦産業趨勢調査	1년	기업 6월말 사업소 1월말	광업경영기업·사업소	전수, 자계
공업통계조사	1년	매년 12월31일	제조업사업소	전수, 자계
건설업구조기본조사	3년	5, 8년10월31일	건설업기업	표본, 자계
상공업실태기본조사	5년 정도	3, 8년 12월말	제조업기업	표본, 자계
상업통계조사	3년	4,7,0년7월1일	도소매사업소 음식점	전수, 자계
서비스업기본조사	5년	4,9년 11월15일	서비스업 사업소	전수, 자계
특정서비스산업실태통계조사	1년	매년 11월	특정서비스업 사업소	전수, 자계
자동차운송통계조사	월	매월 중	운송자동차	표본, 자계
철도운송통계조사	월	매월 중	철도여객·화물 운송기업	전수, 자계
내항선박운송통계조사	월	매월 중	내선선박운송사업소	표본, 자계
항공운송통계조사	월	매월 중	항공운송 사업소	전수, 자계
통신산업실태조사	1년	매년 7월1일	전기통신기업	전수, 자계
사업소·기업통계조사	3-5년	10월1일	전산업 사업소·기업	전수, 자계
기업활동기본조사	1년	매년 7월1일	광공업·상업관련 기업	전수, 자계
외자계기업동향조사	1년	매년 3월말	외국투자기업	전수, 자계
기업의 해외사업활동조사	3년 2회	3월말	외국법인 일본기업	전수, 자계

주: 1) 기준일은 가장 최근 조사에서 설정한 것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총무청통계국통계기준부, 통계조사총람, 1996

〈표 4-21〉 일본 1995년 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한 특별조사 현황

작성기관 및 조사명	실시기간
■ 총무성 1. 서비스산업투입조사 2. 본사 등의 활동실태조사	1996년 3-5월 1996년 8-11월
■ (구)경제기획청 3. 지방공공단체재정지출내용조사	1996년 8-11월
■ (구)대장성 4. 주류제조업투입조사	1997년 6월
■ (구)후생성 (산업연관표작성기초조사) 5. 위생재료제조업투입조사, 6. 의약품제조업투입조사 7. 의료업투입조사, 8. 보건위생업투입조사 9. 사회복합사업투입조사, 10. 사회복지사업투입조사	1996년 3-5월 “ “
■ 농림수산성 11. 농업서비스사업투입조사, 12. 민유림사업투입조사 13. 해면양식업투입조사, 14. 내수면양식업투입조사 15. 식품공업투입조사, 16. 증류업투입조사 17. 사료유기질비료투입조사 18. 농업토목사업투입조사, 19. 임야공공사업투입조사 20. 화목생산업투입조사, 21. 임산가공업투입조사	1996년 1-3월 “ “ “ 1997년 8-9월 “
■ (구)통상산업성 22. 상품유통조사 23. 광공업투입조사 24. 자본재수요구조조사	1996년 1-5월 1996년 3-5월 1996년 7-9월
■ (구)운수성 25. 내항선박품목별운수투입조사 26. 유류주차장에 관한 조사 27. 포장업에 관한 조사 28. 지방공공단체운수관련시설조사 (운수관련사업투입조사) 29. 자동차정비사업투입조사, 30. 도로여객운송사업투입조사 31. 도로화물운송사업투입조사, 32. 임차자동차투입조사 33. 창고업투입조사, 34. 항공기사용·부정기항공운송사업투입조사 35. 화물운송취급사업투입조사, 36. 운수부대설사업투입조사 37. 사루베이지업투입조사, 38. 강선제조업투입조사 39. 목선등제조업투입조사, 40. 철도차량공업투입조사	1995년 9-10월 1996년 1-3월 “ 1996년 8-11월 1995년 11-12월 “ “ “ “ “
■ (구)우정성 41. 통신방공업투입조사	1996년 7-9월
■ (구)노동성 42. 서비스부문노동비용등조사 43. 노동자파견사업에 관한 조사	1996년 1-2월 1996년 9월
■ (구)건설성 44. 공공사업공사비내역조사 45. 부동산업실태조사 46. 토목공사비내역조사 47. 건축공사비내역조사 48. 공공사업공사비내역조사 49. 토목공사간접공사비내역조사 50. 공공관계토목공사비내역조사	1996년 3-5월 1996년 3-6월 1996년 9-10월 1996년 9-10월 1996년 11-1997년 1월 1996년 12-1997년 2월 1997년 1-3월

자료: 총무성, 평성7년(1995년)산업연관표, 1999

- 우리의 경우는 현재의 통계조사여건을 감안할 때 기초통계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기 보다는 기존 통계들의 기준일 통일을 통해 기본통계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 산업구조관련 통계가 많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기본적 경제통계들이 질적으로 신뢰성 높은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기준연도만큼은 전수조사에 입각하여 작성되는 기초통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이러한 과정에서 통계의 일관성이나 정합성 등은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간이조사나 조사주기별 조사업종의 변경 등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는 있음

4. 조사항목의 표준화에 관련 사항

- 일본의 통계조사별 조사표는 우리와 같이 기초항목에 대해서는 그 개념과 항목이 표준화하는 추세이나 이외 항목은 각 조사별 특성을 반영하는 항목들로 구성
 - 사업소명·소재지, 경영조직, 본소·지소의 구별, 개설시기, 종업원수, 사업종류·업태, 자본금, 본소 명칭·소재지, 지소·지사·지점 수 등 사업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항목들은 그 개념과 항목이 동일하도록 하는 경향을 보임.
 - 공업통계조사의 경우 종업원을 상용노동자와 개인사업주 및 무급종사자 2개 항목으로 구분되었던 것을 2001년부터는 다른 통계조사와 통일을 위해 상용노동자를 정사원·정직원, 파트·아르파이트, 출향·파견수입자로 세분화하고 임시고용자를 구분하여 조사
 - 특히, 경영조직, 사업의 종류 및 업태, 종업원의 구분 등은 가능한 한 표준화하여 통계조사간의 정합성이 유지하도록 하는 추세
 - 그러나 해당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등 다른 통계작성의 활용 등의 위해 이외의 항목들은 조사별로 차이가 있음

〈표 4-22〉 일본의 사업체 통계조사별 조사항목 비교

사업소·기업 통계조사	공업 통계조사	상공업실태 기본조사	상업 통계조사	특정서비스산업 실태통계조사	서비스업 기본조사
<공통 항목>					
사업소명·소재지	*	*	*	*	*
경영조직	*	*	*	*	*
본소·지소의 구별				*	*
개설시기			*	*	*
종업원수	*	*	*	*	
사업 종류·업태			*		*
사업소의 형태					
본소 명칭·소재지	*		*		
자본금 관련	*	*	*	*	*
지소·지사·지점 수	*		*		
<개별적 항목>					
회사성립연월	현금급여액	판매액	상품판매액	연간매출액,	수입금액관련 경비
모회사·자회사관련	원재료사용액	영업비용	상품원물액	계약액 계약건수	급여 총액
합병·분할 등	연료전력 사용액	상품판매처	셀프서비스채용	영업비용	설비투자액
전자상거래 상황	유형고정자산액	상품 구입처	유무	영업용 유형고정	사업활동 변창상황
	리스계약지불액	외주·수주 현황	매장면적	자산	경리사항기업대상
	출하액	연구개발비현황	영업시간		기간
	재고액	해외활동현황	전용주차장 유무		
	세금액	정보화현황	체인조직가맹 유		
	직접수출액 비율	共同化의 현황	무		
	주요 원재료명	기업경영과제	상품구입액 등		
	작업공정				
	공업용지,				
	공업용수				

☐ 특히 간접적으로 산출하는 통계지표들은 산업이나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기 다른 방법으로 작성

○ 부가가치는 산업별 규모별로 다른 방식으로 산출

○ 공업통계조사의 부가가치 산출식

- 종업원 30명 이상의 사업소

- 부가가치액=생산액-소비세 제외 내국소비세액+추계소비세액-원재료사용액-감가상각액
- 종업원 29명이하의 사업소
 - 조부가가치액=제조품출하액-(소비세 제외 내국소비세액+추계소비세액)-원재료사용액
- 기업활동기본조사의 부가가치 산출식
 - 부가가치액 = 영업이익+급여 총액+조세공과+감가상각비+임차료
- 외자계기업동향조사의 부가가치 산출식
 - 부가가치액 = 판매액-매출원가-판매비+급여총액+임차료

5. 사업소 정의 및 관련 사항

- 일본 산업구조통계들은 모두 총무성 통계국의 사업소·기업통계조사에서 정의하여 조사하고 있는 사업소의 개념을 사용
 - 사업소는 물건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개별 장소로서, 사람이 수입을 얻기 위해 일하는 개별 장소, 영리 목적이거나 비영리 목적인가는 무관한 것으로 정의
 - 사업소의 요건으로는 첫째, 경제활동이 단일 경영주체 하에서 일정한 장소(1區劃)를 차지해 행해지고 있는 것, 둘째 물건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이 종업원과 설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
 - 예를 들면, 상점, 공장, 사무소, 영업소, 은행, 학교, 사원, 병원, 여관, 정련소, 광산, 발전소등과 같이 고정 장소를 차지해 사업을 실시하는 장소
 - 자가영업의 목수, 미장, 택시 등과 같이 사업을 실시하는 장소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자택을 사업소로 간주
 - 공원·왕래 등으로 간단하고 쉬운 설비로 영업하므로써 장소가 고정되지 않는 경우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장소가 아니고, 거기를 관리하는 사무소나 영업소 등 상품판매 등의 활동을 행하기 위한 거점이 되고 있는 장소를 사업소
- 최근 들어서는 종업원이 없는 사업소, 전자상거래 여부, 체인조직의 가맹현황 등 유통과정의 변화를 감안하여 새로운 조사항목을 추가하고 있는 추세

- 해당 사업소에 소속하는 종업원이 없이 다른 회사 등의 사업소로부터 파견된 사람만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사업소도 조사대항에 포함
 - 최근 유통구조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한 유통 네트워크화, 유통시장의 국제화, 규제완화의 진전 등을 배경으로 한 유통경로의 단축화·집약화, 인터넷의 보급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확대, 체인전개의 대형잡화점(drugstore)의 출현 등으로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유통구조의 최근 변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체인조직에의 가맹현황을 새로운 조사항목으로 추가
 - 또한 이전까지의 업체에 추가하여 홈센터나 대형잡화점 등에 대한 집계를 추가
- 우리의 경우도 최근 들어 유통단계가 축소됨에 따라 지역에서 현장조사가 어려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일본의 사업체 정의와 최근 조사항목 등에 대한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기업체 단위 통계 개발

-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기업체단위의 통계조사가 많이 개발되는 추세
- 1990년대에 들어 기업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다각화·조직화·계열화·국제화·소프트화 등을 중심으로 다양화가 심화
 - 또한 이러한 사업활동의 다각화, 국제화 등에 의한 새로운 진전으로 동일 기업내의 복수사업소 또는 단일기업의 영역을 초월한 복수 기업에 걸친 활동형태로서 현실화·구체화되는 추세
 - 이러한 기업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업체단위 조사 이외에 기업체단위 조사가 많이 개발
- 대표적인 통계조사로는 기업활동기본조사, 해외사업활동조사, 외자계기업동향조사 등을 들 수 있음.
- 기업활동기본조사
 - 조사대상 업종을 공업, 상업 및 광업까지 포괄하여 1992년부터 조사를 시

작

- 다각화, 분사화, 생산거점의 해외이전 등 기업화동이 복잡 내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1996년부터는 매년 조사가 실시되어 2003년 현재 10회로 2002년도 실적이 조사되어 집계 중

○ 해외사업활동조사

- 기업의 해외사업활동에 대한 현황과 해외사업활동이 현지 및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향후 산업정책 및 통상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1971년에 1970년 실적을 매년 조사로 「해외사업활동동향조사」를 실시하기 시작
- 1981부터는 3년 주기로 동조사를 상세히 한 「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오고 있으며, 이후 조사명을 후자로 동일하여 2002년 현재 2001년 실적에 대하여 31회 조사가 실시됨

○ 외자계기업동향조사

- 국내의 외자계기업에 대한 현황과 외자계기업이 국내외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향후 산업정책 및 통상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1967년에 1966년 실적을 매년 조사로 실시하기 시작
- 2003년 현재 2001년 실적에 대하여 36회 조사가 실시됨

□ 우리의 경우 기업체단위의 통계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반하여 조사되고 있는 통계는 매우 부족한 실정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기업단위 통계가 작성되고 있으나 기업경영이나 재무상태를 조사하여 수익성, 활동성, 성장성 등 단기적인 경기순환과 관련 항목위주로 작성되고 있음.
 - 한국은행의 반기별로 조사하는 『기업경영분석』, 한국산업은행이 연간으로 조사하는 『기업재무분석』 등
- 산업구조와 기업활동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해서는 사업의 종류, 고용동향, 연구개발, 유·무형자산현황, 판매 및 구매, 수출입 등 사업활동내용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
- 특히, 연구개발비나, 유무형의 자산 등은 본사를 중심으로 관리 되고 있으므로 사업체 단위보다는 기업체단위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함.

- 더욱이 최근 들어 기업활동의 세계화가 급진전하면서 국내기업의 해외사업 활동이나, 다국적 기업의 국내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밀한 현황파악이 매우 시급한 실정
-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기업단위 통계의 개발은 매우 필요한 사항이며, 이를 위해 일본 기업단위 통계조사의 사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관련 통계가 많이 조사·작성되고 있으면서 다양한 조사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우선 조사주기, 조사기준일 등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양하여 특정시점이나 특정주기로 통일되어 있지는 않음
 - 조사주기도 산업의 특성이나 조사대상의 성격에 따라 월별에서 연간 혹은 5년 또는 부정기적인 경우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운영
 - 또한 조사주기는 일정하나 주기별로 조사업종을 다르게 선택하는 방식
⇒ 『특정서비스업실태조사』
 - 일정한 조사주기년도 사이에 조사항목을 간소화하여 간이조사를 실시하는 방식도 채택 ⇒ 『상업통계조사』, 『해외사업활동조사』 등
- 조사방법은 대부분 조사원 기입방식에 의한 전수조사를 선택하고 있으며, 조사표의 수집도 우편이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 건설업 및 운송관련 일부 조사를 제외하고는 산업구조와 관련된 통계는 대부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
 - 기술방식도 일부 농림어업을 제외하고는 조사항목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조사원 기입방식을 채택
 - 기업활동기본조사 등 기업단위통계들은 우편을 통해서 조사표를 배포·수집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활용하여 조사표의 배포·기제·수집을 조사방법을 개발하여 시험하는 단계

제4절 사업체·기업체 통계조사의 개선 움직임

□ 일본은 2003년 중앙의 각 부처 합의를 통하여 「통계행정의 새로운 전개방향」⁵⁾을 제시하였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995년에 향후 10년간 일본의 통계행정이 해결해야 할 과제와 그 달성방안을 제시한 「통계행정의 新중·장기구상」 이후 사회경제의 글로벌화, 정보화 사회의 급진전, 산업구조의 급변 등 통계외적 환경변화와 정책평가제도의 도입, 개인정보의 보호, 지방분권의 추진, 정부통계에 대한 새로운 수요 증가, 결과이용의 확대 등 통계행정을 둘러싼 상황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지침의 필요성이 대두
- 2001년 중앙부처의 개혁과정에서 통계심의회는 법적 위치부여가 자문에 대한 조사심의 및 건의를 통해서 정책제언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법령에 의거하여 개개의 통계조사 등에 대해서 조사심의를 하는 법시행형 심의회로 격상됨.
- 분산형 통계기구하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간 충분한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며 통계의 체계적인 정비는 물론 각 부처의 수평적인 통계정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또한 통계는 응답자의 부담과 협조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므로, 통계조사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해 간소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조사를 행함과 동시에 통계이용자 등에 그 결과를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
- 이러한 필요성과 관련해서 2002년 6월 각 부처의 통계주관부국장 등 회의에서 각 부처는 향후 5-10년을 목표로 한 통계행정의 방향을 검토하였으며, 통계행정 전반에 걸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 「통계행정의 새로운 전개방향」은 사회·경제의 변화에 부응한 통계의 정비, 통계조사의 효율적 실시와 기반정비, 조사결과의 이용확대, 국제협력의 추진 등

5) 日本各府省統計主官部局長等會議, 「統計行政の新たな展開方向」, 2003.6.27 참조

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통계행정의 新중·장기 구상」에서도 사회·경제의 변화에 대응한 통계조사의 개선, 주요통계조사의 실시시기 조정, 효율적인 통계조사의 실시와 지방통계기구의 활성화, 조사결과 이용의 확대, 국제협력의 추진 등 유사한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한 바 있음
- 금번의 장기계획도 기본방향에서는 이전과 같다고 볼 수 있으나, 각 분야에서 최근의 기술이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경제센서스의 개발, 대규모통계조사의 통폐합 등 검토, 온라인 조사의 확대, 행정통계의 적극 활용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특히, 사회·경제의 변화에 부응한 통계의 정비에는 사업체·기업체 통계와 관련된 개선방안들을 포함하고 있음

- 대규모경제통계의 개선, 기업을 중심으로 한 통계의 정비, 서비스분야의 통계정비, 대규모주기조사의 향후 실시방법과 주기조정 등이 사업체·기업체 통계의 개선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제안들임
- 이외에도 GDP 관련 통계 등의 재검토, IT관련 통계의 정비, 지적재산관련 통계의 정비, 고용관련 통계의 정비, 환경통계의 정비, 고용관련 통계의 정비, 성별(gender)통계의 정비, 국민생활에 관한 통계의 정비, 정책평가에 있어서 통계의 활용, 지역경제에 관한 통계의 개선방안, 통계조사정리의 합리화 등 총14개 분야에 대한 통계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 다음에서는 사업체·기업체 통계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통계행정의 새로운 전개방향」의 주요 내용을 기술하고자 함.

□ **경제센서스에 대한 개발** : 사업체·기업체 통계와 관련된 개선방안들 가운데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대규모경제통계의 개선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제센서스에 대한 개발에 관한 것임.

- 일본은 현재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통계조사는 각부처마다 산업별로 다른 연도와 다른 주기로 조사하고 있어 전체의 포괄적인 산업통계를 얻을 수 없고, 이용가치가 매우 낮다는 문제가 있음

〈표 4-23〉 「통계행정의 새로운 전개방향」과 「통계행정의 新증장기구상」 비교

2003년 「통계행정의 새로운 전개방향」	1995년 「통계행정의 新증장기구상」
① 사회·경제의 변화에 부응한 통계의 정비 ○ 대규모경제통계의 개선 - 경제센서스(가칭)의 개발을 위한 검토 - 사업체·기업명부의 정비·확충 ○ 사회·경제 관련 통계의 정비 - GDP 관련 통계의 재검토 - 기업을 중심으로한 통계의 정비 - 서비스부문의 통계 정비 - IT통계, 고용통계, 환경통계, 지적재산통계, 성별(gender)통계, 지역경제통계 등의 정비 - 정책평가에 통계활용 추진 - 통계조사의 계획적 재검토로 정리 합리화 - 대규모주기조사의 실시방법 및 주기조정	① 사회·경제의 변화에 대응한 통계조사의 개선 ○ 기업관계통계의 정비 - 사업소통계를 기업·사업소통계로 개조 - 기업활동기본조사를 매년 실시 - 기업·사업소 명부의 정비 및 DB화 ○ 세대·가계관계 통계의 정비 - 가족·개인 활동의 실태에 대한 적절한 포착 - 가족 및 가계관련 사항의 종합적 파악을 위한 공통적인 조사항목의 설정
② 통계조사의 효율적 실시와 기반정비 ○ 통계조사의 효율적 실시 - 다양한 조사방법 활용 - 온라인 조사의 확대 - 행정기록의 활용, 조사결과 통계의 각부처 공유화 추진 - 민간위탁 추진 - 여러 부처관련 통계의 협력 및 조정 - 통계행정절차의 간소화, 원활화 및 신속화 ○ 통계조사의 기반정비 - 지방통계기구 등의 확충 - 통계직원의 육성 및 연수 - 통계조사에 협조확보 등에 전념	② 주요통계조사의 실시시기 조정 - 향후 10년간 계획적인 통계조사의 실시, 특히 대규모 통계의 연도별 적절한 배분 ③ 효율적 통계조사 실시와 지방통계기구 활성화 ○ 효율적 통계조사의 실시 - 조사의 간소화·효율화, 조사사항 중복배제 - 회답하기 쉬운 조사표의 설계 - 자기매체나 통신회선에 의한 조사로 조사의 효율화, 조사대상자의 부담 경감, 나아가서는 통계의 정확성의 확보를 도모 ○ 지방통계기구 - 통계직원에 대한 연수의 충실, OA기기 도입촉진과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공 등의 지원조치를 검토 - 지방통계주관조직의 활성화 및 업무의 향상, 조사자료의 지방분산 입력 및 독자집계에 필요한 통계데이터의 제공 지원을 강화
④ 조사결과 이용의 확대 - 통계정보의 고도이용, 제공의 고도화, 이용촉진 기반정비, 통계분류의 정비 등을 도모 - 사업체·기업DB를 활용한 모집단 정보의 제공과 각종 통계조사 실시를 위한 표본추출 지원, 자료연계(data linkage) 등 해당 DB의 다면적 이용방안 검토 - 통계조사의 개별 자료 또는 개체 식별이 불가능한 자료 등의 정리, 보관 및 이차적 이용을 위한 자료제공기능을 가지는 통계자료보관소(archive) 설치검토 - 1995년 장기계획에서 추진한 주문 집계 및 익명표본 자료의 작성 이용에 대한 구체적 검토	④ 조사결과 이용의 확대 ○ 통계제공의 확대 수단 - 통계결과 공표의 조기화·일부집계나 잠정치 등에 의한 공표를 적극 활용 - 결과보고서의 충실화와 결과공표 후에 추가집계를 실시 - 개별 데이터에서 개체의 식별을 불가능한 표본데이터의 제공 검토 ○ 통계제공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 - 플로피나 C.D 등을 활용 촉진 - 민간의 PC 통신망이나 FAX를 활용 촉진 - 공익법인이나 상용DB 등을 활용
⑤ 국제협력의 추진 - 일본통계의 국제비교성 제고를 위해 국제기구 통계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의 수집·공유화 추진 -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일본 통계조사결과 제공방법 개선 - 국제기준수립작업에 적극 참여 - 개발도상국의 통계능력개발에 적극 참여	⑤ 국제협력의 추진 - 국제기구에서 채택되고 있는 통계기준과의 정합성을 개선 - 통계조사의 설계에도 국제비교성에 유의 - 개발도상국에 대한 통계기술협력 강화 - 통계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가로 일본의 경험과 지식을 제공

- 또한 서비스경제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통계가 부족하며 체계적인 정비도 되어 있지 않은 실정
- 이에 전산업분야의 경제활동을 동일시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대규모통계조사의 통폐합, 간소화·합리화 등의 경제센서스 개발을 검토하고 있음
- 경제센서스는 원칙적으로 전산업분야의 전사업체·기업체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의 실태를 경리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는 통계조사로서, 2009년 실시목표로 2005년 중에 기본적인 틀과 대규모통계조사 등의 통폐합, 가소화·합리화에 대한 방안을 도출할 예정

□ **사업체·기업체 명부의 정비 및 확충** : 사업체·기업체의 포착방법과 산업분류를 통일화·공동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

- 현재 사업체 및 기업체에 관한 기초자료와 각종 통계조사의 실시를 위한 명부를 얻을 목적으로 5년주기로 조사하고 있는 「사업체·기업통계조사」는 다른 사업체·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조사와 사업체·기업체의 파악방법 및 산업분류가 일부 상이하여 모집단 명부로서 활용이 부적합한 상황
- 또한 최근 기업의 신설, 폐지, 통합 등의 급증으로 사업체·기업체 DB의 갱신과 더불어 다른 산업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이용의 확대를 도모해야할 시점임
- 이에 「사업체·기업통계조사」 및 기타 사업체·기업체 대상 통계조사에 대해서 각부처는 2003년 이후 통계조사간 사업체·기업체의 포착방법, 산업분류 등에 대해서 연계를 가지면서 가능한 한 공동화·통일화를 도모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강구할 것을 제안
- 사업체·기업체 DB는 모집단정보로서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총무성이 2003년 이후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어 명부갱신정보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기업활동에 관한 통계의 정비** : 기업의 사업활동 다각화, 국제화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각 산업분야에서 기업활동에 관한 통계의 정비를 추진하는 것

- 최근 일본기업의 사업활동이 다각화, 국제화, 소프트화 등 급속하게 다양화

되고 있는데 반하여 기존의 통계조사에서는 기업의 사업활동을 산업분류에 입각해서만 파악하는 등 기업활동의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에 기업활동의 다양화에 관한 통계가 미정비된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의 기업활동기본조사를 참고로 2003년 이후 기존 통계조사에서 조사대상범위의 확대, 조사사항의 추가 또는 신규통계조사의 실시에 의해 통계의 정비를 추진함.

□ **금융·보험업을 포함한 기업통계의 정비** :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통계조사에서 금융업과 보험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 기업에 관한 산업통계조사 중 일부 조사에서는 금융·보험업을 포함시켜 조사하지만, 경제산업성의 기업활동기본조사, 내각부의 기업행동에 관한 앙케이트조사, 재무성의 재무성경기예측조사, 일본은행의 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 등에서는 제외되고 있음
- 이러한 통계조사에서 금융·보험업을 일률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것을 관련 부처에서는 2003년 이후부터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추진

□ **기업활동의 변화에 대한 대응** : 기업 그룹정보의 중요화, 생산의 해외이전, 설비·인원·공정의 아웃소싱 등에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

- 다각화, 국제화를 행한 기업에 대한 투자판단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기업 집단에 관계되는 정보가 매우 중시되고 있어 증권거래법에서 의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2000년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새로운 기업그룹의 파악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됨
-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이 급속하게 진전되고 고용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기존통계에 의한 파악도 매우 한계성을 지님
- 한편, 기업의 아웃소싱 움직임이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기준의 노동투입량 및 설비를 파악해야하나, 현재는 대부분 소유자 기준으로 파악되고 있고, 사용자기준의 통계는 정비할 부분이 매우 많은 실정

- 이에 기업그룹에 대해서는 총무성이 2003년에 명부정보를 정비하고, 관련 부처는 필요에 따라 통계조사에 기업그룹정보의 활용을 도모하도록 하며, 실질지배력기준⁶⁾에 의한 기업그룹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 연결결산실시기업의 실태파악을 포함하여 실사 가능성 등을 연구·검토하도록 함
- 생산의 해외이전 및 이에 따른 고용의 영향과악에 대해서는 해외자회사의 생산활동, 국내생산활동의 변동 및 고용변동을 관련시켜서 분석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관련 부처는 2003년 이후 신속한 분석을 통해 통계의 정비 방법을 검토하도록 함
- 설비·인원·공정에 대해서는 2003년 이후 적의조치하고, 기존 통계조사의 특성에 근거하여 소유자기준의 통계는 사용자기준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사용자기준의 통계는 필요에 따라 소유자기준으로 정비하도록 함

□ **대규모주기조사의 향후 실시방법 및 주기조정** : 경제센서스와 관련되는 2009년도 실시예정의 대규모통계조사에 대해 응답자 부담, 지방공공단체 및 통계조사원의 사무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관점에서 통폐합, 간소화 및 합리화를 꾀하고, 실시시기의 조정을 검토하는 것

- 대규모통계조사가 한 시기에 집중하고, 응답자의 협력이 어렵고, 지방공공단체의 사무부담 증가로 통계의 정확성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통계행정의 新중·장기구상」에서 주요통계조사의 실시시기를 조정할 바 있음.
- 이에 따라 2004년에는 대규모조사의 간이조사화, 일부조사의 일원화하여 실시할 예정이나 2009년에 다시 대규모주기통계조사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됨.
- 더욱이 시정촌에서는 통계담당직원이 2-3명으로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 서무와 선거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예정임
- 따라서 경제센서스와 관련되는 2009년도 실시 예정의 대규모통계조사에 대해서는 별도 설치되는 검토회의에서 통폐합, 간소화 및 합리화의 검토에 의거하면서 실시시기의 조정도 검토하도록 함

6) 實質支配力基準이란 연결범위에 포함시키려는가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가의 여부에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당해회사 등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기준에 한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당해회사 등의 의사결정기관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도 연결범위에 포함.

- 또한 2009년에 실시 예정의 기타 대규모주기조사통계 및 국세조사의 조사
구설정에 대해서도 간소화 및 합리화를 도모하고, 각부처는 이의 구체화를
위해서 조사규모, 조사방법 등에 대해 검토함과 함께 실시시기의 조정에 대
해서도 계속 검토하도록 함

제5장

사업체대상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기본인식과 여건분석

1. 산업구조 통계의 개선 필요성과 방향

- 사업활동의 다양화,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기존 산업의 재편, 국가경쟁력의 재편 등 격심한 산업구조조정의 과정 속에서 국가의 산업현실을 평가하고, 장래 산업발전 방향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산업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필요함.
- 산업구조통계는 국민경제의 현상을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 기업이 변화하는 경제여건하에서 스스로 적응력을 배양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이러한 점에서 산업구조 통계는 국가산업발전에 있어서 소프트·인프라적 성격을 가짐.
- 산업구조 통계는 정책당국, 관련기업, 학자 등 통계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통계를 공급하는데 그 본래의 가치와 기능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통계작성기관은 당해 산업의 현안이 무엇이며,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적하여야 할 것임.
 - 통계수요자의 요구에 맞은 통계를 공급할 때 그 통계는 생명력을 가진 “살아있는 통계”가 되며, 그렇지 못할 때 통계의 활용도는 크게 낮아질 것임.

□ 산업구조 통계의 개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임.

- 개별산업통계의 개선 : 제조업, 서비스업 등 개별 산업통계에 있어서 정확성을 제고하고, 이들 산업분야의 현안과제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정보로서의 역할을 강화 ⇒ 산업별 구조통계의 개선
- 각 산업별 통계가 전체로서 정합성을 갖고 일관성이 유지되게 함으로써 통일된 기준 하에서 국가산업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되어야 할 것임 ⇒ 산업구조 통계 간 정합성의 제고
- 일정한 시점에서 일관된 기준 하에 산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통계의 검토 ⇒ 경제센서스의 검토

□ 1990년대 중반이후 산업 및 경제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기업활동도 복잡·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 이러한 급격한 구조변화를 제대로 포착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통계를 개선·발전시켜야 할 것임.

- 국제화·개방화·세계화의 급속한 전개 : 세계수준에서 산업의 상호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고, 과거 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국제간 경제관계는 세계가 단일시장화 함으로써 직접투자(FDI), 금융, 서비스 부문 등 다면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음.
- IT, BT, 첨단금융 등 소위 신산업이 경제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신경제(new economy)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음.
-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내의 산업공동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는 향후 우리산업의 명운이 달려있다 할 만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국내기업의 대외활동,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 등에 대한 폭넓은 정보가 요구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 산업집적화(cluster) 필요성 증대 :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우리나라 산업발전은 이제 한계를 나타내게 되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국가전체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산업집적화의 필요성이 국가산업정책적 차원에서 대두됨.

□ 기업통계 및 기업그룹 통계의 중요성 부각 : 기업활동의 다양화, 국제화, 성장동인으로서의 기업의 활력 등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기업 및 기업그룹이 갖는

중요성으로부터 기업통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지금까지 선진국에서도 기업 및 산업에 관한 기초통계는 대부분 사업체통계가 중심을 이루었음. 그러나 사업체통계는 기업을 단순한 생산의 수단으로 보는 시각을 반영한 것임.
- 전통적인 미시경제이론에서의 기업이론은 기업을 요소투입→생산물산출을 매개하는 무기질의 조직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
- 그러나 현실에서의 기업은 그 자체로서 생명력을 갖고 다양한 사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모든 기업은 각각 그 경쟁력의 원천을 달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은 기업집단(소위 “재벌”)에 속해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기업단위 보다는 그룹단위에서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집단에 대한 통계정보 없이는 우리나라 산업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움.
- 이러한 생생한 기업 활동을 현장감 있게 포착하기 위한 통계자료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

□ 일본 역시 사업체대상(기업 포함) 통계의 개선을 통계발전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있음: 『통계행정의 새로운 전개방향』(통계국)

- 일본은 금년(2003년) 6월 향후 통계행정이 나아가야 할 기본지침으로서 『통계행정의 새로운 전개방향』을 제정함. 이는 1995년에 발표된 통계행정의 기본방침인 『통계행정의 신 중·장기 구상』을 8년만에 다시 개선·강화한 것임.

□ 『통계행정의 새로운 전개방향』에서는 사업체대상(기업 포함) 통계의 개선을 중요한 과제로 선정하고 있음. 그 초점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국가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는데 맞추어져 있음. 구체적으로는 이하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기업·사업소(우리나라의 사업체에 해당)의 모집단 정보로서 기업·사업소 frame(가칭)*의 정비
 - 기업 및 사업소 프레임이란 기업·사업소의 명부에 경영조직, 산업분류, 종사자수 등 표본추출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한 것을 말함. 사업체(혹은 기업) 특성 조사항목에 해당함.

- 기업·사업소 통계의 조사명부에 자본금, 종사자수의 기본정보를 추가한 기업·사업소 프레임을 작성하여 DB화함.
- 센서스인 『상업통계조사』, 『공업통계조사』 및 경제산업성의 『기업활동기본조사』, 그리고 대규모 표본조사인 『법인기업통계조사』와 『임금구조기본조사』의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Data를 갱신함.
- 모집단 정보로서의 범용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 가능한 정보를 폭넓게 축적함.
- DB 구축에 있어 각 통계조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통일사업소 코드의 설정이 필요함. 아울러 기업과 산하사업소의 연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본사·지사 연결코드의 설정이 필요함.

□ 이와 아울러 일본 통계국은 가칭 『경제센서스』 개발을 위한 검토에 착수하였음.

- 현행 산업구조통계는 각 산업담당 성이 산업별로 다른 년도·주기로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특정 시점에서 일본의 산업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함. 또한 서비스화의 진전 등과 같은 급변하는 산업현상을 적시에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위한 통계가 필요하며, GDP를 정확히 추계하기 위한 기초통계로서 전산업을 포괄하는 1차 통계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센서스』의 실시를 검토함.
- 전산업 분야의 경제활동을 동일시점에서 망라하여 파악하기 위한 통계로서 『경제센서스』를 검토하며, 이를 통해 관련 대규모 통계조사의 통폐합·간소화·합리화를 도모함.

2. 여건분석과 통계청의 역할

□ 우리나라 통계생산 여건은 악화되고 있는데 비하여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업활동의 다양화 등에 따라 통계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선진국에 비해 민간의 통계정보 공급능력이 크게 미흡한 우리나라 여건에서, 국가통계기관(특히 통계청)에 대한 의존은 선진국에 비해 더욱 큰 것이 현실임.

□ 통계청은 이러한 통계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열악한 통계생산 여건 하에서 통

계생산에 있어서 국가통계기관에 대한 기대에 대응하여 이를 충족시켜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가. 열악한 통계생산여건

- 우리나라의 통계생산 여건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음. 통계생산여건은 정보산업의 발달 등과 같은 긍정적 변화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비해 통계생산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자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국가전체적으로 통계생산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현재 정부승인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114개 기관에서 작성·공표하는 통계수는 총 424종이며 통계작성인력은 5,038명으로서, 통계당 평균 11.9인에 불과함.(2002. 7)
 - 10년전에 비하여 통계수는 80종이 늘어난데 반해 통계인력은 오히려 275명이 감소함.
 - 작성통계수의 증가에 따른 통계인력의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통계 1종당 통계인력은 1992년 15.4명, 1996년 15.1명, 2000년 12.1명, 2002년 11.9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임.
- 전체 통계인력 중 통계기획·분석업무 종사자 비율은 21.4%에 불과하고 78.6%에 해당하는 인력이 현장조사·자료처리·지원행정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 통계청의 경우도 기획분석 인력은 309명으로 전체의 16.3%에 불과함.

〈표 5-1〉 통계인력 기능별 현황

(단위 : 명, %)

	2002년				
	통계 인력	기획 분석	구성비	현장조사·자료처리	
				·지원행정	구성비
계	5,038	1,080	21.4	3,958	78.6
중앙행정기관	3,416	648	19.0	2,768	81.0
(통계청)	(1,895)	(309)	(16.3)	(1,586)	(83.7)
(농림부)	(1,103)	(126)	(11.4)	(977)	(88.6)
(노동부)	(105)	(18)	(17.1)	(87)	(82.9)
지방자치단체	995	109	11.0	886	89.0
민간지정기관	627	323	51.5	304	48.5

자료: 통계청, 『통계활동현황조사』, 2002

- 통계청의 경우 1,895명의 인력이 52개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어, 통계당 평균 34.4인으로 통계생산여건이 좋은 것처럼 보임.
- 그러나 통계업무의 핵심인 기획분석 인력은 16.3%에 불과함.
 - 따라서 사업체대상의 중요 구조통계조사의 담당인력이 적게는 2~3인 많아 야 7~8인 정도에 불과한 실정임. 이러한 통계인력 조건하에서 제대로 된 통계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산업구조 통계 중 핵심적이며,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광업 및 제조업통계』의 경우만 보더라도 담당인력은 8인에 불과함.
-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광업 및 제조업통계에 해당하는 『공업통계조사』에 30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됨.
 - 일본의 『공업통계조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통계담당부서에서 우리나라 통계청의 업무를 상당부분 수행하고 있음.
 - 이를 감안한다면 일본의 『공업통계조사』에 실제로 투입되는 인력은 적어도 2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됨.⁷⁾

- 현재의 통계생산 자원여건(인력, 예산)으로서는 현행 업무도 과부하인 상태라고 평가됨.
- 따라서 이미 많은 통계부실이 존재하거나 그 요인이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

나. 국가적 통계조정·기획 기능 미흡

- 국가통계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변화하는 통계수요에 대응하여 통계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국가통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통계행정을 효과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할 기능이 필요함.
- 미국 : 대통령실 행정관리에산처의 통계정책담당관실에서 통계예산을 통계합으로써 중복조사에 의한 예산이나 인력낭비를 막고 있으며, 통계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통계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캐나다 : 집중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가통계의 대부분을 중앙통계기관인 캐나다통계청(Statistics Canada)에서 관장함. 통계청에서 국가통계를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함.
 - 일본 : 총부성 통계국이 중앙통계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며, 총무성 대신이 예산배정 및 통계조정 기능을 통해 국가통계를 기획·조정함.
- 우리나라는 통계청이 국가중앙통계기관으로서 국가통계의 기획·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기능이 크게 미흡함.
- 중복통계, 부실통계의 조사·공표 제한 등 소극적인 의미에서 통계조정기능은 있으나, 통계의 품질향상을 위한 국가통계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 내지는 조정기능은 크게 부족함.
 - 정부중앙부처 가운데 통계청의 위상이 낮아 통계조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
 - 통계청을 제외한 여타 정부부처의 통계에 대한 관심이나 전문성이 극히 낮

7)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통계담당부서의 경우 여러 통계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정통계의 투입인력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려우나, 공업통계조사의 경우 이 정도로 추산하여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 자체적인 통계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움.

- 통계청이 중앙통계기관으로서 국가통계 전체를 기획·조정하고자 하여도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단이 없음.

다. 부처간 협조부족

- 통계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정부부처간 협조 부족 : 국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행정자료가 유기적으로 활용되어 통계의 기초자료로서 투입될 때 국가통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자료가 통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행정인프라가 취약한 실정임.
 -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관련 자료가 충분히 활용될 경우 통계조사에 수반되는 인적·물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자료의 상호체크를 통해 통계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
 - 각 정부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업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 각 행정부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기관간 공유되지 못하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세무자료 등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자료가 통계의 기초자료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
 - 미국 : 국세자료를 통계자료로 활용
 - 프랑스 : 모든 국가정보가 통계국으로 집중됨.
- OECD국가를 포함 대부분의 국가에서 행정자료와 통계조사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며, 이들 국가들은 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음.(통계법, 협정서 체결 등)

〈표 5-2〉 행정자료의 통계목적 활용을 위한 선진국의 제도

	미 국	캐나다	프랑스	영 국	독 일
제도적 장치	·통계법	·통계법	·통계법 ·양해각서	·통계청 Framework document ·양해각서	·통계법 ·통계등록법
활용자료	·사업자등록자료 ·부가세자료 ·법인세자료 ·개인소득 (원천징수) ·사회보장보험 자료	·사업자등록 자료 ·부가세자료 ·법인세자료 ·개인소득 (원천징수)	·사업자등록자료 ·부가세자료 ·법인결산자료 ·사회보장보험 자료	·사업자등록 자료 ·부가세자료 ·법인세자료 ·개인소득 (원천징수) ·연금자료	·사업자등록자료 ·부가세자료 ·사회보장보험 자료

자료: 통계청, 「행정통계의 통계목적 활용방안」, 2001. 10

라. 통계조사의 어려움 가중

- ☐ 기업(사업체)활동이 다면화·복잡화됨에 따라 기업활동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세분화할 필요성이 증대되며, 이로 인한 조사의 어려움이 커질 것임.
- ☐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통계조사에 있어서 기업의 협조를 얻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 ☐ 통계조사조직의 축소 : 읍면동 등 일선행정조직의 통계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대형조사의 경우 조사의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음.

3. 통계수요의 확대

- ☐ 통계생산 여건은 어려워지는데 비해 산업구조 통계에 대한 수요는 더욱 확대되고 있음. 경제의 고도화에 따라 기업에 대한 분석이 보다 다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임.

- 기업활동의 다면성에 따른 통계수요 확대 : 과거 산업구조가 단순하였을 때는 산업경쟁력이 생산측면을 통해 단순히 파악될 수 있었지만,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전지구적인 레벨에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기업을 여러 각도에서 평가하여야 하며, 국가통계는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여 통계를 공급하여야 할 것임.
 - 기업활동의 국제적 전개 : 무역, 대외직접투자, 외국인 투자, 세계수준의 기업네트워크 등 기업활동의 국제적 측면의 파악
 - 기업활동의 기능별 거점화, 연구개발기능 등 기업의 동태적 경쟁력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정보
 - 산업 클러스터 등 지리적 측면에서 기업활동 파악의 중요성
 - 기업간 네트워크, 새로운 방식의 마케팅, 업태 등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정보
-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통계수요에의 대응 : 1990년대 이후 정보산업·바이오산업·첨단서비스 산업 등 신경제·신산업의 등장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빠른 속도로 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산업구조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수요가 증대됨.
 - 금융, 첨단서비스, IT, BT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통계정보
 - 산업구조조정
 - 산업의 융합화 등
- 이상과 같은 경제·산업현상을 모두 통계조사를 통해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그렇지만, 국가통계기관은 기업·산업에 관한 정보를 보다 충실히 정비한다는 입장에서 사회적 수요에 맞추어 통계를 개선·개발해나갈 필요가 있음.

4. 통계청의 역할

- 사회적 통계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업대상 통계 작성에 있어서 통계청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통계담당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의해서도 기업관련 통계가 많이 생산되고 있음.
 - 중앙통계기관은 기초통계부분을 담당하고, 정책의 집행·수립에 직접 필요한 통계는 소관 행정부처가 스스로 작성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 외에는 산업구조통계에 대한 실질적인 통계기능을 가진 부처가 없음.
 - 예를 들면 일본의 경제산업성의 경우 우리나라 통계청에 버금가는 통계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산업자원부는 통계기능(조사통계기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음.
 - 민간통계는 국가통계의 빈 부분을 채워주는 기능을 수행함.
 - 정부통계와 민간통계의 상호보완을 통해 통계의 품질과 유용성을 제고함.
-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을 제외한 정부부처와 민간의 통계작성기능이 극히 취약함. 따라서 통계청이 기업통계의 중요부분을 모두 포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산업 및 기업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재경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통계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계청이 수행하여야 함.
 -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의 국가통계기관 보다 더 많은 역할이 우리나라 국가통계기관(특히 통계청)에게 요구되며, 통계청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통계수요에 대응해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제2절 산업구조 통계 발전의 기본방향

1. 우리나라 산업구조통계에 대한 평가

- 우리나라의 사업체 대상 통계는 특히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개선작업을 통해 개선·발전되어 일단 외형적으로는 선진국과 비교하여서도 손색이 없는 정도임.
 - 기업통계부분이 조금 취약하나, 이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가능한 부분임.

- 통계의 종류, 포괄대상 산업, 조사대상, 조사항목 등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손색이 없음.
 - 통계작성 절차·방법론에 있어서도 그동안 통계청에서 꾸준히 개선작업을 수행한 결과 선진국에 비해 손색이 없는 체제를 갖추었음.
- 이상과 같이 통계생산의 하드웨어 부분은 상당한 수준으로 정비되어 있으나, 좋은 통계의 생산이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하드웨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크게 낙후되어 있는 실정임.
- 하드웨어는 단기간에 정비가 가능하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의 개선에선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입됨. 이러한 시각에서는 우리나라 사업체대상 통계 개선 노력은 지금이 그 시작단계로 볼 수 있음.
- 통계개혁·개선작업을 ① 변혁과정(통계 틀의 변화, 새로운 통계의 도입 등)과 ② 개선과정(통계의 정밀도 향상, 작성 방법 개선 등 미세조정)으로 구분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사업체대상 통계가 안고 있는 과제는 상기 ②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상기 ②의 개선과제는 ①에 비해 훨씬 많은 노력과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통계생산기관의 업적으로서 객관적으로 평가받기는 어려운 속성을 갖고 있음.⁸⁾
 - 우리나라 사업체대상 통계는 정밀도·충실도, 조사체계, 통계결과물의 다양성, 검사·개선 시스템 등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음.
- 통계의 종류나 내용은 선진국에 비해 손색이 없지만, 각 통계 간에 상호 연계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 대부분의 산업구조통계가 통계청이라는 단일 기관에서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의 종합성, 통계간의 연계성·정합성이 다소 부족한 느낌이 있음.
 - 이러한 측면은 현재 통계청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체·기업체 DB구축사

8) 이러한 이유로 통계기관의 의사결정권자는 기존 통계를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새로운 통계를 도입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함.

업』이 완료될 경우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후에도 통계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임.

□ 산업구조통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선진국 통계를 벤치마킹하되, 우리나라 통계행정 여건상의 특징을 감안하여 최선의 개선안을 찾을 것임.

- 통계체계는 미국형이 바람직 : 일본의 경우는 관할관청의 영역다툼으로 전체적인 체계성이 다소 부족. 미국 모델을 바탕으로 일본형의 장점, 우리나라 여건을 감안하여 개선방안 제시

⇒ 경제센서스를 중심으로 한 부문별 기초통계의 정비

- 통계행정체계는 일본형을 참고로 함 : 지자체의 기능이 중요한 일본형과 통계청이 중심이 되는 한국형에는 큰 차이가 있으나, 일본형의 장점을 많이 도입하도록 함.
- 통계의 종류 및 조사항목과 관련하여서는 일본의 제도가 많은 참고가 됨. 일본의 경우 정부-민간관계나, 당면하고 있는 경제·산업 현안 등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임.

2. 통계제도 및 조직 개선·강화

가. 통계제도의 개선

□ 우리나라는 외견상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이 주요 기초통계부문을 대부분 담당하는 집중형적인 성격이 강한 분산형 제도임.

- 집중형 통계제도 : 국가의 모든 기본적인 통계를 단일 통계생산기관이 생산하는 제도
- 분산형 통계제도 : 정부 각부처가 당해 소관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통계를 스스로 작성하는 통계제도
- 집중형과 분산형 중 어느 쪽이 우월한가에 대해서는 일의적인 해답이 있을 수 없으며, 이 두 제도는 각자 장단점을 갖고 있음.

〈표 5-3〉 집중형과 분산형 통계제도의 비교

	집 중 형	분 산 형
특 징	· 국가기본통계를 단일 전담기관에서 작성하여 각 이용자에게 제공 · 부처간 통계연결기구의 설치 필요	· 부처별로 필요한 통계를 자체 작성 활용 · 통계조정기관의 설치 필요
장 점	· 통계의 균형적 발전과 체계화 용이 · 통계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 통계전문인력과 장비의 효율적 활용	· 업무분야의 전문지식을 통계작성에 활용 · 통계수요에 신속한 대응
단 점	· 행정업무분야의 전문지식활용 곤란 · 통계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곤란	· 통계작성의 중복과 불일치로 예산과 인력의 낭비 초래 · 통계전문요원과 장비의 집중활용 곤란으로 비경제적
외국의 예	캐나다, 독일, 스웨덴, 호주, 네덜란드	미국, 일본, 영국, 한국, 대만

□ 집중형 통계제도를 채택하든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든 그것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에 걸맞은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함.

- 집중형 통계제도의 경우에는 중앙통계기관에 충분한 통계자원이 집중되어 있어야 하며, 통계기관과 여타 정책부처간에 국가통계정보에 관한 긴밀한 정보교류가 필수적임.
- 분산형 통계제도의 경우에는 통계를 담당하는 정부 각 부처가 통계를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 그렇지 못할 경우 국가통계의 부실을 피할 수 없을 것임.

□ 우리나라는 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이 기초 국가통계에 해당하는 지정통계의 많은 부분을 생산하면서 통계조정업무를 행하고 있으며, 여타 부처는 각자의 통계수요에 따라 자기 통계를 생산하고 있음.

- 분산형 통계제도를 취하고 있으나, 미국이나 일본보다 집중형 통계제도의 성격이 훨씬 강한 분산형 통계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정부 각 부처의 통계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통계청과 농림부, 노동부만이 일정 규모이상의 통계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여타 부처의 통계인력은 불과 수명에서 수십명 정도에 불과함.

-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분산형 통계제도이긴 하지만 중앙통계기관을 제외하고는 정부 각 부처가 사실상 통계생산기능을 갖지 못한 기형적 제도임.
-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통계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통계행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함.
 - 이러한 기능은 원칙적으로 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의 몫이지만, 현재 정부내에서 차지하는 통계청의 위상(1급 청장 기관, 예산 등 실질적인 조정수단 없음)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함.
- 국가 여건이 다른 만큼 통계제도 개편에 있어서 특정 국가의 모델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이식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선진국의 통계제도가 갖는 장점을 채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통계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함.
 - 주요 선진국은 국가통계기능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정부가 최소한의 통계기능이라도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계인력의 절대수를 증대하고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통계예산과 인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캐나다와 같은 집중형 제도가 바람직함. 분산형 통계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마다 많은 통계자원이 필요함.
- 국가통계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집중형 통계제도로의 전환 :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부문의 통계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집중형 통계제도가 통계작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부처간 기능조정, 조직재편, 부처간 이해조정 등 많은 현실적 난관이 예상됨.
 - 통계행정 기획·조정 기구의 설치 :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산하에 (가칭)“국가통계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국가 통계행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동 위원회에는 예산배정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도록 함.

나. 통계조직의 확충 : 기구인력 확대와 기능재편

- 통계조직 및 인력의 절대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충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우리나라 사업체 통계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통계행정조직 및 인력의 부족에 있으며, 이것만 해결된다면 여타 문제들(통계의 질 향상, 새로운 통계의 개발 등)은 상당부분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
 - 최근 2년 동안 통계청은 임시직을 중심으로 220여명의 인력을 증원시키는 등 인력확대에 노력해 왔으나, 이러한 인력증원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임.
- 현재와 같은 인력부족 하에서는 통계작성에 있어서 정해진 절차를 거치기 어려움.
 - 하나의 통계가 생산되기까지는 조사기획단계에서부터 공표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절차가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질 때 질 높은 통계를 기대할 수 있음.
 - 산업구조통계 가운데 가장 대규모 통계인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의 경우, 이하와 같은 절차를 거쳐 통계를 생산함.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 업무 흐름

- ① 조사기획: 조사관련 의견조회, 산업단지 현황파악, 예산배정, 조사표설계 ↓
 - ② 사업체명부 작성(약 110,000개)하여 시·도에 송부 ↓
 - ③ 단계별 교육 실시: 지자체 공무원 및 임시조사원 교육 실시. 조사요령, 內檢요령, 표준산업분류 및 품목분류표 설명 등 ↓
 - ④ 실지조사 및 실사지도: 지자체 공무원이 실시. 통계청에서 지도 ↓
 - ⑤ 조사표 내용검사: 지자체 공무원 및 통계청 조사원이 조사표 검사 ↓
 - ⑥ 조사표 입력: 현지입력. 입력프로그램 사용법 교육 ↓
 - ⑦ 자료입력 내용검사 ↓
 - ⑧ 종합내용검사: 산업 및 품목별 이상현상 검사, 전년대비 산업분류 불일치, 누락사업체, 신규사업체 등 조사 ↓
 - ⑨ 결과자료 분석: 전체적인 내용의 적합성 분석 ↓
 - ⑩ 잠정 통계치 발표 ↓
 - ⑪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발간
 - ⑫ 지역별 통계 등 개별수요 대응
-

- 현재와 같이 본청의 8인이 동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움.
 - 형식상으로는 당연히 정해진 절차를 거칠 것이지만, 각 절차 단계에서 목적하는 바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 통계청 본부기능의 강화 : 우리나라 통계조직은 조사기능이 중심이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본부기능(기획·분석 기능)은 매우 취약한 상태임.
- 우리나라 통계조직(특히 통계청)의 인적 구성은 조사조직 중심으로 되어 있음. 과거에도 통계청의 조사인력이 비중이 전체의 2/3를 넘었으며, 최근의 인력증원도 조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조사기능에 비해 본부기능(기획·분석 기능)은 매우 취약함. 선진국에서 수십, 수백명이 담당하는 대형 통계작성 업무를 불과 몇 명의 인력이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열악한 통계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통계가 어느 정도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조사조직(통계청 지방사무소)이 있었기 때문임.
 - 통계청의 조사조직이 투입되지 않는 대형통계의 경우, 통계부실이 발생할 많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 앞으로 통계조사조직의 발전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통계청의 조사조직에 의해 조사되는 통계와 지자체를 통해 실시하는 대형통계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통계환경변화와 통계행정의 특징을 감안할 때 앞으로 조사기능보다는 본부기능이 대폭 강화되어야 함. 이것은 선진국형 통계조직·기능으로의 변환을 의미하는 것임.
- 읍면동 등 최일선 행정기관의 통계기능 폐지로 통계조사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대형통계의 경우 전적으로 임시조사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음. 따라서 조사가 과거에 비해 부실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지자체 통계조직이 취약하여 조사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사내용을 제대로 검사하는 기능이 매우 취약함.

- 조사내용은 점차 복잡·다양화되는데 비해 조사대상자인 기업들의 협조는 낮아지고 있음. 이는 조사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하는 요인임.
 - 이상과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통계청의 통계조사 기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음. 통계의 품질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사기능의 약화를 기획·분석기능을 통해 보강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임.
 - 미국, 일본 등 통계 선진국들은 조사기능은 우리나라에 비해 오히려 취약하지만 뛰어난 기획·분석기능을 바탕으로 질 높은 통계를 생산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은 통계환경변화를 감안할 때 통계청의 본부기능이 대폭 강화되어야 하며, 본청의 통계담당 인력은 최소한 현재의 몇 배로 늘어나야 할 것임.

■ 통계청의 적정 기구인력에 대한 민간 컨설팅기관의 평가

1999년에 전 정부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행해진 정부기관경영진단 가운데 통계청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통계청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청인력이 약 1,720명 정도로 증원되어야 하며, 통계당 담당인력도 최소한 현재의 3배정도가 투입될 때 비로소 통계생산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키는 제대로 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당시 정부 전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행해진 경영진단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정부조직 축소였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기구·인력축소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본청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기구·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민간컨설팅 기관이 제언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동경영회계법인·앤더슨컨설팅, 『통계청경영진단보고서』(1999)]

- 통계청의 연구·분석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국가통계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통계행정의 종합기획 기능과 이를 뒷받침할 연구기능이 필요한데 현재 통계청 내에는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조직과 인력이 사실상 없음.
- 또한 향후 통계행정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행정의 효율화, 통계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연구·분석기능이 필요함.

제3절 통계체계 및 조사의 개선

1. 통계체계의 개선

가. 통계간의 연계성 제고

- ☐ 사업체대상 통계가 전체적으로 일관성·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통계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통계청에서는 산업구조통계의 모집단 자료적 성격을 갖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중심으로 「광업 및 제조업통계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통계조사」 등 산업부문별로 산업구조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각 산업별 구조통계는 우리나라의 경제통계의 기초부분을 형성하고 있음.
 - 이들 각 부문별 통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개선작업이 수행되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으나, 이들 통계들의 종합성·연계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음.
- ☐ 각 산업별 통계간의 종합성·연계성의 문제와 아울러 조사 시기도 통계간의 시너지를 살리기 어렵도록 되어있음.
 - 현재 통계청에서는 5년 주기로 산업총조사(3, 8차 년도)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1, 6차 년도)를 전수조사로, 광업·제조업통계조사, 도소매업 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등을 매년 표본조사로 실시하고 있음.
 - 이들 통계조사 간에 정합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음.
- ☐ 현재 통계청에서 개발 중인 『사업체모집단 DB구축』사업이 완료될 경우 각 산업별 통계간의 종합성·연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기반이 조성됨.
 - 사업체 모집단 DB가 구축될 경우 각 산업별 통계는 조사대상이 이 모집단 자료로부터 선정되므로, 전체 산업통계간의 일관성·정합성 유지가 가능함.

- 사업체 모집단 DB를 기업DB, 기업그룹(기업집단DB)로 확장할 경우, 기업단위에서 관측될 수 있는 기업경영관련 정보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또한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기업조직인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통계가 정비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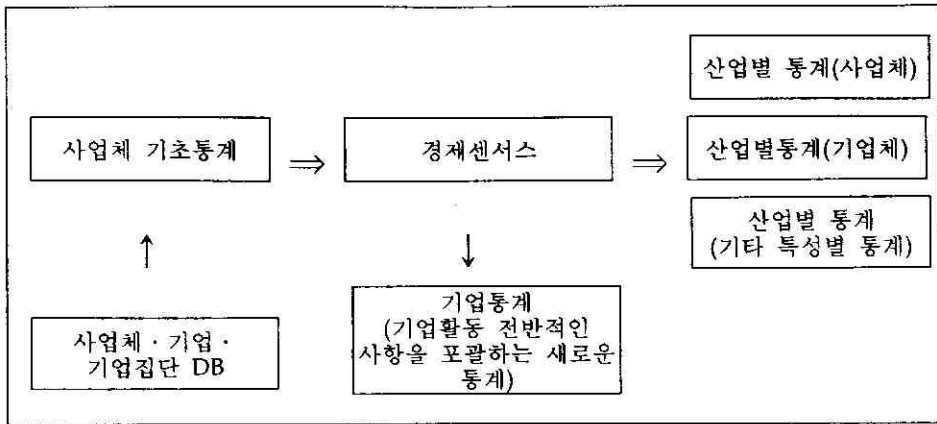
■기업집단 통계의 필요성

소위 “재벌”이라 일컬어지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은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기업조직체임.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한국의 산업발전 과정은 재벌과 분리하여 설명할 수 없으며, 한국 산업발전의 역사는 재벌의 역사이기도 함. 한국의 기업집단은 영국 브리타니카 사전에 “Chaebol”이라는 고유명사로 등재될 정도로 한국의 특징적인 기업조직으로서 이미 세계적으로도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집단에 대한 정보 없이 한국의 산업을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1997년의 경제위기이후 우리나라에서 입안·추진된 경제정책 가운데 태반이 기업집단과 관련된 것임. 기업집단이 우리경제에서 갖는 이러한 비중을 감안한다면 기업집단에 대한 통계의 정비는 시급한 과제임. 기업집단의 소유구조나 재무구조 등 회계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기업집단의 시장활동, 산업활동 등에 대해서는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태부족임. 통계청에서 기업집단에 관한 통계를 작성한다면, 이는 우리나라 산업구조 통계의 큰 진전을 의미하는 것임. 기업활동을 기업단위에서가 아니라 기업집단 단위에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은 이미 선진국에서도 제기되고 있고, 독일, 일본 등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이를 위한 통계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산업구조통계의 체계는 [그림 5-1]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체·기업·기업집단 명부DB』의 구축을 통해 모집단자료로서의 『사업체 기초통계』를 정비·강화함.
- 이를 토대로 일정시점에서 산업전체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가칭) “경제 센서스”를 도입하도록 함.
- 현재 실시중인 각 산업별 연간 조사는 경제센서스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그림 5-1] 산업구조통계 개선 기본방향



□ 기업통계의 작성

- 기존 기업통계의 확충 : 현재 광업 및 제조업분야에 대해서만 작성되고 있는 기업통계를 전산업으로 확대. 사업체 통계의 기업별 집계
- 새로운 기업통계의 개발 : 기업활동을 다면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계의 개발. 일본의 『기업활동기본조사』를 벤치마킹

□ 각 개별 통계 간 조사항목 및 그 개념의 표준화

- 기업특성부분 :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므로, 특히 기업특성항목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필요
- 고용(종사자)부분
- 매출액 및 비용 부분
- 자산부분
- 기타 기업활동의 특징적인 부분 : R&D, 광고 등

□ 통계의 품질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통계에 대한 비교·분석

- 구조통계와 동태통계의 비교, 보완

나. 경제센서스의 검토

□ 산업구조통계의 종합성·연계성을 강화하고 포괄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경제 센서스의 도입이 바람직함. 경제센서스는 전 산업분야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 하에서 사업체(혹은 기업활동)를 다각적으로 조사하는 통계로서, 그 구체적인 선택대안으로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음.

① 경제센서스의 신설 :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 산업에 대해 전면적인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방법. 산업별로 공통부분과 산업별 특별 조사항목을 둠으로써, 전체 산업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산업별 특성도 아울러 고려토록 함.

⇒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매5년마다 확대 실시하는 방법

⇒ 모집단적 조사와 센서스적 조사를 구분하여,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대상사업체 가운데서 센서스 대상 사업체를 선정하여 심층조사하도록 함(전수 조사대상그룹과 표본조사대상 그룹).

② 기존 통계조사를 개선한 사실상의 경제센서스 :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통계를 항목의 조정·조사항목 개념의 일관성 유지 등의 개선을 통해 사실상의 경제센서스 효과를 얻는 방법

⇒ 기존의 『산업총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센서스』 등에 대해 통계간 항목조정, 개념 일치화 등의 작업을 수행함과 아울러, 조사연도를 일치 시킴. 다만, 조사시기는 별도로 할 수 있음.

□ 이상의 두 가지 선택대안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는 통계의 충실화와 아울러 행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할 것임.

○ 통계의 충실성, 완성도 측면에서는 상기 ①의 대안이 우월함.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행정부담이 적지 않을 것임.

○ ②의 대안은 상대적으로 행정적 부담이 적을 것임. 그러나 경제 센서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산업구조통계에 대해 일관된 기준하에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임.

□ 경제센서스의 도입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제센서스」(가칭) 개발 계획 :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사업소·기업활동의 다각화 등에 대처하고 산업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전반의 기본적인 정리항목(매출액 등)을 중심 조사항목으로 하는 새로운 통계조사의 필요성 제기
- 개발시기 : 제1회 조사를 2009년에 실시하되 5년 주기. 사업소·기업 통계조사(본조사) 등 기존의 대규모 경제통계의 주기변경은 조사결과와 이용면에서 그 영향이 다방면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조사의 주기를 고려
- 포괄 산업범위 및 조사항목 : 사업소·기업통계조사의 대상 산업을 대상으로 실시. 2004년 조사에서는 도매·소매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만 기본정리 항목(매출액, 비용) 등을 조사하며, 나머지 산업은 사업체 기본항목만 조사. 조사항목은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임.
- 일본이 경제센서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배경은 일본 행정조직의 특성에서 비롯된 통계상의 취약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 볼 있음. 분산형 통계제도 하에서 부처간 영역다툼으로 관할 사업부문에 대한 통계조사만 시행함에 따라 통계상의 공백부분 발생. 통계조정 문제 등이 제기되는데 경제센서스의 실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주요 기초 산업구조통계를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으므로 경제센서스의 실시에 있어서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음.

- 통계청이 스스로의 통계계획의 조정을 통해 경제센서스에 관한 일관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통계조정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음.
- 다만, 일본에 비해 지자체이 통계기능이 극히 취약한 상황에서 경제센서스에 요구되는 막대한 행정수요를 어떻게 소화하는가가 관건이 될 것임.

2. 조사대상·조사내용 및 조사항목의 개선

□ 문제의 인식 : 지금까지 총조사(사업체기초통계, 산업총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등)나 『광업 및 제조업통계조사』와 같은 대형통계조사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복잡하고 세분된 사항을 조사하

였음.

- 모든 업체에 대해 동일한 조사항목으로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되는 중소기업 이상 기업은 큰 문제가 없으나, 영세기업의 경우 영업실적과 관련한 세부항목은 자료수집 자체가 곤란한 경우가 많은 실정임.
 - 따라서 지금과 같이 모든 사업체에 대해 동일한 항목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인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체는 세부항목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영세사업체는 간단한 항목으로 표본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또는 총조사는 기본적인 항목과 최소한의 항목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특화된 연간조사 등에서 세부항목을 조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영세기업의 경우 조사자체가 쉽지 않으며, 더욱이 장부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거나, 조사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신뢰성 있는 응답을 기대하기 어려움. (박스 “■ 영세기업에 대한 조사의 어려움” 참조)
- 응답의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사항목에 대한 이해도, 기억의 한계 등으로 정확한 조사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총조사적 성격의 통계(『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산업총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는 통계의 성격상 모든 사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함⁹⁾. 다만 사업체에 따라 조사항목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 법인기업과 비법인 기업을 구분하여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세분된 사항을 조사하며, 비법인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항목을 대폭 간소화하도록 함.
- 연간조사에 있어서는 통계에 따라서는 현재에도 법인기업(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기업 포함)과 비법인 기업을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음. 연간조사의 경우에도 법인기업을 중심으로 세분된 사항을 조사하며, 비법인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항목을 간소화하도록 함.
-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를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음. 현재 5인 이상 사업체를 모두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10인 이상으로 상향

9) 『산업총조사』의 경우는 5인미만의 사업체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

조정할 경우 조사대상 사업체수가 약 절반으로 줄어들 것임.

- 영세사업체의 경우 응답내용의 신뢰성은 아주 낮은 반면 중소기업 이상 사업체에 비해 조사의 어려움은 훨씬 큼

■ 영세기업에 대한 조사의 어려움

제목 : 통계조사 필요한가? (작성자 : kwlu, 작성일 : 2002/04/11)

중소기업체에 통계자료 제출요청은 자체해 주었으면 한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체엔 인원도 별로 없는데 그 바쁜 사람들이 생산적인 업무에 충실할수 있도록 여건좀 만들어 주기 바란다. 무슨 놈의 통계자료작성 요청이 그리도 많은지.

제목 : 통계조사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작성자 : lhk, 작성일: 2002/04/13)

오늘 전국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를 한다고 조사원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조사서의 항목 중 2001년도 세금이나 기계 설비 등의 감가상각, 제세공과금 등 여러 항목이 정확하게 작성하기 어려웠습니다. 조사원은 대략적으로 알려주면 자신들이 적어 넣겠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하는 통계조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제목 : 분개합니다 (작성자 : 일개 조사원, 작성일 : 2002/04/15)

화가 나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월평균 매출에 100만원 잉터리로 불러주는데는 양반입니다. 웬 술집...룸사롱 유흥주점이 그리도 많은지 술 먹고 지 맘대로 불러줍니다. 거기다가 좀 잘되는 이름난 메이커 가게는 교양있게 사람 짜증나게 하고요. 한 두 번이지.. 조사표에 응답거부라고 적기까지 세 번이상은 가야 됩니다.

제목 : 우리가 동네북인가 (작성자 : 동네북 조사원, 작성일 : 2002/04/16)

우리 조사원은 동네북이 아닙니다. 이리 터지고 저리 채이고. 아무리 조사를 잘 할려고 마음을 다지고 또 다지고 해도, 년간매출은 사무실 존망이 걸린 문제라서 절대로 불지 못하시겠다구요?

제목 : 통계조사의 감가상각비와 대손상각비에 대하여 (작성자 : 송재섭, 작성일 : 2002/05/03)

감가상각비를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회계학 공부를 한 저로서는 참으로 비효율적인 문항이라 생각되어 한마디 적습니다. 감가상각비가 계산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복잡한데, 어느 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조사원들에게 판단하고, 계산하여 답을 적으라고 하시는 것은 무리이며 억지입니다.

제목 : 광업·제조업통계조사에 대하여 (작성자 : 궁금이, 작성일 : 2003/06/07)

도대체 이 조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통계조사를 작성했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그냥 대충대충 작성해서 칸 만 채워 준다는데.. 사무직원, 생산직원이 그 당시 남자 몇명인지 여자 몇명인지 1년이상 된사람이 몇명인지.. 압튼 회계자료에도 나오지 않는 그 당시 지난 자료를 일일이 찾아서 작성을 해야 하는 점이 불편하기도 하고 자료를 작성해 주는데 부담감이 넘 많네요..

이상은 통계청 홈페이지 “이용자 토론포럼”에서 발췌한 내용임.

□ 모든 조사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사업체(혹은 기업) 특성 항목을 강화함.

- 사업체 특성항목의 강화는 다양한 형태의 집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통계의 활용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 사업체뿐만 아니라 소속 기업, 기업집단, 조직형태, 내외국인 소유비율,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특성항목을 조사표에 반영하도록 함.

3. 통계작성 체계 및 절차의 개선

□ 통계작성 절차의 의의 : 국가통계가 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작성과정과 절차가 매우 중요함.

- 일반 재화나 용역은 시장에서 그 품질을 평가받지만 통계는 정부의 독점생산물이므로 시장에서 품질이 평가되기 어려움.
- 통계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어려우며 따라서 작성과정과 절차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품질을 사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그러므로 통계작성에서는 통계치의 결과보다는 작성과정이 중시되어야 하며, 작성과정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진 통계는 결과치가 잘못될 가능성도 낮지만, 설사 그 결과치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매우 규칙적인 오류이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를 가짐.

□ 현재 산업구조통계의 조사체계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구분됨.

- 대형통계조사(사업체기초통계, 광업 및 제조업통계,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센서스 등) : 조사대상사업체(기업) → 임시조사원 → 지자체 → 통계청

- 중·소형통계조사(건설업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 등) : 조사대상사업체(기업) → (사업자단체) → 전문조사원 → 통계청지방사무소 → 통계청

□ 소형통계조사의 경우는 사업자단체 혹은 통계청의 조사담당직원에 의해 조사되므로 조사단계의 문제는 전적으로 배제하여도 좋을 것임.

- 다만, 통계청 조사조직의 업무 과부하 문제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대형통계의 경우에는 조사단계에서 큰 공백부분이 존재하며, 이를 보완할 제도 개선이 시급함.

- 대형통계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조사하며, 통계청은 교육 등 기술지도를 행함.
- 조사원, 관리원 등 조사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의 전문성이 아직은 많이 떨어져 있고 있어 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이들을 직접 관리·감독하여야 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도 통계전문가라 보기는 어려우며, 또 투입인력도 크게 제한되어 있음.
- 조사부분에 있어서 가장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통계청의 조사조직(지방사무소)은 대형 통계조사에 있어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음.
- 이 결과 조사단계에서 통계청에 이르기 전 단계에까지 조사결과 확인에 큰 공백부분이 존재함. 즉, 통계청에 이르기 이전까지 통계전문가(혹은 조사전문가)에 의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조사단계는 통계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임. 즉,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통계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좌우됨.

- 이러한 점에서 우수한 조사인력의 채용과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는 앞으로 통계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임.

□ 현행 조사원 모집관리 체계

○ 조사원 모집기관 : 시·군·구의 장

○ 조사원 선발기준

- 만 18세이상 고졸수준 이상인 자로서 시군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
- 통계조사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는 우선채용

○ 조사원의 임명

- 시군구는 조사원으로 최종 채용된 자에게 조사원 임명장과 조사원증을 발급하고, 시도를 경유, 통계청으로 즉시 보고
- 또한 시군구는 조사원에게 서약서 작성, 담당지역 지정 및 교육일정 등 향후 조사원의 수행사항에 대하여 사전 안내를 실시

□ 조사원 관리

○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은 조사진행상황을 조사원별로 매일 점검

- 조사원은 매일 1회 이상 출근하며, 시간 및 장소는 시군구 여건에 맞게 자체 결정
- 조사원 출근부 및 조사별 업무추진일지를 비치·운영

○ 조사원 연락망을 비치하여 현장 수행상황을 수시 점검

○ 조사기간중 불의 사고에 대비하여 전 조사요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장기적으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조사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아직은 조사대상 사업체의 협조가 부족한 상태임.

- 대부분의 조사대상처에 CASI 조사에 필요한 PC, 통신망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낮고 일부 응답자는 불성실하게 응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표 5-4〉 CASI 조사 참여현황

(2002. 10 기준)

조사명	조사대상처수	CASI조사수	참여율
광공업동태조사	7,239	2,736	37.8
생산능력 및 가동률	2,350	1,027	43.7
전자상거래 통계	2,578	329	12.8

* 통계청 자체평가위원회, 『2002년 하반기 통계청업무 자체평가 결과』

[일본의 통계조사 체계: 사업소기업통계조사의 사례]

□ 사업소·기업 통계조사는 도도부현이 통계조사 주체임. 통계국은 지도·조정업무를 담당함.

- 통계국 → 도도부현 → 시정촌 → (지도원) → 조사원 → 조사대상자
- “갑”조사와 “을”조사가 있는데, “갑”조사는 민간기업을 “을”조사는 공공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 시정촌(우리나라 시군구에 해당)의 역할 (“갑”조사의 경우)

- 조사전단계 : 조사실시계획의 책정, 담당구역 지정, 조사관계 서류·용품의 수령 및 배포 준비, 지도원 사무협의회 및 조사원 사무협의회 개최, 홍보의 실시
- 조사실시 단계 : 조사의 실시 지도 등
- 조사후 단계 : 조사관계 서류의 심사

□ 도도부현(우리나라의 시도에 해당)의 역할

- 조사전단계 : 조사실시계획의 책정, 시구정촌 직원 사무협의회 개최, 조사관계 서류·용품을 시정촌에 배포, 홍보의 실시
- 조사단계 : 조사의 실시상황의 파악 등
- 조사후 단계 : 조사관계 서류의 심사 등, 조사관계 서류의 정리 및 제출, 입력지정사무, 컴퓨터에 의한 데이터 체크 처리, 전자계산기 처리 사무

□ 지도원의 역할

- 조사내용, 지도방법 등의 연구
- 조사원의 안전확보 지도
- 조사구 경계의 확인과 조사대상의 파악방법 지도
- 『조사구 사업소명부』의 보기·정정에 관한 지도
- 조사의 진행사항 파악 및 지도, 동행 등의 현장지원
- 조사곤란사업소에서의 대응
- 조사관계 서류의 검사
- 조사관계 서류의 정리 및 제출
- 조사누락 사업소 및 조회사항의 재확인

□ 산업분류 부호의 부여 : 통계의 생명은 정확한 분류체계에 있음. 『기업·사업소 통계조사』의 산업분류번호의 부여는 시정촌(우리나라의 시군구에 해당)에서 담당

- 도도부현(광역지자체)은 입력된 산업분류번호를 검토
- 통계국은 산업분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분류부호 기입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도도부현을 경유, 시정촌에 배부
- 산업분류부여는 컴퓨터에 의해 행하는 일부 도도부현(이하 “산업분류자동부여 도입 도도부현”이라 함.)에 대해서는 당해 도현이 산업부여를 행함. 또 정령지정 및 현청소재의 시에 대해서는 산업분류자동부여 도입 도도부현의 요청에 따라 컴퓨터에 의해 부여가 불가능하였던 사업소의 부여를 행하는 것으로 함.
- 사업소의 산업분류는 “조사표갑”의 ‘7 사업소의 사업의 종류·업태’란의 기입에 의해, 기업의 산업분류는 동표의 ‘15 회사전체의 주된 사업의 종류’란의 기입에 의해 부여하며, 각각 ‘7란 사업소의 사업의 종류·업태’ 또는 ‘15 회사전체의 주된 사업의 종류’란의 ‘시구정촌기입란’에 산업소분류번호(3단위)를 기입함.

- '7 사업소의 사업의 종류·업태'란의 '지구정촌기업란'의 우단1 단위는 '사업의 종류'란에 '관리사무만(00업)'인 경우, 그것을 식별하기 위한 부호로서 '1'을 기입함.

〈표 5-5〉 산업분류번호 기입을 위한 자료

자료명	내 용	이용방법
1. 산업분류 부여 설명지침서	설명회 실시방법, 산업분류 부여 수행방법, 의문사항 처리방법, 검사방법 등과 산업분류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일반원칙, 분류부여시 주의점 및 질의 해답 등을 정리한 것	설명자가 분류자에게 통일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 교육할 때 이용. 분류자는 [Ⅱ 산업분류설명] 및 [Ⅲ 질의 해답]을 참고
2. 산업분류항목표	산업분류의 분류항목명을 번호순으로 배열하여 일람표로 한 것	산업분류 부여시 이용
3. 산업분류항목과 주요 예시	산업분류의 분류항목명을 번호순으로 배열하고 각각의 분류항목에 분류되는 예시(포함되는 것)와 틀리기 쉬운 예시(포함되지 않는 것)를 수록한 것	
4. 산업분류색인	제1부는 업종명을 50음순(가나다순)으로 배열하여 각각에 산업분류번호를 나타낸 것. 제2부는 정부관계기관·지방공공단체 관계기관 및 주된 민간단체를 게재한 것	산업분류 항목에서 분류할 수 없는 경우의 검색에 이용
5. 산업분류 분류항목 설명 및 내용 예시	산업분류에 대하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의 순으로 분류해설과 각각의 내용을 나타낸 것	산업소분류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이용
6. 산업분류연습문제집 및 산업분류연습문제 해답집	분류자에게 실제로 분류실습을 하고 연습문제 해답집에 의해 산업분류를 이해시키기 위한 것	산업분류 설명 후 실습하고 그 이해를 높이는데 이용

자료: 통계청, 「제19차 한·일 통계협력회의 결과보고서」, 2003. 6

□ 산업분류 자동코딩 시스템

- 2001년 조사자료의 경우 47개 시도부현 중 14개 현에서 자동코딩시스템을 적용
- 일치율은 74.6%이며, 미일치된 25.4%는 수작업으로 분류부호 부여. 일치된 74.6%는 샘플 검사를 통하여 정확도를 판정
-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과거자료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용어사전(DB)의 확대를 하고 있으나, 방대한 자료량에 비해 일치율이 높지 않은 한계가 있음.

4. 모집단 자료의 충실화 : 사업체대상 통계의 기본 틀의 정비

□ 사업체 모집단 DB 시스템 개발 : 통계청은 사업체대상 통계의 모집단 관리의 일환으로 사업체 모집단 DB를 개발·구축 중에 있음.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명부를 기초로 기존의 각종 산업관련 통계조사 명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최신의 모집단 정보 구축 및 관리
- 중복·누락 없는 정확한 사업체 모집단의 유지·관리로 산업관련 통계 정확성 제고
- 인터넷을 통한 사업체 통계조사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 시스템의 특징

- 사업체 모집단 DB의 code는 사업체 code, 기업체 code, 사업자등록 code, 법인 code로 구성되며, 사업체 code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종 DB에 수록하는 정보의 연결 고리로서 활용하며, 관련 통계조사에 공동의 code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모집단 정보의 구축 : 모집단DB에 사용되는 정보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건설업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를 기본으로 함.

□ 수록정보

○ 사업체정보

- 기본정보: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속성정보: 종업원수, 산업분류, 경영조직, 본사·지사별 등
- 이동정보: 신설, 폐업, 존속

○ 기업정보

- 기본정보 :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속성정보 : 종업원수, 자본금, 경영형태, 지사·지점수, 모회사·자회사의 유무 등
- 이동정보 : 신설, 폐업, 합병, 분할, 명칭변경, 이전 등

- 이 시스템이 완성될 경우 common ID를 통해 통계간 링크가 용이하게 되며, 이 결과 전체산업에 있어서 산업구조통계의 연계성·정합성이 현저히 향상되고, 통계 간의 상호 체크를 통해 통계의 정도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 통계단위에 대한 연구 필요 : 우리나라에는 통계단위에 대한 연구가 없음. 따라서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조직체계를 연구·분석하여 그 결과를 통해 통계단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5. 행정자료 활용도의 제고

- 통계조사여건의 악화, 통계행정자원의 한계 등으로 통계조사를 통해 기업 및 산업활동의 여러 측면을 모두 조사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또 빈번한 통계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자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모집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통계정확성 제고
 - 통계조사를 행정자료로 대체함에 따른 예산 경감
 - 조사대상 사업자의 응답부담 경감(1개 사업체 당 연간 30회 응답)
 - 프랑스의 one-stop 체계 : 한 행정기관에 등록하면 정부기관간에 자동적으로 자료를 공유하게 되어 통계행정 부담을 경감시킴.
- 행정자료를 통계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통계작성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 행정자료 :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된 모든 정보(신고·기록자료)를 의미함.
 - 통계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행정자료로서는 아래와 같은 자료가 있음.
 - 사업자등록자료
 - 부가가치세자료
 - 법인세자료
 - 개인소득세자료
 - 지방세자료
 - 관세자료

- 사회보장보험(고용, 의료보험)자료
- 사업자단체, 협회자료
- 기업회계자료
- 기타 민간부문자료

□ 행정자료는 이하와 같은 방법으로 통계목적에 의해 활용될 수 있음.

- 사업체 모집단 구축
- 각종 사업체관련 표본통계조사의 표본틀
- 생·멸통계 작성
- 가공통계(지역내총생산, 국부통계 등)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
- 소규모사업체에 대한 통계조사 대체
- 조사누락, 항목누락, 조사오류 보완을 위한 기초자료
- 도·소매판매액조사, 서비스동향조사 등 매출액 관련조사 대체
- 기업회계자료를 통한 기업통계 작성

□ 정부 각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가 통계자원으로서 활용되지 못함으로써 국가자원이 낭비되고 있음.

- 모집단 구축을 위한 기본자료를 통계조사에 의존함으로써 사업체에 대한 응답부담 가중 및 막대한 예산 및 인력소요
-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통계조사를 담당했던 읍면동 직원이 임시조사원으로 대체됨에 따라 사업체 누락, 산업분류 오류 등 신뢰도 저하 우려
- 신규·폐업 사업체가 발생 즉시 update가 안되므로 생·멸통계 작성 곤란

□ 자료수집의 목적의 차이, 대상범위의 차이, 용어의 정의, 산업분류의 차이, 통계단위의 차이 등으로 인해 행정자료는 통계조사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행정자료가 통계조사의 보완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자료와 통계조사를 상호 결합하여 보다 유용하고 다양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음.

- 통계선진국들은 이미 행정자료의 활용을 통해 통계행정부담의 경감과 아울러 질 높은 통계를 생산하고 있음.

〈표 5-6〉 외국의 통계작성에 있어서 행정자료 활용사례

	미 국	캐나다	프랑스	영 국	독 일
활용분야					
· 모집단구축	· 행정자료 + 통계조사	· 행정자료 + 통계조사	· 행정자료 + 통계조사	· 행정자료 + 통계조사	· 행정자료 + 통계조사
· 모집단관리	· 행정자료 · 모집단관리조사 · 대규모 복합기업 집중관리	· 행정자료 · 모집단관리조사 · 대규모 복합기업 집중관리	· 행정자료 · 모집단관리조사 · 대규모 복합기업 집중관리	· 행정자료 · 모집단관리조사 · 대규모 복합기업 집중관리	· 행정자료 · 모집단관리조사 · 대규모 복합기업 집중관리
통계작성	· 경제센서스 · 종업원 4인미만 사업체 국세자료 이용 작성 · 조사오류 보완 · 가공통계 작성	· 소규모사업체 국세자료 이용 작성 · 조사오류 보완 · 가공통계 작성	· 소규모사업체 국세자료 이용 작성 · 도소매업, 서비스업통계 작성 · 법인기업통계 작성 · 노동통계작성 · 조사오류 보완 · 생·멸통계 작성 · 가공통계 작성	· 소규모사업체 국세자료 이용 작성 · 법인기업통계 작성 · 조사오류 보완 · 생·멸통계 작성 · 가공통계 작성	· 개발중
공동ID 사용여부	-	· 공동ID 사용	· 공동ID 사용	-	-
비밀보호	· 엄격적용	· 엄격적용	· 엄격적용	· 엄격적용	· 엄격적용

자료: 통계청, 「행정통계의 통계목적 활용방안」, 2001. 10

- 우리나라의 행정자료의 통계목적 활용현황

- 사업체대상통계의 경우 대부분 통계조사에 의존하며, 가구대상통계의 경우 사업체대상통계에 비하여 행정자료를 비교적 많이 활용(인구동태, 인구이동통계)
- 모집단 구축을 위한 기본자료를 통계조사에 의존함으로써 사업체에 대한

응답부담 가중 및 막대한 예산 및 인력소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통계조사를 담당했던 읍면동 직원이 임시조사원으로 대체됨에 따라 사업체 누락, 산업분류 오류 등 신뢰도 저하 우려

□ 현재 정부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중 산업구조통계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파악되고 있음[통계청(2001)]

- 국세청 : 사업자(법인) 등록신청서, 사업장 현황신고서, 부가가치세 과표자료, 법인세 과표자료, 사업소득세 과표자료
- 농림부 : 사료제조업체 현황, RPC(미곡종합처리장) 현황, 배합사료 생산실적(어류부분)
- 해양수산부 : 어선통계자료, 천해양식어업권 현황
- 지방자치단체 : 양곡가공업체 현황, 영농(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명부
- 보험공단 : 의료 및 고용보험

□ 행정자료를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강제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함.

- 통계법에 행정자료 활용조항 명시
- 비밀보호조항 보완 :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비밀보호규정 명시

□ 행정자료가 통계자료로 활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통계개선효과가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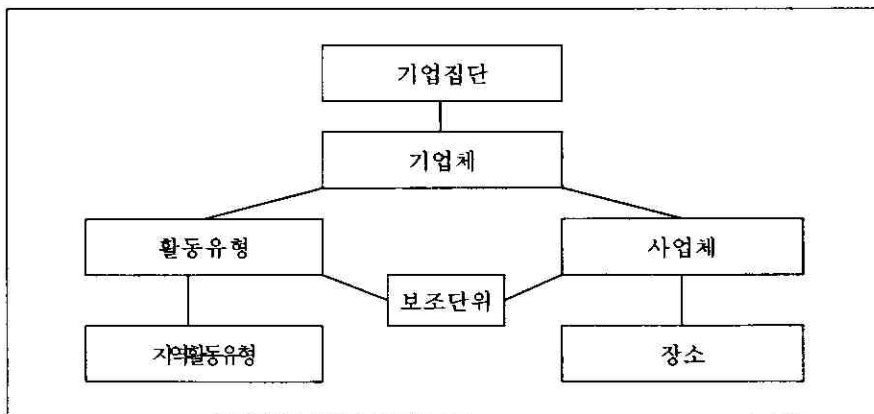
- 효율적인 모집단자료 확보 : 행정자료와 통계조사자료를 통합·사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모집단명부 확보 가능
- 통계정확성 제고 : 모집단관리 및 전문요원에 의한 산업분류 코드기입으로 통계정확성 제고
- 통계행정자원의 절약

6. 기업통계의 개선·개발

가. 기업통계의 필요성

- 우리 경제에서 기업은 생산의 주체로서, 앞으로 정부기능의 축소에 따라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기업의 비중은 더욱 커질 것임.
 - 기업활동 그 자체에 대한 보다 풍부한 통계를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의 현상을 파악하고 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현재의 기업통계는 대부분 사업체통계이며, 이러한 사업체통계의 재집계 자료로서 기업통계가 존재함.
- 기업 : 생산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능을 포괄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단위 또는 제도적 단위의 최소 결합체를 의미함 (UN)
 - 기업통계에 있어서는 재무제표, 연구개발 투자, 기술혁신, 기업간거래, 국제거래, 기업구조변동(합병, 인수), 계열화(모회사, 자회사, 관련회사) 등이 의미있는 조사내용이 될 것임.

[그림 5-2] 기업의 구조



주: 보조단위: 인사, 회계, 구매, 창고 관리 등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체
 자료: 통계청, 「기업체통계작성 개선방안」

- 사업체가 생산의 기본단위라면 기업은 경영의 기본단위임. 따라서 좁은 의미에서의 투입·산출관계나 산업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사업체통계로 충분하겠지만, 기업활동에 관한 의미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기업통계의 작성이 필요함.
 - 자산(혹은 자본금) 규모별 사업체분포, 조직형태별 분포, 다변화, 시장력, 대외직접투자, 기업전략 등은 기업통계를 통해서 정확한 통계 결과치가 가능
 - 기업의 개념을 생산의 기본단위로부터 경영의 기본단위로 파악하는 추세가 높아지는 경향에서 기업단위 통계의 결여는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과 그 운동방향을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음.
- 기업에 대한 통계모집단의 부재로 국가기관의 기업관련 통계 작성 기반이 취약함. 정부 각 부처의 기업통계 작성 업무의 기반구축을 위한 모집단 자료로서 통계청에서 기업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 기업체단위 모집단 부재에 따라 표본조사의 모집단으로 사업체단위 활용이 불가피함. 이로 인해 산업은행,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기업체 통계 작성시 모집단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광공업통계조사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 노동부 등 기업체통계 작성기관으로부터 기업체단위 모집단 요청이 증대하고 있음.
- 외국에서도 산업구조통계에 있어서 기업통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일본의 경우 경영분석, 국제화관련 지표 작성 등 22종의 기업체단위 통계조사를 시행함. 기존의 모든 사업체대상가 기업체 단위로 집계될 수 있도록 사업체 특성항목(frame)에 기업에 관한 조사항목을 두고 있음.
 - 유럽에서도 기본단위를 기업으로 하고, 활동유형 및 사업체를 보조단위로 하는 기업통계 작성
 - ⇒ 기업경영분석, R&D, 기술혁신, 국제화 등
 - OECD 기업통계작성 매뉴얼
 - R&D(Frascati 매뉴얼)

- 기술혁신(Oslo 매뉴얼)
 - 국제화(Measuring globalization)
- 독일의 경우 기존의 사업체중심의 통계로서는 변화하는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기업 및 기업그룹에 대한 통계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하였음.
- 기업과 이들의 집합체인 콘체른·기업연합 등은 다변화되고 국제화된 경제에서 대표적인 기업조직 형태의 하나인데, 이러한 경제의 특징적 현상이 무시되어 경제현실과 구조, 발전동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결여된 채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함.
 - 연방통계청의 사업체, 기업대상 통계자료와 여타 국가 및 민간기업이 소유한 기업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기업 및 기업그룹통계를 작성함.
 - 연방통계청은 당초 기존의 사업체·기업 통계와 성격을 달리하는 새로운 기업 및 기업그룹 통계의 작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여타 경제부처 및 경제계·학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새로운 통계의 개발에 주도적 기관으로서 적극 동참함.
 - 이러한 기업 및 기업그룹 통계 개혁은 유럽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 구조·경쟁·중소기업정책수행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나.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기업체단위 통계는 기업경영분석 등 13종이 있음. 그러나 이들 통계는 대부분 사업체단위 통계를 단순히 집계한 것이거나, 기업활동의 일부 측면을 포착한 것에 불과함.
- 따라서 다수의 기업통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걸쳐 기업활동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업통계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기업통계 작성연혁

- 1998년 : 광공업 부문의 사업체 단위 조사결과를 기초로 한 기업체 단위 통계 개발
- 2000년 : 광공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에 대한 기업체 단위 통계개발. 기업체통계보고서 최초 발간
- 2001년 : 전기·가스·수도업과 통신업의 우편업부문에 대한 기업체 단위 통계 추가개발

〈표 5-7〉 기업통계 작성현황

	통계청	기타통계작성기관
- 작성통계	- 기업체통계(1종:생산지표, 매출액, 급여액, 부가가치, 유형자산)	· 경영분석(4종) · 기업경영분석 · 재무분석 · 상장기업부가가치분석 · 중소기업경영지표 · R&D(1종) ·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 국제화(1종) · 미시산업통계 · 기타(7종) · 정보통신산업실태조사 ·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 수출산업실태조사 · 전망조사(4종)
- 통계단위	· 광업·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활동유형 · 전기·가스·수도업, 통신업 : 기업체	- 기업체

□ 현재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산업구조통계 중 기업통계는 부분적으로 작성되고 있음.

- 산업구조통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체를 조사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분야(광공업)나 사업체를 조사단위로 하기 어려워

부득이 기업을 조사단위로 하는 분야(건설업 등)에 한해 기업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표 5-8〉 통계청 작성 기업통계 현황

	조사대상	조사단위	통계단위	조사항목
광업·제조업 (공장용)	종사자5인이상	공장	-공장 -기업체(1기업1사업 체용)	-생산관련자료 -자본금, 영업손 익, R&D, 무형투자
광업·제조업 (본사용)	종사자5인이상	기업체	-활동유형단위 -기업체(1기업다사업 체용)	-생산관련자료 -자본금, 영업손 익, R&D, 무형투자
전기가스수도업	주산업이 전기가 스수도업인기업체	기업체	기업체	생산관련자료
건설업	종사자1인이상 등록업체	기업체	활동유형단위	"
운수업	종사자1인이상 등록업체	기업체	활동유형단위	"
통신업	주산업이 통신업 인 기업체	기업체	기업체	생산관련자료, R&D, 무형투자

□ 광업 및 제조업부문 :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통계이나, 기업명부를 작성하여 기업단위로 통계치를 집계하여 공표하고 있음.

- 1996년부터 『산업총조사보고서』,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의 기업편을 별도로 작성·공표하고 있음.
- 충실한 내검을 통한 사업체통계의 정도제고와 기업통계의 목적으로 조사시 본사조사표를 따로 만들어 기업단위의 활동을 조사하고 있음.
- 조사단위가 원칙적으로 사업체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활동을 단순히 기업단위로 합산한 통계에 불과하므로 기업활동을 다면적으로 포착하는 진정한 의미의 기업통계로 보기는 어려움.
- 동일 기업내 사업체간 내부거래는 중복계산됨.

- 건설업부문 : 건설업의 특성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극히 어려움.
 - 건설업부문의 기업대상 조사는 조사상의 어려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조사내용은 사실상 사업체통계와 유사함.
- 통계청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체·기업 DB구축사업』이 완성될 경우 기업단위의 합산이 용이하게 되므로 조사대상 전산업에 대한 기업통계의 작성이 가능하게 될 것임.
- 통계청은 현재 기업통계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작성대상 확대 : 금년도(2003년)에 도소매 및 서비스업부문 (2001년 기준 도소매 및 서비스업총조사 결과 이용)추가
 - 도소매 및 서비스업부문은 연간조사가 표본이므로 5년 단위 총조사만 기업체통계 추가할 계획임.
 - 집계항목 추가 : 광업·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통신업부문의 연구개발비, 무형자산 추가 집계
 - 사업체단위 광공업통계조사를 기업단위로 연계 →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본사용)
 -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한 조사항목 추가
 - 본사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관할사업체 및 종사자수 추가
 - 광업·제조업 연계항목을 기업체고유번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교체
 - 매출액조사 항목 보완(광업·제조업부문→기업단위포함)
 - 기업체 모집단 구축: 기업체(법인) 명부 작성
 - 사업체명과 소재지, 대표자 등이 불명확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자료 수집 및 검토
 - 본사, 지사, 공장 등의 명확한 연계를 위하여 타 통계자료 검토(도소매 및 서비스업총조사의 본사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본사조사 등)
- 그러나 현재 통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계는 사업체단위 통계의 기업체단위 집계로서 본격적인 기업통계라고 보기는 어려움.

- 현재 진행중인 사업체·기업DB가 완성되더라도 기존의 사업체 통계를 기업 단위로 재집계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음.
- 기업활동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본격적인 기업통계는 새로운 통계의 개발을 통해 가능할 것임.

다. 개선방안

- 경제정책의 기초자료로서의 기업통계 수요에 부응하고, 여타 통계생산기관에 대한 기업통계 모집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통계의 개발이 필요
 - 기존 사업체 대상 통계의 개선
 - 새로운 형태의 기업통계개발 검토
- 기업통계의 포괄범위 및 기업명부의 충실화
 - 현재 일부 산업에 대해 작성하고 있는 기업통계를 통계청이 실시하는 모든 구조통계로 확대
 - ⇒사업체 및 기업 DB작업이 완성되면 자동적으로 가능
 - 기업명부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기업통계 충실화
 - 조사자료 외에 정부 및 민간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자료의 활용 강화
- 기업집단 통계의 개발
 - 우리나라의 산업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재벌(기업집단)에 대한 통계가 전무한 상태임.
 - 사업체 및 기업 DB 구축작업과 병행하여 기업집단 명부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
 - 1990년대초 독일의 기업통계 개혁작업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기업그룹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었음.
- 새로운 기업통계의 개발
 - 사업체 중심의 현재의 산업구조통계는 기업의 다면적 활동 가운데 생산측

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기업의 다양한 활동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서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체중심의 통계가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통계의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기업활동기본조사』의 벤치마킹

제4절 산업별 통계의 개선방안

1. 접근방법

□ 각 산업구조 통계가 안고 있는 문제와 그 개선방안은 대동소이함. 산업구조통계의 유형을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모집단자료적 통계(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 조사대상산업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되, 사업체 특성에 관한 기본항목 조사에 중점
- 전수조사적 산업구조통계(산업총조사,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 조사대상산업 전사업체(혹은 일정규모이상 사업체)에 대해 조사하되, 사업내용에 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항목 조사
- 표본조사적 산업구조통계(도소매업 통계조사, 서비스업 통계조사, 건설업 통계조사, 운수업 통계조사) : 조사대상 산업에 속한 사업체를 표본조사(일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하며, 사업내용에 관해 상세하고 구체적인 조사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하와 같이 중요한 몇 가지 통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여타 통계에 대해서는 이에 준하여 개선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조사체계·절차, 사업체·기업DB, 모집단자료적 성격, 사업체 특성 항목(frame)에 중점
- 광업 및 제조업통계조사, 산업총조사 : 조사체계·조사절차, 조사대상, 사업체 특성항목, 조사항목에 대한 정밀검토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센서스 : 조사체계·조사절차, 조사대상, 사

업체 특성항목, 조사항목에 대한 정밀검토

- 여타 통계(건설업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 등) : 이상의 통계조사 개선에 준하여 개선방안이 도출. 다만 산업별 특성을 감안한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2. 공통사항

- 현재 통계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대상 산업구조 통계에 대해서는 이하와 같은 개선사항이 바람직함.
- 사업체 특성항목 강화 : 사업체 특성항목(frame) 부분에 대한 조사항목을 개발·강화하여 통계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사업소·기업 통계, 공업통계조사, 서비스업기본조사, 상업실태조사, 특정서비스업조사 등의 통계조사항목을 벤치마킹할 필요
 - 기업 및 기업집단에 관한 사항
 - 기업조직형태에 관한 사항 : 개인기업, 법인(회사법인, 기타법인 등)
 - 내외국인 투자비율
 - 산업 혹은 사업체 입지에 관한 사항 : 공단구분, 매장 소재구분(대형소매점, 재래시장 등)
 - 기업간 관계 : 프랜차이즈, 체인점, 하도급관계 등
 - 무점포판매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거래
- 조사항목 일관성 : 통계간 조사항목의 분류, 정의가 일관성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종사자 분류, 부가가치 등 조사항목 및 정의에 대해 통계간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분야별 통계간 조사항목 및 정의의 일관성 유지 : 예를 들면 『사업체기초통계』와 『광업 및 제조업통계』간에 조사항목, 정의를 일관성 있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항목과 정의가 달라지는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논리로서 충분히 설명이 어려운 비일관적인 조사항목 혹은 정의도 적지 않게 발견됨.

- 동일분야 통계(총조사와 연간통계 등) 내에서의 조사항목 및 정의의 일관성 유지

□ 통계담당인력의 확충과 기획·개선 기능 강화

- 현재 통계청에서 작성되고 있는 모든 통계분야에 있어서 통계담당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본청인력 중심으로 담당인력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하며, 특히 기획·분석·개선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본사조사강화 : 통계조사의 정확성과 조사부담의 경감을 위해 본사조사를 강화하도록 함.

- 다공장기업, 지사, 분사, 영업소, 체인점 등 일정한 경영방침하에 통괄적으로 경영되고 있는 사업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이들 사업체에 대해서는 본사·본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강화하도록 함.
- 이들 다사업체 기업은 사업체별로 영업실적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영업내용(비용 등)을 사업체별로 배분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음. 이러한 경우 사업체 대상의 조사를 통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함.
- 사업체별 영업실적의 구분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몇 가지 기준(매출액, 종사자수 등)을 제시하여 이를 근거로 본사·본점으로 하여금 영업실적을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사·본점 조사는 상대적으로 조사대상자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쉬우며, 또 여러 개의 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으므로 조사효율도 크게 향상시킬 것임.
- 일본의 경우 『사업소·기업통계조사』 등 여러 통계에서 본사·본점을 통해 산하 사업체를 조사하고 있음.

□ 기업규모별·조직형태별로 조사항목·조사대상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 대형 사업체나 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활동에 관한 상세한 조사가 가능하나, 영세 개인사업체의 경우 상세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함. 영세 개인사업체의 경우 영업실적에 관한 기록이 제대로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에 대한 거부감도 강함.
 - 대규모사업체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표는 사업실적에 관한 상세한 조사항목을 두도록 하며, 영세사업체에 대해서는 조사항목을 간략화하도록 함.
 - 조사의 초점을 법인사업체에 맞추어 필요가 있음. 법인화의 진전이 아직 크게 미진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비법인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다면 통계의 대표성·포괄성·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비법인 사업체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정보는 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비법인 사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체 특성부분(frame 부분)을 강화하는 대신 조사항목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하도록 함.
 - 비법인 영세사업체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많이 활용하도록 함. 현재 서비스부문 연간통계에서는 영세사업체에 대해 표본조사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까지 확대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사 처리문제 :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순수본사·본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업분류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사·본점의 기능은 산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유사한 형태의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음. 이러한 순수 본사·본점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센서스의 사례에서와 같이 별도의 산업분류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체단위의 통계에서는 본점·본사를 별도의 산업분류에서 집계하도록 하고, 기업단위 통계에서는 주요 산업활동부문으로 통합하여 집계하도록 함.
- 조사방식에 있어서 현행 응답자 기입방식 중심에서 조사원 기입방식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조사항목과 기업사업실적에 대한 상세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조사표를 작성할수록 조사의 정확성이 높아짐.
 - 현재 대부분의 조사에서 조사원의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응답내용을 토대로 조사원이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은 조사원

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효율적임.

- 조사원이 상당한 정도로 훈련되어 있고, 또 응답자의 이해력이 낮은 시기에는 이러한 조사방식이 효율적이었으나, 응답자의 수준이 향상된 반면, 임시조사원들이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조사원들의 업무파악정도가 낮아지는 현실에서는 조사원 기입방식이 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음. 현재와 같은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 조사원이 조사항목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조사원 기입방식을 택할 경우 응답자가 편리한 시간에 조사표 작성이 가능하므로 응답자의 부담도 낮아질 것임. 반대로 응답자의 태만으로 인하여 응답률이 낮아질 우려는 있음.
-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조사원에 대한 교육시간이나 조사원들의 경험이 우리나라에 비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조사통계가 조사원 기입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조사원들은 단지 조사표를 배포·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함.
- 이상을 고려하여 조사방식은 조사원 기입방식을 중심으로 하되, 질문항목에 대한 이해력이 크게 낮은 일부 영세사업자에 한해 응답자 기입방식을 병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사업체(기업)대상 통계의 모집단적 성격을 가짐. 따라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충실화는 비단 이 통계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업체대상 통계 전체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현재 개발 중인 사업체 DB구축사업이 완성되면 통계기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임. 사업체마다 고유이력 자료를 부여하며, 현재 장소를 기준으로 부여된 ID를 사업체 기준으로 전환
- 통계조사의 규모에 비해 통계담당인력의 절대적 부족한 상황인 만큼 담당인력의 큰 폭의 증가가 필요함.
 - 현재 3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내년에 10-15명 정도의 일용직 확보를 계획중임.

- 통계 기획·개선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핵심 통계인력의 대폭적 증원이 필요함.
- 지자체의 통계기능 문제 : 이 통계는 형식상으로는 지자체가 주관이 되어 시행하고 있음. 지자체의 통계행정능력의 취약에서 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할 장치가 필요함.
 - 지자체의 통계기능의 취약 : 읍면동의 통계기능의 상실, 시군구 및 시도 통계조직 기능의 취약 등의 문제가 있음.
 - 현재 통계청에서 기술지원하에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약9천명의 임시조사원을 투입하고 있음.
 - 이 조사를 통계청이 수행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으나, 조사현장에 대한 정보, 응답자와의 관계, 지자체에 대한 통계행정 교육효과 등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이 지자체 주관으로 실시하도록 함. 그 대신 지방통계사무소를 통한 협조·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조사표의 설계에 있어서 사업체 특성항목 부분을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음.
 - 앞에서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듯이 사업체 특성항목을 강화하도록 함.
 - 특히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체뿐만 아니라 기업에 관한 정보, 기업집단에 관한 정보, 국제화에 관한 정보(외국인 투자비율, 수출활동, 해외투자 등), 사업체 입지에 관한 정보,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조사항목을 신설·보강하도록 함.
- 올바른 산업분류의 부여는 사업체의 소재파악과 함께 사업체기초통계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
 - 산업분류는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므로 통계전문가조차 산업분류 정확히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별 사업체에 대한 산업분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산업분류 부여가 일관성을 갖고 이루어지는가의 여부임.
 - 객관적으로 정확한 분류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산업분류 부여가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산업분류 매뉴얼을 풍요하게 할 필요가 있음.

⇒ XX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는 산업분류는 YY라는 식으로 산업분류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산업분류번호 자동부여시스템의 활용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초기에는 제대로 분류가 어렵지만, 기계적 처리인 만큼 학습효과가 빠른 속도로 나타날 수 있음.

□ 금융업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은 조사자료보다는 행정자료가 정확함. 일본의 경우 금융업 및 보험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있음.

- 이들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혹은 감독기관을 통한 조사를 검토하도록 함.

□ 철저한 내검의 필요성 : 사업체기초통계는 조사원이나 관리원, 또 담당 공무원 모두가 통계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대한 철저한 내검이 필요함.

- 내검은 조사현장에서 가까운 단계일수록 유용하나, 현재의 조사체계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함.
- 최소한의 내검만 하고 전체적인 수정은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내검을 통해 문제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있음.
- 조사체계를 고려할 때 통계청 본청중심의 내검은 현단계에서 불가피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사업체·기업DB가 완성되어 기업별 사업체가 잘 파악될 경우, 조사단위는 사업체로 하되, 조사실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일 것임(일본 사례의 벤치마킹).

- 일본의 사업소·기업통계조사에서는 본사와 산하사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본사에서 사업체단위로 조사
- 사업체별로 영업실적(본사에서 경리를 일괄하는 지점, 지소)이 조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체 명부에 의한 본사 일괄조사 실시

□ 조사항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통계의 기능을 모집단 명부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매출액 등에 대한 조사

는 조사거부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도 신뢰성이 매우 낮음.

- 사업체 특성(frame) 부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되,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은 가능한 한 축소

⇒ 정확한 내용의 조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사에 대한 거부감을 높이면서도 거의 의미 없는 조사결과가 얻어지고 있는 매출액 등의 조사항목은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 조사주기의 검토 : 현재와 같은 매년조사가 바람직한가, 아니면 수년 간격으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통계조사에 따르는 행정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면 매년 조사가 바람직함. 그러나 이는 행정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문제임.

3.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

가. 일반적 개선사항

- 광업 및 제조업부문 통계는 산업구조통계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을 이루는 핵심적인 통계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타 선진국에서도 제조업 부문 통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중점을 두고 통계업무를 행하고 있음.

-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은 일차산업 부문과 더불어 그 나라의 물적 생산기반을 형성하고 있는데, 산업화에 따라 일차산업의 비중은 매우 낮아지는 대신 제조업 부문이 산업의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음.

-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지만(우리나라의 경우 30%를 조금 상회), 서비스 산업 등 여타 산업들이 제조업 생산물을 중심으로 산업활동이 전개되고 있음. 따라서 제조업은 국민경제에 있어서 숫자상으로 나타나는 이상의 중요성을 가짐.

⇒ 도·소매업과 같이 제조업 제품의 유통을 담당하는 산업, 산업서비스업 등 제조업 활동의 투입요소로서 기능하는 산업 등

- 광업 및 제조업부문 통계는 산업구조 통계의 핵심에 해당하는 통계이므로 현재 산업구조통계로서는 통계청에서 가장 많은 8명이 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통계의 중요성과 업무량을 고려하여 인력을 대폭 충원한 필요가 있음.
 - 동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청의 담당인력이 최소한 20명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임.
- 통계의 정도 유지를 위한 조사관리·내검의 충실화 : 대규모 통계이므로 조사단계에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조사관리·내검의 충실화가 요구됨.
- 현재 입력·내검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내검토록 하고 있음. 내검에는 최근 3년치 자료를 활용
 - 금융감독원 자료 등 외부 자료를 이용하여 내검 : 5000개 기업 9000개 사업체에 대해 검사
 - 다양한 내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상 자료에 대한 체크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조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아울러, 조사원·지도원 단계에서의 내검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통계의 품질은 대개 이 단계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많음.
- ※ 일본 총무성 통계국 관계자의 의견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조사원 및 시정촌 단계에서의 내검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이 이상의 단계에서는 시정이 어렵다고 함.
- 조사단계에서의 통계인력 질적 문제가 과거에 비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조사의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조사원이 공무원에서 임시조사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장조사 정확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조사원 : 1200명, 주로 30대 대졸 가정주부
 - 하루 동안의 교육을 통해 조사 : 용어의 이해 등 난점. 특히 결산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조사에 대한 전문지식의 습득이 어려움.
 - 앞으로는 조사인력관리가 통계의 품질유지를 위해 중요 : 조사인력 관리프로그램 통계청에서 지원

- ☐ 통계조사단계에서 과거에 비해 부실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앞으로 통계청 본청의 기능이 중요
- 조사단계에서의 소홀함을 본청에서 보완하여야 할 것임.

나. 조사대상의 축소

- ☐ 현행 5인이상 사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함. 산업총조사에서는 4인이하 사업체에 대한 표본조사 병행
- 소사업체의 경우 조사내용은 매우 부실하나, 조사는 매우 어려움. 따라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통계의 정도를 유지하는 방안으로서 소사업체를 배제하는 방안 검토
 - 종사자수 5~9인, 10인~19인에 해당하는 사업체수는 전체의 각각 49.1%, 26.0%를 차지하고 있으나, 생산액 기준으로는 각각 4.8%, 13.8%,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12.4%, 1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5-9〉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 비중

(단위: 개, %)

종사자 규모	사업체수	생산액(%)	종사자수(%)	부가가치(%)	유형고정자산(%)
5~9	49.1	4.8	12.4	5.1	4.1
10~19	26.0	6.5	13.8	6.9	5.2
20~49	16.8	11.5	20.1	12.0	9.2
50 이상	8.1	4 77.2	53.7	76.1	81.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10〉 조사내용상 특이 사업체

종사자규모	1인당생산액 500만원 미만 (1)	1인당급여 500만원 미만 (2)	1인당 부가가치 500만원 미만 (3)	(1) or (2) or (3)
5~9	344	1864	846	2137
10~19	169	810	402	961
20~49	87	367	238	472
50 이상	32	94	97	149
전체	632	3135	1583	3719

주: 조업월수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임.

□ 소사업체를 배제하는데 있어서 2가지 선택대안

- 일정규모이하 사업체(예컨대 10인이하 혹은 20인이하) 사업체를 조사대상에서 완전 배제하고, 이들에 대한 통계는 사업체기초통계의 결과치를 활용하는 방안
- 일정규모이하 사업체에 대해서는 조사표를 달리하여, 약식 조사를 하는 방안

□ 소사업체를 배제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품목의 대표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해 본 결과는 이하와 같음.

- 2001년의 경우 조사대상 사업체 규모를 종사자 10인이상으로 할 경우 조사대상 사업체수는 현재의 절반 정도인 53,446개, 20인이상으로 할 경우 다시 그 절반인 26,279개 정도로 줄어듦.
- 조사대상 사업체 규모를 상향조정할 경우 조사에서 제외되는 산업 및 품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9인미만 사업체를 제거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조업 총생산액에 미치는 영향은 4%정도에 불과하며 조사에서 누락되는 산업 및 품목도 거의 발생하지 않음.

⇒ 산업의 경우 485개 세세분류산업중 3개, 품목의 경우 3,047개중 48개가 조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11〉 조사대상 사업체 규모를 상향조정할 경우: 대상 사업체수 및 산업수(2001)

조사대상 시나리오	사업체수	산업수			생산액(백만원)
		사업체수>=3	사업체수=2	사업체수=1	
5인이상 사업체	105640	469	8	7	585313330
10인이상 사업체	53776	462	8	11	556991236
20인이상 사업체	26279	443	12	19	518764836
50인이상 사업체	8534	365	35	33	451630369

〈표 5-12〉 조사대상 사업체 규모를 상향조정할 경우: 대상 사업체수 및 품목수(2001)

조사대상 시나리오	사업체수	품목수			출하액(백만원)
		사업체수>=3	사업체수=2	사업체수=1	
5인이상 사업체	105640	2717	170	169	561201788
10인이상 사업체	53776	2550	223	226	536816961
20인이상 사업체	26279	2258	252	335	502629560
50인이상 사업체	8534	1585	351	481	441229385

□ 전수조사대상에서 영세사업체의 배제 :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특히 10인이하의 영세사업체를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광업 및 제조업부문의 전반적인 통계의 포괄범위나 정도의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대신 조사 부담은 크게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조사부담 경감 효과를 통계의 질적 수준 향상에 투입한다면 통계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됨.

□ 조사범위 축소(영세사업자의 배제)에 있어서는 여타 정책의 영향 및 조정 문제가 수반되는데, 이에 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임.

○ 광업 및 제조업 통계는 산업구조통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 산업분야의 모집단 자료적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음. 따라서 이를 모집단 자료로서 사용하는 여타 통계 혹은 행정업무(예: 중소기업행정 등)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됨.

-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등 여타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자료의 공백을 매우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다. 사업활동의 다변화에 관한 보조지표의 작성

□ 기업 및 사업체활동의 다양화에 따라 전통적인 산업의 개념이 희미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각각의 산업이 갖는 고유의 특성은 낮아지게 됨.

- 기업(혹은 사업체) 규모가 커지고 사업활동이 다양화됨에 따라 단일 품목보다는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사업체)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산업에 따라 산업을 분류할 때에는 특정 산업이 여러 가지 이종 품목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짐.

⇒ 다변화의 진전에 따른 산업활동의 복합화(다품목생산기업, 다공장기업 등)

- 다변화의 정도가 심할수록 통계자료상에 나타나는 특정 산업에 대한 통계치(생산액, 출하액, 종사자수 등)에는 이질적인 산업활동과 관계된 통계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경우 주산업 기준의 통계치는 산업의 정확한 실상을 반영하기 어려움.
- 특히 기업체 통계의 경우 기업의 주산업을 중심으로 통계를 집계할 때 그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됨.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경제센서스의 제조업부문에서는 산업의 독립성·고유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특화도(specialization ratio)와 포괄도(coverage ratio)라는 지표를 활용하고 있음.

- 통계보고서에서는 특화도와 포괄도를 별도로 공표하지는 않으나 이 지표를 계산할 수 있도록 산업별 “주산업출하액”을 공표하고 있으며, 통계의 이용시 이 두 지표를 먼저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text{특화도}(SR) = \frac{\sum_i s_{iA}}{\sum_A \sum_i s_{iA}} = \frac{\text{주산업이 } A \text{인 기업들의 } A \text{산업 출하액}}{\text{주산업이 } A \text{인 기업들의 총출하액}}$$

s_{ij} : i 기업이 j 산업제품 생산액

t: A산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기업

$$\circ \text{포괄도}(CR) = \frac{\sum_{i \in I} S_{iA}}{\sum_i S_{iA}} = \frac{\text{주산업이 } A \text{인 기업의 } A \text{산업 출하액}}{\text{모든 기업의 } A \text{산업 출하액}}$$

□ 특화도와 포괄도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짐

- 특화도가 높다는 것은 당해 산업에 속한 기업(혹은 사업체)들이 주력산업 생산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당해 산업이 독립성·고유성이 높아 이질적인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함.
- 포괄도는 특정 품목이 주로 주산품으로 생산되는지 혹은 부산품으로 생산되는지를 보여주는데, 포괄도가 높을수록 특정제품이 기업의 주산물로써 생산되고 있음을 의미함.

□ 2001년도 광업 및 제조업통계상의 산업별 특화도 및 포괄도 현황

- 사업체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경우, 다변화로 인한 산업고유의 속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으나, 기업기준의 산업통계에 있어서는 특화도가 상당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포괄도도 특화도의 경우와 유사한 모습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표 5-13〉 특화도의 분포(2001)

(단위: 개, 억원, %)

특화도	사업체통계				기업체통계			
	산업수	비중	출하액	비중	산업수	비중	출하액	비중
0*	4	0.8	6,478	0.1	8	1.6	29,368	0.5
0.5 미만	22	4.5	371,417	6.3	28	5.8	454,733	7.8
0.5~0.7	28	5.8	302,694	5.2	50	10.3	831,610	14.2
0.7~0.9	201	41.4	3,547,026	60.6	217	44.7	3,442,094	58.8
0.9 이상	230	47.4	1,622,850	27.7	182	37.5	1,092,660	18.7

* 당해 산업에 속한 품목이 없는 경우이다. 예컨대 입가공업의 경우, 산업은 분류되어 있지만, 당해 산업에 속한 품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표 5-14〉 포괄도의 분포(2001년)

(단위: 개, 억원, %)

포괄도	사업체통계				기업체통계			
	산업수	비중	출하액	비중	산업수	비중	출하액	비중
0.5 미만	28	5.8	94,354	1.6	50	10.3	983,292	16.8
0.5~0.7	39	8.0	499,734	8.5	66	13.6	493,361	8.4
0.7~0.9	159	32.8	1,660,589	28.4	189	39.0	1,860,488	31.8
0.9 이상	255	52.6	3,589,311	61.4	172	35.5	2,483,955	42.5

〈표 5-15〉 특화도 및 포괄도의 분포(2001년)

(2001년)	특화도							
포괄도	사업체기준				기업체기준			
	0.5 미만	0.5~0.7	0.7~0.9	0.9 이상	0.5 미만	0.5~0.7	0.7~0.9	0.9 이상
0.5 미만		3	15	10	1	12	22	15
0.5~0.7	5	3	20	11	6	12	33	15
0.7~0.9	6	10	85	58	13	17	92	67
0.9 이상	11	12	81	143	8	9	70	106

□ 우리나라 광업 및 제조업통계에서도 통계이용자들이 특화도와 포괄도를 통해

산업의 고유성을 판별해 낼 수 있도록 주산업출하액 혹은 특화도·포괄도를 게재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공업통계조사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지표를 채택하고 있음.

4.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및 연간조사

가. 현황

□ 조사목적

- 국민경제에서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의 기본구조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수립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분야에 대란 시·군·구 단위까지의 지역통계를 작성하여 지역개발계획수립 및 평가자료로 활용
- 지역소득추계의 기초자료 및 사업체단위 통계조사의 모집단 자료를 제공
- 21C 디지털 경제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생산

□ 조사체계 및 방법

- 통계청에서 주관하며, 각 지자체(시·도, 시·군·구)에서 실시
통계청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사업체
- 조사원이 조사구내 대상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로 실시

□ 2001년 기준 총조사의 특징

-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를 병행 실시.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5년 주기의 도소매업·서비스업 총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조사대상처의 응답부담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량을 경감
- 통계환경변화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처: 읍면동의 통계기능 전환에 따라 임시조사원이 조사를 전담토록 하고, 조사원 10명당 조사관리자 1명을 채용하여 조사관리를 강화.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보조원을 지원하여 총조사의 원

활한 수행을 도모

- 전산출력조사표 사용 : 사업체명,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사업체의 기본적인 사항이 전산출력된 조사표를 사용함으로써 조사시간 단축 및 사업체의 조사누락을 최대한 방지

□ 운영인력(잠정) : 동 통계조사는 대규모조사이므로 총 20,673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음.

- 조사원 : 약 14,540명(예비조사원 제외)
- 조사관리자 등 : 3,339 명(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내검요원 등)
- 지도공무원 : 2,794명
 - 통계청 : 562명
 - 지자체 : 2,232명: 시도(70명), 시·군·구(570명)
통계기능 미전환 읍·면·동(1,592명)

□ 사업체의 구분

- 개인사업체 :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 및 법인격을 갖추지 않고 2인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
- 회사법인 : 상법상의 주식·유한·합자·합명회사를 말함.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법인으로 상법상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외국회사의 국내지사,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도 여기에 해당
- 회사이외의 법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 비법인단체 : 법인격이 없는 각종 협회, 조합, 동창회, 후원회, 문화단체, 노동단체, 종친회 등

□ 조사대상 사업체의 산업분류번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5자리를 채택하고 있음. 정확한 산업분류는 통계조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를 위하여 산업분류색인표(요약) 등을 활용하고 있음.

- 「사업내용」 및 「주요취급품목 및 영업종목」의 조사내용을 「산업분류

색인표」(요약)에서 해당산업분류 5자리까지 확인하여 기입

- 「산업분류색인표」(요약)에 없을 경우에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조사관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종합색인표」에서 산업분류 번호를 찾아 기입

나. 개선방안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국민경제적 비중이나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관한 정보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민간부분의 통계공급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통계청에 대해 통상의 국가통계기관의 기능 이상의 통계정보 요청
 - 도소매업·서비스업에 대한 정책수요: 체인점, 프랜차이즈, 무점포 판매, 피라미드식 판매, 외국인 투자 등
 - 사업체 특성부분에 대한 조사항목을 강화하여 이상과 같은 통계수요에 대응하도록 함.
- 본사조사 및 기업체 조사의 중요성 증대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지사, 지점, 영업소 등 다수의 사업체를 거느린 다사업체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음.
 - 또한 이 산업분야는 그 특성상 사업소 단위로 사업실적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에 대해서는 특히 본사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가능하다면 각 산하 사업체에 대한 사업내용을 본사를 통해 조사하도록 함.
- 품목구분 조사통계 필요성
 - 현재 기능 구분 중심의 통계적 성격이 강한데, 품목구분 통계적 성격을 강화하도록 함.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은 매우 다양한 업태가 공존하고 있으며, 영세사업자의

비중이 높은 산업부문임. 따라서 조사내용의 선정(조사표의 설계)이나, 현장조사가 매우 어려움.

- 이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통계의 역사도 일천하므로 아직 통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임.
- 이 산업분야에 대한 관심의 초점이나 정책과제도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분야의 통계와 같이 동일한 조사항목을 장기간 조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여건변화에 따라 수시로 조사항목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일부 조사항목의 선정이 즉흥적이고 여타 통계와의 일관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가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사항목의 선정에 좀더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함.

□ 대사업자·소사업자(영세사업자)를 구분하여 조사표를 설계할 필요성

- 특히 소사업자에 대해서는 무응답에 대한 imputation 개선 등 과제
- 기존 조사항목의 적합성 검토: 특히 영세사업자의 경우는 조사의 어려움에 비해 조사결과의 신뢰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조사항목을 더욱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음.

□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차등 조사: 법인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조사 필요

- 자본금(출자금)
- 다사업체기업
- 외국인 지분 등

□ 프리프린트 조사표 적극 활용: 영세사업자의 경우 조사부담 때문에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조사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미 실시하고 있는 프리프린트 조사표의 활용을 더욱 강화하고, 그 내용도 충실화하도록 함.

- 현재의 프리프린트 조사표(전산출력 조사표)는 조사부담 경감에 많은 기여를 할뿐만 아니라 조사의 정확성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 프리프린트 조사표에 포함시킬 내용을 더욱 개발하여 조사표의 내용을 충실화하도록 함.

- 도매업에 대한 조사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에 관해서는 제6장에서 논의하고자 함.

5. 건설업 통계조사

- 건설업 조사의 경우 「광업 및 제조업부문」 통계조사적 속성과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부문 통계조사적 속성을 아울러 갖고 있음.
 -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업 및 제조업통계조사 등의 개선방안에 준하여 개선안을 모색하도록 함.
- 건설업 통계조사의 경우 영세사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전수조사 부문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와 협력하여 조사를 실시하므로 여타 통계에서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인 과도한 조사부담과 조사의 정확성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에 놓여 있음.
 - 따라서 여기서는 건설업 통계조사에 국한하여 몇 가지 구체적인 개선안만 제시하고자 함.
- 전산조사(CD) 확대실시: 결산사항에 대하여 현행 종이조사표에 기입하여 이를 통계청에서 입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전산(CD)조사를 통해 전산파일을 전송(협회)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통계청에서 개선을 추진중인데, 이것이 완성될 경우 응답자 및 조사자의 조사부담의 경감과 아울러 통계의 정확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조사표 내검방법 개선: 통계조사의 정도 향상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통계청에서는 이하와 같은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분산(지방사무소, 본청)내검에서 집중(본청) 내검으로 전환: 내검요원의 집중 교육을 통한 내검 강화
 - 공종분류, 공사지역, 발주자분류 등의 정도 제고

□ 조사응답자의 응답부담 경감방안 연구

- 조사를 통해 수집하고 있는 건설업 통계조사의 결산항목을 건설사가 협회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대체 가능성 연구

* 이를 위해서는 재무제표의 표준화 양식, 항목별 개념·포괄범위 정립 등의 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임.

□ 건설업 통계는 재무제표를 근거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

- 행정통계를 이용하는 것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를 만드는데 중요

제5절 조사업무의 충실도 제고

1. 조사단계의 중요성

- 조사단계의 중요성: 우리나라 현행 사업체대상 통계는 거의 전적으로 조사대상자에 대한 직접 조사자료를 통해 작성되고 있음. 따라서 조사의 충실도는 통계의 신뢰성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됨. 통계청의 경우 조사원이 전체 인력의 3/4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전수조사의 경우는 내검과 데이터 체크 과정을 거쳐 별다른 오류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를 그대로 집계하여 결과물을 작성하고 있음.
- 표본조사의 경우에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승수를 적용하여 모집단의 통계치를 작성하고 있음.
- imputation 등 조사자료를 보완할 별도의 인위적인 통계기법은 활용하지 않고 있음.

- 통계조사가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사절차, 통계작성기관의 효과적 관리, 관리원·조사원 등 조사인력의 자질, 응답자의 협조·의식 등 조사와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반적으로 향상되어야 함.

- 조사절차: 조사기관의 조사목적이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고,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또 조사단계상에서 발생할 수 있

- 는 오류가 효과적으로 체크·교정 될 수 있도록 조사절차를 구축
- 조사절차에 대한 효과적 관리: 구축된 조사절차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감독을 적절히 실시
 - 관리원, 조사원 등 조사인력의 자질: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당해 통계조사 내용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짐과 동시에 조사대상자의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관리원·조사원 등 현장조사 인력의 자질
 - 조사대상자의 협조: 국가의 통계조사 취지를 이해하고 협조하여 자신의 사업체의 정보를 정확하게 응답하는 조사대상자
 - 이상의 4가지 요소가 갖추어질 때 조사의 정확성을 기대할 수 있음.
- 조사의 개선이란 이상의 4가지 요소에 대한 개선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단순히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요소, 국민 기질적 요소까지 포함된 문제로서 단기간 내에 획기적인 개선이 어려움.
- 통계조사항목, 정의 등은 기술적 부분은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고, 이를 즉시 조사에 반영할 수 있음.
 - 그러나 조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사절차를 구축하는 통계당국의 능력, 조사자 및 응답자인 국민 개개인의 지식, 성실도, 친절성 등 사회의 소프트·인프라적인 요소가 향상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또한 이에 대한 통계당국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사단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조사상의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통계조사절차, 관리의 개선·강화
 - 조사원의 책임감 및 조사대상자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의 모색
 - 통계조사의 부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

2. 사업체대상 통계 조사절차의 현황과 문제점

가. 조사절차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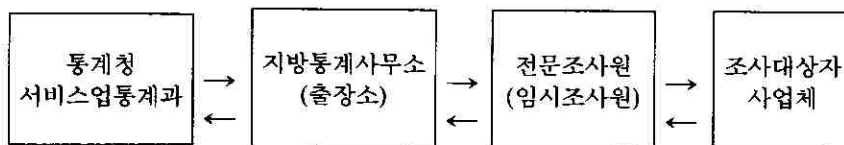
- ☐ 현행 사업체대상 통계에는 지자체를 통해서 조사되는 경우(대형조사)와 통계청 지방조직을 통해 조사되는 경우(소형조사)가 있음.
- 대형조사: 지자체가 조사를 담당하는 통계로서 조사규모가 크며, 일반적으로 통계청의 기술지도하에 지자체 공무원이 관리하며, 관리원 및 임시조사원을 고용하여 조사 실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 등
 - 소형조사: 통계청 지방조직이 중심이 되어 조사하는 통계로서, 조사인력이 부족할 경우 부분적으로 임시조사원을 고용하기도 하나, 통계청의 전문조사원이 주된 기능을 수행. 『도소매업통계조사』, 『건설업통계조사』, 『운수업 통계조사』 등

〈표 5-16〉 조사절차와 방법에 의한 통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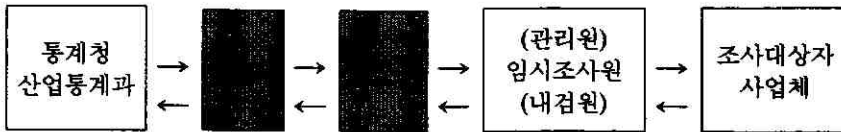
	대형통계조사	소형통계조사
조사체계	- 통계청 지도하에 지자체 실시	- 통계청이 실시
통계종류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산업총조사 -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센서스	- 건설업 통계조사 - 도소매업통계조사 - 서비스업통계조사 - 운수업 통계조사
조 사 원	- 임시조사원	- 전문조사원 - 소수의 임시조사원

☐ 조사체계:

- 소형통계: 도소매업통계조사



○ 대형통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대형통계의 경우 조사체계에 있어서 행정·관리면에서는 시도와 시군구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통계기능이 극히 취약함.

□ 일본의 조사체계: 사업소·기업 통계조사 및 공업통계조사

○ 형식상 『사업소·기업 통계조사』는 도도부현이, 『공업통계조사』는 경제산업성이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적으로 조사체계는 사실상 동일



※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시도 및 시군구에 해당하는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통계기능이 잘 정비되어 있음.

□ 조사절차는 종합시행계획, 조사지침서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대형조사의 절차: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사례

- ① 조사구 설정
- ② 본조사 요령 교육
- ③ 전산출력조사표 인쇄
- ④ 조사용품 수령
- ⑤ 준비조사
- ⑥ 실지조사
- ⑦ 조사표 전산입력 및 내검요령 교육
- ⑧ 조사표 사전내검 및 전산내검 실시
- ⑨ 자료제출

○ 소형통계의 절차: 『도소매업통계조사』의 사례

- ① 조사항목 선정 및 조사표 설계(통계청) : 통계청 내외 의견수렴 및 사업체에 대한 시험조사 실시
- ② 표본설계 및 대상사업체 보완 (지방사무소)
- ③ 조사표류 작성, 인쇄 및 배부
- ④ 조사담당자 교육: 지방사무소 조사담당 직원 및 임시조사원 대상
- ⑤ 본조사 실시
- ⑥ 조사표 내용검토, 입력 및 전송: 사무소 및 출장소 단위로 전산내검
- ⑦ 전산내검 및 질의조회
- ⑧ 결과분석 및 공표

□ 조사방법: 통계청의 사업체대상 통계조사는 응답자 기입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조사원 기입방식을 병행하고 있음.

- 조사원(통계청 조사직원 혹은 임시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와의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조사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사업체에서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는 조사원 기입방식 조사도 가능
- 일본의 경우 조사원 기입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조사원은 조사표 배부 및 수집업무와 함께 조사항목 체크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음.
- 응답자 기입방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사원이 조사항목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나. 현행 통계조사체계의 문제점

□ 체계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통계청은 다양한 절차, 매뉴얼, 교육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음.

- 통계조사 실시전에 『종합시행계획』, 『조사지침서』 등을 작성하여 통계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조사업무의 효율화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담당지지도 및 실사교육계획』, 『현장조사요령』, 『내검요령』 등 안내서를 작성하여 조사에 활용토록 하고 있음.

- 조사절차와 계획은 철저히 수립되고 있으나, 이것이 당초의 의도대로 충실히 진행되는지가 관건임.

□ 조사절차상에 나타날 수 있는 제문제: 공식적으로 수립된 조사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매우 어려움. 따라서 완벽한 조사계획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조사과정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예를 들면 조사원 교육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조사원 교육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교육내용이 조사원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혹은 그 조사원이 현장조사를 차질 없이 수행해내고 있는지는 제대로 평가가 어려움.
- 통계청에서 행하고 있는 『통계품질평가작업』에서도 조사상에 규정된 절차가 있는가, 또 이들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제로 이들 절차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가에 대한 평가는 소홀한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조사과정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실적 문제들을 통계담당 공무원의 시각보다는 조사현장에서의 조사원과 응답자들이 겪은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정리하고자 하였음.

- 통계청 홈페이지 참여마당 이용자 토론방에는 통계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원, 응답자들의 불만사항, 요구사항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음.
(<http://www.nso.go.kr/newcms/participation/want>)
- 여기서 표출되고 있는 불만과 요구사항은 표현이 다소 거친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 사업체대상 통계조사가 안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포괄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들의 불만 가운데는 입장 차이에서 오는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사항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현존하는 통계조사방법론의 문제를 적절히 지적하고 있음.

□ 이들 문제는 크게 ① 제도·절차상의 문제, ② 통계시행기관(통계청 및 지자체)의 문제, ③ 조사원들의 문제 ④ 응답자의 문제로 구분됨.

(1) 제도·절차상의 문제

- ☐ 국가기관간의 협조 미흡으로 행정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사업자들이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내용을 조사함에 따라 응답자들의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음.
- ☐ 통계응답부담 과중으로 인한 응답자의 거부감.
 - 통계청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유사한 내용의 조사를 하는데 따른 응답사업체의 부담과 이에 따른 거부감.
 - 조사시기가 특정 기간에 집중됨에 따라 시행 행정기관 및 조사원, 조사대상자의 부담 가중
- ☐ 지자체 통계담당 공무원 및 임시조사원들에 대한 교육 부족
 - 통계 조사의 목적, 취지, 조사방법, 응답자 대면방법, 조사항목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교육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조사과정의 혼란 및 공무원, 조사원, 조사대상자들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 발생
- ☐ 통계조사에 대한 홍보 부족
 - 통계조사 시행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응답대상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움.
 - 통계조사의 목적·취지가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여 통계조사에 대한 불신감 증대

제목: 학교통계 쉽고 정확한 방법 있습니다 (주기영, 2002/04/18)

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실장입니다. 어느날 통계청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학교통계 자료로 활용한다고 양해를 구하면서 학교기본자료, 예산등에 관한 내용(숫자)을 부탁하고 일일이 적어가더군요. 답답한 생각에 그런 자료는 이미 교육청에서 정확히 알고 있고 1년에 1번 교육통계라는것을 하는데 그것을 이용하면 될것같다고 하니 담당자는 자신은 그저 조사하러 나왔을 뿐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통계청에서 교육부를 통해 자료협조를 받아도 충분한 내용통 조사자가 일일이 다니는것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제목 : 이런 통계조사 뭐하려고 하나? (작성자: 화가 치민 조사원, 2002/05/01)

사업체의 사업주들은 대부분 왜 이 통계조사를 하는 지 이해를 하지 못했음.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으면 될 텐데 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엉터리 조사를 하고 있느냐 항의를 많이 함. 일부는 사업체 조사를 비아냥 거려 조사원들의 자존심이 구겨져 다음부터는 조사원을 절대 안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음.

제목 : 기초조사건에 대한 불만 사항 (작성자: 불타는 감자, 2002/04/11)

저는 회사원. 직급은 대리입니다. 오늘 조사원이 왔다 갔는데. 통계청이라며 다짜고짜 물어래서 불었습니다... 자료로 쓸거라며. 무조건 말해야 된다고 하는데... 감투 쓴양 딱딱하게, 이건 내가 죄 짓고 경찰에게 심문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니 말입니다. 협조 공문도 보여주지 않고, 신분증은 아예 제출도 하지 않고. 무조건 통계청이라고만 합니다.

제목 : 지도원들의 비애 (작성자 : 조사원, 2002/05/13)

저희구 담당 공무원 분은 통계조사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지도원들을 모욕하는 언사를 일삼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 까지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고 일을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라는 사람은 몇 시간씩 수다나 떨면서 그날 분량 빨리 끝내지 못한다고 닥달이나 했쥬고...

제 목 : 통계조사 홍보 좀 해주세요 (작성자 : 정영미, 2003/04/25)

해마다 하는 통계홍보 좀 해주세요. 인구조사는 매스컴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 사업체통계나 광공업 통계 등 비중이 없어서 그러는지 홍보가 부족합니다. 밖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깐 거부하는 사업장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광업 제조업 조사는 힘이 드는데 홍보 특히 시군에서현수막 구경도 할 수없어 너무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은 통계청 홈페이지 “이용자 토론방”에서 발췌한 내용임.

(2)국가기관의 문제

☐ 지자체 등 통계조사 시행 국가기관의 통계행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준비 불충분

- 대형통계의 경우 많은 지자체에서 통계조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전문성이 부족
- 통계조사 준비의 미비로 임시 조사원들의 시간 낭비
- 지자체 통계담당 공무원(조사관리자)의 무관심, 무성의

- 통계담당 공무원들의 자질 부족으로 인한 조사원들의 효과적인 관리 어려움. 조사원들에 대한 교육, 조사와 관련한 지자체 공무원의 지식 부족, 조사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
- 일관성 없는 일처리
- 통계조사결과의 조작
- 조사현실을 모르는 공무원

(3) 조사원들의 문제

☐ 조사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 및 애로사항

- 관리자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교육 등 어려움.
- 응답조사내용에 대한 관리자로부터의 조정 요구
⇒ 이는 심하게 말하면 조사조작에 해당하는 사항임.
- 응답자들의 협조거부 및 조사과정에서의 인간적 모멸감
- 과중한 조사부담과 낮은 보수

☐ 조사원들의 자질 부족

- 조사원들의 무례함
- 조사에 있어서 적당주의
- 조사표 작성에 대한 지식 부족

(4) 응답자의 문제

☐ 과중한 응답부담

- 통계조사수가 너무 많아 응답부담이 큼.
- 조사항목이 너무 세세하여 응답이 어려움. 특히 장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예: 고용형태별 종사자수 등)에 대해서는 응답이 곤란
- 지나치게 어려운 응답 항목

□ 사업체에서 응답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 응답 강요

- 지사나 지점에서 매출과 비용을 관리하지 않는데, 응답 강요
- 최근 많은 중소기업에서 회계처리를 회계사에게 위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체에서 응답강요

□ 응답자의 비협조

- 일부 조사항목(매출액 등)에 대한 거부감
- 통계조사에 대한 물이해로 조사에 거부감.

3. 개선방안

□ 현행 통계조사과정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제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되어 나타난 결과임. 제도개선이나 행정당국의 성의로서 상당한 정도의 개선이 기대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반면, 구조적·사회문화적 문제로서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부분도 적지 않음.

-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대형통계조사의 경우 조사내용에 대한 내검 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형통계조사의 경우 통계청의 전문조사원이 중심이 되어 수행되므로 조사내용에 대한 충실한 내검이 가능함.
- 그러나 대형통계조사의 경우 통계조사절차가 대부분 비전문가(지자체 공무원 및 임시조사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통계조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함께 내검의 중요성이 큼. 현재는 응답자→통계청에 이르는 부분이 공백상태에 가까움.

□ 장기적으로 국가기관간의 협조강화로 행정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 행정자료의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조사계획 설계가 매우 중요함.

- 행정자료로서 통계조사를 대치할 수 있는 부분

-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혼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방법: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표를 preprint할 수 있는 가능성 검토

□ 통계조사 종류 및 시기의 조정

- 통계조사시기에 대한 체계적 검토
- 정부전체로서의 국가통계 조사계획을 사전에 작성하여 당해 사업체에 통보하는 방안
- 기업규모에 따라 통계조사수의 상한치 설치

□ 교육의 강화·충실화: 통계조사 행정절차와 조사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통계조사과정은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접촉의 장이며,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상정한 교육이 필요함.
- 통계조사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대부분 주부로 이루어진 임시조사원들은 면접기법 등 대인관계에 특히 경험이 없으며 취약함.
- 특히 임시조사원들에게 통계조사항목과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은 이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이를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민간기업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화응대방법, 인터뷰 방법, 대인 에티켓 등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는 민간 강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통계조사에 대한 홍보 강화

- 통계조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조사대상 사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사전에 통계조사에 대한 협조요청 혹은 이와 관련한 정보가 전달된다면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임.
- 매스컴, 벽보 등 대량홍보수단과 아울러 통계취지와 협조요청을 위한 개별

적 안내문, 지난번 조사의 주요 결과에 대한 팸플렛, 당해 사업자의 업종정보 등 응답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 홍보수단을 강구

- 통계조사가 끝난 후 감사편지, 통계조사결과 우송 등

□ 지자체 등 통계조사 시행 기관의 전문성 강화

- 현재와 같은 지자체의 통계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에서는 지자체의 통계조사 전문성 강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효율적인 통계조사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통계기능 강화가 필요함.
- 통계조사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함. 지자체의 경우 이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통계청이 상세한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지자체에 보급할 필요가 있음.
- 통계조사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
- 통계조사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사항에 대응할 철저한 사전준비 및 문제해소 절차 명확화: 현재와 같이 지자체의 통계전문성이 낮은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대부분 통계청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음.
- 특정 의문사항에 대응하여 통계청이 필요한 것은 정확한 해답보다는 일관성 있고 명확한 유권해석임.

□ 조사원의 자질향상과 위상강화

- 통계담당 공무원들은 임시조사원들이 국가통계업무에 협력하는 귀중한 국가자원이라고 인식하여 이들에게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임.
- 조사원증 등 조사원들의 휴대품을 고급스럽고 품위 있게 만들 필요가 있으며, 복장, 에티켓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
- 조사원들의 숙련도 향상을 위하여 임시조사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들의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특히 조사가 완료된 후 이들에 대한 내부적 평가자료를 만들어 관리하는 방법도 검토
- 조사원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조사원 기입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함. 임시조사원들이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 기업회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오히려 전문성이 높은 응답자들이

조사표를 기입하는 것이 정확성이 높을 수 있음. 통계청은 이를 위한 간단한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

□ 조사원들에 대한 응답자 대응요령에 관한 집중적인 교육과 교재개발이 필요함.

- 조사와 관련한 교양교육, 에티켓 교육
- 조사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응답자들의 다양한 협조거부 형태를 상정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줌. 이와 관련한 조사원 매뉴얼 개발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 <표 5-17>에서는 조사현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질문과 응답자들의 조사거부 상황을 일본과 비교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더 현실감 있는 상황을 설정하고 그 대응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 조사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장의 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여론 수렴광장을 만들 필요가 있음.

- 통계청 홈페이지 “이용자 토론방”에서 통계조사와 관련된 각종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할 별도의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음.
- 2000년 인구주택센서스시 “센서스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한 바 있는데, 이를 좀더 상설화할 필요가 있음. (가칭)“통계조사현장”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통계담당공무원, 조사원, 응답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함. 이는 통계청의 통계조사방법의 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임.

□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종합색인표를 만들어 CD ROM으로 제작할 필요가 있음.

- 대형조사의 경우 통계조사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인력이 비전문가들이므로 다양한 종류의 의문사항이 제기될 수 있음. 이를 통계청에서 모두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DB를 구축하고 매년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함.
- 특히 표준산업분류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종합 색인표 CD를 만들어 여러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 회계를 거의 전적으로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위임하는 사업체가 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조류를 감안하여 조사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

〈표 5-17〉 조사대상자로부터의 예상 질문에 대한 한일비교

한 국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	- 이 조사는 왜 합니까 - 안하면 안되나요? 꼭 해야 합니까? - 어디서 조사합니까? - 바빠서 시간이 없는데... - 통계는 믿을 만 합니까? - 규모가 큰 사업체만 조사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종업원이 1-4명되는 영세업체 까지 조사합니까? - 작성한 자료가 세무관련 자료로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요? - 세무서에 다 신고했는데 그 자료를 이용하면 되지 또 응답해줘야 하나요? - 응답한 내용이 타 경쟁업체에 알려지는 것이 아닌가요?
	도소 매업 통계 조사	- 이 조사는 왜 합니까? - 안하면 안되나요, 꼭 해야 하나요? - 바빠서 시간이 없는데..... - 작성한 자료가 세무관련 자료로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요? - 응답한 내용이 타 경쟁사업체에 알려지는 것이 아닌가요?
일 본	공업 통계 조사	- 지금 바빠서 도저히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없어요 - 지금 세금신고 시기이기 때문에 기입에 필요한 관계서류가 회계사에게 가 있어 지금은 기입할 수 없어요 - 조사원의 설명도 듣지 않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거기 두고 가세요” 할 때 - 지금 책임자가 없어서 전 잘 몰라요 - 조사표를 제출하면 세무자료로 쓰이는게 아닌가요? - 비밀은 지켜집니까? 실제 어떻게 보고됩니까? - 조사표를 기입하려면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부탁해야 하는데 돈이 들어서 싫어요 - 우린 조사표를 기입할 직원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요. 조사가 너무 많으니 좀 줄여줄 수 없나요? - 회계는 전부 본사에서 하기 때문에 이 공장에서는 기입할 수 없어요 - 우리 같은 작은 업체에서 조사를 안해도 대세에는 영향이 없잖아요? - 작년에 찾아온 조사원이 형편없는 사람이라 싸움을 했어요. 이젠 협조 못해요 - 조사내용을 다른 사람이 볼지 몰라요. 구청에 직접 제출하면 안될까요? - 내용이 어려워서 조사에 협조할 수 없어요. 무슨 벌이라도 받나요? - 우린 협조해 드리겠지만, 다른 데서도 협조를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 우리 공장에서 제출한 조사표를 어디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 이 조사결과는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습니까? - 공업조사의 PR을 좀더 해야겠어요. - 조사표 작성시 의문이 있으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일본	상업 통계 조사	- 상업통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 조사 취지를 설명해주세요 - 관청은 서로 잘 통하니까 여기서 작성한게 정세 재료로 사용될지 모르니까 응답할 수 없습니다. - 조사표에 기입하기 위해서는 회계사에게 부탁해야 하므로 돈이 들어 조사에 응할 수 없습니다. - 본점에서 일괄 경리처리를 하므로 우리 가게에서는 기입할 수가 없습니다. - 정부나 지방행정에 불만이 많기 때문에 협력할 수 없어요. 국가나 현(우리나라의 도에 해당)은 대기업에게는 보조금 등을 주고 있지만 우리 영세기업에게는 뭘 해줬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 어떤 조사에도 결코 협조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있어요. 정부가 하는 일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게 무엇하나 없잖아요? - 비밀은 보호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호되고 있습니까? - 제출한 조사표는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 이 조사는 무엇에 도움이 됩니까? 또 조사 결과는 어떤 방면에서 어떻게 쓰입니까? - 조사료를 시청이나 구청에 우송해도 좋습니까? 또는 그 쪽에 갈 일이 있는데 직접 제출하면 안될까요? - 이 조사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또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습니까? - 우리 가게가 조사대상이 되었습니지만, 조사의 대상 범위를 가르쳐 주세요 - 우리 쪽 조사표는 상점가 자치회장이 일괄하여 써 드리겠다고 합니지만 괜찮습니까? - 상업통계조사 PR을 좀더 해주세요 (* 공업통계조사와 중복내용 제외)
----	----------------	---

자료: 통계청, 『2002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조사지침서』

통계청, 『2002년 도소매업통계조사 조사요령』

經濟産業省經濟産業政策局調査統計部, 『平成14年工業統計調査の手引』

經濟産業省經濟産業政策局調査統計部, 『平成14年商業統計調査調査員の手引』

4. 통계조사와 관한 일본의 사례의 벤치마킹

가. 조사의 중복 방지

□ 사업소·기업 통계조사와 산업별 통계조사의 통합실시

- 1991년 조사시 상업통계조사 간이조사와 통합실시함. 그러나 조사표는 별도로 조사원이 2종의 조사표를 사용하여 조사
- 1999년 사업소·기업 통계조사 간이조사와 상업통계조사를 1매의 조사표로 통합실시

- 2004년에는 사업소·기업 통계조사, 상업통계조사, 서비스업 기본조사를 통합 실시할 계획임.

- 2003년 6월 1일 기준으로 시험조사를 실시함.
- 시험조사표는 1매로 앞·뒤 면에 A, B, C란으로 구분되어 있음.

A란: 모든 사업체(1-8항목)

B란: 도매, 소매업체(9-10항목)

C란: 서비스업체(11-14항목)

□ 통계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중복의 시정, 조사결과의 공유화, 대규모통계조사(센서스)의 통합실시를 추진

- 사업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부전체를 통하여 개선함.

⇒ 총무성은 각 부성의 통계조사결과 및 이용가능한 행정기록을 활용하여 「사업소·기업 명부정보 DB」를 구축하여 기 조사내용을 포함하는 모집단정보의 통합관리를 수행하며, 각 부성은 통계조사의 대상선정시 동 DB를 이용하여 중복시정을 함.

⇒ 각 성청은 조사표 개별자료에 대해 상호 데이터 링크가 가능하도록 처리를 하며, 조사사항의 중복시정 등의 관점에서 공유화를 함.

⇒ 각 성청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집계결과의 DB화를 추진하여 카스미가 세키 WAN을 통해 조사결과를 공유함.

□ 조사대상자의 중복 개선을 위한 노력: 『조사객체의 중복시정조치의 실시, 동조치를 위한 상한치 설정 및 피조사이력 등록 절차에 대하여』(2002. 5. 29)

- 민영사업체·기업을 대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통계조사의 중복시정조치에 대해서는, 「국가의 행정조직 등의 감량, 효율화에 관한 기본적 계획」(1999. 4. 27 각의결정)을 기초로 추진해옴.
- 중복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통계조사의 범위에 대해 작성한 『국가의 통계조사에서 조사객체의 중복시정의 실시방법에 대하여』를 승인(2000. 12. 21)
- 중복시정조치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상한치의 선정과 피조사 이력의 등록절차 등에 대해 결정(2002. 5. 29)

□ 조사객체의 중복시정의 실시

- 사업소·기업 DB에 대한 중복시정조치의 처리가 2002. 6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각 성청은 2002년 7월 이후 민영사업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에 대해 중복시정조치를 실시함.
- 상한치의 설정: 조사객체의 중복시정의 상한치는 “개개 사업소·기업이 1년간 실시가능한 통계조사 회수”임. 조사실시시기와 중복시정 조치시기와 다르고 또한 전수조사, 표본조사, 계속조사(월별조사) 등의 영향 때문에 개개의 사업체·기업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상한치를 넘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상한치 수정은 정기적으로 실시함.

〈표 5-18〉 조사객체의 중복시정에 대한 상한치

조사객체의 속성구분	상한치
회사인 사업체	
종사자수 30인미만	16회
종사자수 30-100인미만	34회
종사자수 100인이상	60회
회사이외의 사업체	
종사자수 30인미만	16회
종사자수 30-100인미만	34회
종사자수 100인이상	60회
회사의 본사 또는 단독사업체	
자본금 1억엔 미만	30회
자본금 1억엔-10억엔 미만	50회
자본금 10억엔 이상	70회
모집단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사업체	70회

나. 통계조사 절차: 사업소·기업통계조사의 사례

- 기업·사업소통계조사는 도도부현이 통계조사 주체임. 통계국은 지도·조정업무를 담당
 - 통계국→도도부현→시정촌→(지도원)→조사원→조사대상자
 - “갑”조사와 “을”조사가 있는데, “갑”조사는 민간기업을 “을”조사는 공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함.

□ 시정촌(우리나라 시군구에 해당)의 역할 (“갑”조사의 경우)

- 조사전단계: 조사실시계획의 책정, 담당구역 지정, 조사관계 서류·용품의 수령 및 배포 준비, 지도원 사무협의회 및 조사원 사무협의회 개최, 홍보의 실시
- 조사실시 단계: 조사의 실시 지도 등
- 조사후 단계: 조사관계 서류의 심사

□ 도도부현(우리나라의 시도에 해당)의 역할

- 조사전단계: 조사실시계획의 책정, 시구정촌 직원 사무협의회 개최, 조사관계 서류·용품의 시정촌에의 배포, 홍보의 실시
- 조사단계: 조사의 실시상황의 파악 등
- 조사후 단계: 조사관계 서류의 심사 등, 조사관계 서류의 정리 및 제출, 입력지정사무, 컴퓨터에 의한 데이터 체크 처리, 전자계산기 처리 사무

□ 지도원의 역할

- 조사내용, 지도방법 등의 연구
- 조사원의 안전확보 지도
- 조사구 경계의 확인과 조사대상의 파악방법 지도
- 『조사구 사업소명부』의 보기·정정에 관한 지도
- 조사의 진행사항 파악 및 지도, 동행 등의 현장지원
- 조사곤란사업소에의 대응
- 조사관계 서류의 검사
- 조사관계 서류의 정리 및 제출
- 조사누락 사업소 및 조회사항의 재확인

□ 산업분류 부호의 부여: 통계의 생명은 정확한 분류체계에 있음. 『기업·사업소 통계조사』의 산업분류번호의 부여는 시정촌(우리나라의 시군구에 해당)에서 담당

- 도도부현(광역지자체)은 입력된 산업분류번호를 검토
- 통계국은 산업분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분류부호 기입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도도부현을 경유, 시정촌에 배부
- 산업분류부여는 컴퓨터에 의해 행하는 일부 도도부현(이하 “산업분류자동부여 도입 도도부현”이라 함.)에 대해서는 당해 도현이 산업부여를 행함. 또 정령지정 및 현청소재의 시에 대해서는 산업분류자동부여 도입 도도부현의 요청에 따라 컴퓨터에 의해 부여가 불가능하였던 사업소의 부여를 행하는 것으로 함.
- 사업소의 산업분류는 “조사표갑”의 ‘7 사업소의 사업의 종류·업태’란의 기입에 의해, 기업의 산업분류는 동표의 ‘15 회사전체의 주된 사업의 종류’란의 기입에 의해 부여하며, 각각 ‘7란 사업소의 사업의 종류·업태’ 또는 ‘15 회사전체의 주된 사업의 종류’란의 ‘시구정촌기입란’에 산업소분류번호(3단위)를 기입함.
- ‘7 사업소의 사업의 종류·업태’란의 ‘시구정촌기입란’의 우단1 단위는 ‘사업의 종류’란에 ‘관리사무만(00업)’인 경우, 그것을 식별하기 위한 부호로서 ‘1’을 기입함.

□ 산업분류 자동코딩 시스템

- 2001년 조사자료의 경우 47개 도도부현 중 14개 현에서 자동코딩시스템을 적용
- 일치율은 74.6%이며, 미일치된 25.4%는 수작업으로 분류부호 부여. 일치된 74.6%는 샘플 검사를 통하여 정확도를 판정
-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과거자료를 이용, 지속적인 용어사전(DB)의 확대를 하고 있으나, 방대한 자료량에 비해 일치율이 높지 않은 한계가 있음.

〈표 5-19〉 산업분류번호 기입을 위한 자료

자료명	내 용	이용방법
1. 산업분류 부여 설명지침서	설명회 실시방법, 산업분류 부여 수행방법, 의문사항 처리방법, 검사방법 등과 산업분류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일반원칙, 분류부여시 주의점 및 질의 해답 등을 정리한 것	설명자가 분류자에게 통일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 교육할 때 이용. 분류자는 [Ⅱ 산업분류 설명] 및 [Ⅲ 질의 해답]을 참고
2. 산업분류항목표	산업분류의 분류항목명을 번호순으로 배열하여 일람표로 한 것	산업분류 부여시 이용
3. 산업분류항목과 주요 예시	산업분류의 분류항목명을 번호순으로 배열하고 각각의 분류항목에 분류되는 예시(포함되는 것)와 틀리기 쉬운 예시(포함되지 않는 것)를 수록한 것	
4. 산업분류색인	제1부는 업종명을 50음순(가나다순)으로 배열하여 각각에 산업분류번호를 나타낸 것. 제2부는 정부관계기관·지방공공단체 관제기관 및 주된 민간단체를 기재한 것	산업분류 항목에서 분류할 수 없는 경우의 검색에 이용
5. 산업분류 분류항목 설명 및 내용 예시	산업분류에 대하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의 순으로 분류해설과 각각의 내용을 나타낸 것	산업소분류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이용
6. 산업분류연습문제집 및 산업분류연습문제 해답집	분류자에게 실제로 분류실습을 하고 연습문제 해답집에 의해 산업분류를 이해시키기 위한 것	산업분류 설명 후 실습하고 그 이해를 높이는 데 이용

자료: 통계청, 『제19차 한·일 통계협력회의 결과보고서』, 2003. 6

제6장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의 개선방안

제1절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에 대한 사회적 수요

1.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서비스업 비중 증대

- ☐ 서비스업의 포괄범위: 전통적인 산업분류 기준인 1차산업, 2차산업 및 3차산업 가운데서 3차산업이 광의의 서비스업에 해당함.
 - 1차산업: 자연으로부터 직접 생산물을 채취하는 산업. 농업, 임업, 수산업 등
 - 2차산업: 1차산업 산출물을 이용하여 생산물을 가공하는 산업. 제조업 등.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사업도 2차산업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함.
 - 3차산업: 무형의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산업. 유통업(도소매업, 물류업 등), 음식·숙박, 기업서비스, 개인서비스, 공공서비스 등
- ☐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서비스업의 비중 증대: 산업구조란 나라의 경제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구성을 의미하는데, 경제가 발전할수록 3차산업(서비스업)의 비중 확대.
 - 선진국일수록 1차 및 2차산업(농림어업 및 광공업)의 비중이 낮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음.
 - 세계최대의 농산물 수출국가이면서 과거 세계의 공업을 선도하였던 미국의 경우 농림어업의 비중은 2%에 불과하며, 서비스업이 72%를 차지하여 완전

히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되었음.

〈표 6-1〉 주요국가의 산업구조

(단위: %)

	농림어업		광공업1)				서비스업	
					제조업			
	1980	1998	1980	1998	1980	1998	1980	1998
한국 (1999)2)	15	5	40	44	28	32	45	51
미국 (1998)	3	2	33	26	22	18	64	72
일본 (1998)	4	2	42	37	29	24	54	61
프랑스 (1998)	4	2	34	26	24	19	62	72
영국 (1998)	2	2	43	31	27	21	55	67
덴마크 (1998)	5	4	29	29	20	21	66	67
중국 (1998)	30	18	49	49	41	37	21	33
인도네시아 (1998)	24	20	41	45	14	25	34	35
인도 (1998)38	38	29	24	25	16	16	38	46
태국 (1998)	23	11	29	41	22	32	48	48

주: 당해연도 가격을 기준으로 한 구성비임

1)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사업 포함

2) 한국은 1999년 통계치임.

자료: 『국제통계연감2000』, 통계청, 2000

□ 서비스 산업은 이를 구성하고 있는 산업이 다양한 만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산업의 특징도 다양함. 특히 국민경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부류로 구분할 수 있음.

- 첨단산업분야 서비스업: 소위 “신경제”(new economy)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산업발전을 선도해나가는 분야. 「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첨단산업분야는 그 자체로서 독자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부문과 여타 산업의 투입재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관련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두가지 부문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임.
- 전통적 노동집약형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등은 우리 경제의 저생산성·전근대적 산업부문의 중심을 이루는 산업분야. 지금

까지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으나, 국민들에 대한 고용기회의 제공, 소비생활의 다양화와 고도화에의 대응이라는 두 가지 점에서 앞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될 것임.

-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비스 분야: 공공행정, 의료, 교육 등 안정적인 국민 생활을 위해 경제성장과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서비스업 분야.

□ 광의의 서비스업을 구성하고 있는 산업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음.

- 도매 및 소매업: 도소매업으로 대표되는 유통업은 여타 산업과 반대로 그 자체가 고도화될수록 그 비중 및 부가가치가 축소되는 특징을 갖고 있음⇒ 생산자 및 소비자 잉여 증대와 연결되기 때문임.
- 음식숙박업 및 개인서비스업: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고용흡수력이 매우 높음. 이들 산업분야는 우리나라의 앞으로 고용측면에서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됨. 외식, 여행, 건강 등 국민생활의 향상과 함께 수요 증대
- 사업서비스업: 산업성장과 함께 획기적으로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로서,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부분과 여타 산업을 지원하면서 동반 성장하는 등 다양한 모습의 발전형태를 보일 것임.
- 통신업: 최근 전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의 중심이 되었고, 앞으로도 독자적인 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실히 할 것임.
- 공공·사회보장,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등의 산업분야는 전체적인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비례하여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

□ 서비스업의 중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서비스업 통계는 여전히 낙후되어 있음.

- 급변하고 있는 서비스업 산업환경 및 그 발전전략을 모색하는데 있어서는 이에 관한 기본적 통계가 필수적임.
-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업에 관한 관심이 극히 낮았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통계도 크게 취약한 실정임.
- 경제전체에 걸쳐 서비스업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통계청의 서비스업 관

련통계(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도소매업 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등)밖에 없는데, 이들 통계조차도 아직 안정상태에 있지 못함.

- 통계청 외의 여타 국가 및 민간기관에서 생산되는 서비스업 관련통계는 포괄범위도 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뢰성에 대해서도 확신하기 어려움.

2.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에 대한 사회적 수요

- 광의의 서비스업(도소매업 포함) 통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서 정책현안이 무엇이며, 산업적 특징이 무엇이며, 통계수요자들이 어떤 정보를 원할 것인가를 예견하여야 할 것임. 최근 서비스업을 둘러싼 정책 및 산업환경 변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경우 광의의 서비스업 통계에 대한 수요는 줄어든 것임.

- 국제화·개방화
 - 투입물로서의 정보기술 비중 증대
 - 사이버화·네트워크화
- 대형화(특히 유통업 분야)
- 현대적 유통기구의 성장과 전통적 유통기구(재래시장, 구멍가게 등)의 몰락
- 신종 사업의 등장
- 고용흡수, 직업창출 기능
- 국제화·개방화: 국제적 경제흐름의 자유화는 GATT, WTO 등 다자간 협상에 있어서 최대의 명제였음.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로운 시장접근(market access)으로부터 국제무역이 곤란한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로운 시장활동(market presence)으로 점차 논의의 초점이 옮겨졌음.
 - 1990년대 후반 다자간 협상은 서비스업 개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서비스분야에 있어서 급속한 대외개방이 이루어졌음.
 - 유통업, 금융·보험업 등에서 외국계 기업의 진출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통

신 등 첨단 성장산업 분야에서는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자본참여가 확대되었음.

- 특히 유통업 분야에서는 내국계 기업과 외국계 기업간의 시장쟁탈을 둘러싼 일대 격전이 벌어지고 있음.
- 광의의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늘어나고 있음.

□ 정보화: 국제화·개방화와 함께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또 다른 화두는 정보화임. 특히 유통업을 중심으로 정보화는 기존의 산업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다시피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화는 ① 서비스산업의 투입물로서의 정보화의 역할, ② 정보화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활동의 전개, ③ 산업으로서의 정보 시장의 입지 강화 등 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 투입물로서의 정보부분의 비중 증대: 유통산업 및 금융업에서의 정보화 급격한 진전. 부가가치통신망(VAN)을 통한 정보의 수집·교환 및 네트워크화(EDI 등), 판매시점관리(POS), 항공권의 예약과 발권, 신용조회시스템, 전자자금이체(EFT) 등
- 사업활동의 사이버화·네트워크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기업간 거래의 네트워크화 등
- 정보의 산업화: 정보 자체가 독립된 시장을 형성함. 문화산업, DB산업, 정보처리업, 부가가치통신업, 소프트웨어산업 등

□ 대형화: 소매업 및 일부 개인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대형화·체인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산업 및 고용구조의 급격한 재편이 나타나고 있음.

- 유통업 분야에서 대형소매점(할인점, 쇼핑센터, 백화점, 양판점, 하이퍼마켓 등)의 진출이 현저해졌으며, 전통적인 재래시장, 구멍가게 등 영세유통업은 급속히 위축되고 있음.
- 음식점, 개인서비스업 분야에서 체인화, 법인화 등 대형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

□ 신종업태의 등장: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 사업체의 대형화, 정보기술의 발달 등

의 영향으로 새로운 업태의 진출이 현저함.

- 정보기술, 사이버 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사업 등장
- 사업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업종 등장: 기업경영의 경량화에 따른 외주의 증대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서비스업 등장
- 가계의 소비패턴 변화, 생활환경 변화로 개인서비스업의 활성화
- 유통분야 등에서 거대 유통기업간의 각축 가운데서 틈새시장을 노린 신종 업태: 다단계판매,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무점포 판매, 편의점, 회원제 창고점, 전문할인점 (category killer) 등.

□ 국민경제의 고용안정 돌파구로서의 서비스업의 역할: 단기적인 경기의 호·불황에 관계없이 앞으로 국가전체의 고용사정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고용의 상당부분을 서비스 부문에서 소화할 수밖에 없음.

- 그 동안 산업부문에서 가장 크게 고용을 흡수하였던 제조업이 이미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용을 방출.
- 제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고용을 흡수하고 있는 도소매업 부문도 유통혁명에 따른 효율성의 향상으로 오히려 고용이 축소
- 공공부문에서도 더 이상의 고용흡수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의 대부분의 신규고용은 서비스업 부문에서 흡수하여야 할 것임.
-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은 여타 산업에 비해 독특함: 소수의 핵심인력과 주변부의 불안정한 고용(임시직, 비숙련직 등)

□ 경쟁양태의 변화: 과거의 수직적 경쟁관계에서 수평적·다면적 경쟁관계 성립

- 과거의 경쟁은 제조업체간의 경쟁이었으며, 유통업 및 서비스업은 이러한 제조업체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장이었음.
- 유통업의 발전으로 유통업체간 경쟁, 상권간 경쟁, 업태간 경쟁, 유통업과 제조업간의 경쟁 등 경쟁형태가 좀더 수평적이고 다면적인 형태로 진전
- 과거의 제조업중심의 수직계열화의 붕괴 움직임: 도매기능, 덩핑시장 등의 약화

제2절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새로운 통계수요에 대응한 통계의 공급

- 앞에서 지적한 바 있는 광의의 서비스업에 있어서의 국제화·개방화, 정보화, 사업의 대형화, 신종사업의 등장 등과 같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변화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의 공급이 필요함.
 - 선진국의 경우 이와 같은 통계는 당해 산업정책당국이나 민간에서 작성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을 제외하고는 이를 감당할 정부 혹은 민간기관이 부재
- 이상과 같은 통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기는 어려우며, 기존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를 개선하여 이들 수요에 대처하도록 함. 현행 통계조사에서 사업체 특성부분(프레임)을 보완한다면 이러한 목적을 상당부분 충족할 수 있을 것임.
 - 회사법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비율, 국적 등 조사항목.
 - EDI, POS 기타 다양한 정보화 기술 도입 조사항목 강화: 현재 조사되고 있는 항목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전자상거래 항목부분 강화
 - 기업통계 작성
 - 사업체 소재지(백화점, 할인점, 쇼핑센터, 재래시장 등) 항목
 - 이상과 같은 사업체 특성항목은 추가적인 큰 조사부담 없이 조사가 가능할 것임.
- 모든 통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칙이지만 특히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통계』의 개선에 있어서는 정책담당부서 및 학자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광업 및 제조업부문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책당국이 관심을 갖고

정책개발에 노력해왔고, 또 이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도 많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이 산업분야의 과제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통계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무언의 합의가 형성되어 있음.

- 그러나 유통 및 서비스부문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정책과제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지식이 축적이 아주 얇은 상태임.
- 이러한 이유로 통계당국과 정책당국간의 인식의 괴리가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통계정보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할 우려가 큼. 이는 통계에 대한 정책당국의 무지, 또 산업의 현안 과제에 대한 통계당국의 무관심이 상호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계조사 준비단계에 있어서 정책당국자(농림부, 산자부, 공정위 등), 연구자, 통계담당자들 간의 실질적인 협의가 필요함.

2. 조사시기의 조정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결과는 이들 산업분야에서 기본통계적 성격을 가지므로, 여타 통계의 모집단 통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도소매업 판매액 지수와 서비스업 활동지수 개편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
 -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등 거시경제통계 작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음.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가 이들 산업분야의 기초통계로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통계를 기초자료로서 활용하는 여타 통계의 작성에 있어서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함.
 - 현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는 1자, 6자 연도를 기준으로 2자, 7자 연도에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통계는 0자, 5자 연도를 기준연도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들 통계의 개편에 있어서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결과가 충분히 활용되기 어려움.
- 조사시기 조정의 필요성: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

해서는 이 조사결과를 여타 통계에서 기초자료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사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행정적 부담 및 임시조사원 채용계획에 문제가 없다면 조사대상 연도를 0자, 5자 년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본의 경우 총조사의 대상년도는 통계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국민계정의 개편이나 여타 통계개편을 위해서는 별도의 많은 종류의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총조사를 특정 연도에 맞출 필요성은 낮음.
-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 통계에 의해 이러한 모든 통계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총조사의 시기조정이 매우 중요함.

3. 조사항목

□ 총조사와 연간조사간의 조사항목 차이 조정

- 총조사와 연간조사간에 조사항목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조사항목의 차이는 조사체계의 차이 등 불가피한 사유에서 오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나, 가능한한 차이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 총조사와 연간조사의 기능 분담: 총조사와 연간조사간의 기능을 적절히 분담하여, 총조사에서는 가능한한 기본적인 사항의 조사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며,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조사는 연간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총조사의 경우 조사대상 사업체(특히 영세사업체)가 너무 많아 세부사항에 관한 조사가 어려움.
- 연간조사의 경우 집중적인 조사가 가능함. 조사대상 사업자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조사체계에 있어서 통계청이 직접 담당하며, 조사인력도 통계청의 전문조사원이 투입되므로 조사의 효율성 및 정확성도 훨씬 높다고 판단됨.

□ 조직형태에 따라 조사항목을 달리하여, 특히 회사법인에 대해 경영실적 관련항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금까지의 총조사에서는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연구개발비, 유·무형 자

산 등과 같은 경영실적 관련 항목을 조사하였음. 연간조사에서는 조직형태에 따라 특히 법인 및 재무제표 작성 개인사업자에 대해 상세한 경영실적을 조사하였음.

- 영세 사업체나 장부 미기장 사업체의 경우 응답자의 기억에 의한 조사가 불가피하여 응답내용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한계
- 법인과 비법인에 대해 조사내용을 달리하여 개인사업체에 대해서는 조사항목을 대폭 축소하도록 함. 매출액·비용·이익 항목을 단순화하고 자산항목은 폐지 등
- 만약 필요하다면 비법인에 대해서는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 사업체에 대해서만 상세한 사업내용에 관한 조사를 시행하도록 함.
- 법인 사업체에 대해서는 조사항목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기업통계 등 사업체 프레임 부분 보강

□ 사업내용에 관한 조사항목에 있어서도 내용을 좀더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상업통계조사』나 『상공업실태기본조사』 등은 좋은 벤치마킹이 될 수 있을 것임.

- 상업통계조사(경제산업성)
 - 상품판매형태(소매업 한정)의 구분: 매장판매, 방문판매, 통신·카탈로그판매, 자동판매기에 의한 판매, 기타 판매(피자의 택배, 배달원, 생활협동조합의 공동구입방식 등)
 - 셀프서비스방식의 채용 유무
 - 영업시간 등
 - 손님전용주차장의 유무 및 수용대수
 - 체인 조직에 대한 가맹 유무
- 상공업실태 기본조사
 - 상품 등의 판매처(법인, 개인)별 비율
 - 상품구입처(법인, 개인)별 비율
 - 외주 및 수주 현황
 - 연구개발비, 공업소유권
 - 해외활동 현황

- 해외자회사 등의 소유현황
- 정보화 현황: PC(LAN 연결 여부), 컴퓨터 네트워크 이용형태, 정보시스템의 종류
- 共同化 등의 현황: 공동사업 현황, 단체가입 현황, 체인점가맹 현황, 경쟁관계 현황

4. 조사대상

가. 본사조사의 활용 강화

- 현행 조사에 있어서는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많은 조사상의 애로가 나타나고 있음.
 - 자본금, 자산, 매출액, 이익 등 기업단위로 집계되는 경영 및 사업실적에 대한 조사가 어려움.
 - 단일 기업에 속해 있는 수많은 사업체를 조사함에 따른 조사부담의 가중 및 조사과정에서 일관성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사조사를 강화하도록 함.
 - 법인기업의 경우 본사조사를 원칙으로 함. 본사조사에 있어서는 조사원 기입방식을 채택하도록 하며, 인터넷 조사를 원칙으로 함.
 - 이를 위해서는 현재 통계청에서 추진 중인 사업체·기업 DB 구축작업이 완성되어야 할 것임.
 - 체인점, 프랜차이즈점 등에 대해서는 기업에 속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서도 본부조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사업체별로 경영실적을 조사하기 어려운 다사업체 기업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조사를 하되, 사업체별 배분은 본사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사에서 사업체별 배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매출액, 종사자수 등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함.

나.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체계 개선

-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 대해서도 조사원에 의한 조사체계를 채택하고 있음.
 -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은 일반 사업체와는 상당히 상이한 회계체계를 갖고 있어 조사에 어려움.
 - 국가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체와 동일한 조사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정부기관간의 협조미흡 등 외부적 평가가 좋지 않음.
 - 조사원 등의 문제, 조사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차원의 엄격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들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 실제 조사가 필요하다면 감독관청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 학교 등 공공기관, 국공립 의료기관, 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표를 만들어 감독기관을 통해 조사
 - 일본의 『사업소·기업 통계조사』의 경우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을” 조사표(“갑” 조사표는 민간 사업체)를 사용하며, 행정기관을 통한 별도의 조사 채널을 갖고 있음.

다. 금융보험업에 대한 조사

- 2001년 기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과 교육서비스업까지 조사대상 산업을 확대
 - 금융·보험업의 경우 수많은 지점, 영업소 등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체별로 실적을 집계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음.
- 또한 금융·보험업에 대한 통계는 감독기관 등에 잘 정비되어 있으므로, 통계청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에서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을 수 있음.

- 금융보험업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정보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상세하게 파악되어 있음.
 - 그러나 감독기관 등에 의해 행해지는 금융기관에 대한 통계정보는 자산규모와 그 흐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통계청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와 같이 범용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기 어려운 한계도 아울러 갖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에서 금융·보험업에 대한 조사는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함.
- 금융·보험업에 대한 통계조사는 감독기관 및 본사조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함.
 - 금융·보험업에 대한 조사는 감독기관을 통해 행하도록 하며, 본사의 책임하에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함.

라. 도매업에 대한 조사 필요성

- 1990년대부터 급격하게 진행된 유통구조변화(그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또 변화패턴이 과거와 현저히 다르므로 “유통혁명”이라고까지 일컬어지고 있음)로 유통업 전체의 구도가 큰 변화를 겪고 있음.
 - 전통적으로 유통단계는 생산부문(1차산업, 제조업)→도매업→소매업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유통단계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유통구조의 변화로 이러한 기능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음.
 - 정보화, 대형소매점 등의 등장으로 유통기구의 단축이 이루어졌으며, 전통적으로 상류(생산부문)에서 하류(소매업)로 전달되는 교섭력이 거꾸로 하류로부터 상류로 작용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소매업 부문의 교섭력이 강화되었음.
 - 반면 도매업은 그 고유의 기능을 상실해가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게 됨. 독립적인 유통기구로서보다는 물류기능 등 생산부문의 일부로서 편입되거나, 생산부문의 일부로부터 분리되어 유통체질을 보완하는 기능이 강해지고 있음.
- 최근 들어 이와 같은 전자상거래의 확산, 대형할인매장과의 직거래 등으로 도매업의 개념이 많이 약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일본, 미국 등 여타 국가에 비해 도매업의 비중이 낮았음.
 - 그러나 낮은 도매업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조업에 의한 유통지배 등 수직적 유통구조(유통계열화 등)에 대해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었음.
 - 1990년대이후 유통업의 개방, 대형화 등 급격한 구조변화의 진전에 따라 제조업에 의한 유통업의 지배는 급격히 퇴색했으며, 이에 따라 도매기능에 대한 관심도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음.
- 대규모 소매점의 등장, 제조업에 의한 물류 혁명 등에 의해 도매업과 소매업의 구분이 애매해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도매업에 대한 통계조사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이는 단순히 도매업에 대한 통계조사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업에 대한 산업분류체계의 조정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문제임.
- 이 단계에서 도매기능이 취약해지고 있다고 하여 바로 통계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과거 통계와의 연계성,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 조사는 지속하되 도매기능을 좀더 세분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대리점, 직영점, 물류기능 등 도매기능을 몇 가지로 유형화하여 품목과 기능을 동시에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산업분류체계의 조정

5. 기타 개선사항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수가 많으므로 불가피하게 무응답 혹은 항목누락 사업체가 발생하고 있음.
- 무응답 사업체나 항목 누락 사업체의 경우 어떻게 실적관련 사항들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무응답 사업체의 처리에는 이하와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체수에는 포함시키되, 실적사항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
 - 사업체수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실적사항도 *imputation*을 하여 추정하는 방법
 - 첫 번째 방법은 조사내용에 대해 인위적 조정을 않는다는 장점과 함께 사업체 실적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두 번째 방법은 그 반대의 장단점이 있음.
 - 우리나라는 현재 첫 번째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무응답 사업체의 비중이 크지 않는 한 *imputation* 기법을 사용하지 말고 집계 결과를 토대로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imputation*의 경우에는 조사결과에 인위적인 조정을 가한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통계공표시 조사된 집계결과만을 발표하되 무응답 사업체수를 적시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무응답 사업체 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imputation* 기법의 사용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제7장 **요약 및 제언**

제1절 요약

1. 사업체 대상 통계조사의 현황과 문제점

가. 현황

- 국내 사업체 및 기업체 관련 통계 중 통계청에서는 대부분 사업체 관련 통계를 조사
 - 2003년 현재 통계법에 의거하여 승인된 사업체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되는 통계는 78종임
 - 이중 통계청에서는 18종을 조사하고 있는데, 건설업관련 3종만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15종은 모두 사업체 대상 통계임
-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청은 주로 여러 산업을 포괄하는 기초 통계적 성격의 산업구조통계를 조사
 - 조사항목이 다양해야하는 1차 산업의 경우에는 센서스 성격의 총조사를 실시하여 통계를 작성
 - 산업의 구조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2차와 3차 산업의 경우에는 대

부분 총조사와 연간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함으로써 구조변화에 대한 파악을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조사

- 단일 산업에 관한 조사는 관련 산업이나 업종의 협회나 단체에서 주로 조사

□ 통계청 통계조사 중 2차 산업과 관련 조사는 전체 산업을 포괄하는 산업총조사와 광업과 제조업을 상세 조사하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로 대별됨

- 5년 주기의 산업총조사는 광업, 제조업 이외 전기업, 수도업, 가스업 및 증기온수공급업을 조사범위로 하고 있고, 조사대상도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로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5인 이상 조사대상을 포괄
- 조사방법은 두 조사가 대부분 응답자 기입방식의 전수조사로 실시되고 있지만 산업총조사의 경우 전기업, 수도업, 가스업 및 증기온수공급업에 대해서는 우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조사범위나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두 조사가 겹치는 해에는 산업총조사로 대체하고 있음
- 조사항목의 경우에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총조사와 별 차이가 없이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음

□ 3차 산업관련 통계청 통계조사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도·소매업동태조사, 서비스업동태조사 등 총 5종으로, 사회간접자본을 제외한 광의의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조사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는 5년 주기의 전수조사로서 센서스의 성격을 가지며, 표본조사로는 자료파악이 곤란한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시·군·구 단위까지의 세분된 지역통계를 조사 작성
-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는 매년 일정수의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해당산업별 경영실태 및 구조변화를 심층적으로 파악
- 도·소매업동태조사, 서비스업동태조사는 월간주기도 작성되는 표본조사로서 해당사업체들의 판매현황을 파악하여 소비·경기동향을 조사 분석
- 조사대상범위, 조사항목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용목적에 적합한 자료를 이용

나. 문제점

- 통계청의 산업구조통계조사는 작성주기와 시기가 서로 달라 조사간 통일성을 유지하거나 통계 조사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대표적인 경제센서스 조사라고 할 수 있는 산업총조사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의 경우 조사시기가 끝자리가 3, 8자인 해와 2, 7자인 해로 서로 달라 활용도가 크게 저하됨
 - 산업별 장기 추세나 세부 지표를 얻을 수 있으나 특정 년도에 대해서 전체 경제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조사 방법에 있어서도 전수조사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일부 조사 대상에는 조사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비효율성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영세 사업체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는 대규모 사업체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정확한 조사에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
- 산업구조관련 통계가 많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기본적 경제통계들이 질적으로 신뢰성 높은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기준연도만큼은 전수조사에 입각하여 작성되는 기초통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통계 기준에 있어서도 기준, 분류 체계 그리고 구성 항목에 통일된 기준이 없어 자료의 활용에 문제가 있음
 - 대표적으로 종사자의 경우 산업별로 5대 분류와 3대 분류가 혼재되어 있고 분류도 통일되어 있지 않음
- 통계조사별로 차이가 있는 부가가치의 산출식은 무조건적인 통일보다는 산업별 부가가치의 창출과정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산업별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조사하는 방법은 그리 쉽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초적 통계조사가 마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측면도 고려되어야 함

- 센서스 성격을 지닌 산업총조사와 도소매 및 서비스 총조사의 경우 모든 사업체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복잡하고 세분된 사항까지 조사하고 있어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음
 - 모든 업체에 대해 동일한 조사항목으로 조사를 실시함으로 인해 영업실적과 관련한 세부항목의 경우 자료수집 자체가 곤란한 문제도 발생
- 총조사는 기본적인 항목과 최소한의 항목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특화된 연간조사 등에서 세부항목을 조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체는 세부항목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영세사업체는 간단한 항목으로 표본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산업을 포괄하는 기업체단위 통계조사의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경영실적 관련 자료가 부족한 상황임
 - 연구개발비, 유·무형자산 등과 같은 항목은 본사에서만 파악이 가능하나 사업체 단위 조사에서 동 항목을 포함시킴에 따라 세부내용 파악이 곤란함
 - 만일 본사에서 전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체별로 배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 최적의 배분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미국 경제센서스의 특징과 시사점

가. 특징

- 2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제센서스는 5년 주기로 연도 끝자리가 2, 7로 끝나는 해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원칙하며 전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님
 - 통합 센서스 : 일부 산업이 아닌 전체 산업에 대해 통일된 체제 하에 동시에 센서스 조사하는 통합 센서스 체제
 - 타기관 정보 이용 : IRS(Internal Revenue Service) 등 타기관으로부터 사업체 및 기업체에 대한 기초정보를 활용

- 우편 조사 : 기본적으로 우편을 통해서 센서스 조사를 실시
- 기획 조사 :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조사가 무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기획조사 실시

□ 조사항목에서는 사업체·기업체 동시조사, 산업별 차별화 등의 특징을 지님

- 센서스 조사시 다른 기업과의 소유 피소유 관계, 다수의 지역에서 존재하는 사업체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체와 기업체 명부를 동시에 조사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음
-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산업별 차별화된 조사표를 가지고 있어 심도 깊은 조사가 가능
- 최근에는 경제활동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경향을 반영해서 설문 내용을 조정하고 있으며 2002년 센서스의 경우 파견근로자, 전자상거래, 외주에 의한 사업활동 등에 관련한 내용이 추가

□ 표본조사의 효율적 활용하며, 조사결과를 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발표

- 표본 조사 : 도매업을 제외하고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 않으며 5인이상 또는 10인이상 등 산업별로 적절한 표본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조사하고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서는 무작위 추출에 의한 약식 조사를 함으로써 조사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 자료 처리 기간 : 조사가 마무리되어도 약 3년여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자료 처리 및 보고서 발간을 하고 있음
- 2002년 센서스조사가 사실상 2003년 중반에 마무리됨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2004년부터 200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발표되도록 하고 있음

나. 시사점

- 사업체 센서스 조사 시 다른 사업체와 소유 및 피소유 관계를 동시에 조사하여 기업체 사업체 조사 및 명부 작성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조사지에 별도의 항목을 두어 분류된 산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 산업에 국한된

유용한 정보를 조사할 수 있을 것임

- 본 조사항목은 인쇄상태에서는 공란으로 두고 사전에 산업분류가 파악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산업코드를 컴퓨터가 인쇄할 때 해당 질문이 공란에 인쇄되어 산업별로 별도의 질문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을 것임

☐ 산업별로 조사 항목별로 자료를 처리하고 정리하는 데 요구되는 시간은 다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자료 처리 부담을 고려한 적절한 자료 공표시기의 분산이 필요할 것임

☐ 산업별로 전수조사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적절한 표본 선정 기준을 설정하여 조사 역량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개선안이 필요할 것임

- 전수 조사를 위한 조사 부문에 많은 역량을 투입하기보다는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정합성을 높이는 분석 능력 제고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소규모사업체의 경우 사업체 센서스 조사 시 다른 사업체와 소유 및 피소유 관계를 동시에 조사하여 기업체 사업체 조사 및 명부 작성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미국 경제센서스는 지역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등 다양한 종류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통계조사보고서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것이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것임.

3. 일본의 사업체·기업체 관련 통계조사 특징과 시사점

가. 분산형통계제도

☐ 일본의 산업구조통계는 중앙부처별로 소관산업에 관련된 통계를 직접 조사하는 분산형으로 개발되어 발전하여왔음

- 분산형은 각 부처가 필요한 통계를 적기에 개발·작성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는 시의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산업구조 통계에서 중요한 산업간 비교를 위한 정합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특히 중앙의 부처간 관할영역에 대한 집착으로 인하여 관할산업에 대한 조사집중과 관할 이외의 분야에 대한 조사기피 등 통계조사의 기형적 발전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일본은 경제센서스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도 이러한 특정분야의 조사집중이나 조사기피 등 통계조정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

나. 사회적 수요에 대응한 통계의 공급

- 경제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통계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기존 통계의 개선뿐만 아니라 새로운 통계를 속속 개발하고 있음
 - 대부분의 사업체·기업 대상통계에서 기업활동의 정보화를 파악하기 위한 IT기술 도입·사용 현황, 정보화 장비 사용현황 등에 대한 조사항목 보강함
 - 대부분의 사업체대상 통계에서 조사표의 프레임부분(사업체특성부분)에서 기업에 관한 사항, 조직에 관한 사항, 소유관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기존의 사업체대상 통계도 기업통계로서의 활용도를 크게 제고함
 - 기존의 사업체대상 통계가 아니라 조사단위를 기업으로 하는 기업활동기본조사, 해외기업활동 기본조사, 외자계기업 동향조사 등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여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다면적 활동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 정책 현안과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의 통계조사
 - 유통정보화, 대형화, 프랜차이즈 방식의 확대 등 1980년대 이후 유통혁명이 급속히 진전되자, 이러한 유통업의 구조적·조직적 변화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각각의 통계에서 새로운 조사항목을 신설

다. 다양한 조사방식의 채택

- 일본은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관련 통계가 많이 조사·작성되고 있으면서 다양한 조사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조사주기는 일정하나 주기별로 조사업종을 다르게 선택하는 방식

- 일정한 조사주기년도 사이에 조사항목을 간소화하여 간이조사를 실시하는 방식도 채택

□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조사표의 수집을 우편이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 기업활동기본조사 등 기업단위통계들은 우편을 통해서 조사표를 배포·수집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활용하여 조사표의 배포·기제·수집을 조사방법을 개발하여 시험하는 단계

라. 조사항목의 표준화 시도

□ 기초항목에 대해서는 그 개념과 항목이 표준화하는 추세이나 이외 항목은 각 조사별 특성을 반영하는 항목들로 구성됨

- 사업소명·소재지, 경영조직, 본소·지소의 구별, 개설시기, 종업원수, 사업종류·업태, 자본금, 본소 명칭·소재지, 지소·지사·지점 수 등 사업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항목들은 그 개념과 항목이 동일하도록 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경영조직, 사업의 종류 및 업태, 종업원의 구분 등은 가능한 한 표준화하여 통계조사간의 정합성이 유지하도록 하는 추세임
- 그러나 해당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등 다른 통계작성의 활용 등을 위해 이외의 항목들은 조사별로 차이가 있음

□ 특히 간접적으로 산출하는 통계지표들은 산업이나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기 다른 방법으로 작성됨

- 부가가치는 산업별 규모별로 다른 방식으로 산출

마. 사업소 정의의 확대

□ 일본 산업구조통계들은 모두 총무성 통계국의 사업소·기업통계조사에서 정의하여 조사하고 있는 사업소의 개념을 사용

- 사업소는 물건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개별 장소로서, 사람이 수입을 얻기 위해 일하는 개별 장소, 영리 목적이거나 비영리 목적인가는 무관한 것으로 정의

- 최근 들어서는 종업원이 없는 사업소, 전자상거래 여부, 체인조직의 가맹현황 등 유통과정의 변화를 감안하여 새로운 조사항목을 추가하고 있는 추세
 - 해당 사업소에 소속하는 종업원이 없이 다른 회사 등의 사업소로부터 파견된 사람만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사업소도 조사대항에 포함
 - 유통경로의 단축화·집약화, 인터넷의 보급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확대, 체인전개의 대형잡화점(drugstore)의 출현 등으로 유통구조의 빠른 변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체인조직에의 가맹현황을 새로운 조사항목으로 추가

바. 사업체·기업체 통계조사의 개선 움직임

- 일본은 2003년 「통계행정의 새로운 전개방향」을 통해 사회·경제의 변화에 부응한 통계의 정비, 통계조사의 효율적 실시와 기반정비, 조사결과의 이용확대, 국제협력의 추진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금번의 장기계획은 기본방향에서는 이전의 「통계행정의 新중·장기구상」과 같다고 볼 수 있으나, 각 분야에서 최근의 기술이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경제센서스의 개발, 대규모통계조사의 통폐합 등 검토, 온라인 조사의 확대, 행정통계의 적극 활용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특히, 사회·경제의 변화에 부응한 통계의 정비에는 사업체·기업체 통계와 관련된 개선방안들을 포함하고 있음
 - 경제센서스의 개발 : 전산업분야의 경제활동을 동일시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대규모통계조사의 통폐합, 간소화·합리화 등의 경제센서스를 2009년 실시목표로 2005년 중에 기본적인 틀을 개발할 예정임
 - 사업체·기업체 명부의 정비 및 확충 : 각 부처는 2003년 이후 통계조사간 사업체·기업체의 포착방법, 산업분류 등에 대해서 연계를 가지면서 가능한 공통화·통일화를 도모하고, 사업체·기업체 DB는 모집단정보로서의 활용할 수 있도록 총무성이 2003년 이후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어 명부갱신정보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기업활동에 관한 통계의 정비 : 기업활동의 다양화에 관한 통계가 미정비된 산업분야에 대해서 경제산업성의 기업활동기본조사를 참고로 2003년 이후 기존 통계조사에서 조사대상범위의 확대, 조사사항의 추가 또는 신규통계조

사의 실시에 의해 통계의 정비를 추진함

- 금융·보험업을 포함한 기업통계의 정비 :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통계조사에서 금융업과 보험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함
- 기업활동의 변화에 대한 대응 : 기업그룹에 2003년에 명부정보를 정비하고, 2005년까지 연결결산실시기업의 실태파악을 포함하여 실사 가능성 등을 연구·검토하고, 생산의 해외이전에 대해서는 2003년 이후 신속한 분석을 통해 통계의 정비방법을 검토하며, 설비·인원·공정에 대해서는 2003년 이후 적의 조치하고, 기존 통계조사의 특성에 근거하여 소유자기준의 통계는 사용자기준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사용자기준의 통계는 필요에 따라 소유자기준으로 정비하도록 함
- 대규모주기조사의 향후 실시방법 및 주기조정 : 경제센서스와 관련되는 2009년도 실시 예정의 대규모통계조사에 대해서는 별도 설치되는 검토회의에서 통폐합, 간소화 및 합리화의 검토에 의거하면서 실시시기의 조정도 검토하도록 함

제2절 사업체대상 통계 개선을 위한 제언

1. 전반적 개선사항

가. 기본인식과 여건분석

- 격심한 산업구조조정의 과정 속에서 국가의 산업현실을 평가하고, 장래 산업발전 방향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산업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필요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임
 - 개별 산업통계의 개선
 - 각 산업별 통계간의 정합성·일관성 제고
 - 경제센서스의 검토
- 최근 전개되고 있는 기업활동의 복잡·다양화를 제대로 포착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통계를 개선·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임

- 국제화·개방화·세계화의 급속한 전개
 - IT, BT, 첨단금융 등 신경제(new economy)의 조류
 - 국내기업의 대외활동,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에 관한 정보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 산업집적화(cluster)에 관한 정보
- 기업통계 및 기업그룹 통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기업활동에 관한 통계 수요가 증대
- 기업활동의 다양화, 국제화, 성장동인으로서 기업의 활력 등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기업 및 기업그룹이 갖는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업통계 및 기업그룹통계에 대한 수요가 급속하게 증대
- 이상과 같은 통계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업체대상 통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음.
- 통계생산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의 절대적 부족으로 통계생산여건이 매우 열악
 - 국가적 통계조정·기획 기능 미흡
 - 부처간 협조부족으로 행정자료의 통계적 활용 미흡
 - 조사대상의 양적·질적 다양화와 조사협조의 부족 등으로 통계조사의 어려움 가중
- 통계생산 여건은 어려워지는데 비해 산업구조 통계에 대한 수요는 더욱 확대되고 있음
- 기업활동의 다면성에 따른 통계수요 확대
 - 기업활동의 국제적 전개
 - 기업활동의 기능별 거점화, 연구개발기능 등 기업의 동태적 경쟁력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
 - 산업클러스터 등 지리적 측면에서 기업활동의 현황파악에 대한 중요성 증대

- 기업간 네트워크, 새로운 방식의 마케팅, 업태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
- 열악한 통계생산여건 속에서 사회적 통계수요는 늘어나는데 상황에서, 기업대상 통계 작성에 있어서 통계청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통계담당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의해서도 기업관련 통계가 많이 생산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을 제외한 정부부처와 민간의 통계작성기능이 극히 취약함

나. 산업구조 통계 발전의 기본방향

- 우리나라의 사업체 대상 통계는 특히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개선작업을 통해 개선·발전되어 일단 외형적으로는 선진국과 비교하여서도 손색이 없는 정도임
 - 통계생산의 하드웨어 부분은 상당한 수준으로 정비되어 있으나, 좋은 통계를 생산이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하드웨어가 제대로 작동하는데 있어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크게 낙후되어 있는 실정임
- 통계개혁·개선작업을 ① 변혁과정(통계 틀의 변화, 새로운 통계의 도입 등)과 ② 개선과정(통계의 정밀도 향상, 작성 방법 개선 등 미세조정)으로 구분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사업체대상 통계가 안고 있는 과제는 상기 ②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산업구조통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통계행정 여건상의 특징과 선진국 통계를 벤치마킹하여 최선의 개선안을 찾을 것임
 - 통계체계는 미국형, 통계행정체계는 일본형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음
 - 통계의 종류 및 조사항목과 관련하여서는 일본의 제도가 많은 참고가 됨
- 사업체 통계의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외견상 분산형 통계제도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임
 - 집중형과 분산형 통계제도 중 어느 쪽이 우월한가에 대해서는 일의적인 해답이 있을 수 없으며, 이 두 제도는 각자 장단점을 갖고 있음

- 집중형 통계제도를 채택하든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든 그것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에 걸맞은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임
- 국가 통계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통계행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집중형 통계제도로의 전환을 검토: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부문의 통계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집중형 통계제도가 효과적임
- 통계행정 기획·조정 기구의 설치: 분산형 제도를 유지할 경우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산하에 (가칭)“국가통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통계행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 또한 주요 사업체관련 기초통계를 대부분 생산하고 있는 중앙통계생산기관인 통계청 조직의 개선도 시급함

- 통계청의 통계조직 및 인력 규모를 지속적 확충
- 통계청 본부기능의 강화하여 선진국형 통계조직·기능으로의 전환
- 통계청의 연구·분석기능의 강화

다. 통계체계 및 조사의 개선

□ 사업체대상 통계가 전체적으로 일관성·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통계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통계청에서 개발 중인 『사업체모집단 DB구축』 사업이 완료될 경우 각 산업별 통계간의 종합성·연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기반이 조성됨
- 이를 토대로 일정시점에서 산업전체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가칭) “경제 센서스”를 도입
- 현재 실시중인 각 산업별 연간 조사는 경제센서스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
- 통계의 품질과 정합성 제고를 위해 기존 통계에 대한 비교·분석도 필요

□ 조사대상, 조사항목 등을 포함한 조사방법에 있어서의 개선도 중요함

- 각 개별 통계간 조사항목 및 그 개념의 표준화도 시급히 이루어져야하며,

기업특성부분에 대한 집중적 개선이 필요

- 총조사적 성격의 통계는 전수조사를 하되, 사업체에 따라 조사항목을 달리 할 필요가 있음
- 연간조사의 경우에도 조사대상에 따라 조사항목의 세분화 혹은 간소화하도록 함

□ 통계가 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성과정과 절차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함

- 소형통계조사의 경우는 사업자단체 혹은 통계청의 조사담당직원에 의해 조사되므로 큰 문제가 없음
- 대형통계의 경우에는 조사단계에서 통계청에 이르기 이전까지 통계전문가(혹은 조사전문가)에 의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보완할 제도개선이 시급함
- 체계적인 조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계청의 기술지도, 내검기능의 향상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조사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행정자료 활용도의 제고: 통계조사여건의 악화, 통계행정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한 기업 및 산업활동에 대한 정밀·다양한 조사의 한계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행정자료의 활용을 제고해야함

- 행정자료를 통계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통계작성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 행정자료를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강제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함

라. 조사업무의 충실도 제고

□ 우리나라 현행 사업체대상 통계는 거의 전적으로 조사대상자에 대한 직접 조사자료를 통해 작성되므로 조사의 충실도는 통계의 신뢰성을 결정짓는 결정적

인 요소가 됨

- 통계조사가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사절차, 통계작성기관의 효과적 관리, 관리원·조사원 등 조사인력의 자질, 응답자의 협조의식 등 조사와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반적으로 향상되어야 함
 - 조사절차 개선
 - 조사절차에 대한 효과적 관리
 - 관리원, 조사원 등 조사인력의 자질 향상
 - 조사대상자의 협조 강화
- 현행 통계조사과정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제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되어 나타난 결과임
 - 제도개선이나 행정당국의 성의로서 상당한 정도의 개선이 기대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반면, 구조적·사회문화적 문제로서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부분도 적지 않음
 -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대형통계조사의 경우 조사내용에 대한 내검 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형통계조사의 경우 통계청의 전문조사원이 중심이 되어 수행되므로 조사내용에 대한 충실한 내검이 가능함
 - 그러나 대형통계조사의 경우 통계조사절차가 대부분 비전문가(지자체 공무원 및 임시조사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통계조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함께 내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조사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 통계 조사계획을 사전에 작성하여 당해 사업체에 통보하고, 기업규모에 따라 통계조사수의 상한치를 설치하는 등 통계조사시기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필요함

- 통계조사 행정절차와 조사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여 통계조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통계조사에 대한 홍보 강화
- 지자체 등 통계조사 시행 기관의 전문성 강화
- 조사원의 자질향상과 위상강화
- 조사원들에 대한 응답자 대응요령에 관한 집중적인 교육과 교재개발
- 조사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장의 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여론 수렴광장을 만들 필요
-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종합 색인표를 만들어 CD ROM으로 제작할 필요

2. 현안과제의 개선방안

가. 공통적 과제

- 현재 통계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대상 산업구조 통계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
 - 기업·기업집단에 관한 사항, 기업조직형태에 관한 사항, 내외국인 투자비율, 기업간 관계, 거래형태 등 사업체 특성항목(frame) 부분에 대한 조사항목을 개발·강화하여 통계의 활용도를 제고
 - 통계간 조사항목의 분류, 정의의 일관성 등을 유지할 필요
 - 통계담당인력의 확충과 기획·개선 기능 강화
 - 통계조사의 정확성과 조사부담의 경감을 위해 본사조사를 강화
 - 기업규모별·조직형태별로 조사항목·조사대상을 달리할 필요
 - 조사방식에 있어서 현행 응답자 기입방식 중심에서 조사원 기입방식 중심으로 전환

나. 전국사업체기초조사

- 조사표의 설계에 있어서 사업체 특성항목 부분을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음
 -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체뿐만 아니라 기업에 관한 정보, 기업집단에 관한 정보, 국제화에 관한 정보(외국인 투자비율, 수출활동, 해외투자 등), 사업체 입지에 관한 정보,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조사항목을 신설·보강
- 산업분류 부여에 있어서 일관성 제고가 요구됨
 - 산업분류 매뉴얼 보강
 - 「자동산업분류번호부여 시스템」의 기능 지속적 향상
 - 내점 기능의 강화
- 조사항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통계의 기능을 모집단 명부로 한정할 필요
 - 사업체 특성(frame) 부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되,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은 가능한 한 축소

다. 기업통계의 개발

- 사업체가 생산의 기본단위라면 기업은 경영의 기본단위로 기업활동에 관한 의미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기업통계의 작성이 필수적임
 - 기존 사업체 대상 통계의 개선
 - 새로운 형태의 기업통계개발 검토
- 기업통계의 포괄범위 및 기업명부의 충실화가 시급히 요청됨
 - 현재 일부 산업에 대해 작성하고 있는 기업통계를 통계청이 실시하는 모든 구조통계로 확대
 - 기업명부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기업통계 충실화

- 조사자료외에 정부 및 민간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자료의 활용 강화
- 우리나라의 산업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재벌(기업집단)에 대한 통계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이의 개발이 필요
 - 사업체 및 기업 DB 구축작업과 병행하여 기업집단 명부를 구축
- 새로운 기업통계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 사업체 중심의 현재의 산업구조통계는 기업의 생산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기업의 다면적 활동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기업의 다양한 활동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서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체중심의 통계가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통계의 개발이 필요함

라.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의 개선방안

- 조사부담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고 통계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통계조사에서 사업체 특성부분(프레임)을 보완
 - 회사법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비율, 국적 등 조사항목을 추가
 - EDI, POS 기타 다양한 정보화 기술 도입 조사항목 강화
 - 전자상거래 항목부분 강화
 - 기업통계 작성
 - 사업체 소재지(백화점, 할인점, 쇼핑센터, 재래시장 등) 항목
- 통계당국, 정책담당부서 및 학자들 간의 긴밀한 협조관계 형성
 - 국가적으로 필요한 통계정보가 제대로 공급하기 위하여 통계조사 준비단계에 있어서 정책당국자(농림부, 산자부, 공정위 등), 연구자, 통계담당자들 간의 실질적인 협의가 필요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민계정 등 여타 통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행정적 부담 및 임시조사원 채용계획에 문제가 없다면 조사대상 연도를 0자, 5자 년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총조사와 연간조사의 조사항목을 조정 및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

- 총조사와 연간조사간의 조사항목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조정하되, 총조사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의 조사에 초점을 맞추며,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연간조사를 통해 조사
- 조직형태에 따라 조사항목을 달리하되, 회사법인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관련 항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개인사업체에 대해서는 매출액·비용·이익 항목의 단순화, 자산항목의 폐지 등 조사항목을 대폭 축소
- 사업내용에 관한 조사는 상품판매형태 구분, 셀프서비스방식의 채용 유무, 영업시간, 손님전용주차장의 유무 및 수용대수, 체인 조직에 대한 가맹 유무, 상품의 판매 구입처별 비율, 외주 및 수주 현황, 연구개발비, 정보화 현황 등을 중심으로 항목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기업단위 집계를 위한 조사의 곤란 및 조사부담의 가중, 조사과정에서 일관성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사조사의 활용 강화

-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본사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조사를 통한 조사원 기입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 체인점, 프랜차이즈점 등에 대해서는 기업에 속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서도 본부조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 다사업체 기업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조사를 하되, 사업체별 배분은 본사에 위임하도록 함

□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차원의 엄격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들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교 등 공공기관, 국공립 의료기관, 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표를 만들어 감독기관을 통해 조사

- 금융·보험업에 대한 통계조사는 감독기관 및 본사조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함
 - 감독기관을 통해 통계조사를 행하도록 하며, 본사의 책임 하에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함
- 대규모 소매점의 등장, 제조업에 의한 물류 혁명 등에 의해 도매업과 소매업의 구분이 애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매업에 대한 통계조사는 그 필요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함
 - 도매기능이 취약해지고 있다고 하여 바로 통계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과거 통계와의 연계성,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 조사는 지속하되 산업 분류체계의 조정 등을 통해 도매기능을 좀더 세분할 필요가 있음
- 무응답 사업체의 처리는 무응답 사업체의 비중이 크지 않는 한 *imputation* 기법을 사용하지 말고 집계결과를 토대로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함
 - *imputation*의 경우에는 조사결과에 인위적인 조정을 가한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통계공표시 조사된 집계결과만을 발표하되 무응답 사업체수를 적시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
 - 무응답 사업체 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imputation* 기법의 사용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마. 경제센서스의 도입 검토

- 산업구조통계의 종합성·연계성을 강화하고 포괄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경제센서스의 도입이 바람직함
 - 경제센서스는 전 산업분야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 하에서 사업체(혹은 기업 활동)를 다각적으로 조사하는 통계임
- 그 구체적인 선택대안으로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음
 - ① 경제센서스의 신설 :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 산업에 대해 전면적인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방법

- 모집단적 조사와 센서스적 조사를 구분하여,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대상사업체 가운데서 센서스 대상 사업체를 선정하여 심층 조사하도록 함(전수조사 대상그룹과 표본조사대상 그룹)
- ② 기존 통계조사를 개선한 사실상의 경제센서스 :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통계에 대해 항목의 조정·조사항목 개념의 일관성 유지 등의 개선을 통해 사실상의 경제센서스 효과를 얻는 방법
 - 기존의 『산업총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센서스』 등에 대해 통계간 항목조정, 개념 일치화 등의 작업을 수행함과 아울러, 조사연도를 일치화하며, 다만, 조사시기는 별도로 할 수 있음
- 이상의 두 가지 선택대안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는 통계의 충실화와 아울러 행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통계의 충실성, 완성도 측면에서는 상기 ①의 대안이 우월하나, 이를 위해서는 행정부담이 적지 않을 것임
 - ②의 대안은 상대적으로 행정적 부담이 적을 것이나, 경제 센서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산업구조통계에 대해 일관된 기준하에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임

부 록

<부록 Ⅰ> 2002 ECONOMIC CENSUS 약식 조사표

<부록 Ⅱ> 2002 ECONOMIC CENSUS 일반 조사표

<부록 Ⅲ> 2002 ECONOMIC CENSUS 조직 관련 조사항목

<부록 I> 2002 ECONOMIC CENSUS 약식 조사표



U.S. DEPARTMENT OF COMMERCE
Economics and Statistics Administration
U.S. CENSUS BUREAU

FORM
NC-99023

2002 ECONOMIC CENSUS GENERAL CLASSIFICATION REPORT

OMB No. 0607-0884: Approval Expires 7/31/2004

DUE DATE
30 DAYS AFTER
RECEIPT OF FORM

An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control number is printed in the upper right corner of this form. If OMB number is not shown on this questionnaire, this survey is invalid. Public reporting burden for this collection is estimated to take 10 minutes to complete this questionnaire. Send comments regarding this burden estimate or any other aspect of this collection of information, including suggestions for reducing this burden, to: Paperwork Project 0607-0884, Room 3110, Federal Building 3, U.S. Census Bureau, Washington, D.C. 20233-1500. You may e-mail comments to Paperwork@census.gov; use "Paperwork Project 0607-0884" as the subject.

NC-99023

INFORMATION COPY
DO NOT USE TO REPORT

Return your completed form to:

U.S. Census Bureau
1201 East Tenth Street
Jeffersonville, IN 47134-0001

(Please correct any errors in this mailing address.)

1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Is the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shown in the mailing address the same as the one used for this establishment on its latest Internal Revenue Service Form 941, Employer's Quarterly Federal Tax Return?

If this establishment did not file form 941, Go to 2.

0021 ☐ Yes 0022 ☐ No - Enter current EIN (9 digits) → 0025

2 PHYSICAL LOCATION

A. Is this establishment's physical location the same as shown in the mailing address?
(P.O. box and rural route addresses are not physical locations.)

0031 ☐ Yes

0032 ☐ No - Enter physical location →

0035 Number and street

0036 City, town, village, etc.

0037 State

0038 ZIP Code

B. Is this establishment physically located inside the legal boundaries of the city, town, village, etc.?

0041 ☐ Yes

0042 ☐ No

0043 ☐ No legal boundaries

0044 ☐ Do not know

C. Type of municipality where this establishment is physically located

0051 ☐ City, village, or borough

0052 ☐ Town or township

0053 ☐ Other or do not know

3 LEASED EMPLOYMENT

Did this establishment have any full- or part-time leased employees whose payroll was filed under a leasing company's EIN?

Exclude:

- Temporary staffing obtained from a staffing service.
- Contractors, subcontractors, or independent contractors
- Purchased or managed services, such as janitorial, guard, or landscape services
- Professional or technical services purchased from another firm, such as software consulting, computer programming, engineering, or accounting services.

0241 ☐ Yes

0242 ☐ No

4 PRINCIPAL BUSINESS OR ACTIVITY

In the past 12 months, what was this establishment's principal business or activity? Find the Economic Sector (e.g., Service, Retail, Construction, Wholesale, Transportation) that best describes your business or activity. Within that sector, choose ONE description that best fits your PRINCIPAL business or activity. Mark (X) only ONE box.

+ SERVICE

0700

HEALTH SERVICES AND SOCIAL ASSISTANCE

- 624 410 00 7 ☐ Child Day Care Service
 339 116 00 6 ☐ Dental Lab
 621 410 00 0 ☐ Family Planning Center
 621 493 00 6 ☐ Freestanding Ambulatory Surgical or
 Emergency Center
 621 610 00 5 ☐ Home Health Care Service
 621 310 00 2 ☐ Office of Chiropractor
 621 210 00 4 ☐ Office of Dentist
 621 320 00 1 ☐ Office of Optometrist
 621 391 00 2 ☐ Office of Podiatrist
 621 111 00 4 ☐ Office of Physician (MD or DO), Except
 Mental Health
 621 112 00 2 ☐ Office of Physician (MD or DO), Mental
 Health
 621 420 00 9 ☐ Outpatient Mental Health or Substance
 Abuse Center
 623 210 00 2 ☐ Residential Care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623 312 00 6 ☐ Residential Care for the Elderly - No
 Health Service Provided
 623 990 00 9 ☐ Residential Care for Youth or Offenders
 624 110 00 3 ☐ Social Assistance Service for Children
 and Youth
 624 120 00 2 ☐ Social Assistance Service for the Elderly
 and Disabled
 624 190 00 5 ☐ Social Assistance Service for Families
 and All Others
☐ Other Health Care and Social Assistance -
 Specify

(Specify source of receipts in **6**.)**AUTOMOTIVE REPAIR SERVICES AND
MAINTENANCE**

- 811 112 00 2 ☐ Automotive Exhaust System Repair
 811 122 00 1 ☐ Automotive Glass Replacement Shop
 811 191 00 6 ☐ Automotive Oil Change and Lubrication
 Shop
 811 113 00 0 ☐ Automotive Transmission Repair Shop
 811 118 20 7 ☐ Brake, Front End, and Wheel Alignment
 Shop
 811 192 00 4 ☐ Carwash
 811 111 00 4 ☐ General Automotive Repair Shop
 811 121 10 2 ☐ Paint Or Body Repair Shop
☐ Other Automotive Repair Services and
 Maintenance - Specify

(Specify source of receipts in **6**.)**OTHER REPAIR SERVICES (EXCEPT AUTOMOTIVE)**

- 811 412 00 6 ☐ Appliance Repair and Maintenance
 811 310 90 3 ☐ Commercial, Farming, or Industrial
 Equipment Repair and Maintenance
 811 212 30 7 ☐ Computer Repair and Maintenance
 811 211 00 2 ☐ Consumer Electronics Repair and
 Maintenance
 811 420 00 9 ☐ Furniture Repair
 811 490 40 8 ☐ Garment Repair and Alteration Service
 811 212 40 6 ☐ Office Machine Repair and Maintenance
☐ Other Repair Services (Except
 Automotive) - Specify

(Specify source of receipts in **6**.)**ACCOMMODATIONS**

- 721 191 00 5 ☐ Bed and Breakfast Inn
 721 120 00 4 ☐ Casino Hotel
 721 110 00 5 ☐ Hotel (Except Casino Hotel), Motel, or
 Motor Hotel
 721 214 00 5 ☐ Overnight Recreation or Vacation Camp
 (Except Campground)
 721 310 00 1 ☐ Rooming and Boarding House
 721 211 00 1 ☐ Trailer Park, RV (Recreational Vehicle)
 Park, or Campground (Except
 Residential)
☐ Other Traveler Accommodation - Specify

(Specify source of receipts in **6**.)**FOOD SERVICES**

- 722 213 40 2 ☐ Bagel Shop
 722 212 00 8 ☐ Cafeteria
 722 320 00 9 ☐ Caterer
 722 213 50 1 ☐ Coffee Shop
 722 213 60 0 ☐ Cookie Shop
 722 213 30 3 ☐ Donut Shop
 722 410 00 8 ☐ Bar, Tavern, Pub, or Other Drinking Place
 (Alcoholic Beverages)
 722 310 00 0 ☐ Food Service Contractor
 722 213 20 4 ☐ Frozen Yogurt Shop
 722 110 00 4 ☐ Full-Service Restaurant
 722 213 10 5 ☐ Ice Cream and Soft Serve Shop
 722 211 00 0 ☐ Limited-Service Restaurant
 722 213 70 9 ☐ Other Snack and Nonalcoholic Beverage
 Bar
☐ Other Food Service - Specify

(Specify source of receipts in **6**.)

4 PRINCIPAL BUSINESS OR ACTIVITY - Continued+ **SERVICE** - Continued

OTHER SERVICES

- 713 120 00 4 ☐ Arcade or Family Fun Center
 541 310 00 9 ☐ Architectural Service
 812 111 00 3 ☐ Barber Shop
 812 112 00 1 ☐ Beauty Shop
 561 740 00 2 ☐ Carpet and Upholstery Cleaning Service
 541 211 00 9 ☐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PA)
 813 410 40 4 ☐ Civic or Social Club (Except Scouting Organizations)
 812 310 20 9 ☐ Coin-Operated Laundry or Drycleaning
 561 440 10 8 ☐ Collection Agency
 611 610 10 6 ☐ Dance School
 812 191 00 5 ☐ Diet or Weight Reducing Service
 812 320 20 8 ☐ Drycleaning Plant
 561 330 00 2 ☐ Employee Leasing Service
 561 310 00 4 ☐ Employment Placement Agency
 541 330 00 7 ☐ Engineering Service
 541 620 00 1 ☐ Environmental Consulting Service
 561 710 00 5 ☐ Exterminating and Pest Control Service
 713 940 90 6 ☐ Fitness Center, Gymnasium, or Athletic Club
 812 210 10 2 ☐ Funeral Home
 713 910 00 8 ☐ Golf Course or Country Club
 541 430 00 5 ☐ Graphic Design Service
 541 410 00 7 ☐ Interior Design Service
 561 611 00 5 ☐ Investigation Service
 561 720 00 4 ☐ Janitorial Service
 561 730 00 3 ☐ Landscape Service
 541 110 10 2 ☐ Law Office
 561 622 00 2 ☐ Locksmith
 713 930 00 6 ☐ Marina
 512 131 00 4 ☐ Motion Picture Theater (Except Drive-In)
 812 113 00 9 ☐ Nail Salon
 812 930 00 6 ☐ Parking Lot or Garage
 561 439 00 1 ☐ Photocopying and Duplicating Service
 812 922 00 3 ☐ Photofinishing, One-Hour
 812 921 00 5 ☐ Photofinishing (Except One-Hour)
 541 921 00 3 ☐ Photographic Studio, Portrait
 561 990 90 4 ☐ Printing Broker
 813 990 40 5 ☐ Property Owners' Association
 561 621 00 4 ☐ Security Systems Service
 511 210 00 7 ☐ Software Publishing
 611 620 00 6 ☐ Sports and Recreation Instruction
 541 370 00 3 ☐ Surveying or Mapping (Except Geophysical) Service
 561 790 20 5 ☐ Swimming Pool Cleaning and Maintenance
 561 320 00 3 ☐ Temporary Help Service
 541 191 00 3 ☐ Title Abstract and Settlement Office
 541 940 00 3 ☐ Veterinarian's Office
 532 230 00 0 ☐ Video Tape Rental
☐ Other Service - *Specify*

(Specify source of receipts in **6**)+ **TRANSPORTATION**

TRUCKING

- 484 230 20 6 ☐ Agricultural Products Trucking, Long-Distance
 484 220 20 7 ☐ Agricultural Products Trucking Without Storage, Local
 484 220 30 6 ☐ Dump Trucking
 484 122 00 7 ☐ General Freight Trucking, LTL, Long-Distance
 484 110 20 0 ☐ General Freight Trucking Without Storage, LTL, Local
 484 121 00 9 ☐ General Freight Trucking, TL, Long-Distance
 484 110 10 1 ☐ General Freight Trucking Without Storage, Local, TL
 484 220 40 5 ☐ Specialized Freight (Except Waste) Trucking Without Storage, Local
 484 230 30 5 ☐ Specialized Freight (Including Waste) Trucking, Long-Distance
 484 210 10 9 ☐ Used Household and Office Goods Moving Without Storage, Local
 484 210 20 8 ☐ Used Household and Office Goods Moving, Long-Distance
☐ Other Trucking - *Specify*

(Specify source of receipts in **6**)

OTHER TRANSPORTATION

- 488 119 10 8 ☐ Airport Operation and Terminal Service
 621 910 00 9 ☐ Ambulance or Rescue Service, Except by Air
 488 510 20 7 ☐ Arrangement of Transportation of Freight/Cargo
 492 110 20 0 ☐ Courier Service - Air
 492 210 00 0 ☐ Local Messenger and Local Delivery
 492 110 10 1 ☐ Courier Service (Except Air or Local)
 488 510 10 8 ☐ Freight Forwarding
 485 320 00 6 ☐ Limousine or Luxury Passenger Rental with Driver
 485 410 10 4 ☐ School Bus Service
 485 991 00 4 ☐ Special Needs Transportation (Senior Citizen, Handicapped, Infirm)
 562 111 00 5 ☐ Solid Waste (Except Hazardous Waste) Collection, Local
 562 112 00 3 ☐ Hazardous Waste Collection
 485 310 00 7 ☐ Taxicab Service
 561 510 00 9 ☐ Travel Agency
 488 410 00 2 ☐ Towing Service, Motor Vehicle
 493 110 10 0 ☐ Warehousing and Storage, General Merchandise
 531 130 00 3 ☐ Self-Storage and Mini-Warehousing
☐ Other Transportation - *Specify*

(Specify source of receipts in **6**)

4 PRINCIPAL BUSINESS OR ACTIVITY - Continued**♦ RETAIL TRADE**

- 441 310 40 6 ☐ Automotive Parts and Accessories Store (Except Used)
- 441 310 50 5 ☐ Automotive Parts and Accessories Store, Used
- 445 310 00 6 ☐ Beer, Wine, and Liquor Store
- 451 110 21 7 ☐ Bicycle Shop
- 441 110 00 4 ☐ Car Dealer, New and Used
- 441 120 00 3 ☐ Car Dealer, Used Only
- 443 120 30 8 ☐ Computer Software Store
- 443 120 10 0 ☐ Computer Store (Custom Assembly)
- 443 120 20 9 ☐ Computer Store (Except Custom Assembly)
- 445 120 00 9 ☐ Convenience Food Store
- 454 110 50 3 ☐ Electronic Shopping, General Merchandise
- 454 110 61 0 ☐ Electronic Shopping,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 454 110 62 8 ☐ Electronic Shopping, Pharmacy
- 454 110 63 6 ☐ Electronic Shopping, Other Specialized Merchandise
- 454 110 70 1 ☐ Mail-Order House, General Merchandise
- 454 110 81 8 ☐ Mail-Order House,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 454 110 82 6 ☐ Mail-Order Pharmacy
- 454 110 83 4 ☐ Mail-Order House, Other Specialized Merchandise
- 448 140 00 4 ☐ Family Clothing Store
- 442 210 00 1 ☐ Floor Coverings Store
- 453 110 00 9 ☐ Florist
- 442 110 10 2 ☐ Furniture Store
- 447 110 00 8 ☐ Gasoline Station With Convenience Store
- 447 190 10 9 ☐ Gasoline Station With No Convenience Store
- 451 110 10 0 ☐ General-Line Sporting Goods Store
- 453 220 00 6 ☐ Gift, Novelty, Craft and Souvenir Store
- 444 130 00 9 ☐ Hardware Store
- 443 111 00 0 ☐ Household Appliance Store
- 442 299 00 4 ☐ Houseware and Kitchenware Store
- 445 210 00 8 ☐ Meat Market
- 444 220 40 4 ☐ Nursery and Garden Center
- 444 210 00 9 ☐ Outdoor Power Equipment Store
- 453 910 00 2 ☐ Pet and Pet Supplies Store
- 446 110 10 8 ☐ Pharmacy and Drug Store
- 443 112 40 4 ☐ Radio, TV, and Other Electronics Store
- 522 298 10 8 ☐ Pawn Shop
- 453 310 20 3 ☐ Second-Hand Store (Except Pawn Shop)
- 445 110 00 0 ☐ Supermarket or Grocery Store
- 441 320 00 9 ☐ Tire Dealer
- 447 190 20 8 ☐ Truck Stop
- 442 291 00 1 ☐ Window Treatment Store
- 448 120 00 6 ☐ Women's Clothing Store
- 448 210 20 3 ☐ Women's Shoe Store
- ☐ Other Retail Business - Specify *✓*

(Specify source of receipts in **5**.)**♦ WHOLESALE TRADE**

Mark (X) only ONE box in part 1 and ONE box in part 2.

1. Kind of Business or Activity

- 421 430 12 5 ☐ Computers and Peripheral Equipment Sold For End Use
- 421 430 11 7 ☐ Computers and Peripheral Equipment Sold For Resale
- 421 610 00 7 ☐ Electrical Apparatus and Equipment
- 421 940 10 7 ☐ Jewelry, Watches, and Gemstones
- 422 210 10 4 ☐ General-Line Drugs, Cosmetics, and Toiletries
- 422 210 20 3 ☐ Specialty-Line Drugs, Cosmetics, and Toiletries
- 421 910 00 1 ☐ Sporting and Recreational Goods
- 421 450 10 7 ☐ Surgical, Medical, and Hospital Equipment and Supplies
- 422 320 00 2 ☐ Men's and Boys' Clothing
- 422 330 00 1 ☐ Women's, Children's, and Infants' Clothing
- ☐ Other Wholesale Trade - Specify *✓*

(Specify source of receipts in **5**.)**2. Type of Operation**

0600

- 11 ☐ Merchant Wholesaler
- 42 ☐ Broker, Representing Buyers and Sellers
- 46 ☐ Manufacturers' Agent
- 49 ☐ Electronic Marketer
- ☐ Other Type of Operation - Specify *✓*

(Specify source of receipts in **5**.)**♦ MANUFACTURING**

0700

- 323 112 00 3 ☐ Commercial Flexographic Printing
- 323 110 00 7 ☐ Commercial Lithographic Printing
- 323 113 00 1 ☐ Commercial Screen Printing
- 323 115 00 6 ☐ Digital Printing
- 323 114 00 9 ☐ Quick Printing
- ☐ Other Commercial Printing - Specify *✓*

(Specify source of receipts in **5**.)

- 113 310 00 7 ☐ Logging Camp and Logging Contractor
- 332 710 00 3 ☐ Machine Shop
- 312 130 00 8 ☐ Winery
- ☐ Other Manufacturing - Specify *✓*

(Specify source of receipts in **5**.)

4 PRINCIPAL BUSINESS OR ACTIVITY - Continued**♦ CONSTRUCTION**233 110 00 6 ☐ Land Subdivision**SPECIALTY TRADE CONTRACTOR**235 710 10 0 ☐ Asphalt and Concrete Paving Contractor235 510 90 6 ☐ Carpentry Finishing Contractor235 510 10 4 ☐ Carpentry Framing Contractor235 710 90 2 ☐ Concrete Contractor (Except Paving)235 420 90 8 ☐ Drywall or Insulation Contractor235 310 00 0 ☐ Electrical Contractor235 930 00 5 ☐ Excavation Contractor (Building)234 990 40 6 ☐ Excavation Contractor (Except Building)235 520 00 4 ☐ Flooring Contractor235 920 00 6 ☐ Glass Contractor235 210 10 1 ☐ Highway and Traffic Line Painting235 410 00 8 ☐ Masonry, Stone Setting, and Other Stone Work Contractor235 210 90 3 ☐ Painting and Wall Covering Contractor235 110 90 5 ☐ Plumbing, Heating, and Air Conditioning (HVAC) Contractor235 610 10 2 ☐ Roofing Contractor235 610 90 4 ☐ Sheet Metal Contractor (Except HVAC, Roofing and Siding)235 610 20 1 ☐ Siding Contractor (Including Gutters and Downspouts)235 430 00 6 ☐ Tile, Marble, Terrazzo, and Mosaic Contractor☐ Other Specialty Trade Contractor - *Specify* Z (Specify source of receipts in **5**.)**HEAVY AND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234 110 00 5 ☐ Highway and Street Construction234 120 10 3 ☐ Bridge Construction234 910 90 9 ☐ Oil or Gas Pipelines, Mains and Related Structures Construction234 930 10 5 ☐ Petrochemical Plants and Refineries Construction234 920 00 7 ☐ Power and Communication Transmission Line Construction234 930 20 4 ☐ Power Generation Plants and Power Transformer Stations Construction234 120 90 5 ☐ Tunnel Construction234 910 10 7 ☐ Water or Sewer Lines, Mains and Related Structures Construction☐ Other Heavy Construction - *Specify* Z (Specify source of receipts in **5**.)**♦ CONSTRUCTION - Continued****RESIDENTIAL BUILDING CONSTRUCTION**233 210 10 3 ☐ Single Family - General Contractor233 220 10 2 ☐ Multifamily - General Contractor233 210 20 2 ☐ Single Family - Operative Builder233 220 20 1 ☐ Multifamily - Operative Builder233 210 30 1 ☐ Single Family - Remodeling Contractor233 220 30 0 ☐ Multifamily - Remodeling Contractor**NONRESIDENTIAL BUILDING CONSTRUCTION**233 310 10 1 ☐ Manufacturing and Industrial Warehouse Construction233 320 90 2 ☐ Commercial and Institutional Building Construction☐ Other Nonresidential Building Construction - *Specify* Z (Specify source of receipts in **5**.)**♦ FINANCE, INSURANCE & REAL ESTATE**523 991 90 9 ☐ Administrator of Private Estate813 211 00 0 ☐ Grantmaking Foundation524 210 00 2 ☐ Insurance Agency and Brokerage524 291 00 2 ☐ Insurance Claims Adjusting523 930 00 6 ☐ Investment Advice, Without Portfolio Management531 110 10 4 ☐ Lessor of Apartment Buildings531 120 20 2 ☐ Lessor of Manufacturing and Industrial Buildings531 120 10 3 ☐ Lessor of Professional and Other Buildings531 120 30 1 ☐ Lessor of Shopping Centers and Retail Stores531 120 90 5 ☐ Lessor of Other Nonresidential Buildings531 110 90 6 ☐ Lessor of Other Residential Buildings522 310 00 2 ☐ Mortgage and Other Loan Brokers523 920 10 6 ☐ Portfolio Management531 312 00 7 ☐ Property Management - Nonresidential Real Estate531 311 00 9 ☐ Property Management - Residential Real Estate531 210 90 4 ☐ Real Estate Agent or Broker - Nonresidential531 210 10 2 ☐ Real Estate Agent or Broker - Residential531 320 00 0 ☐ Real Estate Appraiser523 120 00 4 ☐ Securities Brokerage524 292 10 9 ☐ Third-Party Administration - Pension, Health, and Welfare Funds524 292 90 1 ☐ Third-Party Administration of Insurance Funds523 991 90 9 ☐ Trustees in Bankruptcy☐ Other Finance, Insurance and Real Estate - *Specify* Z (Specify source of receipts in **5**.)

4 PRINCIPAL BUSINESS OR ACTIVITY - Continued**+ RENTAL AND LEASING SERVICES, EXCEPT REAL ESTATE****VEHICULAR**

- 532 411 90 7 ☐ Aircraft Rental and Leasing Without Pilot
 532 111 00 2 ☐ Car (Passenger) Rental Without Driver
 532 112 00 0 ☐ Car (Passenger) Leasing Without Driver
 532 411 10 5 ☐ Commercial Vessel Rental and Leasing Without Crew
 532 411 20 4 ☐ Railroad Car Rental and Leasing
 532 120 20 1 ☐ Truck Leasing Without Driver
 532 120 10 2 ☐ Truck Rental Without Driver
 532 120 90 4 ☐ Utility Trailer and Recreational Vehicle Rental and Leasing

OTHER, EXCEPT REAL ESTATE

- 532 310 00 0 ☐ General Rental Center
 234 990 30 7 ☐ Crane Rental With Operator
 234 990 40 6 ☐ Construction Equipment Rental (Except Crane) With Operator
 532 420 90 8 ☐ Computer Rental and Leasing
 532 420 10 6 ☐ Office Furniture and Machines (Except Computer Rental and Leasing)
 532 210 00 2 ☐ Consumer Electronics and Appliances Rental
 532 220 10 0 ☐ Formal Wear Rental
 532 292 00 0 ☐ Recreational Goods Rental
 532 220 90 2 ☐ Wardrobe Rental
 532 291 00 2 ☐ Home Health Equipment Rental
 532 490 10 9 ☐ Medical Equipment Rental and Leasing (Except Home Health Equipment)
 532 490 20 8 ☐ Industrial Equipment Rental and Leasing
 532 412 90 5 ☐ Oilfield and Well Drilling Equipment Rental and Leasing
 532 490 30 7 ☐ Motion Picture Equipment Rental and Leasing
☐ Other Rental and Leasing (Except Real Estate) - *Specify*

(Specify source of receipts in 6.)

+ OTHER

- 813 110 00 4 ☐ Churches and Other Religious Organizations
 814 110 00 3 ☐ Private Household (Employing Domestic Help, e.g., Cooks, Maids, Gardeners, etc.)
☐ Crop Production
☐ Animal Production
☐ Agricultural and Forestry Services
☐ Fishing, Hunting, and Trapping
☐ Mineral Extraction
☐ Mineral Service
☐ Other Business or Activity

Specify below

(Specify source of receipts in 6.)

5 CLASS OF CUSTOMER**A.** Was a box marked under the Retail Trade or Wholesale Trade headings on page 4?☐ Yes - Go to line B ☐ No - Go to 6**B.** As a general business practice, did this establishment sell to household consumers and individual users in the past 12 months?0251 ☐ Yes - Go to line C 0252 ☐ No - Go to line D**C.** Were 10 percent or more of your sales to household consumers and individual users in the past 12 months?0281 ☐ Yes 0282 ☐ No**D.** Were 75 percent or more of this establishment's sales to retailers/wholesalers for resale in the past 12 months?0256 ☐ Yes 0257 ☐ No**E.** Did this establishment require proof of business or professional license from new customers in the past 12 months?0276 ☐ Yes 0277 ☐ No**6 DETAIL OF SALES, SHIPMENTS, RECEIPTS, OR REVENUE**

List below the principal lines of merchandise sold, specific construction work done, products produced, or services provided and indicate the approximate percentage each was of the total dollar volume of business (e.g., gasoline 85%, auto repairs 10%, oil 5%) in the past 12 months.

Source	Percent
	%
	%
	%
	%
	%
	%
Total	100 %

7 REMARKS**8 CERTIFICATION** - This report is substantially accurate and was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0072	Name of person to contact regarding this report - Print or Type	0074	Area code	Number	Extension
		Telephone			



U.S. DEPARTMENT OF COMMERCE
Economics and Statistics Administration
U.S. CENSUS BUREAU

FORM
NC-99026

2002 ECONOMIC CENSUS CLASSIFICATION REPORT

OMB No. 0607-0883: Approval Expires 7/31/2004

DUE DATE
30 DAYS AFTER
RECEIPT OF FORM

An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control number is printed in the upper right corner of this form. If OMB number is not shown on this questionnaire, this survey is invalid. Public reporting burden for this collection is estimated to take 5 minutes to complete this questionnaire. Send comments regarding this burden estimate or any other aspect of this collection of information, including suggestions for reducing this burden, to: Paperwork Project 0607-0883, Room 3110, Federal Building 3, U.S. Census Bureau, Washington, D.C. 20233-1500. You may e-mail comments to Paperwork@census.gov; use "Paperwork Project 0607-0883" as the subject.

Return your completed form to:

U.S. Census Bureau
1201 East Tenth Street
Jeffersonville, IN 47134-0001

NC-99026

**INFORMATION COPY
DO NOT USE TO REPORT**

(Please correct any errors in this mailing address.)

FROM THE ASSISTANT DIRECTOR
FOR ECONOMIC PROGRAMS
U.S. CENSUS BUREAU

We need your assistance to accurately classify your firm into the correct industry for the 2002 Economic Census. Economic data are essential to business and government decision making, and reliable data for your business require accurate industry classification.

Please complete all items on this form and return it within 30 days. We recognize that providing this information is a burden and have worked hard to minimize it. Since the form requests no operating data, it should only take a few minutes to complete.

YOUR RESPONSE IS REQUIRED BY LAW. Title 13, United States Code, requires businesses and other organizations that receive this questionnaire to answer the questions and return the report to the U.S. Census Bureau. By the same law, **YOUR REPORT IS CONFIDENTIAL.** It may be seen only by persons sworn to uphold the confidentiality of Census Bureau information and may be used only for statistical purposes. Further, copies retained in respondents' files are immune from legal process.

Thank you in advance for your cooperation.

Sincerely,


THOMAS L. MESENBURG

To learn more about the U.S. Census Bureau's Economic Programs,
please visit our web site - www.census.gov/econhelp

Form NC-99026
1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Is the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shown in the mailing address the same as the one used for this establishment on its latest Internal Revenue Service Form 941, Employer's Quarterly Federal Tax Return?

0021 ☐ Yes

0022 ☐ No - Enter current EIN
(9 digits) →

--	--	--	--	--	--	--	--	--	--

2 PHYSICAL LOCATION

A. Is this establishment's physical location the same as shown in the mailing address?
(P.O. box and rural route addresses are not physical locations.)

0031 ☐ Yes

0032 ☐ No - Enter physical
location →

0035 Number and street

0036 City, town, village, etc.

0037 State

0038 ZIP Code

B. Is this establishment physically located inside the legal boundaries of the city, town, village, etc.?

0041 ☐ Yes

0042 ☐ No

0043 ☐ No legal boundaries

0044 ☐ Do not know

C. Type of municipality where this establishment is physically located

0051 ☐ City, village, or borough

0052 ☐ Town or township

0053 ☐ Other or do not know

3 BUSINESS OR ACTIVITY

A. Mark "X" ONE box which BEST describes your major type of activity at this establishment during the past year.

0700

1 ☐ Construction

2 ☐ Manufacturing

3 ☐ Other - Specify activity _____

B. Mark "X" ONE box which BEST describes your specific business or activity.

8 CERTIFICATION - This report is substantially accurate and was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0072	Name of person to contact regarding this report - Print or Type	0074	Area code	Number	Extension
	Telephone				

<부록 II> 2002 ECONOMIC CENSUS 일반 조사표



U.S. DEPARTMENT OF COMMERCE
Economics and Statistics Administration
U.S. CENSUS BUREAU
FORM

2002 ECONOMIC CENSUS

OMB No. 0607-0899: Approval Expires 08/31/2004

DUE DATE
FEBRUARY 12, 2003

Mail your completed form to:
U.S. CENSUS BUREAU
1201 East 10th Street
Jeffersonville, IN 47134-0001

Please read the accompanying information sheet(s) before answering the questions.

Need help or have questions about filling out this form?

Visit our Web site at
www.census.gov/econhelp

Call 1-800-233-6136, between 8:00 a.m. and 8:00 p.m., Eastern time, Monday through Friday.

- OR -

Write to the address above. Include your 11-digit Census File Number (CFN) printed in the mailing address.

**INFORMATION COPY
DO NOT USE TO REPORT**

(Please correct any errors in this mailing address.)

YOUR RESPONSE IS REQUIRED BY LAW. Title 13, United States Code, requires businesses and other organizations that receive this questionnaire to answer the questions and return the report to the U.S. Census Bureau. By the same law, **YOUR CENSUS REPORT IS CONFIDENTIAL.** It may be seen only by persons sworn to uphold the confidentiality of Census Bureau information and may be used only for statistical purposes. Further, copies retained in respondents' files are immune from legal process.

- Use blue or black ink.
- Please center numbers in their respective boxes. Examples:
- Do not use pencil.
- Do not put slashes through 0 or 7.
- Place an "X" inside the box.



0 1 2 3 4 5 6 7 8 9

The reporting unit for this form is an establishment. An **establishment** is generally a single physical location where business is conducted or where services or industrial operations are performed. For further clarification, see information sheet(s).

1 MONTHS IN OPERATION

Mark "X" if None

2002
Number of months

Number of months in operation during 2002 (If none, mark "X" and go to 3.) 0002 ☐

2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Is the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shown in the mailing address the same as the one used for this establishment on its latest 2002 Internal Revenue Service Form 941, Employer's Quarterly Federal Tax Return?

0021 ☐ Yes 0022 ☐ No - Enter current EIN (9 digits) → 0025

3 PHYSICAL LOCATION

A. Is this establishment's physical location the same as shown in the mailing address? (P.O. box and rural route addresses are not physical locations.)

0031 ☐ Yes

0035 Number and street

0032 ☐ No - Enter physical location

0036 City, town, village, etc.

0037 State

0038 ZIP Code

B. Is this establishment physically located inside the legal boundaries of the city, town, village, etc.?

0041 ☐ Yes 0042 ☐ No 0043 ☐ No legal boundaries 0044 ☐ Do not know

C. Type of municipality where this establishment is physically located

0046 ☐ City, village, or borough

0047 ☐ Town or township

0048 ☐ Other or do not know

**HOW TO
REPORT
DOLLAR
FIGURES**

Dollar figures should be **rounded to thousands** of dollars.

Mark "X"
if None

If a figure is **\$1,025,628.79**:

Report →

2002		
\$ Bil.	Mil.	Thou.
	1	026

If a value is "0" (or less than \$500.00):

Report →

☒

4 SALES, SHIPMENTS, RECEIPTS, OR REVENUE

Mark "X"
if None

A. Total value of products shipped and other receipts (Report detail in ②). 0100 ☐

B. Value of products exported (This is a breakout of the value reported on line A.)

Report the value of products shipped for export. Include shipments to customers in the Panama Canal Zone, the Commonwealth of Puerto Rico, and U.S. possessions, as well as the value of products shipped to exporters or other wholesalers for export. Also, include the value of products sold to the U.S. Government to be shipped to foreign governments. Exclude products shipped for further manufacture, assembly, or fabrication in the United States. 0130 ☐

2002		
\$ Bil.	Mil.	Thou.

5 E-COMMERCE SALES, SHIPMENTS, RECEIPTS, OR REVENUE

A. Did any of the amount reported in ④, line A include e-commerce sales, shipments, or receipts? (E-commerce sales, shipments, or receipts are online orders for products from customers where price and/or terms of the sale are accepted or negotiated over an Internet, Extranet,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network, electronic mail, or other online system. Payment may or may not be made online.)

0181 ☐ Yes - Go to line B

0182 ☐ No - Go to ⑥

B. Percent of total value of products shipped and other receipts reported in ④, line A using e-commerce (Report whole percents. Estimates are acceptable.) 0109

2002	
Percent	%

If not shown, please enter your 11-digit Census File Number (CFN) from the mailing address.

6 EMPLOYMENT AND PAYROLL

Include:

- Full- and part-time employees working at this establishment whose payroll was reported on Internal Revenue Service Form 941, Employer's Quarterly Federal Tax Return, and filed under the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shown in the mailing address or corrected in 2.

Exclude:

- Full- or part-time leased employees whose payroll was filed under an employee leasing company's EIN.
- Temporary staffing obtained from a staffing service.

For further clarification, see information sheet(s).

A. Number of employees

1. Number of production workers for pay periods including:

- | | | |
|-------------------------|------|--------------------------|
| a. March 12. | 0325 | ☐ |
| b. May 12. | 0326 | ☐ |
| c. August 12 | 0327 | ☐ |
| d. November 12. | 0328 | ☐ |

2. Sum lines A1a through A1d 0329

3. Average annual production workers (Divide line 2 by 4 - omit fractions.) 0335

4. All other employees for pay period including March 12 0336

5. TOTAL (Sum lines A3 and A4) 0337

Mark "X" if None

2002	
Number	

B. Payroll before deductions (Exclude employer's cost for fringe benefits.)

1. Annual payroll

- | | | |
|---|------|--------------------------|
| a. Production workers | 0304 | ☐ |
| b. All other employees | 0305 | ☐ |
| c. TOTAL (Sum lines B1a and B1b) | 0300 | ☐ |

2. First quarter payroll (January-March, 2002) 0310

C. Employer's cost for fringe benefits 0220

Mark "X" if None

2002	
\$ Mil.	Thou.

D. Number of annual hours worked by production workers (Annual hours worked by production workers reported on line A1.) 0200

Mark "X" if None

2002	
Hours	Thou.

7 LEASED EMPLOYMENT AND PAYROLL

- A.** Did this establishment have any full- or part-time leased employees whose payroll was filed under an employee leasing company's EIN?

Exclude:

- Temporary staffing obtained from a staffing service.
- Contractors, subcontractors, or independent contractors.
- Purchased or managed services, such as janitorial, guard, or landscape services.
- Professional or technical services purchased from another firm, such as software consulting, computer programming, engineering, or accounting services.
- Employees already reported in ⑥.

For further clarification, see information sheet(s).

0241 ☐ Yes - Go to line B

0242 ☐ No - Go to ⑩

B. Number of leased employees

- 1.** Number of leased production workers for pay periods including:

a. March 12. 0375 ☐

b. May 12. 0376 ☐

c. August 12 0377 ☐

d. November 12. 0378 ☐

2. Sum lines B1a through B1d 0379 ☐

3. Average annual leased production workers (Divide line 2 by 4 - omit fractions) . . . 0385 ☐

4. All other leased employees for pay period including March 12 0386 ☐

5. TOTAL (Sum lines B3 and B4) 0384 ☐

Mark "X"
if None

2002	
Number	

C. Payroll for leased employees before deductions
(Exclude employer's cost for fringe benefits.)

- 1. Annual payroll for leased employees**

a. Leased production workers 0354 ☐

b. Other leased employees 0355 ☐

c. **TOTAL (Sum lines C1a and C1b)** 0350 ☐

2. First quarter payroll for leased employees (January-March, 2002). 0360 ☐

- D. Employer's fringe benefits cost for leased employees (Include fringe benefits for all leased employees reported on line B.)** 0225 ☐

Mark "X"
if None

2002	
\$ Mil.	Thou.

- E. Number of annual hours worked by leased production workers (Annual hours worked by leased production workers reported on line B1.)** 0205 ☐

Mark "X"
if None

2002	
Hours	Thou.

8-9 Not Applicable.

If not shown, please enter your 11-digit Census File Number (CFN) from the mailing address.

10 INVENTORIES

(Report inventories using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actices.)

Were inventories of this establishment subject to the Last-in, First-out (LIFO) method of valuation?

0481 ☐ Yes - Use the sum of the LIFO amount plus the LIFO reserve for completing lines A through F2. If you changed to LIFO for calendar year 2002, specify in the REMARKS section.

0482 ☐ No - Complete only lines A through E1. Line E1 should equal line D.

	Mark "X" if None	End of 2002			Mark "X" if None	End of 2001		
		\$ Bil.	Mil.	Thou.		\$ Bil.	Mil.	Thou.
A. Finished goods	0461 ☐				0471 ☐			
B. Work-in-process	0463 ☐				0473 ☐			
C. Materials, supplies, fuels, etc.	0462 ☐				0472 ☐			
D. TOTAL	0460 ☐				0470 ☐			
E. Of the value on line D report:								
1. Amount not subject to LIFO costing	0464 ☐				0474 ☐			
2. Amount subject to LIFO costing (gross)	0465 ☐				0475 ☐			
F. Of the value on line E2 report:								
1. Amount of LIFO reserve	0466 ☐				0476 ☐			
2. Amount of LIFO value (net)	0467 ☐				0477 ☐			

11 Not Applicable.

If not shown, please enter your 11-digit Census File Number (CFN) from the mailing address.

15 SELECTED EXPENSES

A. Selected production related costs

1. Cost of materials, parts, containers, packaging, etc. used (Report detail in 16.) 0421 ☐
2. Cost of products bought and sold as such without further processing (Report sales in 2.) 0426 ☐
3. Cost of purchased fuels consumed for heat, power, or the generation of electricity 0430 ☐
4. Cost of purchased electricity (Report quantity on line B1.) 0425 ☐
5. Cost of work done for you by others on your materials 0424 ☐
6. **TOTAL** (Sum lines A1 through A5). 0420 ☐

Mark "X" if None

2002		
\$ Bil.	Mil.	Thou.

B. Quantity of Electricity

1. Purchased electricity (Quantity comparable to cost reported on line A4.) 0436 ☐
2. Generated electricity (Gross less generating station use). 0437 ☐
3. Electricity sold or transferred to other establishments (Include on lines B1 or B2.) 0438 ☐

Mark "X" if None

2002	
Kilowatthours	
Mil.	Thou.

16 DETAILED COST OF MATERIALS, PARTS, AND SUPPLIES

General - The materials, parts, and supplies listed below are those commonly consumed in the manufacture, processing, or assembly of the products listed in 2. Please review the entire list and report separately each item consumed. Leave blank if you do not consume the item. If you use materials, parts, and supplies that are not listed, describe and report them in the "Cost of all other materials . . ." at the end of this section. If you consumed less than \$25,000 of a listed material, include the value with "Cost of all other materials . . ." Census material code 009700 99 8.

Report materials, parts, and supplies purchased, transferred from other plants of your company, or withdrawn from inventory.

If quantities are requested, please use the unit of measure specified.

If the information as requested cannot be taken directly from your book records, REASONABLE ESTIMATES ARE ACCEPTABLE.

Valuation of Materials Consumed - The value of the materials, etc., consumed should be based on the delivered cost; i.e., the amount paid or payable after discounts and including freight and other direct charges incurred in acquiring the materials.

Materials received from other plants within your company should be reported at their full opening value (the value assigned by the shipping plant, plus the cost of freight and other handling charges).

If purchases or transfers do not differ significantly from the amounts actually put into production, you may report the cost of purchases or transfers. However, if consumption differs significantly from the amounts purchased or transferred, these amounts should be adjusted for changes in the materials and supplies inventories by adding the beginning inventory to the amount purchased or transferred and subtracting ending inventory.

Contract Work - Include a material consumed those you purchased for use by others making products for you under contract. Amounts paid to the companies doing the contract work should be reported in 16, line A5, and should include freight in and out. On the other hand, materials owned by others but used at this establishment in making products for others under contract or on commission should be excluded.

Resales - Cost for products bought and sold or transferred from other establishments of your company and sold without further manufacture, processing, or assembly should be reported in 16, line A2, not in 16. The value of these products shipped by this establishment should be reported in 12 under Census product code 000999 8900 6, "Resales."

Toll Operations - Tolling must be performed for customers outside your own company. If the work is done for other establishments within your company, the value of the materials consumed in the tolling operation should be reported in your cost of materials data and the processed value of the products should be reported as a product shipment and a corresponding interplant transfer.

The figure for coal, line 33, should represent the amounts used as a raw material for the production of coke. Coal purchased for heat and power should be reported in 16.

Line No.	Materials, parts, and supplies	Census material code	Unit of measure for quantities	Consumption of purchased materials and of materials received from other establishments of your company				
				Quantity	Cost, including delivery cost (freight-in)			
					\$ Bil.	Mil.	Thou.	
0634		0630	0636	0632	0631			
	Shapes and forms (excluding castings, forgings, and fabricated metal products)							
	Ferrous							
	Steel							
1	Rod for wiredrawing	331200 81 6	↑ short tons ↓					
2	Wire for redrawing	331200 67 5						
3	All other steel shapes and forms	331200 75 8						
	Ferroalloys							
4	Ferromanganese, silicomanganese, and manganese	331112 03 7	↑ short tons ↓					
5	Ferrochromium	331112 05 2						

CONTINUE WITH 16 ON PAGE 9

CONTINUE ON PAGE 9

If not shown, please enter your 11-digit Census File Number (CFN) from the mailing address.

16 DETAILED COST OF MATERIALS, PARTS, AND SUPPLIES - Continued

Line No.	Materials, parts, and supplies	Census material code	Unit of measure for quantities	Consumption of purchased materials and of materials received from other establishments of your company			
				Quantity	Cost, including delivery cost (freight-in)		
					\$ Bil.	Mil.	Thou.
		0630	0636	0632	0631		
	Shapes and forms (excluding castings, forgings, and fabricated metal products) - Continued						
	Ferrous - Continued						
	Ferroalloys - Continued						
6	Ferrosilicon (more than 8 percent silicon)	331112 07 8	↑ short tons ↓				
7	Ferrovanadium	331112 09 4					
8	Other ferroalloys (including silvery iron, ferrotungsten, ferromolybdenum, ferronickel, etc.)	331112 01 1					
9	All other ferrous shapes and forms	331000 AE 8					
	Nonferrous						
10	Aluminum	331000 39 8					
11	Nickel (excluding ferronickel)	331419 33 3	↑ short tons ↓				
12	Tin and tin-base alloy	331419 39 0					
13	Zinc and zinc-base alloy	331491 05 0					
14	All other nonferrous shapes and forms	331419 13 5					
	Castings						
15	Gray iron ingot molds and stools	331511 03 0					
16	All other iron and steel castings	331510 07 3					
	Stone, clay, glass, and concrete products						
17	Clay refractories	327124 00 4					
18	Nonclay refractories	327125 00 1					
	Fluxes						
19	Limestone	327992 07 9					
20	Lime (including quicklime)	327410 07 2					
21	Dead-burned dolomite	327410 09 8					
22	Fluorspar	327992 09 5					
23	Other fluxes	327992 11 1					
24	All other stone, clay, glass, and concrete products	327000 13 9					

CONTINUE WITH 16 ON PAGE 10

CONTINUE ON PAGE 10

16 DETAILED COST OF MATERIALS, PARTS, AND SUPPLIES - Continued							
Line No.	Materials, parts, and supplies	Census material code	Unit of measure for quantities	Consumption of purchased materials and of materials received from other establishments of your company			
				Quantity	Cost, including delivery cost (freight-in)		
					\$ Bil.	Mil.	Thou.
		0630	0636	0632	0631		
	Chemicals and allied products						
25	Industrial chemicals (excluding sulfuric acid and oxygen)	325000 11 5					
26	Oxygen (including low and high purity) (liquid oxygen should be converted to its gaseous equivalent)	325120 03 8					
27	Sulfuric acid (100 percent H ₂ SO ₄)	325188 03 5					
28	All other chemicals and allied products	325000 39 6					
	Metal mining						
29	Iron ore (including pelletized and mangani-ferrous) Crude and concentrates (Report quantity in gross weight.)	212210 11 6	↑ short tons ↓				
30	Agglomerates (Report quantity in gross weight.)	212210 09 0					
31	Manganese ore (including 10 percent manganese) and ferroalloy ore	212299 01 0					
32	All other metal mining	212200 13 3					
33	Coal used in the production of coke (Do not report coal used for heat and power.)	212110 01 9	↑ short tons ↓				
34	Iron and steel purchased scrap (excluding rails for rerolling; including scrap generated in other establishments of your company and transferred to this establishment as well as scrap purchased from outside sources; excluding home scrap)	001900 23 2					
35	Direct-reduced iron (DRI)	001900 53 9					
36	Pig iron (excluding silvery iron)	331200 45 1					
37	Lubricating oils and greases and other petroleum products	324100 17 1					
38	Industrial dies, molds, jigs, and fixtures	333500 03 1					
39	Carbon and graphite electrodes	335991 03 0					
40	Cost of all other materials and components, parts, containers, and supplies consumed (Specify the principal materials, etc., included in this value.) 7	009700 99 8					
41	TOTAL (Should equal total reported in 16, line A1)	771000 00 7					

If not shown, please enter your 11-digit Census File Number (CFN) from the mailing address.

17 Not Applicable.

18 TYPE OF OPERATION

(Mark "X" the statements below that best describe the manufacturing operation(s) at this establishment during 2002.)

Drawn plain wire

0620

368 ☐ Either all or partly produced from rods or bars produced in this establishment

372 ☐ All produced from rods, bars, or redrawn wire purchased from other companies or received from other plants of the same company

Cold-rolled and cold-finished sheet, strip, or bars

380 ☐ Either all or partly produced from hot-rolled shapes produced in this establishment

382 ☐ All produced from hot-rolled shapes purchased from other companies or received from other plants of the same company

Pipe and tube

384 ☐ Either all or partly produced from semifinished shapes or plate produced in this establishment

386 ☐ All produced from semifinished shapes or plate purchased from other companies or received from other plants of the same company

Steel forgings

388 ☐ Either all or partly produced from ingot, blooms, billets, slabs, or bars produced in this establishment

390 ☐ All produced from ingot, blooms, billets, slabs, or bars purchased from other companies or received from other plants of the same company

Wire products

364 ☐ Either all or partly produced from wire drawn in this establishment from steel rods or bars produced in this establishment

370 ☐ Either all or partly produced from wire drawn in this establishment from steel rods or bars purchased from other companies or received from other plants of the same company

366 ☐ Either all or partly produced from nonferrous wire drawn in this establishment

378 ☐ All produced from plain wire purchased from other companies or received from other plants of the same company

19-21 Not Applicable.

22 DETAIL OF SALES, SHIPMENTS, RECEIPTS, OR REVENUE

General - The manufactured products and services listed below are generally made in your industry. If you make products that are not listed, describe and report them in the "All other products made in this establishment" section at the end of 2. PLEASE DO NOT COMBINE PRODUCT LINES.

If quantities are requested, please use the unit of measure specified.

If the information as requested cannot be taken directly from your book records, REASONABLE ESTIMATES ARE ACCEPTABLE.

Quantity Produced For All Purposes - Report in this column the total quantity for each specified product made in this establishment during 2002. Do not report any data on the production of intermediate stages through which the metal may be processed in the production of other rolled, drawn, or extruded products. For example, if you purchase ingot or wire bars, roll them into rods and then draw wire from these rods, you should only report information on the wire in this section of the form; no information is necessary on the rods.

Products Shipped and Other Receipts - Report in these columns the quantity and value of all products made in this establishment which were physically shipped on consignment, whether or not sold at the end of the year. The value of the products shipped and services performed should be based on the net selling value, f.o.b. plant, after discounts and allowances, and exclusive of freight charges and excise taxes.

CONTINUE WITH 2 ON PAGE 12

CONTINUE ON PAGE 12

22 DETAIL OF SALES, SHIPMENTS, RECEIPTS, OR REVENUE - Continued

Contract Work - Report PRODUCTS MADE BY OTHERS FOR YOU FROM YOUR MATERIALS on the specific lines as if they were made in this establishment. On the other hand, do not report on the specific product lines PRODUCTS THAT YOU MADE FROM MATERIALS OWNED BY OTHERS. Report only the amount that you received for "commission or contract receipts" under Census code 000930 0014 9.

Toll Operations - Tolling must be performed for customers outside your own company. If the work is done for other establishments within your company; the value of the materials consumed in the tolling operation should be reported in your cost of materials data and the processed value of the product should be reported as a product shipment and a corresponding interplant transfer.

Resales - Do not report on the specific product lines those PRODUCTS BOUGHT AND SOLD OR TRANSFERRED FROM OTHER ESTABLISHMENTS OF YOUR COMPANY AND SOLD WITHOUT FURTHER MANUFACTURE. Report only a value under Census code 000999 8900 6, "Resales."

Detailed Data Reported Elsewhere - Items denoted by an asterisk (*) require totals for groups of products covered in the more frequent Current Industrial Reports (CIR). If you report on the CIR form, the sum of the detailed products should equal the total reported on this form.

NOTE: Only totals are requested; do not duplicate detail reported on the CIR.

Line No.	Products and services *Items correspond to products reported on Current Industrial Reports (CIR)	Census product code	Unit of measure for quantities	Quantity produced for all purposes	Products shipped and other receipts			
					Quantity	Value, f.o.b. plant		
						\$ Bil.	Mil.	Thou.
	0734	0730	0736	0733	0732	0731		
1	Coke oven products, made in steel mills		↑					
	Coke, except screenings and breeze	331111 1101 0	short tons					
2	Screenings and breeze	331111 1103 6	↓					
3	Crude tar	331111 1105 1	↑					
4	Crude light oil	331111 1107 7	1000 gal					
5	Other coke oven products (including tar derivatives, ammonia, light oil derivations, and coke oven gas)	331111 1109 3	↓					
6	Blast furnace products (excluding ferroalloys)		↑					
	Pig iron (including pig iron with silicon content up to and including 6 percent silicon)	331111 1111 9	short tons					
7	Slag	331111 1113 5	↓					
8	Sinter from ore, flue dust, blast furnace gas, and other materials	331111 1115 0						
9	Other blast furnace products (Specify kind.) 7	331111 1117 6						
10	Products made in electric and other furnaces		↑					
	Ferrochromium (including briquets), ferrochromium silicon, exothermic chromium additives, and other chromium alloys	331112 1100 0	short tons					
11	Ferrosilicon (including briquets) and other silicon alloys	331112 3100 8	↓					
12	Silicon, unalloyed	331419 9121 7						

CONTINUE WITH 22 ON PAGE 13

CONTINUE ON PAGE 13

If not shown, please enter your 11-digit Census File Number (CFN) from the mailing address.

22 DETAIL OF SALES, SHIPMENTS, RECEIPTS, OR REVENUE - Continued

Line No.	Products and services *Items correspond to products reported on Current Industrial Reports (CIR)	Census product code	Unit of measure for quantities	Quantity produced for all purposes	Products shipped and other receipts			
					Quantity	Value, f.o.b. plant		
						\$ Bil.	Mil.	Thou.
0734		0730	0736	0733	0732	0731		
13	Products made in electric and other furnaces - Continued		↑ short tons ↓					
	Other ferroalloys							
	Superalloys (these superior heat and creep resistant alloys should be excluded from alloy categories listed elsewhere) . . .	331112 5101 4						
14	Other ferroalloys (including silvery iron, ferromanganese, manganese metal, silicomanganese, and ferro- spiegeleisen)	331112 5203 8						
15	Other ferrous products made in electric and other furnaces (Specify kind.) 7	331112 5305 1						
16	Steel mill products							
	Ingots and semifinished shapes and forms (Corresponds to value of shipments reported on CIR Form MA331B, Steel Mill Products, for 2002, item codes 1110 - 1245, 2110 - 2241, and 3110 - 3225)*	331111 3100 0						
17	Tinplate, blackplate, terneplate, tin free steel, and hot-rolled sheet and strip (Corresponds to value of shipments reported on CIR Form MA331B, Steel Mill Products, for 2002, item codes 1323, 1355, 1360, 1370, 1385, 1390, 1420, 1430, 1445, 1450, 2321, 2333, 2375, 2391, and 3335)*	331111 5100 8						
18	Plates, structural shapes, piling, hot-rolled bars and bar shapes (including concrete reinforcing and tool steel bars) (Corresponds to value of shipments reported on CIR Form MA331B, Steel Mill Products, for 2002, item codes 1313 - 1314, 1506-1546, 2314, 2316, 2318, 2520, 2530, 2535, 3320, and 3525)*	331111 7100 6						

CONTINUE WITH 23 ON PAGE 14

CONTINUE ON PAGE 14

22 DETAIL OF SALES, SHIPMENTS, RECEIPTS, OR REVENUE - Continued								
Line No.	Products and services *Items correspond to products reported on Current Industrial Reports (CIR)	Census product code	Unit of measure for quantities	Quantity produced for all purposes	Products shipped and other receipts			
					Quantity	Value, f.o.b. plant		
						\$ Bil. 0731	Mil.	Thou.
0734		0730	0736	0733	0732			
19	Steel mill products - Continued Wire (including galvanized and other coated wire) Made in plants producing wire rods or hot-rolled bars (Corresponds to value of shipments reported on CIR Form MA331B, Steel Mill Products, for 2002, item codes 1741 - 1771, and 2707)*	331111 9100 4						
20	Made in plants not producing wire rods or hot-rolled bars, made in plants that draw wire (Corresponds to value of shipments reported on CIR Form MA331B, Steel Mill Products, for 2002, item codes 3710 - 3740)*	331222 5100 3						
21	Wire rope and cable, made in plants that draw wire (Corresponds to value of shipments reported on CIR Form MA331B, Steel Mill Products, for 2002, item codes 1783 and 1787)*	331222 1101 5						
22	Wire forms and strand, made in plants that draw wire (Corresponds to value of shipments reported on CIR Form MA331B, Steel Mill Products, for 2002, item codes 1889 - 1890)*	331222 1201 3						
23	Wire cloth and other woven wire products, made in plants that draw wire (Corresponds to value of shipments reported on CIR Form MA331B, Steel Mill Products, for 2002, item codes 1889 - 1890)*	331222 9100 9						
24	Other wire products, made in plants that draw wire (excluding springs) (Corresponds to value of shipments reported on CIR Form MA331B, Steel Mill Products, for 2002, item codes 1777, 1781 - 1782, and 1789 - 1790)*	331222 B100 6						
25	Nails, staples, tacks, spikes, and brads, made in plants that draw wire (Corresponds to value of shipments reported on CIR Form MA331B, Steel Mill Products, for 2002, item codes 1791 - 1801)*	331222 3100 5						
26	Fencing and fence gates, made in plants that draw wire (excluding posts, gates, and fittings, including galvanized and plastics coated) (Corresponds to value of shipments reported on CIR Form MA331B, Steel Mill Products, for 2002, item codes 1778 - 1780)*	331222 7100 1						

CONTINUE WITH 22 ON PAGE 15

CONTINUE ON PAGE 15

If not shown, please enter your 11-digit Census File Number (CFN) from the mailing address.

22 DETAIL OF SALES, SHIPMENTS, RECEIPTS, OR REVENUE - Continued

Line No.	Products and services *Items correspond to products reported on Current Industrial Reports (CIR)	Census product code	Unit of measure for quantities	Quantity produced for all purposes	Products shipped and other receipts			
					Quantity	Value, f.o.b. plant		
						\$ Bil.	Mil.	Thou.
0734		0730	0736	0733	0732	0731		
27	Steel mill products - Continued Pipes and tubes Made in plants producing semifinished shapes or plate (Corresponds to value of shipments reported on CIR Form MA331B, Steel Mill Products, for 2002, item codes 1636 - 1696)*	331111 B100 1						
28	Made in plants not producing semifinished shapes or plate (Corresponds to value of shipments reported on CIR Form MA331B, Steel Mill Products, for 2002, item codes 2641 - 2649, and 3610 - 3660)*	331210 0100 3						
29	Cold rolled sheet and strip Made in plants producing hot-rolled sheet or strip (Corresponds to value of shipments reported on CIR Form MA331B, Steel Mill Products, for 2002, item codes 1324, 1397, 2327, 2393, and 3339)*	331111 D100 9						
30	Made in plants not producing hot-rolled sheet or strip (Corresponds to value of shipments reported on CIR Form MA331B, Steel Mill Products, for 2002, item codes 1324, 1397, 2327, 2393, and 3339)*	331221 1100 9						
31	Cold finished bars and shapes Made in plants producing hot rolled bars and bar shapes (Corresponds to value of shipments reported on CIR Form MA331B, Steel Mill Products, for 2002, item codes 1551, 2525, and 3550)*	331111 F100 7						
32	Made in plants not producing hot-rolled bars and bar shapes (Corresponds to value of shipments reported on CIR Form MA331B, Steel Mill Products, for 2002, item codes 1551, 2525, and 3550)*	331221 3100 7						
33	Other steel mill products (including steel rails, excluding wire products) (Corresponds to value of shipments reported on CIR Form MA331B, Steel Mill Products, for 2002, item codes 1571 - 1616)*	331111 L100 1						

CONTINUE WITH **23** ON PAGE 16

CONTINUE ON PAGE 16

22 DETAIL OF SALES, SHIPMENTS, RECEIPTS, OR REVENUE - Continued

Line No.	Products and services *Items correspond to products reported on Current Industrial Reports (CIR)	Census product code	Unit of measure for quantities	Quantity produced for all purposes	Products shipped and other receipts		
					Quantity	Value, f.o.b. plant	
						\$ Bil.	Thou.
	0734	0730	0736	0733	0732	0731	
34	Iron and steel forgings Seamless rolled ring forgings, ferrous Carbon steel and alloy steel, excluding stainless and hi- temp	331111 H101 3					
35	Stainless and hi-temp (iron, nickel, or cobalt-base alloy) . . .	331111 H203 7					
36	Open-die or smith forgings, ferrous (hammer or press) Carbon steel and alloy steel (excluding stainless and hi- temp)	331111 J101 1					
37	Stainless and hi-temp (iron, nickel, or cobalt-base alloy) . . .	331111 J203 5					
38	Hot impression die impact, press, and upset steel forgings Carbon steel	332111 1101 9	↑ short tons ↓				
39	Alloy steel (excluding stainless and hi-temp)	332111 1206 6					
40	Stainless	332111 1311 4					
41	Metal powders, paste, and flakes Iron and steel (Report iron content only.)	331111 2100 1	↑ 1000 lb ↓				
42	Secondary copper and copper- base alloy powders, paste, and flakes (Report copper content only.)	331423 0106 9					
43	Fabricated structural steel for buildings, bridges, ships, offshore oil or gas platforms, transmission towers, tunneling, and subway work (Specify for what use.) 7	332312 WYWW 5					
44	Electrical conduit and conduit fittings (including plastics conduit and conduit fittings) (Corresponds to value of shipments reported on CIR Form MA335K, Wiring Devices and Supplies (Shipments), for 2002, item codes 4202 - 4240)*	335932 3100 5					

CONTINUE WITH **23** ON PAGE 17

CONTINUE ON PAGE 17

If not shown, please enter your 11-digit Census File Number (CFN) from the mailing address.

22 DETAIL OF SALES, SHIPMENTS, RECEIPTS, OR REVENUE - Continued

Line No.	Products and services *Items correspond to products reported on Current Industrial Reports (CIR)	Census product code	Unit of measure for quantities	Quantity produced for all purposes	Products shipped and other receipts			
					Quantity	Value, f.o.b. plant		
						\$ Bil.	Mil.	Thou.
	0734	0730	0736	0733	0732	0731		
45	All other products made in this establishment - <i>Specify and report each product with sales value of \$50,000 or more that cannot be assigned to one of the "listed products and services". For all remaining products, write "Other" and report a single total value.</i>	18						
46		26						
47		34						
48		42						
49		59						
50		67						
51	Contract work Receipts for conversion of steel for other companies (including fees received from both steel-producing and nonsteel companies)	000930 0086 7						
52	Receipts for processing (rolling, drawing, extruding, etc.) of materials owned by others on a toll basis. (Report the quantity of production of these products in the "Quantity produced for all purposes" column, where appropriate, on lines 1-50 above.)	000930 0087 5						
53	All other receipts for work done for others on their own materials. (<i>Specify products worked on and kind of work.</i>)	000930 0014 9						

CONTINUE WITH **23** ON PAGE 18

CONTINUE ON PAGE 18

22 DETAIL OF SALES, SHIPMENTS, RECEIPTS, OR REVENUE - Continued

Line No.	Products and services *Items correspond to products reported on Current Industrial Reports (CIR)	Census product code	Unit of measure for quantities	Quantity produced for all purposes	Products shipped and other receipts				
					Quantity	Value, f.o.b. plant			
						\$ Bil.	Mil.	Thou.	
	0734	0730	0736	0733	0732	0731			
	Miscellaneous receipts								
54	Sales of scrap and refuse	000999 8013 8							
55	Receipt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al work	000999 8041 9							
56	Other miscellaneous receipts (including receipts for repair work, etc.)	000999 8098 9							
57	Resales - Sales of products bought and sold without further manufacture, processing, or assembly (The cost of such items should be reported in 10, line A2.)	000999 8900 6							
58	TOTAL (Should equal 4, line A) . . .	770000 0000 8							

23-25 Not Applicable.**26** SPECIAL INQUIRIES**A. STEEL MILL OPERATIONS**

1. Was this establishment considered a mini-mill?

8051 ☐ Yes - Go to line 2 8052 ☐ No - Go to 26 B

2. Date this establishment was built 8055

3. Greatest distance that you shipped your products 8056

4. Shortest distance that you shipped your products 8057

Month	Year
Miles	

CONTINUE WITH 26 ON PAGE 19

CONTINUE ON PAGE 19

If not shown, please enter your 11-digit Census File Number (CFN) from the mailing address.

26 SPECIAL INQUIRIES - Continued

B. DEPARTMENTAL OPERATIONS

(All establishments should complete this item except electrometallurgical plants. If you do not maintain actual departmental records on hours worked and wages of production workers, please enter estimates.)

- | | Cen-
sus
use | Total for 2002 | | |
|--|--------------------|---------------------------------------|-------------------------------------|---------|
| | | Hours worked by
production workers | Wages paid to
production workers | |
| | | | Thou. | \$ Mil. |
| | | 81 | 82 | |
| 1. Coke ovens | 01 | | | |
| 2. Blast furnaces | 02 | | | |
| 3. Basic oxygen furnaces | 03 | | | |
| 4. Electric arc furnaces | 04 | | | |
| 5. Steel department (furnaces) (through pouring stage) | 05 | | | |
| 6. Rolling and finishing mills | | | | |
| a. Sheet and strip mills | 06 | | | |
| b. Tin mills | 07 | | | |
| c. Bar mills, including rebars | 08 | | | |
| d. Wiredrawing mills | 09 | | | |
| e. Pipe mills | 10 | | | |
| f. Other mills, including semifinishing, plate, and structural. | 11 | | | |
| 7. Foundry (iron or steel) | 12 | | | |
| 8. Forging (presses, hammers, or upsetter), excluding manufacture of nuts, bolts, etc. | 13 | | | |
| 9. Other manufacturing or fabricating departments (nuts, bolts, steel containers, etc.) | 14 | | | |
| 10. Service or auxiliary operations (all other activities not directly assignable above) | 15 | | | |
| 11. TOTAL (Sum lines 1 through 10) | 00 | | | |

27 Not Applicable.

28 ESTABLISHMENT ACTIVITIES

A. Indicate activities that were performed by this establishment or were performed for this establishment by another company during 2002.

(Mark "X" ALL that apply.)

1. Product design/engineering
2. Order fulfillment
 - a. Bundling or kitting (combining multiple items into a prepackaged product)
 - b. Pick and pack (taking goods from inventory and packaging them to fill orders).
 - c. Warehousing of finished products
 - d. Breaking bulk (reducing large shipments into smaller portions for customers)
 - e. Local delivery (within a city, town, or other local area, including adjoining towns and suburban areas)
 - f. Long distance delivery (beyond local areas and commercial zones).
 - g. Processing of returned merchandise

This activity was performed -			
By this establishment	By another establishment of this company	By another company	Not at all
0921 ☐	8071 ☐	0941 ☐	0961 ☐
0923 ☐	8072 ☐	0943 ☐	0963 ☐
0924 ☐	8073 ☐	0944 ☐	0964 ☐
0925 ☐	8074 ☐	0945 ☐	0965 ☐
0926 ☐	8075 ☐	0946 ☐	0966 ☐
0927 ☐	8076 ☐	0947 ☐	0967 ☐
0928 ☐	8077 ☐	0948 ☐	0968 ☐
0932 ☐	8078 ☐	0952 ☐	0972 ☐

B. During 2002 did this establishment:

1. Manage inventory owned by this establishment AND held at this location? 0936 ☐ Yes 0937 ☐ No
2. Manage inventory owned by this establishment BUT held at a customer's location? 0956 ☐ Yes 0957 ☐ No
3. Manage inventory owned by another company BUT held at this location? 0976 ☐ Yes 0977 ☐ No
4. Manage inventory owned by another company AND held somewhere other than at this location? 0994 ☐ Yes 0995 ☐ No
5. Contract with another firm for any of your production using materials owned by this location? 8041 ☐ Yes 8042 ☐ No
6. Send any partially completed products to a foreign facility for processing that were then returned to this establishment for completion? 8044 ☐ Yes 8045 ☐ No
7. Manufacture products for a government to their specifications? 8047 ☐ Yes 8048 ☐ No
8. Manufacture products for another business to their specifications? 8016 ☐ Yes 8017 ☐ No
9. Manufacture products for a final retail customer to their specifications? 8060 ☐ Yes 8062 ☐ No

CONTINUE ON PAGE 21

If not shown, please enter your 11-digit Census File Number (CFN) from the mailing address.

29 OPERATIONAL STATUS

Activity that best describes this establishment's status at the end of 2002
(Mark "X" only ONE box.)

0011 ☐ In operation 0013 ☐ Temporarily or seasonally inactive

0012 ☐ Under construction, development, or exploration 0014 ☐ Ceased operation - Give date at right →

0015 ☐ Sold or leased to another operator - Give date at right AND enter new name and mailing address below ↗

0018 Month Day Year

--	--	--

0060 Name of new owner or operator		0061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nter EIN of new owner (9 digits) →	
0062 Mailing address (number and street, P.O. Box, etc.)			
0063 City, town, village, etc.		0064 State	0065 ZIP Code

Remarks (Please use this space for any explanations that may be essential in understanding your reported data.)

30 CERTIFICATION - This report is substantially accurate and was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Is the time period covered by this report a calendar year?

0078 ☐ Yes 0079 ☐ No - Enter time period covered →

FROM 0070 Month Year TO 0071 Month Year

--	--	--	--	--	--

0072 Name of person to contact regarding this report

0073 Title

Telephone	Area code	Number	Extension	Fax	Area code	Number
0074				0075		
0076 Internet e-mail address				Date completed	0069	Month Day Year

Thank you for completing your 2002 Economic Census form.
PLEASE PHOTOCOPY THIS FORM FOR YOUR RECORDS AND RETURN THE ORIGINAL.

<부록 III> 2002 ECONOMIC CENSUS 조직 관련 조사항목

OMB No. 0607-0886
Approval Expires 08/31/2004

If not shown, please enter your 11-digit Census File Number (CFN) from the mailing address.

FORM NC-99510

U.S. DEPARTMENT OF COMMERCE
Economics and Statistics Administration
U.S. CENSUS BUREAU

OWNERSHIP OR CONTROL

A. Is your company owned or controlled by another domestic company

OR

does your company operate at more than one physical location?

☐ Yes - Complete lines B and C and return this form with your completed 2002 Economic Census form.

☐ No - Discard this form (NC-99510) and return your completed 2002 Economic Census form.

B. Ownership or control

1. Does another domestic company hold more than 50 percent of the voting stock of your company or have the power to control the management and policies of your company?

☐ Yes - Enter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the owning or controlling company.

☐ No - Go to line C

Name of owning or controlling company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nter EIN of owning or controlling company (9 digits) →
Home office address (Number and street)	
City, town, village, etc.	State ZIP Code

2. Percent of voting stock held by owning or controlling company (Mark "X" only ONE box.)

☐ Less than 50%

☐ 50%

☐ More than 50%

2002
Number

C. Number of establishments operated at the end of 2002 under the EIN shown in the mailing address or as corrected in ② on the first page of the 2002 Economic Census form

If more than one establishment:

- Provide the physical location address and other information requested on the back of this form for each location.
- Provide the headquarter's location first, followed by all other locations.
- Data for establishments operated during 2002, but not in operation at the end of the year, should be included with the headquarter's location.
- The sum of all sales, shipments, receipts, or revenue; employment and payroll; and leased employment and payroll for all locations should equal the amounts reported in ④, ⑤, and ⑦ of the 2002 Economic Census form.
- For employees that worked at more than one location, report the employment and payroll data for the employees at the ONE location where they spent most of their working time.

Public reporting burden for this collection of information is estimated to vary from 1 to 5 minutes, with an average of 1.2 minutes per response. Send comments regarding this burden estimate or any other aspect of this collection of information, including suggestions for reducing this burden, to: Paperwork Project 0607-0886, Room 3110, Federal Building 3, U.S. Census Bureau, Washington, D.C. 20233-1500. You may e-mail comments to Paperwork@census.gov; use "Paperwork Project 0607-0886" as the subject. Response to this collection of information is not required unless it displays a valid approval number from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The OMB eight-digit number appears in the upper right corner of the form.

CONTINUE ON PAGE 2

C. Number of establishments operated at the end of 2002 under the EIN shown in the mailing address or as corrected in ② on the first page of the 2002 Economic Census form - Continued

BEFORE YOU BEGIN: If this EIN had more than 3 physical locations at the end of 2002, copy this page and provide the requested data for all of your locations.

1	Name		Sales, shipments, receipts, or revenue		2002						
	Number and street (P.O. box and rural route addresses are not physical locations.)				Estimates are acceptable						
					\$ Mil.		Thou.				
	City, town, village, etc.		Number of employees for pay period including March 12	2002							
	State ZIP Code			Estimates are acceptable							
				Paid employees		Leased employees					
				Number		Number					
	Describe kind of business at this location			First quarter payroll (Jan-Mar, 2002)	\$ Mil.		Thou.		\$ Mil.		Thou.
	Annual payroll										
2	Name		Sales, shipments, receipts, or revenue		2002						
	Number and street (P.O. box and rural route addresses are not physical locations.)				Estimates are acceptable						
					\$ Mil.		Thou.				
	City, town, village, etc.		Number of employees for pay period including March 12	2002							
	State ZIP Code			Estimates are acceptable							
				Paid employees		Leased employees					
				Number		Number					
	Describe kind of business at this location			First quarter payroll (Jan-Mar, 2002)	\$ Mil.		Thou.		\$ Mil.		Thou.
	Annual payroll										
3	Name		Sales, shipments, receipts, or revenue		2002						
	Number and street (P.O. box and rural route addresses are not physical locations.)				Estimates are acceptable						
					\$ Mil.		Thou.				
	City, town, village, etc.		Number of employees for pay period including March 12	2002							
	State ZIP Code			Estimates are acceptable							
				Paid employees		Leased employees					
				Number		Number					
	Describe kind of business at this location			First quarter payroll (Jan-Mar, 2002)	\$ Mil.		Thou.		\$ Mil.		Thou.
	Annual payroll										



U.S. DEPARTMENT OF COMMERCE
Economics and Statistics Administration
U.S. CENSUS BUREAU

FORM
NC-99001

2002 REPORT OF ORGANIZATION

OMB No. 0607-0444: Approval Expires 11/30/2003

DUE DATE

FEBRUARY 12, 2003

Mail your completed form to:

U.S. CENSUS BUREAU
1201 East 10th Street
Jeffersonville, IN 47134-0001

**Need help or have questions
about filling out this form?**

Visit our Web site at
www.census.gov/econhelp

Call 1-800-233-6136, between
8:00 a.m. and 8:00 p.m., Eastern
time, Monday through Friday.

- OR -

Write to the address above.
Include your 11-digit Census File
Number (CFN) printed in the
mailing address.

NC-99001

**INFORMATION COPY
DO NOT USE TO REPORT**

(Please correct any errors in this mailing address.)

YOUR RESPONSE IS REQUIRED BY LAW. Title 13, United States Code, requires businesses and other organizations that receive this questionnaire to answer the questions and return the report to the U.S. Census Bureau. By the same law, **YOUR CENSUS REPORT IS CONFIDENTIAL.** It may be seen only by persons sworn to uphold the confidentiality of Census Bureau information and may be used only for statistical purposes. Further, copies retained in respondents' files are immune from legal process.

1 CERTIFICATION - This report is substantially accurate and was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0072 Name of person to contact regarding this report

0073 Title

6071 Mailing address if different from above address (Number and street, P.O. box, etc.)

6072 City, town, village, etc.

6073 State

6074 ZIP Code

Telephone

0074

Area code

Number

Extension

Fax

0075

Area code

Number

0076 Internet e-mail address

Date
completed

0069

Month

Day

Year

PENALTY FOR FAILURE TO REPORT

2 COMPANY OWNERSHIP OR CONTROL - DOMESTIC

A. Does another domestic company hold more than 50 percent of the voting stock of your company **or** have the power to control the management and policies of your company?

0008 ☐ Yes - Enter the following information on the owning or controlling company 7

0008 ☐ No - Go to 3

0080 Name of owning or controlling company		Enter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of owning or controlling company (9 digits) →	
0082 Home office address (Number and street)			
0083 City, town, village, etc.	0084 State	0085 ZIP Code	

B. Percent of voting stock held by owning **or** controlling company (Mark "X" only ONE box.)

0027 ☐ Less than 50%

0028 ☐ 50%

0029 ☐ More than 50%

3 COMPANY OWNERSHIP OR CONTROL - FOREIGN

Does a foreign entity (company, individual, government, etc.) own directly or indirectly 10 percent or more of the voting stock or other equity rights of your company?

6101 ☐ Yes - Enter the following information on the owning entity and go to 4 7

6103 Name of foreign beneficial owner			
6104 Home office address (Number and street)			
6105 City	6106 Country		
Percent ownership (direct and indirect) (Mark "X" only ONE box.) →	6111 ☐ 10-24%	6113 ☐ 50%	6115 ☐ 100%
	6112 ☐ 25-49%	6114 ☐ 51-99%	

6102 ☐ No - Does a foreign entity own or control 10 percent or more of any U.S. corporation of which you are the majority owner?

6121 ☐ Yes - Provide the name, mailing address, and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of subsidiaries in which a foreign entity has a 10 percent or more direct ownership interest on a separate sheet of paper. Be sure to enter the item number, your company's name and address, and Census File Number in the upper right corner of each additional sheet. Then go to 4.

6122 ☐ No - Go to 4

4 FOREIGN AFFILIATES

Does this company alone, or with its domestic affiliates, own 10 percent or more of the voting stock of an incorporated foreign business enterprise, or an equivalent interest in an unincorporated business enterprise, including ownership or real estate?

6126 ☐ Yes

6127 ☐ No

2002 REPORT OF ORGANIZATION**5 A. PRE-IDENTIFIED LOCATIONS OF OPERATIONS**

We have listed establishments of your company based on Census records. Please update this list as follows:

- **Column (a)** - Correct any errors or omissions in the information. The establishments are listed in the following sequence: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major activity, and geographic location.

- **Column (b)** - Report separately the number of employees and payroll for both paid and leased employees for each establishment, including part-year operations. Do not combine data for establishments. If book figures are not available for employment and payroll for each establishment, please provide your best estimates.

- **Column (c)** - Report status of each establishment at the end of 2002.

INFORMATION COPY
DO NOT USE TO REPORT

Company Establishments and Subsidiaries (Add store or plant number, if any and correct any errors or omissions.)				2002 Employment and Payroll (Report the number of employees and payroll for each establishment, including part-year operations.)			Operational Status at the End of 2002 (Mark "X" only ONE box.)		
(a)				(b)			(c)		
Line No.	EIN	NAICS		Number of employees for pay period including March 12	2002 Paid employees		☐ In operation ☐ Temporarily or seasonally inactive ☐ Ceased operation - Give date at right Month Day Year ☐ Sold or leased to another operator - Give date above AND enter name and mailing address below		
Major activity									
Name				First quarter payroll (Jan.-Mar.)	\$ Mil. Thou.				
Secondary name				Annual payroll					
Store or plant No.							Name of new owner or operator		
Physical location (Number and street)				Number of employees for pay period including March 12	2002 Leased employees		Mailing address (No. and street, P.O. box, etc.)		
City, town, village, etc.				First quarter payroll (Jan.-Mar.)	\$ Mil. Thou.		City, town, village, etc.		
State ZIP Code				Annual payroll			State ZIP Code		
							☐ Other - Specify →		
Line No.	EIN	NAICS		Number of employees for pay period including March 12	2002 Paid employees		☐ In operation ☐ Temporarily or seasonally inactive ☐ Ceased operation - Give date at right Month Day Year ☐ Sold or leased to another operator - Give date above AND enter name and mailing address below		
Major activity									
Name				First quarter payroll (Jan.-Mar.)	\$ Mil. Thou.				
Secondary name				Annual payroll					
Store or plant No.							Name of new owner or operator		
Physical location (Number and street)				Number of employees for pay period including March 12	2002 Leased employees		Mailing address (No. and street, P.O. box, etc.)		
City, town, village, etc.				First quarter payroll (Jan.-Mar.)	\$ Mil. Thou.		City, town, village, etc.		
State ZIP Code				Annual payroll			State ZIP Code		
							☐ Other - Specify →		

5 A. PRE-IDENTIFIED LOCATIONS OF OPERATIONS - Continued

(a) Company Establishments and Subsidiaries				(b) 2002 Employment and Payroll			(c) Operational Status at the End of 2002		
Line No.	EIN	NAICS		Number of employees for pay period including March 12	2002 Paid employees		☐ In operation ☐ Temporarily or seasonally inactive ☐ Ceased operation - Give date at right ☐ Sold or leased to another operator - Give date above AND enter name and mailing address below	Month Day Year	
Major activity			First quarter payroll (Jan.-Mar.)		\$ Mil.	Thou.			
Name					Annual payroll				
Secondary name		Store or plant No.		Number of employees for pay period including March 12	2002 Leased employees		Name of new owner or operator		
Physical location (Number and street)					First quarter payroll (Jan.-Mar.)	\$ Mil.	Thou.	Mailing address (No. and street, P.O. box, etc.)	
City, town, village, etc.		State	ZIP Code			Annual payroll			☐ Other - Specify →
Line No.	EIN	NAICS		Number of employees for pay period including March 12	2002 Paid employees		☐ In operation ☐ Temporarily or seasonally inactive ☐ Ceased operation - Give date at right ☐ Sold or leased to another operator - Give date above AND enter name and mailing address below	Month Day Year	
Major activity			First quarter payroll (Jan.-Mar.)		\$ Mil.	Thou.			
Name					Annual payroll				
Secondary name		Store or plant No.		Number of employees for pay period including March 12	2002 Leased employees		Name of new owner or operator		
Physical location (Number and street)					First quarter payroll (Jan.-Mar.)	\$ Mil.	Thou.	Mailing address (No. and street, P.O. box, etc.)	
City, town, village, etc.		State	ZIP Code			Annual payroll			☐ Other - Specify →
Line No.	EIN	NAICS		Number of employees for pay period including March 12	2002 Paid employees		☐ In operation ☐ Temporarily or seasonally inactive ☐ Ceased operation - Give date at right ☐ Sold or leased to another operator - Give date above AND enter name and mailing address below	Month Day Year	
Major activity			First quarter payroll (Jan.-Mar.)		\$ Mil.	Thou.			
Name					Annual payroll				
Secondary name		Store or plant No.		Number of employees for pay period including March 12	2002 Leased employees		Name of new owner or operator		
Physical location (Number and street)					First quarter payroll (Jan.-Mar.)	\$ Mil.	Thou.	Mailing address (No. and street, P.O. box, etc.)	
City, town, village, etc.		State	ZIP Code			Annual payroll			☐ Other - Specify →

2002 REPORT OF ORGANIZATION**5 B. ADDITIONAL LOCATIONS OF OPERATIONS**

Column (a) - List separately any establishments of your company and its subsidiaries that were not included on the PRE-IDENTIFIED LOCATIONS OF OPERATIONS but were in operation. If your company operates at locations for which you have received separate report forms, do not list them, instead complete those forms. For acquired establishments that you list, complete **column (c2)**.

Column (b) - Report number of employees and payroll for both paid and leased employees for each establishment, including part-year operations.

Column (c1) - Enter the code from the MAJOR ACTIVITY CODES list that best describes the activity of each establishment and specify the principal products or services.

Column (c2) - Complete for acquired establishments.

MAJOR ACTIVITY CODES FOR COLUMN (c1)

- 01 - Agricultural production
- 02 - Agricultural services
- 03 - Minerals extraction/ore processing
- 04 - Mining services/oil and gas field services
- 05 - Utilities
- 06 - Construction
- 07 - Manufacturing
- 08 - Merchant wholesaler
- 09 - Commission merchant/broker/electronic marketer (business to business)
- 10 - Manufacturers' sales branch/manufacturers' sales office
- 11 - Retail
- 12 - Transportation/public warehousing
- 13 - Information services/publishing/telecommunications
- 14 - Finance/insurance
- 15 - Real estate/renting/leasing
- 16 - Professional/scientific/technical service
- 17 - Waste management/remediation service/administrative/support service
- 18 - Educational service
- 19 - Health care
- 20 - Social assistance
- 21 - Arts/entertainment/recreation
- 22 - Accommodation/food service
- 23 - Corporate/subsidiary/regional/managing office
- 24 - **Other** - Specify major activity along with principal products or services in column (c1) below.

IMPORTANT - DO NOT DUPLICATE ESTABLISHMENTS PRELISTED IN 5A.

Company Establishments and Subsidiaries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establishment name, your store or plant number, if any, address of physical location, including ZIP Code)				2002 Employment and Payroll (Report the number of employees and payroll for each establishment, including part-year operations.)		Major Activity in 2002 (Enter the code from the MAJOR ACTIVITY CODES list and specify the principal products or services.)	
(a)				(b)		(c1)	
Line No.	EIN			Number of employees for pay period including March 12	2002		Code Specify
					Paid employees		
Name				First quarter payroll (Jan.-Mar.)	\$ Mil.	Thou.	Former Owner or Operator (c2)
Secondary name							
Store or plant No.				Annual payroll			Name of former owner or operator
Physical location (Number and street)				Number of employees for pay period including March 12	2002		Mailing address (No. and street, P.O. box, etc.)
City, town, village, etc.					Leased employees		
State ZIP Code				First quarter payroll (Jan.-Mar.)	\$ Mil.	Thou.	City, town, village, etc. State ZIP Code
Date establishment opened or is expected to open							
Month Day Year				Annual payroll			Date acquired Month Year

PENALTY FOR FAILURE TO REPORT

5 B. ADDITIONAL LOCATIONS OF OPERATIONS - Continued

(a) Company Establishments and Subsidiaries				(b) 2002 Employment and Payroll			(c1) Major Activity in 2002		
Line No.	EIN			Number of employees for pay period including March 12	2002		Code ☐ Specify <u>7</u>		
			Paid employees						
Name				First quarter payroll (Jan.-Mar.)	\$ Mil.	Thou.	Former Owner or Operator (c2)		
Secondary name					Store or plant No.				
Physical location (Number and street)				Annual payroll			Name of former owner or operator		
City, town, village, etc.				Number of employees for pay period including March 12	2002		Mailing address (No. and street, P.O. box, etc.)		
State ZIP Code					Leased employees				
Date establishment opened or is expected to open				First quarter payroll (Jan.-Mar.)	\$ Mil.	Thou.	City, town, village, etc. State ZIP Code		
Month Day Year					Annual payroll			Date acquired	
Line No.	EIN			Number of employees for pay period including March 12	2002		Code ☐ Specify <u>7</u>		
			Paid employees						
Name				First quarter payroll (Jan.-Mar.)	\$ Mil.	Thou.	Former Owner or Operator (c2)		
Secondary name					Store or plant No.				
Physical location (Number and street)				Annual payroll			Name of former owner or operator		
City, town, village, etc.				Number of employees for pay period including March 12	2002		Mailing address (No. and street, P.O. box, etc.)		
State ZIP Code					Leased employees				
Date establishment opened or is expected to open				First quarter payroll (Jan.-Mar.)	\$ Mil.	Thou.	City, town, village, etc. State ZIP Code		
Month Day Year					Annual payroll			Date acquired	
Line No.	EIN			Number of employees for pay period including March 12	2002		Code ☐ Specify <u>7</u>		
			Paid employees						
Name				First quarter payroll (Jan.-Mar.)	\$ Mil.	Thou.	Former Owner or Operator (c2)		
Secondary name					Store or plant No.				
Physical location (Number and street)				Annual payroll			Name of former owner or operator		
City, town, village, etc.				Number of employees for pay period including March 12	2002		Mailing address (No. and street, P.O. box, etc.)		
State ZIP Code					Leased employees				
Date establishment opened or is expected to open				First quarter payroll (Jan.-Mar.)	\$ Mil.	Thou.	City, town, village, etc. State ZIP Code		
Month Day Year					Annual payroll			Date acquired	